

이란 가이드북 발간사

국제사회의 경제제재 이후 이란의 국제수지는 악화가 지속되었지만, 이란 핵 합의를 도출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이란의 약속 이행을 확인한 후 2016년 1월부터 대 이란 경제제재가 해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란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도록 경제 장벽이 해제되었고, 이란 역시 우리나라 기업이 진출하기 좋은 시장이 되었습니다.

아울러 2008년부터는 이란에서도 산업디자인에 대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법안이 시행되면서, 기술보다는 디자인에 장점이 많은 중소기업들이 디자인 기술까지 보호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제 장벽 해제로 인하여 이란 진출을 고민하고 있는 기업들이 이란으로 관심을 두는 가운데, 이란의 지식재산권법에 대한 정보는 부족하여 이란에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자신의 지식재산권(특허권, 상표권 및 디자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확인하고 계획하기에 어려움이 존재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가이드북은 이러한 우리 기업들의 고충을 덜고 지속적인 이란 시장 진출과 나아가 지식재산권의 경쟁적 지위 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이란 지식재산권법에 대한 내용과 이란 현지 대리인 정보 및 비용 관련 사항을 수록하였습니다.

특히 본 가이드북은 우리 기업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대한민국 지식재산권법을 중심으로 이란 지식재산권법과의 차이점을 서술하는 방식으로 구성하였으며, 유의하여야 할 부분을 요약 정리하여 필요한 내용에의 접근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을 시작하기에 앞서 이란에서 지식재산권(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하여 출원부터 등록에 이르기까지의 전반적인 절차를 도식화하여 쉽게 볼 수 있도록 정리하였고, 마지막으로 각 권리별 분쟁 사례를 정리 수록함으로써 혹여 있을지도 모르는 타국에서의 분쟁에 유연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가이드북이 우리 기업의 이란 진출에 있어서, 이란에서 우리 기업의 산업기술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고, 활발한 활용을 통하여 이란을 포함한 이슬람 국가에서의 지식재산권 지형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나아가 수출 증대를 통한 국가 경쟁력 향상에 이바지하기를 기원하며, 그 동안 가이드북 제작에 참여하여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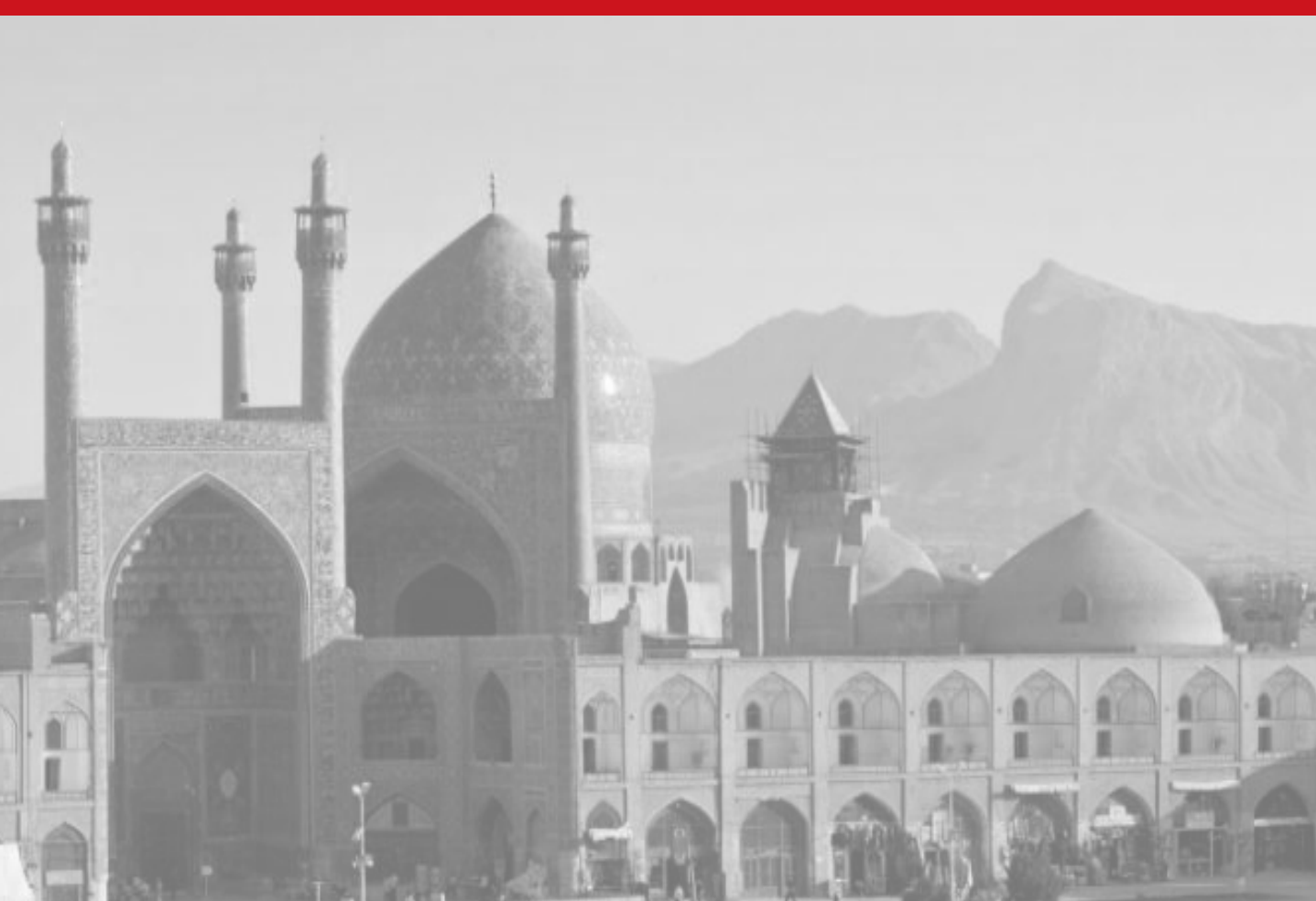
- I R A N -

INTER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GUIDE BOOK

우리기업 해외진출을 위한

해외지식재산권보호 가이드북

 이 란 



I 이란 일반현황

1. 국가개요	18
가. 주요동향	20
나. 수입규제제도	25
2. 지식재산권관련 기관 및 법률	27
3. 지식재산권 관련 통계 및 현황	30
가. 국제조약 가입현황	30
나.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현황	31
4. 현지진출기업 현황	39
가. 우리나라와의 무역현황	39
나. 우리 기업의 진출현황	40

II 지식재산권 제도

1. 특허법	44
가. 개요	44
나. 한국 특허법과 비교	44
다. 소결 및 주의사항	60
2. 상표법	61
가. 개요	61
나. 한국 상표법과 비교	61
다. 소결 및 주의사항	67
3. 디자인법	68
가. 개요	68
나. 한국 디자인법과 비교	68
다. 소결 및 주의사항	74

4. 저작권법	75
가. 개요	75
나. 정의규정	76
다. 저작권의 권리	80
라. 저작자의 권리보호기간 등	92
마. 침해 및 처벌	105
바. 소결 및 주의사항	113

III 지식재산권 출원 및 관리

1. 특허의 출원 및 관리	116
가. 출원절차 및 방식	116
나. 특허심사 및 등록	136
다. 특허의 효력	144
라. 특허의 실시권 및 이전	149
마. 특허의 종료	153
2. 상표의 출원 및 관리	155
가. 출원절차 및 방식	155
나. 상표심사 및 등록	163
다. 상표의 효력	170
라. 상표의 취소 및 권리의 소멸	174
마. 기타	177
3. 디자인의 출원 및 관리	181
가. 출원절차 및 방식	181
나. 디자인 심사 및 등록	190
다. 디자인의 효력	193

IV 지식재산권의 분쟁대응

1. 법원 체계	200
가. 이란의 법원 체계도	200
나. 형사법원 구조	201
다. 민사법원 구조 등	203
라. 지식재산권 구제절차	204
2. 민사적 구제	206
3. 형사적 구제	209
4. 지식재산권 분쟁 사례	210
가. 특허관련 사례	210
나. 상표, 디자인 관련 사례	213

V 현지 대리인 정보

1. 이란 Patent Attorney 정보	220
2. 이란 대리인 비용	248

VI 부 록

1. 특허·상표·디자인법 원문 및 번역	272
가. 특허법	272
나. 디자인법	291
다. 상표법	297
라. 특허·상표·디자인 일반규정	306
마. 저작권법	314

[그림 Ⅰ-1] 이란 지도	19
[그림 Ⅰ-2] 이란 정부조직도	23
[그림 Ⅰ-3] 연도별 지재권별 출원현황	32
[그림 Ⅰ-4] 특허 내외국인 출원현황	33
[그림 Ⅰ-5] 상표 내외국인 출원현황	34
[그림 Ⅰ-6] 디자인 내외국인 출원현황	35
[그림 Ⅰ-7] 이란인 IPC분류별 해외출원현황(전체)	38
[그림 Ⅲ-1] 특허출원 흐름도	116
[그림 Ⅲ-2] 특허출원서 양식 원문	118
[그림 Ⅲ-3] 특허출원서 양식 번역문	120
[그림 Ⅲ-4] 특허증명서 예시	140
[그림 Ⅲ-5] 특허등록내용 양식 원문	142
[그림 Ⅲ-6] 특허등록내용 양식 번역문	143
[그림 Ⅲ-7] 특허증명서 양식 원문	145
[그림 Ⅲ-8] 특허증명서 양식 번역문	146
[그림 Ⅲ-9] 상표출원 흐름도	155
[그림 Ⅲ-10] 상표출원서 양식 원문	157
[그림 Ⅲ-11] 상표등록내용 양식 원문	169
[그림 Ⅲ-12] 디자인 출원 흐름도	181
[그림 Ⅲ-13] 디자인출원서 양식 원문	183
[그림 Ⅲ-14] 디자인등록내용 양식 원문	192
[그림 Ⅳ-1] 이란의 법원 체계도	200
[그림 Ⅳ-2] 이란 지식재산권 구제절차	204
[표 Ⅰ-1] 국가 정보 검색 사이트 (이란)	19
[표 Ⅰ-2] 이란 지식재산권법 제정현황	27
[표 Ⅰ-3] 이란 국제조약 가입현황	30
[표 Ⅰ-4] 연도별 지재권별 출원현황	31
[표 Ⅰ-5] 특허 내외국인 출원현황	32
[표 Ⅰ-6] 상표 내외국인 출원현황	34
[표 Ⅰ-7] 디자인 내외국인 출원현황	35
[표 Ⅰ-8] 이란인 IPC분류별 해외출원현황(US)	36
[표 Ⅰ-9] 이란인 IPC분류별 해외출원현황(EPO)	36
[표 Ⅰ-10] 이란인 IPC분류별 해외출원현황(WIPO)	37
[표 Ⅰ-11] 이란인 IPC분류별 해외출원현황(전체)	37
[표 Ⅰ-12] 이란의 주요 국가별 수입(상위 10개국)	39
[표 Ⅰ-13] 주요 품목별 대 이란 수출	40
[표 Ⅲ-1] 특허관련 수수료	117
[표 Ⅲ-2] 상표관련 수수료	156
[표 Ⅲ-3] 디자인관련 수수료	1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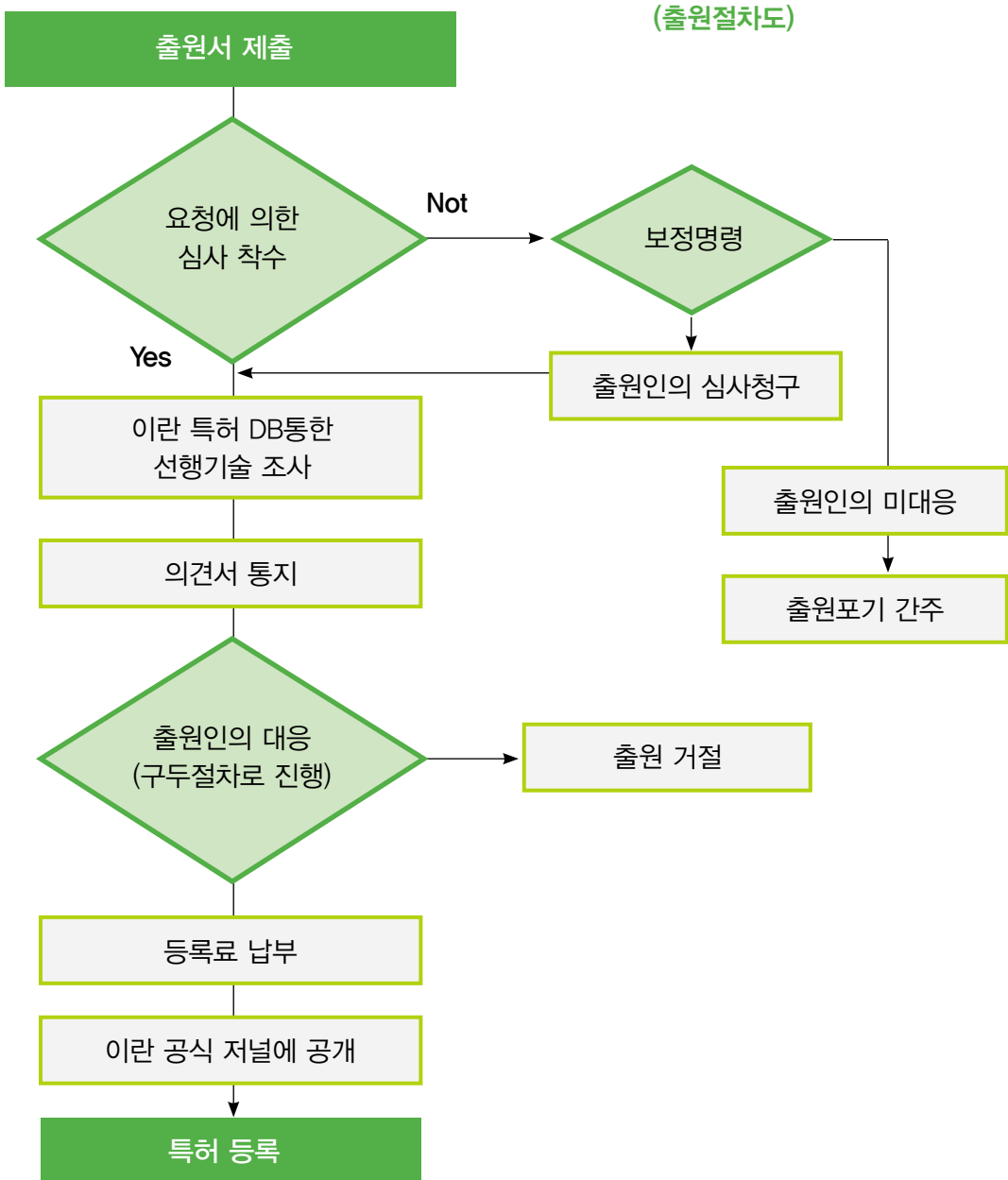
✓ 지식재산권의 종류

지적창조물에 대한 권리		영업상의 표지에 대한 권리	
특허법(특허권)	발명을 보호 출원으로부터 20년	상표법(상표권)	상품 서비스에 사용하는 보호 출원으로부터 10년
디자인법(디자인권)	물품의 디자인을 보호 등록으로부터 5년, 2번의 연장이 가능	전자상거래법	전자상거래를 보호 영업 비밀에 대한 보장
저작권법(저작권)	문예, 학술, 미술, 음악, 프로그램 등의 정신적 창작품을 보호 사후 30년 보호	산업재산권 = 산업재산권청 소관	
지리적표시보호를 위한 법	지리적 표시를 보호		
소프트웨어 권리 보호를 위한 법	컴퓨터 소프트웨어에 대한 보호		
식물품종등록에 관한 법	씨앗 및 모종에 대한 보호		

✓ 지식재산권법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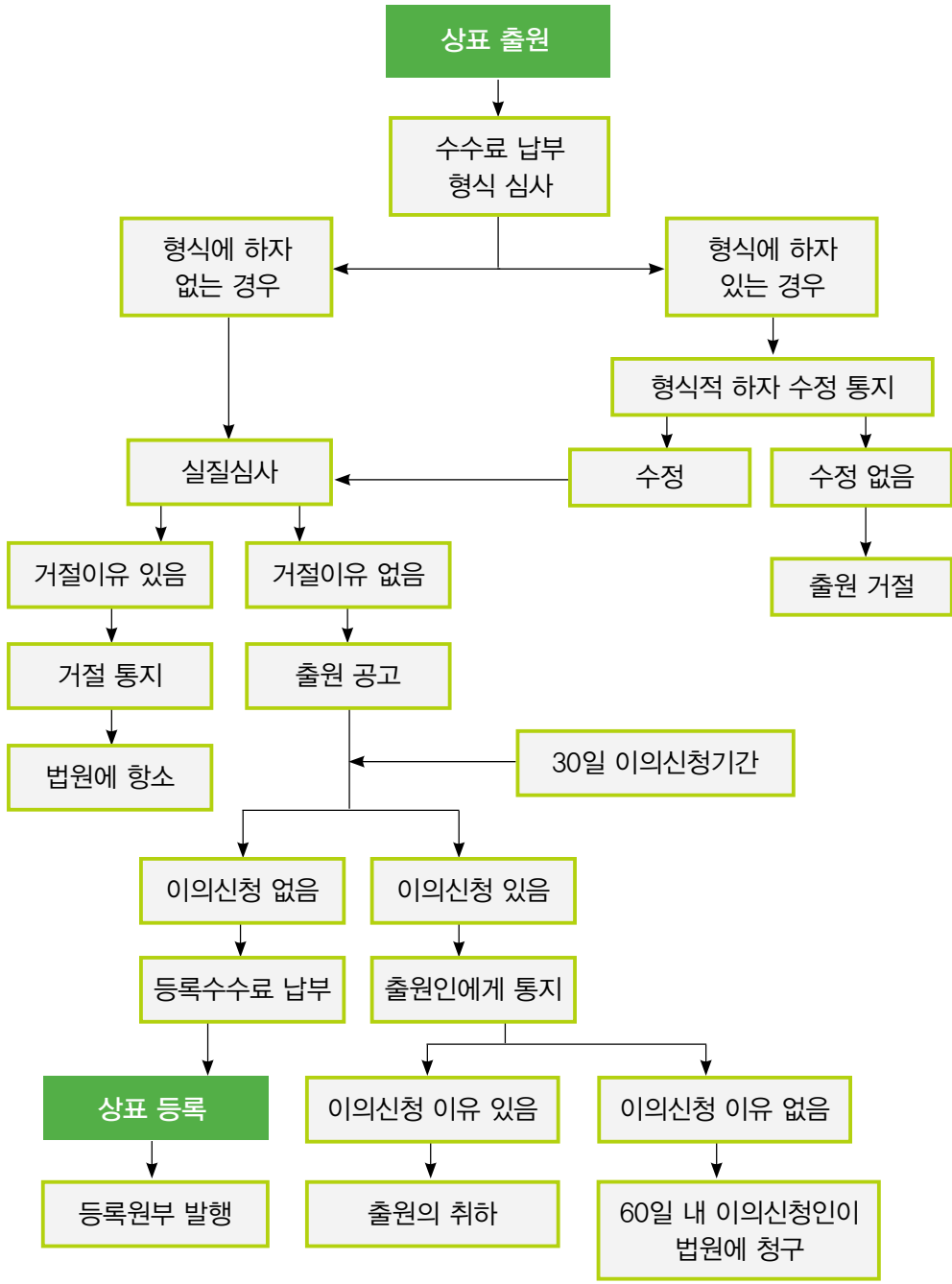
법명	조항	등록년도
Patents, Industrial Designs and Trademarks Registration Act	66조	2008
Act for Protection of Geographical Indications	16조	2005
Electronic Commerce Law	81조	2003
Act of Plant Varieties Registration, Control and Certification of Seeds and Seedlings	14조	2003
Act on the Protection of Rights of Computer Software	17조	2000
Translation and Reproduction of Books, Periodical and Phonograms Act	12조	1973
Act for Protection of Authors, Composers and Artists Rights (Copyright Law)	33조	1970

✓ 특허의 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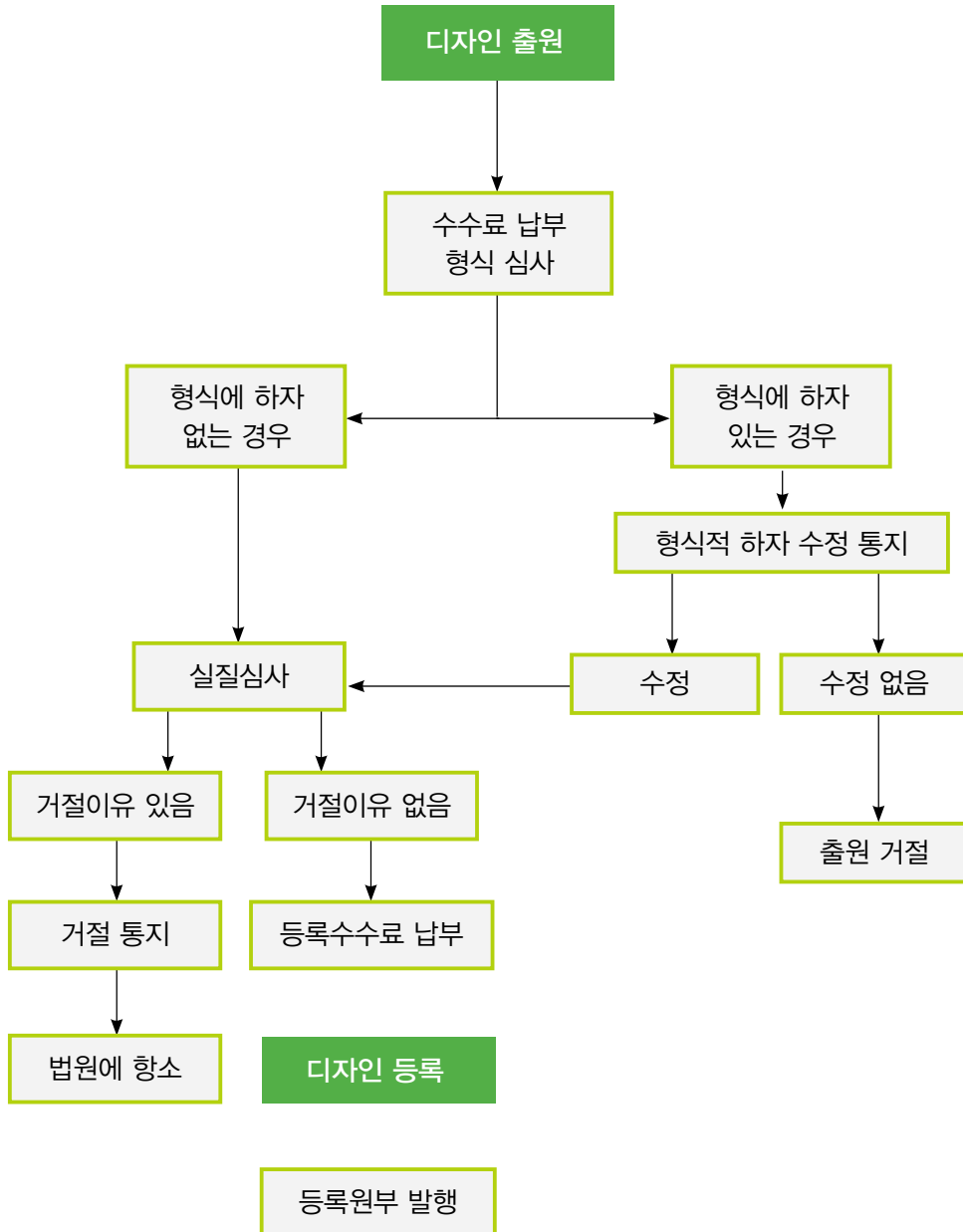




☑ 상표의 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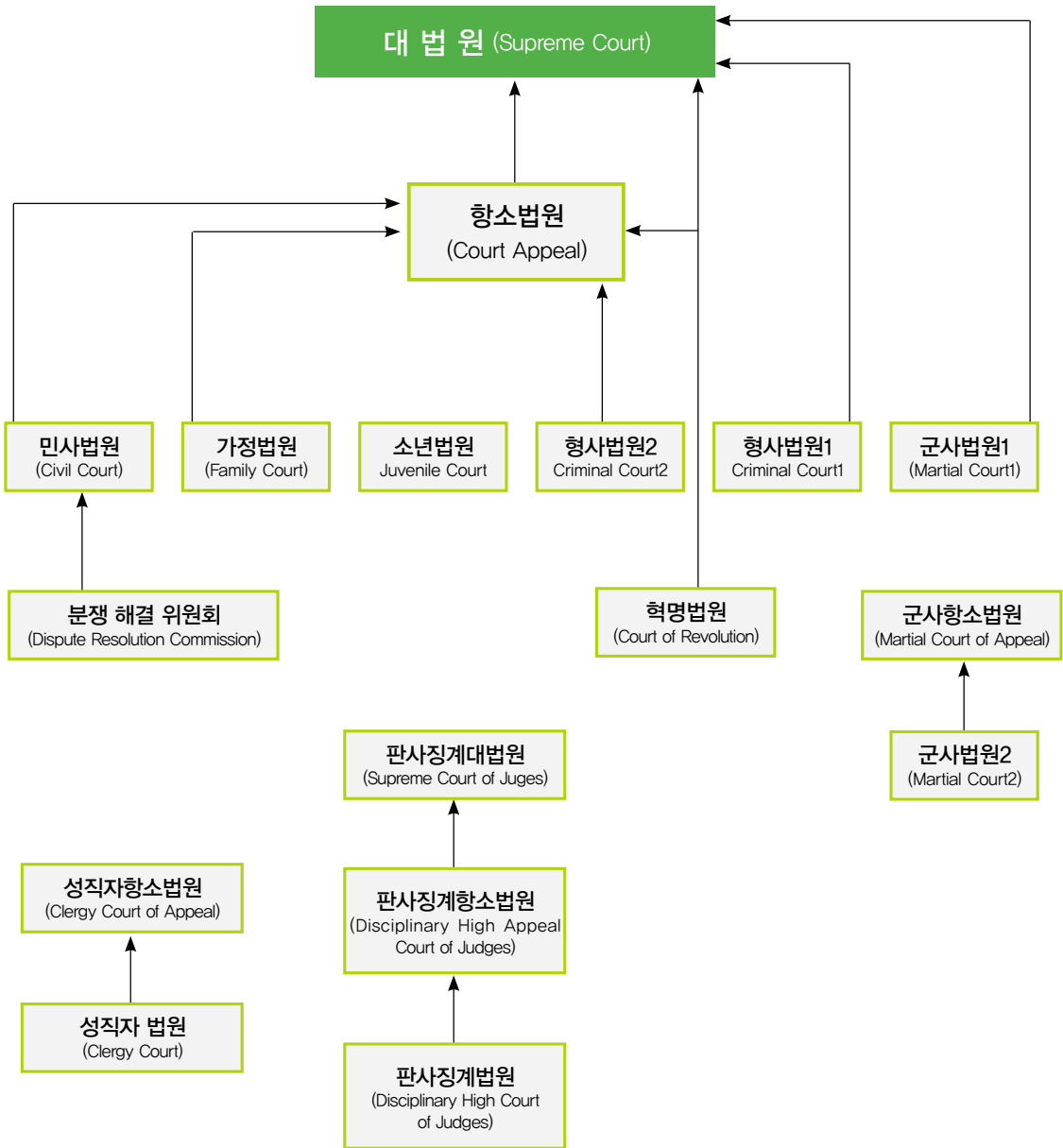


✓ 디자인의 출원





☑️ 법원 체계도





특허 출원 시 유의사항

- 이란 특허법 내 발명의 정의 규정은 자연법칙을 이용하는 것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해석상 프로그램 발명, BM 발명 등의 발명도 가능함.
- 신규성 판단 기준에 대하여 이란 특허법에는 우리나라와 같이 전기통신회선에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법문의 규정 취지와 간행물의 법규 해석상 전기통신회선(인터넷 등)을 통한 신규성 상실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며, 공연실시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됨.
- 이란의 진보성은 새로운 혁신으로 비예측성 및 비자명성을 요하고 있어 법문의 해석상 우리나라의 용이 창작성과 큰 차이가 없음. 다만, 비자명성(obvious)은 용이창작성(inventive step)보다는 창작성이 낮음.
- 이란의 불특허 사유 중, 유전적 발명은 우리나라에서는 불특허 사유로 해석되지 않고, 치료방법은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불특허 사유에 해당됨.
- 이란 특허법 제2조와 관련된 산업 범위에 대한 규정은, 파리협약상의 규정으로 우리나라도 최광의로 해석함은 통설이므로 이란과 우리나라의 산업상 이용가능성은 동일하게 해석될 수 있음. 다만, 치료방법과 같은 것을 우리나라 판례는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인정하고 있지 않음.
- 이란은 무효를 선출원 지위 상실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법문 전체 해석상, 무효도 선출원지위 상실 사유에 해당될 수 있음.
- 동일인에 대한 동일발명의 취급은 각국마다 다를 수 있는데, 이란의 선출원 주의 규정으로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이를 확대해석할 수 있음.
- 특허 명세서 등의 방식은 현재 국제적으로 통일되어가고 있는 상황으로, 이란도 우리나라와 큰 차이가 없음.
- 다만, 전자출원을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와 같이 구체적인 법규정은 없어 아직 전자출원은 불가능함.
- 이란은 출원과 관련된 소정의 서류접수를 출원일 인정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보정명령을 하고, 이에 불응시 해당 절차를 무효화 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음.
- 이란의 청구항 기재방법은 우리나라와 유사한데 이는 국제적인 공통 규정임.
- 이란은 발명의 실시를 위한 방법을 표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를 요구하지 않고 있음. 다만, 화학발명 등의 경우에는 판례법으로 실시예를 기재해야 되는 경우가 있음.



summery 요약



- 이란은 특허 요약서에 대한 해석기준을 '발명'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보호범위로 해석될 수 있는지 문제되나, 발명은 보호범위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란의 특허법도 보호범위의 해석에 있어 특허요약서를 이용할 수 없음.
- 이란은 도면 기재가 있는데도 이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출원일을 도면 제출일로 인정하거나 도면이 없는 것으로 취급하고 있음. 우리나라는 별도 규정은 없으나 해석상 필요한 도면이 없으면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불비로 처리하거나 절차 무효로 처리할 수 있음.
- 이란의 1군 발명에 대한 연결관계는 우리나라의 하나의 총괄적 발명 개념과 유사하게 해석될 수 있음. 또한, 우리나라 시행령에 규정된 상호 관련성도 도출 될 수 있음. 다만, 우리나라의 동일하거나 상응하는 기술적 특징이 선행기술에 비해 개선된 것이어야 하는 것은 이란 특허법에서는 도출될 수 없음.
- 이란의 조약우선권 주장 규정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파리협약 규정을 바탕으로 규정된 것이기 때문에 유사한점이 많음. 다만, 각국에 일임한 규정에 있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우선권 주장에 대한 제출서류와 관련하여 이란은 우리나라보다 엄격하게 요구하고 있음. 심사, 등록, 무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 심사시 참고하여 우선권주장 요건을 판단함.
- 이란은 법정기간 연장에 대해 지배상황(prevaling circumstances)을 고려한다고 하는 추상적인 규정만을 두고 있을 뿐 법정기간 연장에 대해 특별한 요건을 두고 있지 않으며 재량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
- 이란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출원인의 이익을 해칠 수 있는 경우에는 의견제출 기회를 충분히 주고 있음.
- 우리나라는 심사과정 등에 있어 빠른 심사를 위해 의견 진술기회 횟수를 제한하고 있는 반면, 이란은 이러한 빠른 심사를 위한 제한 규정을 찾아 볼 수 없음.
- 이란 특허법은 거절의 근거에 대해 별도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음. 이에 공통 규정의 법문 해석으로 근거 규정을 도출할 수 밖에 없음.
- 이란의 등록결정 후의 절차는 우리나라와 유사함. 다만, 등록 후 보정에 대해 우리나라의 정정심판과 같은 제도가 없음.
- 우리나라 정정심판에 의한 보정 범위는 심사과정보다는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으나, 이란은 이러한 구분을 두고 있지 않음.



- 이란은 등록 원부 관리와 관련해 '근대적인 방법'이라고만 규정되어 있어 어떠한 방법으로 관리되는지 명확하지 않음.
 - 우리나라는 등록원부를 효력발생 요건으로 하는 규정이 있으나, 이란은 이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 이란은 특허증 소유자에게 독점권을 부여한다고 하고 있어 특허증이 증서와 같이 이전이 가능하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음.
-
- 이란의 실시 내용 중 수출은 우리나라 특허법에는 규정이 없으나, 수출도 우리나라 법해석상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됨.(수출을 위한 생산, 양도 등에 의해 규율됨.)
-
- 특허권 제한은 각국의 재량에 의해 규율되고 있음. 이란과 우리나라의 특허권 제한 규정은 유사함.
 - 이란의 선사용자에 대한 특허권 제한은 우리나라와 유사하나, 이란은 양호한 신용을 가진자의 실시 또는 실시 준비자에게만 특허권을 제한하고 있음.
-
- 이란의 특허권 등의 이전규정의 기본 논리는 우리나라와 유사함. 즉, 특허이전의 자유, 상속인에게 이전하거나 실시사업의 이전과 함께하는 경우 자유로운 이전에 있어 우리나라와 이란은 특허권 등의 이전에 대한 기본 논리가 유사함.
 - 다만, 이란은 상속인이 없을 경우 소멸인지 국가에 귀속인지에 대한 규정이 없음. 국가에 대한 귀속 규정이 없으므로 특허권은 소멸되는 것으로 해석됨.
-
- 이란과 우리나라의 특허권 등의 이전절차는 유사함. 즉, 산업재산권청이 이전 절차를 수행하고 이에 따라 효과가 발생함. 다만, 우리나라는 전용실시권의 경우 특허청에 등록을 효력발생 요건으로 하고 있음.
-
- 이란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종업원의 발명을 사용자에게 귀속시키고 있음. 다만, 이란은 인격권의 성격인 발명자 게재권은 종업원에게 있음을 밝히고 있음. 우리나라는 발명자 게재권에 대한 의무규정이 없음.
-
- 현재 대부분의 나라에서 출원일을 기준으로 존속기간을 산정하고, 출원일 후 존속기간 20년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음. 또한, 대부분의 나라가 추가 납부제도를 두고 있음.
-
- 이란은 무효청구의 사유, 효과 등에 있어 우리나라와 유사함. 다만, 우리나라와 같이 일정한 기간동안에 누구든지 청구할 수 있는 규정이 없으며 후발적 무효사유가 존재하지 않음.



상표 출원 시 유의사항

- 이란은 우리 상표법이 상표,서비스표,단체표장, 증명표장 및 그외 지리적 표시 등에 대한 정의를 하고 있는 것과 달리 상표, 단체표장 및 상호에 대해서만 정의하여 상표법에서 다루고 있는 범위가 우리나라보다 제한적임.
- 우리나라 상표법은 제33조 내지 제34조에서 등록받을 수 없는 상표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란 상표법은 추상적 ·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이란 상표법은 선출원주의를 취하고 있으나 대상을 동일 상표로 보아 그 판단 범위가 좁게 해석됨.
- 같은 날에 출원한 경우에 대한 규정이 없음(우리 상표법 제35조 제2항).
- 선출원 지위 상실에 대한 규정이 없음(우리 상표법 제35조 제3항).
- 이란도 파리협약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우리나라에 상표등록출원이 존재하는 경우 이를 우선권주장기초출원으로 하여 이란에 우선권주장출원이 가능함.
- 이란의 상표법 규정과 이란이 가입한 국제 협약의 규정이 충돌하는 경우 국제 협약의 규정이 우선한다고 하여 조약 우선의 원칙을 따름.(이란 상표법 제62조).
- 출원공고 제도는 상표출원과 관련된 서류를 열람에 제공함으로써 이의신청 가능하게 하는 제도임.
- 이란 상표법 제30조 및 제32조에 해당함을 이유로 이의신청이 가능함.
- 출원공고일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이의신청 할 수 있으나, 주체적 요건과 시기적 요건에 있어서 우리나라보다 범위가 한정됨.
- 상표권자 보호를 위해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인정하나, 사용권 제도를 두어 독점권의 예외를 인정함.
- 상표권의 존속기간이 10년이라는 점은 동일하나, 존속기간의 기산점이 상이하여 상표권 관리시 주의 요함.
- 상표권 등의 이전이 가능하나, 단체표장권은 장관의 승인 하에서만 이전이 가능하도록 제한을 둠.
- 등록 상표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은 동일하나, 상표를 사용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시기적 요건과 취소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의 차이가 있음.
- 단체표장은 일반적으로 상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나, 단체표장권자와 단체원들의 사용을 위한 것이므로 등록 및 사용에 제한이 있음.



디자인 출원 시 유의사항

- 디자인은 물품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으로 우리 디자인보호법의 경우 물품의 공업적 이용가능성을 요구하나 이란법은 수공예 물품도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음.
- 새로운 디자인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는 동일하며, 그 판단방법에 있어서 국제주의를 취하는 것도 동일함.
- 이란 디자인법은 출원인이 창작자가 아닌 경우에 대해서만 명세서 첨부을 필수로 하여 규정함.
- 여러 디자인에 대한 단일 출원 제도는 여러 디자인을 하나의 절차를 통해 출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등록요건 등에 대해 이란 디자인법에 구체적으로 규정된 바 없음.
- 출원공고 제도는 디자인 출원과 관련된 서류를 열람에 제공함으로써 이익신청 가능하게 하는 제도임.
- 우리 디자인보호법은 디자인에 관한 물품을 생산, 사용, 양도, 대여, 수출, 수입하는 직접적인 행위뿐만 아니라 그 물품을 양도 또는 대여하기 위하여 청약하는 행위까지 실시 행위로 보나, 이란 디자인법은 산업 디자인을 포함하는 물품의 제조, 판매 또는 수입행위만을 실시행위로 보아 실시의 요건을 좁게 해석함.
- 제 3자가 등록디자인의 실시권을 가지는 경우 디자인을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으나, 전용실시권과 통상실시권에 대한 규정이 없어 실시권 효력의 범위가 문제됨.
-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의 제한이 있다는 점은 동일하나, 그 기간이 서로 달라 디자인권 관리에 주의를 요함.
- 이란의 경우 무효청구인의 범위가 우리나라보다 제한적이며, 무효청구 대상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음.
- 이란은 후발적 무효사유가 존재하지 않음.



1. 이란 일반현황

1. 국가 개요
2. 지식재산권 관련 기관 및 법률
3. 지식재산권 관련 통계 및 현황
4. 현지 진출기업현황



part

1

국가 개요



IRAN

이란(Iran)은 중동 페르시아만 동부, 카스피해 남부에 위치한 이슬람공화국(Islamic Republic)으로 정식명칭은 이란 이슬람공화국(Jomhuri-yeEslami-yelran)이다. 옛날에는 페르시아(Persia)라고 불렸으나 1935년에 '아리아인(人)의 나라'라는 뜻의 현재 국명으로 개칭하였다.

다민족국가로서 1970년대에 팔레비 국왕이 중동 패권을 장악하기 위해 추진했던 핵무기 개발이 1990년대 이후 다시 본격화되자 이를 막으려는 미국과 이스라엘 등의 국제사회와 갈등을 빚었다.

이라크와 터키,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투르크메니스탄, 아프카니스탄, 파키스탄 등 7개국과 접경하여 있다. 국토 면적은 한반도의 약 7.5배(165만 km²)로 넓으며, 수도는 테헤란(인구 약 830만명)이며, 주요 도시로는 마샤드, 이스파한, 타브리즈, 시라즈 등이 있다.

민족으로는 페르시아 57%, 아제르바이잔 24%, 길락-란다란 8%, 쿠르드 7%, 아랍 3%, 아르메니아 1%로 구성되어 있으며, 종교는 이슬람교 98% (시아파 89%, 수니파 9%), 기타 2%(조로아스터교, 유대교, 기독교 등)로 이슬람교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기후는 대륙성 기후이며, 카스피해 연안은 지중해성 기후이고, 페르시아만 연안은 아열대성 기후이다.

〈 그림 1-1 〉 이란 지도



〈 표 1-1 〉 국가 정보 검색 사이트 (이란)

※ 본 가이드북에 수록된 정보 외에도 아래 사이트를 통해 이란에 대한 기타 상세 정보 및 통상 정보, 무역 통계 등의 최신 내용을 확인 가능하다.

외교부	국가 및 지역 정보	http://www.mofa.go.kr/countries
KOTRA	해외 비즈니스 정보	http://www.globalwindow.org
한국무역협회	무역 통계	http://stat.kita.net
주한 이란대사관 (페르시아어/영문)	정치, 경제 정보 등	http://seoul.mfa.ir/
주이란 대한민국대사관 (국문)	정치, 경제 정보 등	http://irn.mofa.go.kr/korean/af/irn/main/index.jsp
JETRO	국가 및 지역 정보	http://www.jetro.go.jp/world
The World Ractbook	국가 및 지역 정보	https://www.cia.gov/library/publications/resources/the-world-factbook

가 주요동향

(1) 정치 현황

이란의 정치체제는 호메이니의 이슬람법학자 통치론과 민주주의를 조합한 이슬람 민주주의 형태이다. 이는 “벨라야티 파키”(Velayat-e Faqih : Guardianship of the Islamic Jurists)라는 통치 이념에 따라 이슬람교와 민주공화제적 요소를 결합한 독특한 정치구조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이란의 일반 행정은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된 대통령, 국회 등에서 담당하고 있으나, 종교지도자인 최고지도자에게 국정 운영의 절대 권력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이란 정부가 이슬람교와 민주 공화제적 요소를 결합한 정치 구조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이유에서 사실상 공화국체제는 이슬람체제의 하부구조라고 볼 수 있다. 첫째, 최고지도자 전문가의회 헌법수호위원회 등의 이슬람우위 조직이 존재한다는 점. 둘째, 이란의 행정부와 입법부 모두 이슬람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이슬람법학자들의 통제를 받고 있다는 점. 마지막으로 이란의 국가원수인 최고지도자는 국민이 아니라 이슬람법학자들로 구성된 국가지도자운영회의(Assembly of Experts)에서 선출된다는 점이다.

오늘날 이란의 정치세력은 보수파와 개혁파간 대립 및 협조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이란 정치권내 양대 정치세력인 보수파와 개혁파는 이슬람 체제 유지라는 공동목표를 가지고 있으나, 개혁 속도의 범위, 최고지도자의 권한과 책임 등에 대해서는 다소 이견을 보이고 있다. 우선 보수파의 경우 이슬람체제의 초점을 맞추려는 경향을 보이며 대체적으로 정치시스템의 현상 유지를 주장하며 원리파라는 이름 아래 결집하고, 핵심 주축은 수구적 무쟁적 종교지도자연합회(JRM: Jame'e-ye Rowhaniyat-e Mobarez)와 곰 종교학교 교수연합회(Jame'e-ye Modarresin-e Howze-ye Elmi-ye Qom)로 이루어져 있다.

다음으로 개혁파는 공화국체제에 초점을 맞추려는 경향이 있어, 헌법수호위원회가 권한이 너무 크고 폐쇄적이며, 지나치게 자의적으로 출마자를 심사하여 자격을 제대로 갖춘 입후보자마저 막는다고 비판한다. 또한, 언론의 자유도 더 폭을 넓혀야 한다고 말하고 있으며, 핵심 주축은 투쟁적 종교지도자연맹(MRM: Majma-e Rowhaniyun-e Mobarez)과 곰 종교학교 교수연맹(Majma-e Modarresin-e Howze-ye Elmi-ye Qom)이다.

■ 최고 지도자

국가, 정치, 종교적 최고 권력자로서 국가지도자운영회의에서 선출되며, 종신직이나 직무이행불능 또는 지도자로서 자격 상실 및 자질 결여 등 사유 발생시 국가지도자운영회의에 의해 해임 가능하다.

국가지도자운영회의와 협의 하에 국가최고정책 결정권, 국가정책 집행 감독권, 국민투표 선포권, 군통수권, 전쟁 선포 및 동원권, 임면권(헌법수호위원회의 일부 위원, 사법부 수장, 국영 라디오 및 TV 방송국장, 합참의장, 이슬람혁명수비대장, 군사령관 등), 3부(입법, 사법, 행정) 조정권, 선출된 대통령 인준권 및 해임권, 사면권 등 광범위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이란의 헌법 107조는 국가지도자운영회의가 최고지도자를 선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역대 이란의 최고지도자로는 제1대: Ayatollah Ruhollah Khomeini(1979.3-1989.6)와 제2대: Ayatollah Seyyed Ali Khamenei(1989.6- 현재)가 있으며, 그 외 최고지도자 산하조직으로는 반왕정항거기념재단, 순교자 재단, 주택 재단, 문맹퇴치 운동기구, 문화혁명 최고평의회, 이슬람선전조직, 토지분배위원 등이 있다.

이란 제2대 최고지도자(하메네이)



- 성명 : 하메네이(Ayatolla Seyyed Ali Khamenei)
- 생년월일 : 1939년 7월 15일
- 학력
 - 1957년 : 마샤드 고등학교
 - 1958~59 : 이라크 Najaf 신학교
- 경력
 - 정치활동관련 수차례 투옥(종교서클 결성)
 - 국방부차관 / 마샤드 신학교 교수
 - 이슬람혁명위 위원 / JRM 중앙위 위원
 - Tehran 금요기도회 지도자

■ 대통령

이란의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 직접 보통선거로 선출되며, 임기는 4년이며 3회이상 연임이 불가하나 단, 2회 연임 후 쉬었다가 재차 출마가 가능하다. 국회는 2/3찬성으로 대통령 불신임시 최고지도자가 대통령을 해임할 수 있다. 이란의 대통령은 현재 유일한 행정수반이며, 국무회의 의장으로서 부통령, 장관, 외교대사 등 국가 행정관료들을 국회 동의 아래 임명하거나 해임할 수 있다. (단, 장관 중에서 정보부 장관은 이란 내 모든 정보를 총괄하기 때문에 반드시 최고지도자와 조율하여 임명해야 한다)

■ 그 외 주요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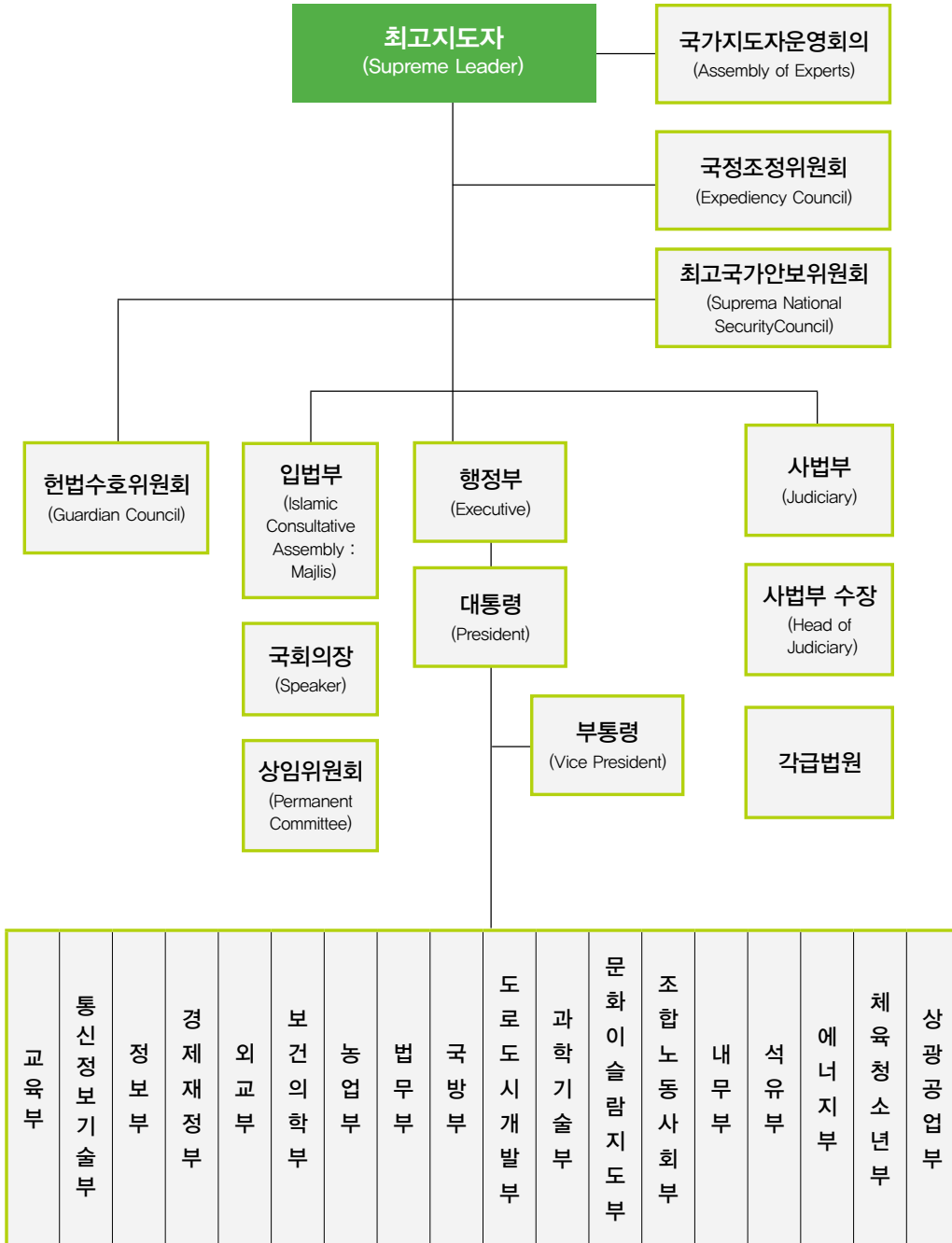
- 국가지도자운영회의
 - 국민 직선으로 선출된 86명의 이슬람법학자들로 구성
 - 국가원수인 최고지도자를 선출, 감독, 해임할 수 있음
 - 연 2회 소집

- 헌법수호위원회
 - 12명으로 구성(6명: 최고지도자가 이슬람법학자 중 임명, 6명: 대법원장이 국회에 추천하여 국회가 임명)
 - 선거 입후보자의 자질을 판단하여 출마 여부를 최종 결정할 수 있는 권한
 - 국회 통과 입법안에 대한 최종 승인권 및 헌법 최고 해석권 행사

- 국가정책심의위원회
 - 최고지도자의 요구에 따라 헌법수호위원회가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이 이슬람 법이나 헌법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될 경우 소집됨
 - 위원은 모두 최고지도자가 임명하며 임기는 5년

- 최고국가안보수호위원회
 - 대통령이 관장하여 정부내 핵심인사들이 모여 국가 이익, 이슬람혁명, 영토보전, 주권 등을 논의하는 최고위 집단안보협의체로서 회의는 대통령이 주재한다.

〈 그림 1-2 〉 이란 정부조직도



(2) 경제 현황

국제사회의 경제제재 이후 이란의 국제수지는 악화가 지속되었다. 이는 경제제재로 이란의 원유 수출이 절반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러나 이란은 주요 6개국(P5+1: 미국, 영국, 러시아, 중국, 프랑스 + 독일)과 2015년 7월, 이란의 핵폐기 상황을 비롯한 이란 핵합의(JCPOA: 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 포괄적 공동행동계획)를 도출했다. 그 이후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이란이 핵 프로그램 감축 약속을 이행하였음을 확인한 뒤 2016년 1월부터 대 이란 경제제재가 해제되었다.

국제사회는 대부분 핵 협상 타결과 그에 따른 이란에 대한 제재 완화를 환영하는 분위기이나, 일부 국가(사우디아라비아, 이스라엘 등)는 우려를 표명했다.

(3) 사회 · 문화적 특성

이란은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의 중간지대에 위치하여 동서문명의 가교역할(SilkRoad)을 하는 한편, 북방 유목민족 문화와 인더스문명, 메소포타미아문명을 흡수해 복합문화를 형성하고 있는 나라이다. 또한, 복합민족국가로서 인종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인구의 90% 이상이 시아파 이슬람교를 믿는 까닭에 국가의 단일성을 유지할 수 있었고, 이러한 종교적 단일성으로 인해 11세기에서 16세기에 걸친 셀주크투르크, 몽골 등 이민족의 지배에도 동화되지 않았다. 이슬람문화권의 중심국으로서 이슬람사원을 비롯한 건축예술이 일찍부터 발달하였고, 특히 양탄자 직조 기술은 뛰어난 예술성과 장인정신으로 인해 세계에서 명물로 손꼽힌다.

이슬람교 이전의 페르시아적인 조로아스터교, 노루즈(NouRoz) 등 고유문화도 이슬람 문화에 융화되지 않고 오늘날까지 남아 있다. 이란 혁명 후 국민생활의 이슬람화가 촉진되었는데, 특히 금요일기도회는 종교행사인 동시에 공동체 구성원으로 일체감과 정치 학습의 기회를 제공한다. 시아파 최대 종교행사는 아슈라(Ashura)로서, 제3대 이만 후세인이 전장에서 순교한 날을 기념하여 전국가적인 애도 분위기 속에서 진행된다.

라마단(금식월)을 준수하고, 매년 이슬람 성지를 순례하는 기간인 하지(Haji) 때는 8~9만명의 순례객이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성지를 방문하기도 한다. 이슬람 율법(Islamic Code)은 특히 남녀의 유별성을 강조해 여성들은 외출시에 항상 차도르를 둘러야 하지만, 다른 이슬람권 국가와 달리 이란에서는 개방, 개혁 정책에 힘입어 이러한 관습이 퇴조하고 있으며, 여성 참정권도 일부 인정된다.

식생활은 유목, 촌락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날 것이나 뱀장어, 조개처럼 비늘 없는 해산물은 먹지 않지만, 새우만은 예외다. 돼지고기와 개고기는 금기시한다.

이란인들은 또한 역사와 문화에 대한 자긍심이 강하고, 페르도우시(Ferdowsi), 사디(Sadi), 하페즈(Hafez) 등 뛰어난 시인의 작품을 즐겨 읽음은 물론, 이들을 민족적 영웅으로 숭상하는 이도 적지 않다. 그러나, 이슬람 문명과 이란 혁명에 바탕을 두고 있던 사회, 문화 생활은 1997년 8월 하타미(Khatami) 정부의 출범으로부터 2016년 현재 하산 로하니(HassanRouhani) 정부에 이르기까지 계속적으로 개혁, 개방 정책을 추구함으로써 급격히 변해가고 있다.

나 수입규제 제도

■ 이란의 수입규제 제도

이란 정부는 1990년부터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하면서 과다한 석유의존형 구조를 탈피하기 위한 산업화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으며, 자국 제조업의 보호 및 육성 정책 차원에서 관세 및 비관세 정책수단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수입정책의 경우 국내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반제품, 기계류, 부품, 원재료 등에 대해서는 5% 이내의 낮은 관세 및 수입완화 정책을 견지하는 반면 완제품과 자국내 생산 가능한 품목, 사치성 소비재는 100%까지 고관세를 적용하며 최대한 수입을 제한하고 있다.

비관세 정책은 주로 상업광공업부 등 수입허가 관청에서 사전수입허가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데, 이란의 산업화에 필수 불가결한 자본재는 수입허가 절차를 간소화해 수입을 촉진하고 있다. 반면, 이란 내에서 생산이 가능한 품목은 국산 제품의 품질 수준과 생산 물량에 관계없이 수입허가를 지연시키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이란 정부의 수입제한 정책에 대응, 산업협력을 통한 CKD(Complete Knock Down)방식 수출 등 현지 투자를 통한 수출 확대 기반 조성이 필요하다.

■ 최근 서방국가의 이란 진출 동향

● 프랑스

프랑스에서는 Total사가 이란 석유공사와 접촉하여 사우스파 천연가스 개발 참여를 타진하고 있다. 또한, 푸조-시르토앵사도 주요 부품 수출 재개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푸조-시르토앵사는 제재 이전에도 이란 자동차 시장을 주도해 왔으며, 제재 완화 이후 특히 부품 수출 재개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프랑스는 핵협상으로 인하여 경제 제재가 일부완화되기 시작한 2014년 2월부터 이란으로 경제인연합회 차원의 대규모 경제사절단을 파견하였다.

● 독일

독일의 다임러사는 2010년 이란 호드로와 조인트 벤처설립 후 경제제재가 심화되면서 철수한 바가 있다. 그러나 핵협상 타결 후 디젤엔진 생산을 위한 이란 내 공장 재가동을 검토하고, 핵 협상 이전부터 제재 완화 동향을 모니터링 하는 등 본격적으로 이란에 진출하기 위한 움직임을 재개하고 있다. 독일은 2014년 6월 민간 차원의 경제사절단을 파견하였으며, 현재 기계, 제조, 화학, 자동차, 항공부품 시장에서의 선점을 기대하고 있다.

● 러시아

러시아는 석유, 가스 및 원자력 등 에너지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고자 한다. 경제 제재 이전부터 노르웨이 스타토일사와 이란 아나안 지역에서 석유 탐사작업을 수행해온 루크오일사는 제재 완화 이후 이란과 석유 분야에서 협력 의사를 공개 표명한 바가 있다. 2014년 9월 11차 이란-러시아 무역 및 경제위원회에서 에너지, 운송, IT분야 등에서의 협력을 약속했다.

part

2

지식재산권 관련 기관 및 법률

〈 표 1 -2 〉 이란 지식재산권법 제정현황 ¹⁾

법 명	조항	시행년도
Patents, Industrial Designs and Trademarks Registration Act	66조	2008
Act for Protection of Geographical Indications	16조	2005
Electronic Commerce Law	81조	2003
Act of Plant Varieties Registration, Control and Certification of Seeds and Seedlings	14조	2003
Act on the Protection of Rights of Computer Software	17조	2000
Translation and Reproduction of Books, Periodical and Phonograms Act	12조	1973
Act for Protection of Authors, Composers and Artists Rights (Copyright Law)	33조	1970

1) <https://translate.google.co.jp/translate?hl=ko&sl=en&u=http://www.wipo.int/wipolex/en/details.jsp%3Fid%3D7706&prev=search>

■ Patents, Industrial Designs and Trademarks Registration Act (2008)

상표와 특허의 등록법이 1931년 등록되어서 상표와 특허는 보호를 받아왔으며, 특허, 산업 디자인 및 상표등록법이 2008년에 등록되면서 산업디자인도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 Act for Protection of Geographical Indications (2005)

지리적 표시를 보호하기 위한 법으로서, 지리적 표시란 상품의 품질이 생산지의 기후, 풍토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경우 상품의 생산지를 알리는 표시를 말하는 것을 의미한다.

■ Electronic Commerce Law (2003)

2003년에 제정된 법으로서, 법 제 62~66조에서 이란의 기존 지식재산권 법을 모두 전자 거래에 적용하도록 되어있으며, 제 62조와 63조에는 저작권의 보호에 대해 다루고 있으며, 제 64조와 65조에는 영업 비밀에 대한 보호를 보장하고 있으며, 제 66조에서는 상표 및 도메인의 보호를 다루고 있다.

■ Act of Plant Varieties Registration, Control and Certification of Seeds and Seedlings (2003)

식물품종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으로서 2003년에 등록되어, 새롭다고 판단되는 식물 품종을 등록 및 보호 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제 5조에 따라 재배 식물 품종의 권리자에게는 18년 동안 배타적인 경제적 권리를 부여하였다.

■ Act on the Protection of Rights of Computer Software (2000)

컴퓨터 소프트웨어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2000년에 제정된 법으로서, 이는 이란의 급성장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산업의 보호에 대한 필요성으로 보인다.

■ Translation and Reproduction of Books, Periodical and Phonograms Act (1973)

도서의 번역 및 복제, 정기 간행물 및 음반에 관한 법으로서 저작권법이 확장된 성격을 가진다.

■ Act for Protection of Authors, Composers and Artists Rights (Copyright Law) (1970)

저작권법의 경우 원래 저자의 사망 이후 상속자에게 승계되거나, 계약에 의해 이전되어 30년의 기간 동안만 보호를 받을 수 있다.

part

3

지식재산권 관련 통계 및 현황

가

국제조약 가입 현황

〈 표 1-3 〉 이란 국제조약 가입현황 ²⁾

조약명	가입일
Patent Cooperation Treaty	2013. 10. 04.
Lisbon Agreement for the Protection of Appellations of Origin and their International Registration	2006. 03. 09.
Madrid Agreement for the Repression of False or Deceptive Indications of Source on Goods	2004. 06. 18.
Madrid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of Marks	2003. 12. 25.
Protocol Relating to the Madrid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of Marks	2002. 12. 25.
Convention Establishing the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2002. 3. 14.
Paris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Industrial Property	1959. 12. 16

2) <https://translate.google.co.jp/translate?hl=ko&sl=en&tl=ko&u=http%3A%2F%2Fwww.wipo.int%2Fwipolex%2Fen%2Fdetails.jsp%3Fid%3D7706&anno=2&sandbox=1>

나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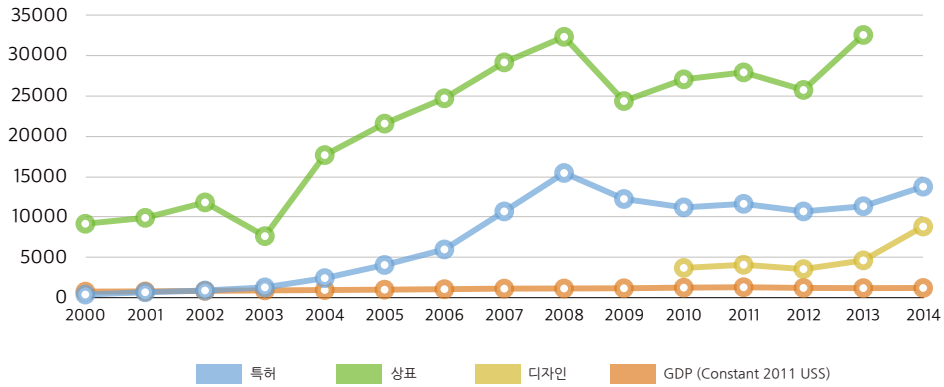
WIPO에서 발표된 통계자료에 의하면, 이란의 지재권 출원 통계 현황은 아래와 같다(이란인의 국내출원 및 해외출원 현황)³⁾. 특허출원건수는 2008년에 정점을 이루고, 차츰 하향세를 보이고 있다. 2008년 이후 유엔의 이란 제재의 영향으로 출원건수가 감소한 것으로 보이며, 2014년 출원 건수의 증가는 이란 제재 해소의 영향으로 보인다.

〈 표 1-4 〉 연도별 지재권별 출원현황

연도	특허	상표	디자인	GDP (Constant 2011 US\$)
2000	410	9,174	-	772.41
2001	691	9,906	-	800.75
2002	911	11,818	-	860.93
2003	1,296	7,642	-	922.19
2004	2,441	17,677	-	969.07
2005	4,071	21,575	-	1013.88
2006	5,995	24,711	-	1073.63
2007	10,700	29,155	-	1141.97
2008	15,463	32,319	-	1159.31
2009	12,244	24,371	-	1185.74
2010	11,197	27,059	3,706	1264.34
2011	11,642	27,921	4,094	1314.24
2012	10,700	25,744	3,559	1227.96
2013	11,343	32,554	4,637	1204.43
2014	13,768	-	8,831	1222.00

3) http://www.wipo.int/ipstats/en/statistics/country_profile/profile.jsp?code=IR

〈 그림 1-3 〉 연도별 지재권별 출원현황



1. 특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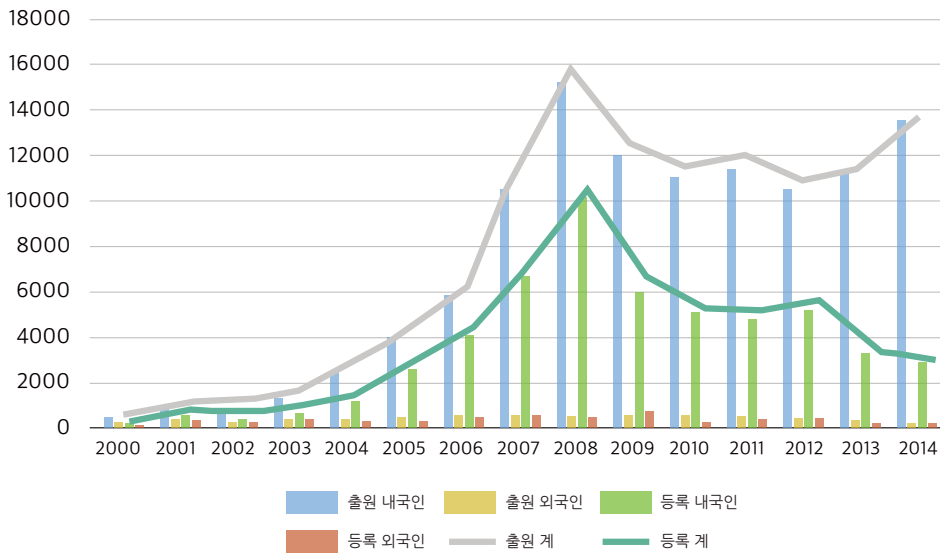
2008년도를 정점으로 이란 국민의 특허출원은 감소하고 있으며, 이는 유엔의 이란 제재의 영향으로 내국민 및 외국인의 특허출원 모두 감소 추세를 보인다.

〈 표 1-5 〉 특허 내외국인 출원현황

연도	출원			등록		
	내국민	외국인	계	내국민	외국인	계
2000	410	206	616	241	-	241
2001	691	302	993	529	352	881
2002	910	285	1,195	440	202	642
2003	1,287	355	1,642	634	309	943
2004	2,426	356	2,782	1,228	226	1,454
2005	4,051	443	4,494	2,605	285	2,890
2006	5,970	557	6,527	4,074	439	4,513
2007	10,648	502	11,150	6,745	547	7,292
2008	15,403	552	15,955	10,118	470	10,588
2009	12,184	516	12,700	5,999	750	6,749
2010	11,108	528	11,636	5,112	260	5,372
2011	11,529	489	12,018	4,835	309	5,144
2012	10,622	432	11,054	5,227	454	5,681
2013	11,305	338	11,643	3,373	103	3,476
2014	13,683	119	13,802	2,880	180	3,060

외국인의 특허출원은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거나, 내국인의 특허출원은 2013년을 기점으로 회복하는 추세를 보인다. 이는 이란 제재 해소의 영향으로 보인다. 외국인의 특허출원이 내국인의 특허출원에 비해 매우 적으나 등록률은 매우 높은 점은 눈 여겨 볼만하다.

〈 그림 1-4 〉 특허 내외국인 출원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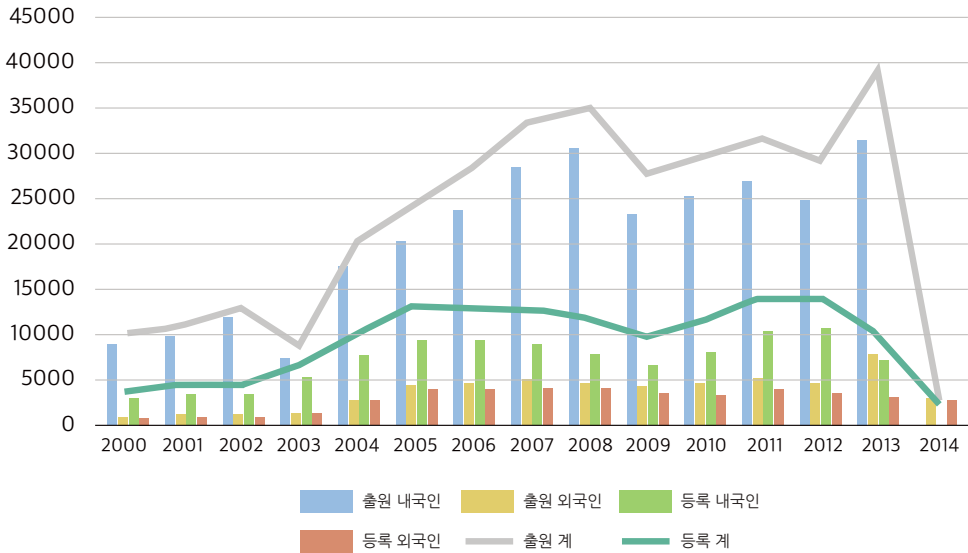
2. 상표

상표 역시 2008년도를 정점으로 하향세를 보이고 있다. 특허와 마찬가지로 2013년 이후로 출원 건수가 회복하는 추세를 보이며, 내국인의 상표 출원이 외국인에 비해 대다수를 이루나, 외국인의 상표 출원 경우 등록률은 매우 높다는 점이 특이하다.

〈 표 1 -6 〉 상표 내외국인 출원현황

연도	출원			등록		
	내국인	외국인	계	내국인	외국인	계
2000	9,173	1,047	10,220	2,850	900	3,750
2001	9,858	1,224	11,082	3,537	900	4,437
2002	11,784	1,239	13,023	3,571	917	4,488
2003	7,468	1,280	8,748	5,236	1,320	6,556
2004	17,607	2,748	20,355	7,615	2,698	10,313
2005	20,439	4,255	24,694	9,255	3,950	13,205
2006	23,827	4,591	28,418	9,500	3,930	13,430
2007	28,604	5,061	33,665	8,801	4,203	13,004
2008	30,712	4,641	35,353	7,990	4,134	12,124
2009	23,465	4,370	27,835	6,617	3,556	10,173
2010	25,388	4,539	29,927	8,222	3,502	11,724
2011	26,825	5,022	31,847	10,175	3,898	14,073
2012	24,879	4,486	29,365	10,663	3,745	14,408
2013	31,732	7,784	39,516	7,102	2,905	10,007
2014	-	3,027	3,027	-	2,623	2,623

〈 그림 1 -5 〉 상표 내외국인 출원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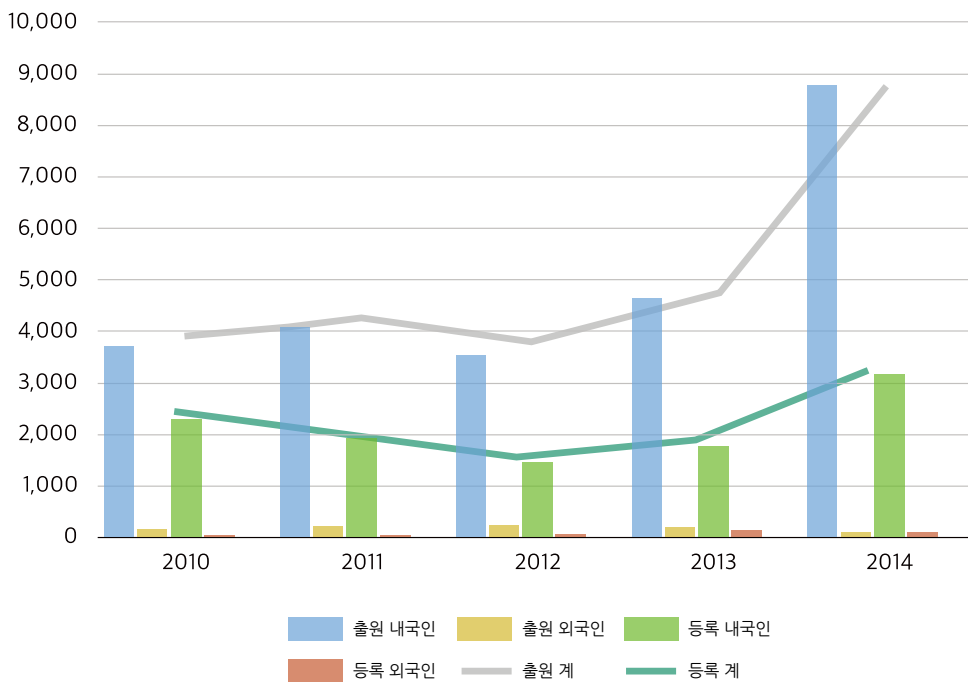
3. 디자인

이란 내 디자인 출원은 2010년부터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난다. 디자인 출원 건수가 2013년 이후로 크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 것을 눈여겨 볼만하다.

〈 표 1-7 〉 디자인 내외국인 출원현황

연도	출원			등록		
	내국인	외국인	계	내국인	외국인	계
2010	3,699	157	3,856	2,300	42	2,342
2011	4,089	203	4,292	1,909	38	1,947
2012	3,528	231	3,759	1,457	62	1,519
2013	4,632	193	4,825	1,769	143	1,912
2014	8,772	92	8,864	3,164	104	3,268

〈 그림 1-6 〉 디자인 내외국인 출원현황



4. IPC 분류별 이란인 해외출원(1976~2011)

〈 표 1 -8 〉 이란인 IPC분류별 해외출원현황(US)

No	Subject	IPC subject	Freq	Per.
1	Human Necessities	A	14	11.96
2	Performing Operations; Transporting	B	15	12.82
3	Chemistry, Metallurgy	C	27	23.07
4	Textiles; Paper	D	3	2.56
5	Fixed Constructions	E	7	5.98
6	Mechanical Engineering; Lighting; Heating; Weapons; Blasting	F	9	7.69
7	Physics	G	19	16.23
8	Electricity	H	23	19.65
Total			117	100

〈 표 1 -9 〉 이란인 IPC분류별 해외출원현황(EPO)

No	Subject	IPC subject	Freq	Per.
1	Human Necessities	A	12	23.07
2	Performing Operations; Transporting	B	12	23.07
3	Chemistry, Metallurgy	C	18	34.61
4	Textiles; Paper	D	1	1.92
5	Fixed Constructions	E	0	0
6	Mechanical Engineering; Lighting; Heating; Weapons; Blasting	F	1	1.92
7	Physics	G	2	3.84
8	Electricity	H	6	11.53
Total			52	100

〈 표 I -10 〉 이란인 IPC분류별 해외출원현황(WIPO)

No	Subject	IPC subject	Freq	Per.
1	Human Necessities	A	16	33.33
2	Performing Operations; Transporting	B	5	10.41
3	Chemistry, Metallurgy	C	13	27.08
4	Textiles; Paper	D	0	0
5	Fixed Constructions	E	2	4.16
6	Mechanical Engineering; Lighting; Heating; Weapons; Blasting	F	1	2.08
7	Physics	G	5	10.41
8	Electricity	H	6	12.5
Total			48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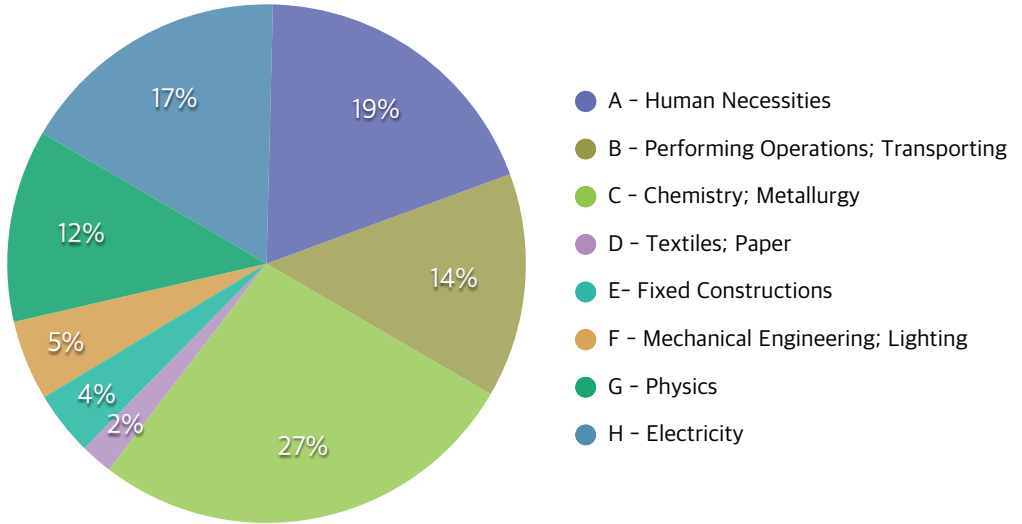
〈 표 I -11 〉 이란인 IPC분류별 해외출원현황(전체)

No	Subject	IPC subject	Freq	Per.
1	Human Necessities	A	42	19
2	Performing Operations; Transporting	B	32	14
3	Chemistry, Metallurgy	C	60	27
4	Textiles; Paper	D	4	2
5	Fixed Constructions	E	9	4
6	Mechanical Engineering; Lighting; Heating; Weapons; Blasting	F	11	5
7	Physics	G	27	12
8	Electricity	H	37	17
Total			222	100

IPC 분류별 이란 특허출원 추세를 살펴보면, 화학 및 금속학 분야, 필수품 분야, 전기 분야에서 많은 출원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이 통계는 국제 특허 사무소에 의해 출원된 특허에 한정된 자료이고, 각 국가별 특허청에 의해 등록된 특허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 그림 1 -7 〉 이란인 IPC분류별 해외출원현황(전체)



part

4

현지 진출기업 현황

가

우리나라와의 무역 현황

우리나라는 이란과 1962년 외교관계를 수립한 이래 교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왔다. 1970년 중동진출 과정에서 이란 내 건설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양국관계 발전의 기반을 닦았다. 특히 1977년 양국은 우호관계 상징으로 서울과 테헤란에 각각 '테헤란로'와 '서울로'를 명명 하였다.

이란은 사우디아라비아와 UAE에 이은 한국의 중동지역 내 제3의 수출국이다. 2012년 하반기부터 2014년 11월까지 이란과 한국의 교역은 이란 제재 영향으로 꾸준한 하향세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나, 핵협상 타결로 인하여 2015년에 들어서며 점점 상승하고 있는 현황이다.

〈 표 1 -12〉 이란의 주요 국가별 수입(상위 10개국)

(단위 : US\$ 백만)

순위	국가	2012	2013	2014	2015(~월)
1	China	7,708	8,520	12,185	3,366(1)
2	United Arab Emirates	11,831	9,117	11,525	2,775(2)
3	Korea, South	4,667	3,827	4,146	1,294(3)
4	India	1,498	3,719	4,062	883(5)
5	Turkey	3,619	3,424	3,794	1,016(4)
6	Germany	2,714	2,427	2,512	566(7)
7	Switzerland	3,029	2,711	2,073	794(6)
8	Netherlands	1,690	1,288	1,033	207(10)
9	Italy	1,177	891	994	295(8)
10	Taiwan	611	551	751	133(12)
총 수입액		52,802	45,431	52,066	13,279

자료: World Trade Atlas, 2015.06

나 우리기업의 진출 현황

우리나라의 대 이란 주요 수출품목은 수송기계, 가정용 전자제품, 철강제품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주요 수입품목은 광물성연료, 비철금속제품, 석유화학제품이 주종을 이룬다. 2014년도 한국의 대 이란 수출은 26위 및 수입은 24위를 기록했으며, 이란으로의 수출은 CKD(Complete Knock Down) 방식의 비중이 높다.

핵협상이 타결되었으나, 불요불급한 수입품 규제, 국산화 지원 등의 정책을 강화하고 있으므로 이란 바이어 및 제조업체들과의 산업협력을 보다 강화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이란 자체 조달이 불가능한 첨단 및 고부가가치 제품 수출에 주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표 1-13 〉 주요 품목별 대 이란 수출

(단위: 천 달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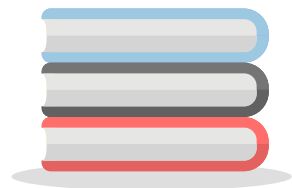
순위	품목명	2014년		2015년(1~5월)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총계	4,162,243	-7.1	1,935,228	29.1
1	수송기계	314,675	49.6	388,285	285.4
2	가정용전자제품	868,764	-11.5	298,822	-2.6
3	철강제품	512,556	-17.9	277,682	66.6
4	석유화학제품	551,557	3.1	233,895	10.1
5	산업용전자제품	324,447	20.2	122,421	28.8
6	전자부품	275,163	-4.5	105,886	-5.2
7	기초산업기계	201,179	5.7	76,948	-13.4
8	산업기계	146,657	-14.0	76,344	67.0
9	제지원료 및 종이제품	199,362	-55.1	63,622	-28.7
10	정밀화학제품	159,777	20.5	50,511	-5.3
11	고무제품	126,607	43.9	42,908	-24.8
12	플라스틱제품	64,803	14.6	39,520	54.7
13	중전(heavy electric) 기기	55,807	10.2	33,362	52.7
14	비철금속제품	57,385	4.5	25,017	155.7
15	기계요소공구 및 금형	44,278	-40.5	20,000	16.4

주: MTI 2단위 기준, 자료: 한국무역협회, 2015.05



II. 지식재산권 제도

1. 특허법
2. 상표법
3. 디자인법
4. 저작권법



part

1

특허법

 IRAN

가

개요

본 장에서는 특허법, 상표법, 디자인법의 등록요건을 중심으로 기술하고 저작권법은 전체적인 개요를 소개하고자 한다.

이란 특허법은 별도의 법전으로 구성된 것이 아니라, 상표법, 디자인법과 함께 3개의 법이 함께 구성된 법전이다. 특허규정은 제1조부터 제19조까지 규정되어 있고, 특허법, 상표법, 디자인법이 공통 적용되는 일반규정(GENERAL PROVISIONS)이 제48조부터 제65조에 규정되어 있다.

나

한국 특허법과 비교

특허등록 요건	이란 특허법	한국 특허법
보호대상	제1조	제2조제1호
신규성 및 공지예외	제4조 e)	제29조제1항 제30조
진보성	제2조 전단	제29조제2항
불특허 사유	제4조	제32조
산업상 이용 가능성	제2조 후단	제29조제1항
선출원 주의	제5조 c)	제36조
조약의 효력	제62조	-

이란 특허법상 등록요건은 우리나라와 같이 별도의 등록요건(또는 특허요건)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개별규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법조문상 조문 규정의 성격을 나타내는 법조문 제목이 없어 개별 규정마다 해석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이란 특허법상 등록요건은 대부분 특허법 전단에 배치되어 규정되고 있으며, 조약과 같이 특허, 상표, 디자인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은 일반규정(GENERAL PROVISIONS)에서 규정하고 있다.

(1) 보호대상

이란 특허법은 제1조에 발명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다. 우리 나라 특허법이 제1조에 목적을 규정하고, 제2조에 정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것과는 다르다. 이란 특허법은 별도의 목적과 관련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란 특허법 제1조	우리 특허법 제2조 1호
발명은 최초로 일정한 제품 또는 공정을 제조하고 전문성, 기능, 기술, 산업 등의 일정한 분야에서 특정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공하는 개인(들)의 정신적 산물이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高度)한 것을 말한다.

Article 1 – An invention is the outcome of an individual(s)'mind that produces a certain product or a process for the first time and provides for a solution to a specific problem in a certain line of specialty, technique, technology, industry and the like.

이란 특허법 vs 우리 특허법	
공통점	차이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명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음. (발명의 정의 규정을 두지 않고 판례법에 의해 규율하는 국가도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란 특허법은 특정문제의 해결책에 대한 정신적 산물이 발명 정의의 중심인 반면, 우리나라는 자연법칙의 이용이 발명 정의의 중심임.
<p>검 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란 특허법 내 발명의 정의 규정은 자연법칙을 이용하는 것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해석상 프로그램 발명, BM 발명 등의 발명도 가능함.

특허의 발명 정의에 대한 특징으로는 '최초(the first time)', '정신적 산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최초는 신규성, 선출원주의와 관련하여 정의된 규정으로 해석된다.

이란은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중요한 발명 성립의 포인트로 삼을 뿐 우리나라와 같이 창작성을 요하고 있지는 않다. 이는 특허에서 창작성을 요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고 후술할 신규성 규정에서 이를 반영하고 있으며, 고도성을 반영하고 있지 않음은 우리나라와 달리 실용신안(utility)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2) 신규성 및 공지예외

▣ 신규성

- **신규성이란?**

- 특허요건 중 하나로,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발명에만 특허를 부여한다는 요건을 말함.

- **신규성 판단기준**

- 시기 : 특허출원 시(시, 분, 초)

- 지역

공지 및 공연 실시 : 국제주의(2006. 09. 30. 이전 출원은 국내주의)

간행물 또는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공중이 이용 가능하게 된 발명 : 국제주의

- **신규성 위반 사유**

- 종래발명과 동일한지 여부

종래발명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 또는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되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 가능하게 된 발명

□ 공지예외

● 공지예외란?

특허출원한 발명이 특허출원 전에 공지 등이 된 경우에는 신규성이나 진보성 상실로 특허를 받을 수 없음이 원칙이지만, 이러한 원칙을 기계적으로 적용하여 특허를 받을 수 없도록 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여겨 일정한 경우 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공지예외 적용 사유

- 자기 의사에 의하여 공지 등이 된 경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에 의하여 그 발명이 공지된 경우를 뜻한다. 다만 조약 또는 법률에 의해 공지 등이 된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

- 자기 의사에 반하여 공지 등이 된 경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발명이 공지된 경우를 뜻한다. 즉 상기의 권리자가 반공개 의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반해 발명이 공지된 경우를 뜻한다.

이란의 특허법은 신규성 및 공지예외주장에 대한 규정을 불특히 사유들과 함께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제29조제1항 및 제30조에서 신규성 및 공지예외주장을 규정하고 있다.

이란 특허법 제4조 e) 호	우리 특허법 제29조 제1항, 제30조
<p>이하의 사항들은 특허보호 범위로부터 배제된다. e) 산업 및 기술에서 이미 예측된 사항. 종래기술은 (출원, 또는 해당하면 우선권을 주장하는 출원의 우선일 전에) 실제 사용이나 어떤 다른 방식으로 서면 또는 구술의 간행물을 통해, 전 세계 어디서나 공중에 공개된 모든 것이다.</p>	<p>제29조(특허요건) ①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다. 1.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公知) 되었거나 공연(公然)히 실시된 발명</p>

<p>발명의 공개가 출원일 또는 출원의 우선일로부터 6개월내에 이루어 졌으면 특허 등록 거절 사유가 될 수 없다.</p>	<p>2.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公衆)이 이용할 수 있는 발명.</p> <p>제30조(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 ①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발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특허출원을 하면 그 특허출원된 발명에 대하여 제29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할 때에는 그 발명은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p>
---	---

Article 4 – The following shall be excluded from the scope of the protection of a patent:

e) Anything that has been already anticipated in industries and techniques.

Prior art is everything disclosed to the public, anywhere in the world, through written or oral publication, by practical use or in any other way, prior to the filing or, where appropriate, the priority date, of the application claiming the invention.

Disclosure to the public of the invention shall not prevent grant of the patent, if it has occurred within six months before the filing date or, where appropriate, before priority date of the application.

이란 특허법 vs 우리 특허법	
공통점	차이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성 판단 기준인 장소기준을 전세계로 함. - 간행물의 공중 공개를 신규성 상실로 함. - 공지예외 주장을 허용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란 특허법은 공연실시, 전기통신회선에 의한 공개를 규정하고 있지 않음. - 이란 특허법은 공지예외주장을 6개월로 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1년으로 함.
검 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성 판단 기준에 대하여 이란 특허법에는 우리나라와 같이 전기통신회선에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법문의 규정 취지와 간행물의 법규 해석상 전기통신회선(인터넷 등)을 통한 신규성 상실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며, 공연실시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됨.

이란 특허법상 신규성은 장소적으로 이란 국내 및 해외 모두를 포함하고 있으며, 공개 방식으로는 서면뿐만 아니라 구술에 의한 공개도 포함하는 것이 특징이며, 공연실시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또한, 산업 및 기술에서 이미 '예측되는 사항이라고 하고 있어 후술한 진보성과 해석의 차별성을 두고 있다. 즉, 본 규정은 신규성으로 해석되고 후술할 이란 특허법 제2조는 진보성으로 해석된다.

공지예외는 6개월 내에 출원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가 1년 내에 공지예외의 주장을 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현재, 우리나라는 특허법 개정에 의해 출원일 후 1년 이외에도, 일정한 요건 하에 공지예외의 주장을 할 수 있게 되었다.)

(3) 진보성

▣ 진보성

- **진보성이란**
 - 특허요건 중 하나로 종래발명에 비해 진보된 발명에 대해서만 특허를 부여한다는 요건을 말함
- **진보성 판단기준**
 - 시기, 지역 : 신규성 판단기준과 동일
- **진보성 위반 사유**
 - 종래발명으로부터 해당 발명을 당업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이란 특허법의 특허 진보성은 제2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산업상 이용가능성과 함께 규정되어 있다. 우리나라 특허 진보성은 제29조 제2항에서 신규성과 함께 규정되어 있다.

이란 특허법 제2조	우리 특허법 제29조 2항
<p>발명이 새로운 혁신을 포함하고 산업적으로 적용가능하면 특허받을 수 있다. 혁신은 종래기술에 의하여 예측되지 않고 해당 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게 자명하지 않은 것을 포함한다.</p>	<p>제29조(특허요건) ② 특허출원 전에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발명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으면 그 발명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허를 받을 수 없다.</p>

An invention shall be patentable if it includes a new innovation, and is industrially applicable. An innovation includes anything that has not been anticipated by prior art and would not be obvious to a person having ordinary skills in the art.

이란 특허법 vs 우리 특허법	
공통점	차이점
<p>- 진보성의 인적 판단 기준을 당업자로 하고 있음.</p>	<p>- 이란은 새로운 혁신을 요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용이 창작성을 요하고 있음.</p>
<p>검 토</p>	<p>- 이란의 진보성은 새로운 혁신으로 비예측성 및 비자명성을 요하고 있어 법문의 해석상 우리나라의 용이 창작성과 큰 차이가 없음. 다만, 비자명성(obvious)은 용이창작성(inventive step)보다는 창작성이 낮음.</p>

이란 특허법상 진보성은 새로운 혁신을 요하고 있으며, 혁신이란 비예측성 및 비자명성(nonobvious) 을 가져야한다. 우리나라 특허법의 진보성은 용이 창작성을 가져야 한다는 점에서 문구상 다소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는 진보성 판단의 전제조건으로 산업상 이용가능성 및 신규성을 만족하여야 하지만, 이란은 이러한 조건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다만, 신규성 규정의 성질상, 신규성은 진보성 판단의 전제조건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4) 불특허 사유

▣ 불특허 사유

- 불특허발명이란?

- 공공의 질서,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는 발명, 즉 소위 공서양속 위반의 발명은 특허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여기서, 공공의 질서는 국가사회의 일반적 이익을 의미하고, 선량한 풍속은 사회의 일반적, 도덕적 관념을 의미한다.

- 판단시기

- 공서양속의 개념은 시대 및 사회변화에 따라 변화하는 동태적 개념이므로, 출원 시에는 비록 공서양속에 반한다 하더라도 특허여부 결정 시에 사회통념적 기준으로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게된 경우에는 특허를 허여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란 특허법 제4조는 6개의 불특허 사유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이란 특허법 제4조에 대응하는 우리나라 특허법은 제32조에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제4조 e)호는 신규성과 관련된 규정으로 상기 설명한 바와 같이 본 규정의 설명에서 제외한다.

이란 특허법 제4조	우리 특허법 제32조
<p>이하의 사항들은 특허보호 범위로부터 배제된다.</p> <p>a) 발견, 과학 이론, 수학 방법 및 예술 작품. b)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또는 정신적이거나 사회적인 행위를 실행하기 위한 계획, 규칙 또는 방법. c) 사람 또는 동물의 질병 진단 또는 치료 방법.</p>	<p>제32조(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거나 공중의 위생을 해칠 우려가 있는 발명에 대해서는 제29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허를 받을 수 없다.</p>

<p>본 조항은 특허의 정의 범위 내에 속하는 제품 및 상기 방법들에 사용되는 제품들을 포함하지 않는다.</p> <p>d) 또한 상기 사항들을 포함하는 유전적인 자원 및 유전적인 성분들과 상기 사항들을 생산하기 위한 생물 공정.</p> <p>f) 그의 상업적 이용이 이슬람법 율법(Sharia Rules), 대중의 명령 또는 도덕에 반하는 발명들은 특허받을 수 없다.</p>	
---	--

Article 4 – The following shall be excluded from the scope of the protection of a patent:

- a) Discoveries, scientific theories, mathematical methods and works of art;
- b) Schemes, rules or methods for doing business, performing mental or social acts;
- c) Methods for treatment or diagnosis of human or animal diseases;

This subsection shall not include products falling within the scope of definition of the patent and those used in the said methods.

- d) Genetic resources and genetic components comprising the same, as well as biological processes for the production of the same.

이란 특허법 vs 우리 특허법	
공통점	차이점
<p>– 공서양속 등의 일반 사회질서 위반을 불특허 사유로 하고 있음.</p>	<p>– 이란은 이란 율법, 유전적 발명, 치료방법 등을 불특허 사유로 하고 있음.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1개의 불특허 규정만이 존재함.</p>
<p>검 토</p>	<p>– 이란의 불특허 사유 중, 유전적 발명은 우리나라에서는 불특허 사유로 해석되지 않고, 치료방법은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불특허 사유에 해당됨.</p>

불특허 사유 중, a)와 b)인 정신적인 산물들은 특허 받을 수 없는데, 우리나라 특허법은 발명의 정의 규정인 제2조 제1호에서 ‘자연법칙’을 이용하여야 하기 때문에, a)와 b)의 정신적 산물은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없어 등록 받을 수 없다.

c)와 d)의 진단, 치료방법과 유전적인 생물공정을 불특허 사유로 삼는 것은 국가의 정책적인 문제로, 국제 조약 등에서도 각국의 재량에 의해 규정을 일임하고 있다. 진단, 치료방법은 우리나라 특허법에는 불특허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판례는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진단 및 치료방법은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특허 등록을 제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동물로 한정할 경우에는 특허가 가능한 반면, 이란은 동물에 대해서도 불특허 사유로 하고 있다. 유전적인 생물 공정과 관련해서는 종래에 우리나라도 유전적인 생물 특허를 불특허 사유로 하고 있었으나 이를 삭제하여 등록이 가능한 특허 대상이 되었다.

f) 규정은 우리나라 특허법 제32조에 근접한 규정이다. 다만, 이란 특허법은 이슬람 율법에 반하는 특허는 불특허 사유로 하고 있다는 점에 특징이 있다.

(5) 산업상 이용 가능성

▣ 산업상 이용 가능성

●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란?

- 산업은 유용하고 실용적인 기술에 속하는 모든 활동을 포함하는 최광의 개념으로 해석되며, 이용 가능성이란 동일결과를 반복 실시할 수 있는 가능성으로 그 발명이 실제로 즉시 실시될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장래 이용될 가능성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시기적 기준

- 특허법은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심사실무 적으로 출원 시를 기준으로 산업상 이용가능성을 판단하고 있다.

이란 특허법은 산업상 이용가능성에 대해서 제2조에서 진보성과 함께 규정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산업상 이용가능성은 제29조 특허요건의 제1항의 본문에서 신규성과 함께 규정되어 있다.

이란 특허법 제2조	우리 특허법 제29조 제1항
<p>발명이 새로운 혁신을 포함하고 산업적으로 적용가능하면 특허받을 수 있다. 혁신은 종래기술에 의하여 예측되지 않고 해당 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게 자명하지 않은 것을 포함한다. 발명은 일정한 산업 분야에서 이루어질 수 있고 사용되면 산업적으로 적용가능한 것으로 생각된다. “산업”은 가장 넓은 의미로 추측되며 수공업, 농업, 어업 및 서비스를 또한 포함한다.</p>	<p>제29조(특허요건) ①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다.</p>

Article 2 – An invention shall be patentable if it includes a new innovation, and is industrially applicable. An innovation includes anything that has not been anticipated by prior art and would not be obvious to a person having ordinary skills in the art. An invention shall be considered industrially applicable if it may be made or used in a given line of industry. “Industry” may be construed in the broadest meaning of the word and shall include handicrafts, agriculture, fishery and services as well.

이란 특허법 vs 우리 특허법	
공통점	차이점
<p>- 산업상 이용 가능성을 특허 등록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음.</p>	<p>- 이란은 산업의 범위를 정의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이에 대한 규정이 없음.</p>
<p>검 토</p>	<p>- 이란의 산업 범위에 대한 규정은, 파리협약상의 규정으로 우리나라도 최광의로 해석함은 통설이므로 이란과 우리나라의 산업상 이용가능성은 동일하게 해석될 수 있음. 다만, 치료방법과 같은 것을 우리나라 판례는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인정하고 있지 않음.</p>

이란은 산업상 이용가능성의 규정에 ‘산업’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산업의 범위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나라가 가입한 파리협약상에 산업을 최광의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규정에 의해 통설은 산업의 범위를 최광위로 해석하고 있다. 즉, 이란과 우리나라의 산업상 이용가능성은 동일하게 해석될 수 있다. 다만, 우리나라 판례는 인간에 대한 치료방법 등에 대해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특허 등록을 배제하고 있다.

(6) 선출원 주의

▣ 선출원 주의

● 선출원 주의란?

- 선출원 주의란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둘 이상의 특허출원이 있는 경우 가장 먼저 특허출원한 자에게 등록을 허여하는 것을 말한다.

● 취지

- 특허법은 하나의 발명에 대해서는 하나의 특허권을 부여한다는 1발명 1특허 원칙, 즉 중복특허배제의 원칙을 구현하고 발명의 조기 공개를 유도하는 한편, 권리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동일한 기술사상에 대해서는 먼저 출원한 자에게만 특허권을 부여하는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란은 선출원 주의 규정을 제5조 C)호에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한 우리법은 제36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란은 선출원 주의와 관련한 규정을 특허증 또는 특허권에 발명자로 표시될 권리와 함께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란 특허법 제5조 c)호	우리 특허법 제36조
<p>특허증 또는 특허권에 발명자를 표시하는 것은 이하와 같다.</p> <p>c) 서로 독립적으로 둘 이상의 사람들이 동일한 발명을 소유하게 될 시, 출원서를 먼저 제출한 사람 또는 우선권 주장 시, 그 출원이 취하되거나 포기되거나 또는 거절되지 않으면, 명확하게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출원한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사람이 그 발명을 등록할 권리를 가진다.</p>	<p>제36조(선출원) ①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다른 날에 둘 이상의 특허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특허출원한 자만이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다.</p> <p>④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제2항 단서(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하여 그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하여 거절결정이나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포기, 무효 또는 취하된 경우 2. 거절결정이나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확정된 경우

Article 5 - Naming the inventor in the Letters Patent and the right to Patent shall be as follows:

c) Where two or more persons have made the same invention independently of each other, the person whose application has been filed earlier or, if priority is claimed, the person who can prove that he has validly filed his application earlier than other(s), shall have the right to register his invention provided that his application has not been withdrawn, abandoned or rejected.

이란 특허법 vs 우리 특허법	
공통점	차이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출원 주의를 특허 등록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음.(발명자 주의가 아님) - 선출원 지위 상실 사유로, 포기, 취하, 거절을 규정하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란은 우리나라 특허법상의 동일인, 동일자 출원에 대한 규정이 없음. 이에 협의에 의한 절차도 없음. - 이란은 출원 전, 출원 후의 양도에 의한 선출원 주의를 규정하고 있지 않음.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란은 무효를 선출원 지위 상실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법문 전체 해석상, 무효도 선출원지위 상실 사유에 해당될 수 있음. - 동일인에 대한 동일발명의 취급은 각국마다 다를 수 있는데, 이란의 선출원 주의 규정으로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이를 확대해석할 수 있음.

이란도 우리나라와 동일하게 발명자 주의가 아닌 특허청 제출일을 기준으로 하는 선출원 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또한, 선출원지위 상실과 관련하여 출원이 취하, 포기, 거절된 경우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우리나라 특허법과 유사하다. 다만, 우리나라는 동일인의 동일자 출원도 선출원주의 규정의 적용을 받지만 이란은 동일인의 출원은 적용이 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우리나라는 출원전, 후를 나누어 동일자 출원을 규율하고 있지만 이란은 이를 구분하고 있지 않으며, 동일자 출원의 처리방법인 ‘협의명령’과 같은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이란 특허법은 선출원의 지위를 우리나라 특허법과 달리 일자를 기준으로 하고 있지 않으므로 동일자 출원이라 하더라도 빠른 시점에 출원한 사람이 등록받을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7) 조약의 효력

이란 특허법은 국제 조약과 국내법과의 관계에 대해서 제62조에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동일한 규정이 제26조에 있었지만 현재는 삭제되어 존속하고 있지 않다.

이란 특허법 제62조	우리 특허법 삭제-제26조
제 62 조 - 이 법률의 규정과 이란이 가입하거나 당사자가 되는 지적 재산권의 국제 협약의 규정 사이의 충돌의 경우 상기 협약의 규정이 우선한다.	삭제-제26조 (조약의 효력) 특허에 관하여 조약에 이 법에서 규정한 것과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Article 62 – In case of conflicts between the provisions of this Act and the provisions of any international treaties in respect of Intellectual Property to which Iran is or will become a party, provisions of the said treaties shall prevail.

이란 특허법 vs 우리 특허법	
공통점	차이점
- 조약의 효력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음.	- 이란은 조약이 국내법보다 우선한다고 규정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이에 대한 중전 규정을 삭제함.
검 토	- 조약이 체결되면 국내법과 마찬가지로 취급되는데 이에 우선권을 부여하느냐 동일하게 취급하느냐의 문제로 이란과 같이 특허법이 상세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약에 우선권을 부여하여 이란 특허법을 보충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우리나라와 달리 이란에는 필요한 규정임.

이란은 이란이 가입한 조약 등과 특허법이 충돌할 경우에는 조약 등이 우선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우리나라도 동일한 규정이 있었지만, 조약도 특별법 해석원칙에 따라야 하므로 국내법보다 우선권을 부여할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삭제되었다.

따라서, 이란 특허법의 불분명한 규정에 대해서는 이란이 가입한 파리협약 등의 규정이 해석 기준이 될 수 있다.

다 소결 및 주의사항

이란 특허법은 산업재산권인 상표, 디자인과 함께 규정되어 있으며 특허, 상표, 디자인이 함께 적용되는 공통 규정을 가지고 있고, 이란 특허법은 분류 기준 없이 나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해석은 합목적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이란은 조약을 이란 특허법보다 우선 적용하고 있으므로 이란이 체결한 조약 규정과 함께 법 해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나라 특허법은 절차적인 규정이 많은 반면, 이란은 절차적인 부분에 있어 규정이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특허의 절차적 문제에 있어 이란 산업재산권청의 재량이 많이 부여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불명료한 절차상 규정은 미리 확인한 후 진행할 필요성이 있다.

part

2

상표법

 IRAN

가 개요

1959년 파리 협약을 승인하였으며, 2003년 마드리드 의정서를 승인하였다. WIPO에 의한 국제 등록이 가능하다.

나 한국 상표법과 비교

상표등록 요건	이란 상표법	한국 상표법
상표의 정의 및 보호대상	제30조	제2조제1항제1호제3호
등록을 받을 수 없는 표장	제32조a)내지e)	제33조, 제34조
선출원주의	제32조g)	제35조, 제34조제1항제7호

(1) 상표의 정의

이란 상표법에서는 상표, 단체표장 및 상호에 관하여 정의하고 있는데, (제30조) “상표(Mark)”는 법인 또는 자연인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별할 수 있는 시각적인 표시를 의미하고, “단체표장(Collective Mark)”은 단체표장의 등록권자의 관리하에 표장을 사용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의 상품 또는 서비스의 품질 등을 구별할 수 있는 출처에 관한 표시를 의미하며, “상호(Trade Name)”는 법인이나 자연인을 식별하거나 구별하는 이름이나 표시를 의미한다.

이란 상표법 제30조	우리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호제3호
<p>제30조</p> <p>a) “상표(Mark)”는 법인 또는 자연인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별할 수 있는 시각적인 표시(sign)를 의미한다.</p> <p>b) “단체 표장(Collective Mark)”은 단체 표장권자의 통제하에 표장을 사용하는 법인이나 자연인의 상품 또는 서비스의 품질을 포함하는 출처 또는 다른 특성을 구별할 수 있는 시각적인 표시를 의미하며;</p> <p>c) “상호(Trade Name)”는 법인이나 자연인을 식별하고 구별하는 이름이나 표시를 의미한다.</p>	<p>제2조(정의)</p> <p>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상표”란 자기의 상품(지리적 표시가 사용되는 상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비스 또는 서비스의 제공에 관련된 물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標章)을 말한다.</p> <p>3. “단체표장”이란 상품을 생산·제조·가공·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이 직접 사용하거나 그 소속 단체원에게 사용하게 하기 위한 표장을 말한다.</p>

Article 30

Definitions of Marks, Collective Marks and Trade Names are as follows:

- a) “Mark” means any visible sign capable of distinguishing the goods or services of legal entities or of natural persons.
- b) “Collective Mark” means any visible sign designated as such in the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and capable of distinguishing the origin or any other characteristics, including the quality, of goods or services of natural persons or of legal entities which use the sign under the control of the registered owner of the Collective Mark;
- c) “Trade Name “ means the name or designation identifying and distinguishing a natural person or a legal entity.

이란 상표법 vs 우리 상표법	
공통점	차이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표는 타인의 상품 또는 서비스와 구별할 수 있는 표시. - 단체표장은 단체표장권자의 관리하에 자연인 또는 법인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별할 수 있는 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 상표법은 비시각적 상표에 대해서도 규정 (소리상표, 냄새상표). - 이란 상표법은 상호에 대한 정의를 따로 규정.
검 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란은 우리 상표법이 상표, 서비스표, 단체표장, 증명표장 및 그 외 지리적 표시 등에 대한 정의를 하고 있는 것과 달리 상표, 단체표장 및 상호에 대해서만 정의하여 상표법에서 다루고 있는 범위가 우리나라보다 제한적이다.

(2) 등록요건

1) 등록이 가능한 표장

이란 상표법은 법인 또는 자연인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별할 수 있는 '시각적인 표시'에 관하여 상표 등록을 허용하고 있다.

즉, 국내 상표법은 색채상표, 입체상표, 소리상표, 동작상표를 비롯하여, 증명표장, 지리적 표시와 같은 비전형적 상표의 등록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반하여 이란 상표법은 단체표장에 관한 규정 외에 다른 비전형 상표에 관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다. 다만, 상표 출원시 색채가 상표를 구성하는 경우 그에 대한 설명을 첨부할 수 있다(regulation 120, 4)

2) 등록을 받을 수 없는 표장

- 다른 기업의 상품이나 서비스로부터 식별할 수 없는 경우
- 이슬람 율법, 공중의 질서 또는 도덕에 반하는 경우
- 관련 상품이나 서비스의 지리적 출처 또는 그 성질 등에 대해 공중이나 거래 당사자를 오인시키는 경우
- 국제 협약에 의해 사용되는 품질표시 및 공적 표지, 성명, 약자, 이니셜, 국기 및 다른 상징, 문장(armorial bearing)을 일 요소로 포함하는 경우
- 이란에서 주지한(Well known)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품·서비스에 관하여 혼동이 될만큼 유사하거나 번역된 것인 경우
-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등록되었거나 비슷하지 않은 서비스업에서 주지한 경우, 관례적으로 상표의 사용과 주지한 상표 소유자 사이에 관계가 있는 경우, 그리고 상표의 등록이 주지한 상표의 소유자의 이익을 손상시키는 경우
- 우선일이나 출원일이 앞선 타인의 등록된 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동일하거나 혼동 우려가 있는 상품 또는 서비스에 등록받는 경우

이란 상표법 vs 우리 상표법	
공통점	차이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별력 없는 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음. - 혼한 명칭 또는 공적 표지는 등록받을 수 없음. - 정당권리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록받을 수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슬람국가의 특성상 이슬람 율법에 반하는 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음(공공의 질서를 해하는 경우 등록받을 수 없음을 규정한 우리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4호에 대응). - 이란 상표법은 주지상표의 단순한 번역에 불과한 표장도 등록 불허하는 규정 존재.
검 토	- 우리나라 상표법은 제33조 내지 제34조에서 등록받을 수 없는 상표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란 상표법은 추상적·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란의 상표법은 우리 상표법이 식별력 없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추상적이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다만, 거래 당사자들을 오인시키는 경우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없다 하여 일반수요자 보호에 대한 취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또한 이슬람 율법에 반하는 상표는 등록 받을 수 없으며, 한 예로 국제 분류상 제33류의 알코올성 음료를 지정하는 상표등록 출원은 거절된다. 다른 주지 상표의 단순한 번역에 불과한 표장 역시 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식별력이 없는 표장, 혼한 명칭 및 공적 표지, 상징, 문장들에 대한 등록을 불허하고, 상표 등록이 되지 않았거나 지정 서비스업 등이 상이하더라도 그 정당권리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상표 등록을 불허하는 취지는 국내 상표법과 유사하다.

3) 선출원주의

▣ 선출원 주의

● 선출원 주의란?

- 선출원 주의란 동일 유사한 상품에 대하여 둘 이상의 상표출원이 있는 경우 가장 먼저 상표출원한 자에게 등록을 허여하는 주의를 말한다.

● 선출원 지위가 상실되는 경우

- 상표등록출원이 포기, 취하 또는 무효가 된 때 또는 상표등록거절 결정이나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상표등록출원은 선출원주의를 적용함에 있어서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봄.
- 나아가, 선출원상표가 등록 후 무효심결이 확정된 경우나 취소심결이 확정된 경우라도 후출원은 등록이 가능함.

이런 상표법은 우리나라 상표법과 같이 선출원주의를 취하고 있으나, 동일(identical) 상표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각각 다른 출원인이 동일하거나 관련성 있는 상품·서비스에 대해 동일한 상표를 출원하는 경우 먼저 출원한 자만이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출원일 전 동일하거나 관련성 있는 상품·서비스에 대해 동일한 상표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도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없다. 다만, 이런 상표법은 같은 날에 동일하거나 관련성 있는 상품에 대해 상표가 출원된 경우에 대하여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선출원의 지위와 관련하여 우리 상표법은 상표등록출원이 포기·취하 또는 무효가 된 때, 상표등록거절결정이나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선출원의 지위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우리 상표법 제35조 제3항). 한편 이런 상표법은 선출원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란 상표법 제32조 g)	우리 상표법 제35조, 제34조 제1항 제7호
<p>제32조 g) 동일한 상품이나 서비스 또는 관련성에 기인하여 오인시키거나 혼동을 초래할 수 있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우선권이나 선행 출원일을 가진 다른 소유주의 이름으로 등록된 상표와 동일한 경우.</p>	<p>제35조(선출원) ①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동일·유사한 상표에 대하여 다른 날에 둘 이상의 상표 등록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출원한 자만이 그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다.</p> <p>제34조(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① 제3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표에 대해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7. 선출원(先出願)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등록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은 제외한다)와 동일·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p>

Article 32

g) If it is identical with a mark registered in the name of a different proprietor with an earlier filing date or a priority right in respect of the same goods or services or for goods and services that, due to connection or resemblance, is likely to deceive or cause confusion.

이란 상표법 vs 우리 상표법	
공통점	차이점
<p>- 선출원주의 채택.</p>	<p>- 이란 상표법은 동일 상표에 대해서만 선출원주의 적용하나 우리 상표법은 유사상표에까지 확대 적용.</p>
<p>검 토</p>	<p>- 이란 상표법은 선출원주의를 취하고 있으나 대상을 동일 상표로 보아 그 판단범위가 좁게 해석됨. - 같은 날에 출원한 경우에 대한 규정이 없음(우리 상표법 제35조 제2항). - 선출원 지위 상실에 대한 규정이 없음(우리 상표법 제35조 제3항).</p>

다 소결 및 주의사항

이란에서의 상표 등록은 특히 이슬람 율법에 반하지 않는 것이라야 함을 유의해야 한다. 예로써, 여성의 신체 피부가 노출된 도안, 돼지고기와 같이 금식해야 하는 것, 음주를 연상하게 하는 것 등이 있다. 국내 상표법과 같이 도박이나 마약에 관한 내용을 가리키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것이 아니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part

3

디자인법

 IRAN

가

개요

국내 디자인보호법이 2015년 헤이그 협정에 가입한 것에 반하여 이란은 미가입국으로, 2008년 개정법에서 '산업디자인'에 관한 보호를 규정하고 있다.

나

한국 디자인법과 비교

디자인 등록요건	이란 디자인법	한국 디자인보호법
디자인 보호 대상	제20조	제2조 제1호
신규성 및 창작성	제21조	제33조 제1항 · 제2항, 제34조
디자인등록 받을 수 없는 디자인	제20조	제34조 제4호

(1) 산업디자인의 정의

이란의 디자인법상 선 또는 색채와의 결합 여부에 관계없이 선, 색채 또는 입체적 형태의 조합은 그 형태가 산업 또는 수공예 물품에 특수한 외양을 제공하면 산업디자인으로 보호된다.

우리 디자인보호법이 ‘형상만의 디자인’을 인정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취지이며, 형상을 필수 요소로 하는 조합으로서 선, 색채 또는 형상의 조합을 디자인으로 보호하는 것이 같다.

다만 우리 디자인보호법은 수공예 물품을 보호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고 ‘공업적 생산 가능성’을 요건으로 하는데 반하여, 이란의 산업디자인 제도는 수공예 물품이라도 그 특수한 외양이라면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으로 하는데 차이가 있다.

이란 디자인법 제20조	우리 디자인보호법 제2조 제1호
<p>제20조 산업디자인이란 산업용 물품이나 수공예 물품에 선 또는 색채와의 결합 여부에 관계없이 선, 색채 또는 입체적 형태의 조합을 나타내는 것이다. 다만 외양의 변형 없이 단지 기술적 효과를 나타내는 경우 산업디자인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p>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디자인”이란 물품[물품의 부분(제42조는 제외한다) 및 글자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美感)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p>

Article 20

For the purpose of this Act, any composition of lines or colors or any three dimensional form, whether or not associated with lines or colors, is deemed to be an Industrial Design, provided that such composition or form gives a special appearance to a product of industry or handicraft. In an Industrial Design, the protection under this Act does not extend to solely achieving a technical result without incorporating changes in the appearance.

이란 디자인법 vs 우리 디자인보호법

이란 디자인법 vs 우리 디자인보호법	
공통점	차이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색채의 결합 여부와 관계없이 입체적 형태의 조합을 보호대상으로 함(국내법상 형상만의 디자인과 동일한 취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란 디자인법은 공업적 이용가능성을 요구하지 않음.
<p>검 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자인은 물품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으로 우리 디자인보호법의 경우 물품의 공업적 이용가능성을 요구하나 이란법은 수공예 물품도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음. 	

(2) 신규성 및 창작성

▣ 신규성 및 창작성

● 신규성이란?

- 신규성은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되지 않고,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게 된 디자인이 아니어야 함을 의미한다.

● 창작성이란?

- 창작성은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국내 또는 국외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을 통해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이 아니어야 함을 의미한다.

산업 디자인은 신규하거나 독창적이면 등록받을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한다(이란 디자인법 제21조). 이는 등록된 디자인에 독점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산업재산권 취지상 타인의 디자인을 모방한 디자인에 대해서는 등록을 불허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다. 신규성은 디자인이 출원일 또는 우선일 전 국제주의에 따라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중에 공개되었는지의 여부로 판단한다.

이란의 디자인법상 ‘독창적인(original) 디자인’은 ‘창작이 용이한 디자인(우리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2항)과는 다소 상이한 것으로 그 판단에 관한 추가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는 신규하고 타인의 것을 모방한 것이 아닌 디자인에 대하여 등록을 인정하는 취지이다.

이란 디자인법 제21조	우리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 내지 제2항, 제34조
<p>제21조 산업디자인은 신규하거나 독창적이면 등록받을 수 있다. 산업디자인의 출원일 전 또는 우선일 전 국내 또는 국외에서(anywhere in the world) 읽을 수 있는 형태로 공개되거나 사용 되는 등의 방법으로 공중에 공개되지 않은 경우 신규하다. 제4조 (e) 및 (f)의 규정은 산업디자인에 적용 된다.</p>	<p>제33조(디자인등록의 요건) ①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디자인에 대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다. 1.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公知)되었거나 공연(公然)히 실시된 디자인 2.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公衆)이 이용할 수 있게 된 디자인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 ②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디자인은 제외한다)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1. 제1항제1호·제2호에 해당하는 디자인 또는 이들의 결합 2. 국내 또는 국외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p>

③ 디자인등록출원한 디자인이 그 출원을 한 후에 제52조, 제56조 또는 제90조제3항에 따라 디자인공보에 게재된 다른 디자인등록출원(그 디자인등록출원일 전에 출원된 것으로 한정한다)의 출원서의 기재사항 및 출원서에 첨부된 도면·사진 또는 견본에 표현된 디자인의 일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 그 디자인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다만, 그 디자인등록출원의 출원인과 다른 디자인등록출원의 출원인이 같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4조(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디자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디자인에 대하여는 제33조에도 불구하고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1. 국기, 국장(國章), 군기(軍旗), 훈장, 포장, 기장(記章), 그 밖의 공공기관 등의 표장과 외국의 국기, 국장 또는 국제기관 등의 문자나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
2. 디자인이 주는 의미나 내용 등이 일반인의 통상적인 도덕관념이나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거나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디자인
3. 타인의 업무와 관련된 물품과 혼동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디자인
4.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에 불가결한 형상만으로 된 디자인

Article 21

An Industrial Design is registrable if it is new and or original. An Industrial Design shall be new if it has not been disclosed to the public, anywhere in the world, by publication in tangible form or by use or in any other way, prior to filing date of the application or, where applicable, the priority date of the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Provisions of last sentence of Article (4) (e) and (f)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Industrial Designs.

이란 디자인법 vs 우리 디자인보호법	
공통점	차이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성 판단의 장소 기준을 전 세계로 봄(우리나라가 국내 또는 국외에서의 공지를 선행디자인으로 보는 것과 동일 취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자인이 공연히 실시되었거나 간행물에 게재된 경우 또는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특별히 규정되어있지 않음. - 독창적인 디자인은 국내법상 창작이 용이한 디자인과는 다소 상이.
검토	- 새로운 디자인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는 동일하며, 그 판단방법에 있어서 국제주의를 취하는 것도 동일함.

(3) 등록 받을 수 없는 디자인

우리 디자인보호법에서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데 불가결한 형상만으로 된 디자인'에 관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우리 디자인보호법 제34조 제4호), 이란 디자인법 제20조는 외양의 변형이 없는 기술적인 효과만에 대하여는 본 법으로 보호받을 수 없음을 규정하고 있다. 기능적 형상은 특허법상의 보호대상으로 이란의 디자인법 역시 우리 디자인보호법과 마찬가지로 물품의 외관 및 심미적인 차이를 보호하고 있는 취지로 볼 수 있다.

또한 그 디자인의 상업적 이용이 이슬람 율법 및 공중의 질서 등에 반하는 것은 등록받을 수 없는 것으로 특허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와 같은 디자인 등록 요건은 창작성 판단, 국가 기관 등의 문자 및 표지와 동일·유사한 디자인에 대한 등록 요건 판단, 타인의 업무와 관련된 물품과 혼동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디자인에 대한 등록요건 판단 등 등록받을 수 없는 디자인에 대해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우리 디자인보호법에 비하여 제한 요건이 약한 것이다.

다

소결 및 주의사항

이란의 산업디자인은 국내의 디자인보호법과 상이하게 글자체 또는 동적인 디자인에 대하여 보호규정이 없으며, 부분디자인 및 화상디자인 등에 대한 규정도 없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또한, 물품의 입체적인 형상을 보호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 그래픽 또는 심볼과 같은 2차 디자인은 국내에서와 마찬가지로 디자인으로써 보호받을 수 없다.

part

4

저작권법



가 개요

이란 저작권법은 정의(DEFINITIONS), 저작자의 권리, 저작자 권리의 보호 기간, 법률의 침해 및 처벌의 총 4개의 파트로 나누어져 있으며, 정의 규정은 제1조 및 제2조로 저작자, 저작물, 저작물의 종류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저작물의 종류에 대해서 열거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저작자의 권리는 제3조 내지 제11조로 저작재산권, 저작인격권, 저작재산권의 이전, 공동저작자의 권리 및 저작재산권의 제한을 규정하고 있다.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은 총 4개의 제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사적 복제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저작자 권리의 보호기간은 제12조 내지 제22조로 저작재산권 보호기간 및 소멸, 업무상 저작물의 보호기간, 저작재산권 이전 시 보호기간 등, 사진, 영상저작물 등의 저작재산권 보호기간, 동일성 유지권, 성명표시권, 저작물의 출판 등 저작권 등록 및 외국인 저작물 보호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침해 및 처벌은 제23조 내지 31조로 저작권 침해죄, 저작권 소멸 후 저작인격권 등의 침해죄, 법원에 공개 요청, 저작권 침해에 대한 사용자 책임, 침해금지 명령 및 친고죄로 규정되어 있다.

나 정의 규정

정의	이란 저작권법	한국 저작권법
저작물, 저작자	제1조	제2조제1,2호
저작물 종류	제2조	제4조

(1) 저작물, 저작자

이란 저작권법은 정의 규정에서 저작물, 저작자, 저작물의 예시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저작물, 저작자 등을 포함한 총 34호의 정의 규정을 두고 있다.

이란 저작권법 제1조	우리 저작권법 제2조 제1,2호
모든 작가들, 작곡가들 및 예술가들은 이하 “저작자(author)”라 하고, 사용된 방법에 관계 없이 그들의 지식, 창작 또는 예술의 산물은 “작품(work)”라 한다.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2.“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한다.

Article 1. All writers, composers, and artists will hereafter be called “author”, and the product of their knowledge, originality or art, irrespective of the method used, therein, will hereafter be called “work”

이란 저작권법 vs 우리 저작권법	
공통점	차이점
- 저작자와 저작물(작품)에 대해 정의 규정을 두고 있다.	- 이란은 저작자와 저작물에 대해서만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만, 우리법은 저작자, 저작물 이외에도 다수의 정의 규정이 있다.
검 토	이란은 저작자를 먼저 정의하고 저작자의 산물을 작품(저작물)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법은 저작물을 먼저 정의하고 이러한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저작자로 규정한다.

이란 저작권은 저작자의 정의로 모든 작가들(writers), 작곡가들(compers), 예술가들(artists)을 저작자라고 하고 있어 예술적인 범위에만 저작자로 인정하고 데이터 베이스나 컴퓨터프로그램 등과 같이 예술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저작물은 이란저작권법상 보호가 가능한지에 대해 해석이 갈릴 수 있다.

이란 저작권법상의 작품(work)은 저작물을 말하는 것으로 저작자의 지식, 창작, 예술의 산물을 말하고 있어 반드시 예술성, 창작성을 가지지 않은 저작자 지식의 산물도 저작물에 포함시키고 있다. 이에 예술성, 창작성 이외에도 저작자의 노력이 투입된 작품도 저작물로 보호 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는 저작물의 범위를 광의로 해석하여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저작자라 하고 있다. 이와 달리, 이란 저작권법의 정의 규정은 우리나라의 정의 규정과 달리 제한적인 해석이 가능하게 규정되어 있다.

(2) 저작물 종류

우리나라는 저작권법에 보호되는 저작물의 종류를 예시규정으로 두고 있는 반면, 이란 저작권법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저작물의 종류를 한정하여 열거하고 있다. 즉, 규정된 저작물 이외에는 보호가 불가능하다고 해석될 수 있다.

이란 저작권법 제2조	우리 저작권법 제4조
<p>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작품은 이하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서적, 팜플렛, 희극 및 모든 다른 문학, 과학 및 예술의 글쓰기(writings) 2. 작성되고, 기록되거나 또는 방송된 방식에 상관없이, 시, 가요, 및 성가(anthems) 모두 포함 	<p>(저작물의 예시 등) ① 이 법에서 말하는 저작물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소설·시·논문·강연·연설·각본 그 밖의 어문저작물 2. 음악저작물

- | | |
|---|---|
| <ol style="list-style-type: none"> 3. 작성되고, 기록되거나 또는 방송된 방식에 상관없이, 무대 또는 스크린 공연을 위하여거나 또는 라디오와 텔레비전에 의한 방송을 위한 시청각 작품 4. 작곡되고, 기록되거나 또는 방송된 방식에 상관없이, 음악 작품 5. 회화(paintings), 그림(pictures), 도면들, 디자인, 장식적인 쓰기, 간단하거나 복잡한 방식으로 제작된 지리적인 지도 또는 장식적이며 상상의 작품 6. 모든 형태의 조각 7. 건축 작품, 디자인, 스케치 및 빌딩 8. 독창적인 방법들에 의하여 제작된 사진 작품 9. 기능 및 산업적인 기술이 적용된 원래 물품, 카펫 및 덮개 디자인 10. 문화 및 예술의 민속 및 국가 유산에 기초한 원래 작품 11. 독창성 있는 기술 작품 12. 상기 작품들의 조합으로 제조된 다른 원래 작품 | <ol style="list-style-type: none"> 3. 연극 및 무용·무언극 그 밖의 연극저작물 4. 회화·서예·조각·판화·공예·응용미술저작물 그 밖의 미술저작물 5. 건축물·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그 밖의 건축저작물 6. 사진저작물(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작된 것을 포함한다) 7. 영상저작물 8. 지도·도표·설계도·약도·모형 그 밖의 도형 저작물 9.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
|---|---|

Article 2. Works protected by copyright law are as follows:

Books, pamphlets, plays and all other literary, scientific and artistic writings.

Poems, songs, and anthems, irrespective of the way they are written, recorded or broadcast.

Audio-visual works for stage or screen performances or for broadcasting by radio and television, irrespective of the way they are written, recorded or broadcast.

Musical works irrespective of the way they are composed, recorded or broadcast.

Paintings, pictures, drawings, designs, decorative writings, geographical maps or any decorative and imaginative work produced in any simple or complex manner.

Sculptures of all types.

Architectural works, designs, sketches and buildings.

Photographic works produced by any original methods.

Original articles of applied handicraft and industrial art, carpet and rug designs.

Original works based on folklore and national heritage of culture and arts.

Technical works of originality.

Any other original works produced from combinations of the aforementioned works.

이란 저작권법 vs 우리 저작권법	
공통점	차이점
- 저작물의 종류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다.	- 우리나라 저작물 종류는 예시 규정인 반면, 이란은 이에 대한 언급이 없다.
검 토	이란은 열거규정으로, 12개의 저작물의 종류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다. 이 이외의 저작물에 대해서는 해석상 문제될 수 있다. 이란은 독창성이 있는 기술적인 작품도 저작물의 예시로 규정되어 있다는 점이 특이점이다.

이란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저작물의 종류 중 독창성 있는 기술 작품(Technical works of originality)도 보호되고 있다는 점이 특이점이다. 통상 기술적인 것은 특허로 보호되고 있는 것이 세계적인 주류이나 이란 저작권법은 기술적인 작품도 저작권법상 보호하고 있다.

저작재산권과 별도로 반포, 방송, 공연, 출판에 대한 정의 규정이 없어 특히 방송과 공연에 있어 해석범위가 문제될 수 있다. 저작재산권의 가장 기본적인 복제권과 2차 저작물 작성권은 다른 규정의 해석에 의해서 인정될 수 있다.

인터넷과 같은 정보통신상의 저작권 보호 규정이 이란 저작권법에는 규정이 없어 복제권으로 규율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다 저작자의 권리

저작자의 권리	이란 저작권법	우리 저작권법
저작재산권	제3조	제4조 ~ 22조
저작인격권	제4조	제14조
저작재산권 이전	제5조	제45조
공동저작자의 권리	제6조	제2조제21호, 제48조
저작재산권 제한_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등	제7조	제28조/제32조/ 제35조
저작재산권 제한_도서관등에서의 복제 등	제8조	제31조
저작재산권 제한_정보부 장관의 이용	제9조/제10조	-
지적재산권 제한_사적 복제 등	제11조	제34조

(1) 저작재산권

이란 저작권법의 저작재산권은 ‘금전적인 권리(financial rights)’라고 하고 있으며, 해석상, 배포권, 방송권, 공연권, 출판권의 4개의 저작재산권을 인정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7개의 저작재산권을 규정하고 있다.

이란 저작권법 제3조	우리 저작권법 제4조 ~ 22조
저작자의 권리는 작품을 반포하고 방송하고 공연하며 출판할 독점권 및 그의 작품이나 성명으로부터 발생하는 금전적이며 지적인 이익에 대한 부가적인 권리를 포함한다.	제4절 저작재산권 제1관 저작재산권의 종류 제16조(복제권) 제17조(공연권) 제18조(공중송신권) 제19조(전시권) 제20조(배포권) 제21조(대여권) 제22조(2차적 저작물 작성권)

Article 3. Author's rights include exclusive right to publish, broadcast, perform and publicize works, and further right to any financial and intellectual profit resulting from his work or name.

이란 저작권법 vs 우리 저작권법	
공통점	차이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작재산권으로 배포권, 방송권, 공연권, 출판권으로 규정 하고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란은 4개의 저작재산권만을 보호하고 있는 반면, 우리법은 7개의 저작재산권을 인정하고 있다.
검토	이란은 저작재산권을 협소하게 규정하고 있다. 인터넷상의 공중송신권과 같은 규정이 없어 인터넷상의 저작물 침해에 대해서는 복제권으로 밖에 규율할 수 없다.

이란은 저작재산권으로 배포권, 방송권, 공연권, 출판권을 규정하고 있다. 우리법은 방송권과 출판권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방송권은 공중송신권으로 규율하고 있으며, 출판권은 복제권으로 규율하고 있다. 이란 저작권법은 인터넷상의 권리보호에 미흡한 규정으로 복제에 대한 규율을 할 수 있지만 복제물을 인터넷상에 업로드 하거나 전송하는 것을 규율할 규정이 없다.

(2) 저작인격권

이란 저작권법은 저작인격권과 관련하여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고, 이에 대응한 우리 저작권법은 제14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란은 저작인격권을 ‘지적인 권리(intellectual rights)’로 규정하고 있다.

이란 저작권법 제4조	우리 저작권법 제14조
<p>저작자의 지적인 권리는 장소 또는 시간 제한이 없으며 양도할 수 없다.</p>	<p>(저작인격권의 일신전속성) ① 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일신에 전속한다. ② 저작자의 사망 후에 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저작자가 생존하였다면 그 저작인격권의 침해가 될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행위의 성질 및 정도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Article 4. Author's intellectual rights have no place or time limit and are not transferable.

이란 저작권법 vs 우리 저작권법	
공통점	차이점
<p>- 저작인격권을 규정하고, 이를 일신 전속한 권리로 규정하고 있다.</p>	<p>- 이란은 저작자 사망 후의 저작인격권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지 않다.</p>
<p>검 토</p>	<p>통상 저작권은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으로 구분되고 저작재산권은 양도성을 가지고 있지만, 저작인격권은 일신 적속한 권리로 규율하고 있다. 이란도 마찬가지로 저작인격권을 일신 적속한 권리로 규율하고 있다.</p>

저작인격권이 일신에 전속한다는 것은 우리나라 저작권법과 동일하다. 다만, 저작자 사후의 저작물 이용과 관련한 규정은 없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는 상속인이 존재하는 한 저작인격권은 무한성을 띠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3) 저작재산권 이전

이란 저작권법은 저작재산권의 이전에 대해 제한적으로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다. 다만, 6호 및 7호의 일반규정 성격의 규정에 의해 확대해석될 수 있다. 우리나라는 특약 유무에 따라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의 포함여부를 구분하고 있으나 이란 저작권법은 이를 구분하고 있지 않다.

이란 저작권법 제5조	우리 저작권법 제45조
<p>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작품의 저작자는 이하를 포함한 모든 경우들에서 그의 금전적인 권리를 다른 자에게 이전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영화 필름, 텔레비전 등의 제작 극장, 발레 또는 다른 공연에서와 같은 무대 공연 음향 또는 시각에 의하거나 또는 다른 그러한 수단에 의한 테이프에의 작품의 기록 라디오 및 텔레비전에 의하거나 또는 다른 그러한 수단에 의한 방송 회화, 인쇄, 사진, 예칭, 사진 식자, 몰딩 등에 의한 작품의 공적 시연 및 출판, 복제, 번역 과학, 문학, 예술, 기술 및 광고 목적으로 작품을 이용 위의 제 2 조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다른 작품을 창작하거나 제작하기 위한 작품의 이용 	<p>(저작재산권의 양도) ① 저작재산권은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p> <p>②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제22조에 따른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는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프로그램의 경우 특약이 없는 한 2차적저작물작성권도 함께 양도된 것으로 추정한다.</p>

Article 5. The author of works protected by this law can transfer his financial rights to another party in all cases including the following:

Production of films for cinema, television and the like.

Stage performances, as in theatre, ballet or other such performances.

Recording of a work by sound or vision on tapes, or by any other such means.

Broadcast by radio and television, or by any other such means.

Translation, reproduction, publication and public presentation of works by means of painting, printing, photography, etching, photogravure, molding and the like.

Making use of the work in any scientific, literary, artistic, technical and advertising purposes.

Making use of the work in producing or creating other works as mentioned in article 2 above.

이란 저작권법 vs 우리 저작권법	
공통점	차이점
<p>- 저작재산권의 이전을 규정하고 있다.</p>	<p>- 이란은 이전할 수 있는 권리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단순히 저작재산권을 이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p>
<p>검 토</p>	<p>이란 저작권법은 2차 저작물을 포함하여 저작재산권을 이전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우리법은 단순 이전 계약시에는 2차 저작물 작성권은 포함되지 않는다.</p>

저작재산권의 이전은 저작재산권의 종류 또는 행위를 중심으로 규정된 것이 아니라, 행위의 목적 또는 대상을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즉, 영화필름, 텔레비전, 극장, 발레 등의 저작물 이용의 목적이 되는 대상을 중심으로 정의되어 있어 한정 해석될 수 있으나 일반규정의 성격인 6호 및 7호에 의해 저작재산권 이전의 이용범위가 확대 적용될 수 있다.

(4) 공동저작자의 권리

이란 저작권법의 공동저작물의 성립성에 의해 저작자들의 협력을 요하고 있고 분리 불가능성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공동 창작 및 이용상 분리 불가능성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즉, 이란 저작권법은 우리나라와 달리 협력관계를 요하고 있어 주관적인 요건을 요하고 있으며, 이용에 관계없이 저작물 자체가 분리 불가능하면 공동저작물이 성립된다.

이란 저작권법 제6조	우리 저작권법 제2조 제21호, 제48조
<p>둘 이상의 저작자들의 협력에 의하여 제작된 작품은 그들 각자의 기여가 분리되거나 명백하지 않으면 “공동 저작 작품”으로 부르며 그로부터 발생하는 권리는 저작자들의 공동 권리로써 처리된다.</p>	<p>(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1. “공동저작물”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p> <p>제48조(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의 행사) ①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그 저작재산권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행사할 수 없으며, 다른 저작재산권자의 동의가 없으면 그 지분을 양도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이 경우 각 저작재산권자는 신의에 반하여 합의의 성립을 방해하거나 동의를 거부할 수 없다. ② 공동저작물의 이용에 따른 이익은 공동저작자 간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그 저작물의 창작에 이바지한 정도에 따라 각자에게 배분된다. 이 경우 각자의 이바지한 정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p>

Article 6. Work produced by the collaboration of two or more authors, when the contribution of each of them is not separate or distinct, shall be called “Work of joint authorship”, and the rights arising therefrom shall be treated as the communal rights of the authors.

이란 저작권법 vs 우리 저작권법	
공통점	차이점
<p>- 분리불가능성에 따라 공동저작물 성립을 인정하고 있다.</p>	<p>- 우리법은 이용상 분리가능성을 공동저작물의 성립요건으로 하고 있는 반면, 이란은 이보다 넓은 분리 불가능성을 성립요건으로 하고 있다.</p>
<p>검 토</p>	<p>이란은 공동저작물 성립 요건을 우리보다 넓게 인정하고 있다. 그 처분에 있어서도 공동 저작자 모두의 동의를 요함은 우리 나라와 같다.</p>

이란은 공동저작물에 있어 분리 불가능성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 노래와 같은 경우 작사와 작곡의 경우에 공동저작물로 볼 수 있을지 의문이다.

공동저작물의 저작권은 공동으로 처분된다고 하고 있어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동 저작자 모두의 동의를 필요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 저작권법과 달리 이용활성화를 위한 반신위에 의한 동의 거부와 같은 규정은 두고 있지 않아 공동 저작자 중 어느 한사람의 동의가 없으면 공동 저작물의 이용이 제한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5) 저작재산권 제한_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등

이란 저작권법은 저작재산권 제한과 관련하여, 총 5개의 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총 16개의 저작재산권 규정을 두고 있다.

이란 저작권법 제7조	우리 저작권법 제28조, 제32조, 제35조
<p>반포된 작품으로부터 인용하는 것 및 문학, 과학, 기술 또는 교육 목적으로 및 비평이나 찬사에서 그들을 참고하는 것은 인용의 출처들이 언급되고 관습적인 제한이 준수되면 허용된다.</p> <p>또한, 고용된 교사들에 의한 교육 단체들에서의 사용을 위하여 작품이 복제되는 경우에서 인용 출처들을 기재하는 것은 금전적인 이익이 포함되지 않으면 필요하지 않다.</p>	<p>(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p> <p>(시험문제로서의 복제) 학교의 입학시험 그 밖에 학식 및 기능에 관한 시험 또는 검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목적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배포할 수 있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① 제23조부터 제35조의2까지, 제101조의3부터 제101조의5까지의 경우 외에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p>

Article 7. It is permissible to quote from published works and to refer to them for, literary, scientific, technical or educational purposes, and in criticism or praise, provided that the sources of quotations are mentioned and the customary limitations are observed. NB. Mentioning the sources of quotations, in cases where the work is reproduced for use in educational institutions by teachers employed thereat, is not necessary, provided there is no monetary gain involved.

이란 저작권법 vs 우리 저작권법	
공통점	차이점
- 공표(반포)된 저작물을 일정한 목적을 위해 인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 우리는 인용의 목적을 제한하고 있지 않지만 이란은 인용의 목적이 일정한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
검 토	이란은 반포된 저작물의 인용에 있어서 인용의 출처를 요구하고, 인용범위도 관습적인 수준으로 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와 유사하다. 다만, 우리나라는 인용하는 주체에 대해 별도 제한을 두고 있지 않지만 이란은 문학, 과학, 기술 또는 교육의 목적으로만 인용할 수 있다.

저작권법 7조에서는 2가지의 저작재산권 제한인, 반포된 저작물의 인용과 교육목적의 복제를 포함하고 있다. 반포된 저작물의 인용은 교육 및 비평 등의 목적으로 인용하는 경우에 인용의 출처를 언급하고 관습적인 범위내에서 인용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저작권법과 궤를 같이하고 있다. 즉, 우리나라 저작권법도 정당한 범위 안에서만 저작물을 인용할 수 있으며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다. 공정한 관행이란 저작물, 저작자 등의 표시를 말하는 것으로 통상 관행에 의해 이루어지는 표시행위를 말한다. 이란 저작권법도 우리나라 저작권법과 마찬가지로 해석될 수 있다.

교육 목적의 복제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저작권법 제32조(시험문제로서의 복제)와 제35조의3(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해당하는 규정으로 교육 목적의 시험문제, 공정한 이용은 저작재산권이 제한된다. 다만, 특이점으로는 금전적 이득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는 인용의 출처를 요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 특이점이다. 즉, 교사들에 의한 교육목적상 복제시 저작재산권자에게 저작료를 지불해야하는 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출처표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석된다.

(6) 저작권재산권 제한_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등

이란은 우리 저작권법 제31조에 해당하는 도서관등의 복제에 대한 규정을 저작권법 제8조에 규정하고 있다.

이란 저작권법 제8조	우리 저작권법 제31조
<p>비영리적인, 공중 도서관, 기록 센터, 과학 단체 및 교육 기관들은 그들의 활동을 위하여 장관의 고시에 의하여 발행된 결정에 따라 필요한 부수로 사진이나 유사한 과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작품을 복제할 수 있다.</p>	<p>(도서관등에서의 복제 등) ①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과 도서·문서·기록 그 밖의 자료(이하 “도서등”이라 한다)를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시설 중 대통령이 정하는 시설(당해시설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도서관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도서관등에 보관된 도서등(제1호의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도서관등이 복제·전송받은 도서등을 포함한다)을 사용하여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디지털 형태로 복제할 수 없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조사·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공표된 도서등의 일부분의 복제물을 1인 1부에 한하여 제공하는 경우 2. 도서등의 자체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다른 도서관등의 요구에 따라 절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구하기 어려운 도서등의 복제물을 보존용으로 제공하는 경우

Article 8. Public libraries, documentation centers, scientific institutions and educational establishments, which are noncommercial, may reproduce protected works by a photographic or similar process, in the numbers necessary, for the purposes of their activities, according to a decree to be issued by the Board of Ministers.

이란 저작권법 vs 우리 저작권법	
공통점	차이점
- 도서관에서의 복제권 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	- 우리나라가 일정한 도서관 내에서만 복제 등을 허용하고 있는 반면에, 이란 저작권법은 도서관에 한정하지 않고 기록센터나 과학단체 및 교육 기관들까지 확장하여 복제권의 저작재산권을 제한하고 있다.
검 토	우리나라는 도서관 내의 복제에 대해서만 복제권을 제한하고 있는 반면, 이란은 도서관뿐만 아니라 일정 공공성을 띠는 단체에서의 복제도 복제권 제한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란은 복제권이 제한되는 공중 도서관, 기록센터, 과학단체 및 교육기관들은 비영리적이어야 한다는 것이 요건으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같이 복제의 부수에 제한을 제한하고 있으나 저작물 전체를 복제할 수 있다고 해석된다는 점 및 복제의 목적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는 점에 차이점이 있으며, 디지털 형태의 복제 제한을 예정하고 있지 않다.

(7) 저작재산권 제한_정보부 장관의 이용

이란 저작권법 제9조 및 제10조는 우리나라 저작권법에는 기재 또는 해석될 수 없는 특이 규정이다.

이란 저작권법 제9조, 제10조	우리 저작권법 제 호
<p>제 9 조. 이 법률의 통과에 따라 정보부장관(Ministry of information)은 이미 재생되고 반포된 작품들을 이용할 권리를 보유한다.</p> <p>제 10 조. 이 법률의 통과에 따라 교육부장관은 적절한 기존 법률에 합치하여 이미 인쇄되고 발행된 학교 교과서들을 이용할 권리를 보유한다.</p>	(해당 내용 없음)

Article 9. With the passing of this law, the Ministry of information will retain the right to use any works it has already reproduced and published.

Article 10. With the passing of this law the Ministry of Education will retain the right to use any school books already printed and issued in agreement with the appropriate existing laws.

법 제9조에 의하면 정보부 장관은 이미 재생 및 반포된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법 제10조에 의하면 교육부 장관은 이미 인쇄되고 발행된 학교 교과서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국가의 공공기관 모두가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보부 장관 또는 교육부 장관만이 이용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저작물을 일정한 제한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규정은 없다.

(8) 저작재산권 제한_사적 복제 등

이란 저작권법은 개인적이고 비상업적인 복제, 녹음에 대해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는 사적인 복제만을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으로 두고 있다.

이란 저작권법 제11조	우리 저작권법 제34조
<p>제 2 조 1항에서 기재된 바와 같이, 이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작품의 복제 및 라디오·텔레비전 프로그램의 녹음은 허용될 수 있으나 개인적이고 비상업적인 이용에 한정된다.</p>	<p>(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Article 11. Reproduction of works protected by this law, as mentioned in Article 2, section 1, and the recording of radio and television programmes are permissible, but only for private and noncommercial use.

이란 저작권법 vs 우리 저작권법	
공통점	차이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적인 사적 이용에 대해서 저작권재산권 제한을 두고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법은 개인적인 이용뿐만 아니라 가정 및 이에 준하는 범위에서의 사용도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고 있으나, 이란은 개인적인 사용만을 제한하고 있다.
검토	사적이용과 관련해 우리나라는 비상업적인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으나, 이란은 비상업적인 것을 추가로 요구하고 있다. 우리법도 법 취지상 상업적인 이용은 사적인 이용을 넘어서는 것으로서 저작권재산권 제한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11조에는, 개인적이고 비상업적인 복제를 자유로이 실시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개인적인 복제뿐만 아니라,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안에서도 자유로운 복제가 가능하다. 즉, 이란은 우리나라와 달리 1인 개인에 의한 복제만이 자유로울뿐, 가정 단위의 범위안에서의 복제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석된다. 또한, 우리나라는 개인적인 복제라 하더라도 공중 복사기에 의한 복제는 허용하고 있지 않은 반면, 이란은 이러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는다. 다만, 비상업적인 이용과 관련하여,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비상업적인 이용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개인적인 이용'에 비상업적인 이용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법 11조에는 개인적이고 비상업적인 라디오 및 텔레비전의 녹음도 자유롭게 허용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에 대한 규정은 없지만, 법 제34조에서 저작물을 방송할 권한을 가진 방송사업자는 방송을 위해 일시적 녹음, 녹화가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다. 즉, 허락을 받은 저작물에 한해서만 일시적인 녹음이 가능할 뿐 이란과 같은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라 저작자의 권리 보호 기간 등

저작자의 권리 보호 기간 등	이란 저작권법	우리 저작권법
저작재산권 보호기간 및 소멸	제12조	제39조, 제49조
업무상 저작물의 보호기간	제13조	제41조
저작재산권 이전 시 보호기간 등	제14조, 제15조	-
사진, 영상저작물 등의 저작재산권 보호기간	제16조	제42조
저작인격권_동일성 유지권	제17조	제13조
저작인격권_성명표시권	제18조	제12조
저작물의 출판 등	제19조, 제20조	제63조
저작권 등록	제21조	제53조
외국인 저작물 보호	제22조	제3조

(1) 저작재산권 보호기간 및 소멸

이란은 저작재산권 보호기간과 관련하여 제12조에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한 우리법은 제38조 및 제49조에 규정하고 있다.

이란 저작권법 제12조	우리 저작권법 제39조, 제49조
<p>이 법의 주체인 저작자의 금전적인 권리는 그의 사후 30년 동안 그의 상속인에게 이전되거나, 또는 계약에 의하여 이전된다.</p> <p>상속인이 없거나 계약에 의한 이전이 없으면, 문화예술부 장관(Ministry of Culture and Arts)은 동일한 기간 동안 공중의 이용을 위하여 해당 권리를 보유한다.</p>	<p>제39조(보호기간의 원칙) ① 저작재산권은 이 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한다.</p>

<p>공동 저작자의 작품의 경우, 제 6 조를 참조하고, 최종 생존 저작자의 사망일만이 보호 기간 산출을 위하여 고려된다.</p>	<p>제49조(저작재산권의 소멸) 저작재산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멸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저작재산권자가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 그 권리가 「민법」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 2. 저작재산권자인 법인 또는 단체가 해산되어 그 권리가 「민법」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
--	---

Article 12. The financial rights of the author, the subject of this law, are transferred to his heirs, or by covenant, for a period of thirty years after his death. In the absence of such heirs or a transfer by covenant, the Ministry of Culture and Arts will hold the rights for public use for the same period of time. NB. In the case of works of joint authorship, reference Article 6, the date of the death of the last surviving author shall be considered alone for the calculation of the time of protection.

이란 저작권법 vs 우리 저작권법	
공통점	차이점
<p>- 저작재산권의 존속기간을 규정하고 그 기산일을 저작자의 사망일로 하고 있다.</p>	<p>- 우리법은 저작자 사후 70년간이지만, 이란은 저작자 사후 30년동안 존속한다.</p>
<p>검 토</p>	<p>이란은 저작재산권 보호기간이 우리나라에 비해 매우 짧다. 우리나라는 미국과의 FTA 영향으로 존속기간이 늘어났다.</p>

이란 저작권법은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을 사후 30년으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미국과의 FTA 체결에 따라, 사후 50년에서 사후 70년으로 연장되어 보호되고 있다.

법 12조는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 공동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 및 상속인 부존재에 따른 저작재산권 소멸을 규정하고 있다. 보호기간의 기산점이 저작자 사망과 관련하여 공동 저작자의 최후 사망자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이란과 우리나라 저작권법이 동일하다. 또한, 저작자가 상속인이 없이 사망할 경우에 문화예술부 장관이 보유한다는 것도 유사하다. 다만, 저작자가 저작재산권의 이용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이란은 사망과 관련없이 계약이 존속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반면, 우리나라는 이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와 관련된 해석은 민법 규정에 의해 해석되어야 하며, 민법에 의하면, 상속 기타 일반 승계자는 피상속인의 계약 등의 관계를 승계하므로, 우리나라도 저작자가 저작재산권 계약 체결 후 사망하였어도 계약은 존속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란 저작권법은 저작자 개인에 대해서만 규정되어 있을 뿐, 법인이 저작자인 경우에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2) 업무상 저작물의 보호기간

이란 저작권법의 업무상 저작물의 보호기간은 제13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이에 대응한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제41조에 규정하고 있다.

이란 저작권법 제13조	우리 저작권법 제41조
<p>보다 단기간이나 보다 제한된 계약에 대해 합의되지 않으면 피고용인들에 의하여 제작된 작품의 금전적인 권리는 제작일로부터 30년의 기간 동안 고용인에게 속한다.</p> <p>부기(NB), 각각의 규정에 따른 문학, 과학 및 예술 공연에서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작품에 주어진 보상, 금전적인 포상 및 특권은 저작자에게 속한다.</p>	<p>(업무상저작물의 보호기간)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한 때부터 70년간 존속한다. 다만, 창작한 때부터 50년 이내에 공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창작한 때부터 70년간 존속한다.</p>

Article 13. The financial right of work produced by employees belongs to the employer for a period of thirty years from the date of production, unless a shorter period or more limited arrangements has been agreed upon. NB. Rewards, financial prizes and privileges which are given in literary, scientific and artistic contests according to their respective regulations, to works protected by this law belong to the author.

이란 저작권법 vs 우리 저작권법	
공통점	차이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상 저작물을 인정하고, 저작권의 귀속을 사업자에게 두고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법은 업무상 저작물이 성립하면, 저작자인 종업원에게 아무런 권리가 인정되지 않으나, 이란은 일정한 금전적인 보상이 인정되고 있다.
검토	<p>업무상 저작물이 성립하기 위해서 우리법은 일정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란은 성립요건에 대해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고 성립 후 효과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다.</p>

제13조는 업무상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을 제작일부터 30년으로 하고 있다. 저작재산권이 사후 30년인 것에 비하면 짧은 보호기간이다. 우리나라도 업무상 저작물의 보호기간을 공표한날부터 70년으로 하고 있어, 일반적인 저작재산권보다 짧은 보호기간을 가짐은 마찬가지다.

이란 저작권법은 원저작자에게 보상금 등의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에는 없는 규정이며, 우리나라 저작권법상, 업무상 저작물에 대해 주어지는 보상금은 사용자인 업무상 저작물 저작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이란이 우리나라보다 원저작자(종업원)에 대한 보호가 강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3) 저작재산권 이전 시 보호기간 등

이란 저작권법은 저작재산권 이전 시 보호기간 등과 관련하여 제14조에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는 우리나라 저작권법 규정은 없다.

이란 저작권법 제14조	우리 저작권법 제 호
<p>제 14 조. 저작자의 권리가 이전된 자는 단기간으로 계약된 것이 아니면 30년 기간 동안 당해 권리를 보유한다.</p> <p>제 15 조. 이 법의 제13 조 및 제 14 조의 경우, 계약 기간의 만료에 따라 권리의 소유권은 저작자에게 복귀되며, 아니면 위의 제 12 조에 따라 결정된다.</p>	<p>(해당 내용 없음)</p>

Article 14. A person to whom the rights of the author have been transferred, is entitled to hold same for a period of 30 years, unless a shorter period is agreed upon.

Article 15. With respect to articles 13 and 14 of this law, on the expiry of the agreed period of time, ownership of rights will be restored to the author, or otherwise settled according to Article 12 above.

제14조에서는 저작재산권이 계약으로 이전된 경우 단기간이 아니라면 30년간 보호된다. 우리나라는 계약기간으로 정해질 뿐 이와 관련된 규정은 없다.

제15조에서는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저작재산권이 저작자에게 귀속됨을 규정하고, 귀속시점에 저작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라 상속인에게 귀속되거나, 상속인이 없으면 문화예술부장관이 저작재산권을 보유한다.

(4) 사진, 영상저작물 등의 저작재산권 보호기간

이란 저작권법은 사진, 영상저작물 등의 저작재산권 보호기간에 대해서 제16조에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응한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제42조에 규정하고 있다.

이란 저작권법 제16조	우리 저작권법 제42조
<p>이하의 경우들에서, 저작자의 금전적인 권리는 반포 또는 공중의 전시일로부터 30년 기간 동안 효력을 가진다.</p> <p>a) 사진 또는 영상 작품 b) 작품이 법적 지위를 가진 자에게 속하는 경우</p>	<p>(영상저작물의 보호기간) 영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제39조 및 제40조에도 불구하고 공표한 때부터 70년간 존속한다. 다만, 창작한 때부터 50년 이내에 공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창작한 때부터 70년간 존속한다.</p>

Article 16. In the following cases, the author's financial rights will be valid for a period of 30 years from the date of publication or public presentation:

1. Photographic or cinematographic works.
2. In cases where the work belongs to a person of legal position.

이란 저작권법 vs 우리 저작권법	
공통점	차이점
<p>- 영상저작물의 존속기간 기산일을 공표일로 하고 있다.</p>	<p>- 우리는 미공표에 따른 존속기간을 별도 규정하고 있지만, 이란은 공표한 경우에만 존속기간을 규정하고 있다.</p>
<p>검 토</p>	<p>이란은 영상저작물뿐만 아니라, 사진 저작물에 대해서도 공표일 후 존속기간을 기산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사진 저작물은 일반 저작물과 마찬가지로 창작한 때부터 존속기간을 기산하고 있다.</p>

이란 저작권법 제16조는 사진저작물, 영상저작물, 법적귀속인에 속하는 저작물의 경우에는 반포 또는 공중의 전시일부터 30년간 저작재산권이 존속함을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인 저작재산권이 사후 30년이므로, 이러한 저작물은 일반적인 저작물보다 짧은 보호기간을 가진다. 우리나라는 영상저작물에 대해서만 별도의 보호기간을 규정하고 있으며, 공표후 70년간 보호되고 있어 이란과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보다 짧게 보호된다.

(5) 저작권_동일성 유지권

이란 저작권법은 저작권권 중 동일성 유지권과 관련하여 제17조에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응한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제13조에 규정하고 있다.

이란 저작권법 제17조	우리 저작권법 제13조
<p>작품의 이름, 풍조 및 특별한 특징은 이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고, 의심을 초래할 수 있는 방식으로 다른 작품에 동일하거나 유사하게 사용하는 것은 누구도 허락되지 않는다.</p>	<p>(동일성 유지권) ①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의 내용·형식 및 제호(이름)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 ② 저작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에 대하여는 이의(異議)할 수 없다. 다만, 본질적인 내용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 학교교육 목적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의 표현의 변경 2. 건축물의 증축·개축 그 밖의 변형 3. 특정한 컴퓨터 외에는 이용할 수 없는 프로그램을 다른 컴퓨터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의 변경 4. 프로그램을 특정한 컴퓨터에 보다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의 변경 5. 그 밖에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의 변경

Article 17. The name, tide and special characteristics of work are protected by this law, and no one is permitted to use the same or like for any other work in a manner that may give rise to doubt.

이란 저작권법 vs 우리 저작권법	
공통점	차이점
- 저작물의 동일성 유지권을 인정하고 있다.	- 우리법의 동일성 유지권은 내용, 형식, 제호(이름)에 두고 있으나, 이란은 제호(이름), 풍조, 특별한 특징에 동일성 유지권을 인정하고 있다.
검 토	이란은 동일성 유지권으로 풍조나 특별한 특징을 규정하고 있어, 우리 나라와 같이 형식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어렵다. 또한, 우리나라와 같이 형식에 대해서 동일성 유지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

제17조에 규정된 동일성 유지권은 저작물 이름(제호), 풍조 및 특별한 특징은 허락에 의해서도 인정되지 않음을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제호(이름)에 대해서는 저작인격권의 동일성 유지권으로 보호하고 있으나 풍조 및 특별한 특징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저작권법에서는 동일성 유지권이 인정되지 않는 사항이다.

이러한 동일성 유지권은 이전이 가능한 저작재산권과는 구분되는 저작자에게 일신전속하는 권리로 누구도 허용되지 않는다.

(6) 저작인격권_성명표시권

이란 저작권법은 저작인격권 중 성명표시권에 대해서 제18조에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는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제12조이다.

이란 저작권법 제18조	우리 저작권법 제12조
이 법률에 따라 상업적 목적으로 작품을 참조하거나 또는 인용하도록 허용된 인수자, 출판자들 및 그들 모두는 저작자가 달리 합의하지 않으면,	(성명표시권) ① 저작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또는 저작물의 공표 매체에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를 가진다.

<p>공동으로 승인된 방식으로, 원본 또는 인쇄되거나 복제된 사본들에 작품을 대표하는 특수한 특징을 보조하는 저작자의 성명, 제목을 기재하여야 한다.</p>	<p>②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저작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저작자가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한 바에 따라 이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	---

Article 18. Transferees, publishers and all those who according to this law are permitted to refer to or quote from a work for commercial purposes, should in commonly accepted manner, mention the author's name, the title and the special characteristics representing the work, on or with the original copy or on the printed or reproduced copies, unless the author makes an alternative agreement.

이란 저작권법 vs 우리 저작권법	
공통점	차이점
<p>- 저작인격권으로 성명표시권을 인정하고 있다.</p>	<p>- 우리법은 성명 표시를 특별히 제한하고 있지 않으나, 이란은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경우에만 인정하고 있다.</p>
<p>검 토</p>	<p>이란은 상업적인 목적인 경우에도 한정하여 성명표시권을 인정하고 있다. 이란도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저작자의 의사표시(또는 동의)가 있으면 이에 따라 성명표시를 한다.</p>

제 18조에 규정된 성명표시권에 따르면, 저작재산권 양수인 및 이용을 허락 받은 사람은 저작자의 성명 및 제목을 기재하여야 한다. 기재 방식은 저작자와 공동으로 승인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나라 저작권법상 성명표시권은 저작자가 특별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저작자가 표시한 바에 따라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이란은 우리나라의 성명표시권과 다소 차이가 있다.

(7) 저작물의 출판 등

이란 저작권법은 저작물의 출판 등에 대해서 제19조 및 제20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응한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제63조에 규정하고 있다.

이란 저작권법 제19조, 제20조	우리 저작권법 제63조
<p>제 19 조. 보호된 작품의 출판에 이어지는 변경 또는 잘못된 인용은 저작자의 허락이 없으면 금지된다.</p> <p>제 20 조. 이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작품의 인쇄, 기록, 복제, 배포 또는 출판을 취급하는 자들 중에서 출판업자들, 기록 회사들 작업장은 인쇄 언론, 출판자 또는 관련 작업장 및 스튜디오의 이름 및 일자를 진술하는 인쇄, 기록, 복제, 배포 및 출판의 사례들 및 작품의 일련 번호를 출판된 모든 사본들에 삽입하여야 한다.</p>	<p>(출판권의 설정) ① 저작물을 복제·배포할 권리를 가진 자(이하 “복제권자”라 한다)는 그 저작물을 인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문서 또는 도화로 발행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이를 출판할 권리(이하 “출판권”이라 한다)를 설정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라 출판권을 설정받은 자(이하 “출판권자”라 한다)는 그 설정행위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출판권의 목적인 저작물을 원작 그대로 출판할 권리를 가진다.</p>

Article 19. Any alteration or misquotation followed by publication of a protected work is prohibited, unless it is with the author's permission.

Article 20. Publishers, recording companies, workshops Mid any persons dealing with the printing, recording, duplicating, distributing or publishing of works protected by this law must insert the instances of printing, recording, duplicating, distributing and publishing, and the serial number of the work on all the copies published, stating the dates and the names of the printing press, publishers or relevant workshops and studios.

이란 저작권법 vs 우리 저작권법	
공통점	차이점
<p>- 저작자에게 별도의 출판권을 인정하고 있다.</p>	<p>- 이란은 출판물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특별히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와 관련한 규정은 없다.</p>

검 토	이란은 출판권을 인정하면서, 특별히 변경이나 잘못된 인용을 제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출판과 관련된 규정에 이러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동일성 유지권이나 2차 저작물 작성권 등의 해석에 의해 규율하고 있다.
--------	--

이란 저작권법 제19조는 출판권자의 의무를 규정한 것으로, 저작자의 동의 없이 저작물의 내용, 형식 변경을 허용하고 있지 않다. 우리나라 저작권법 제63조 제2항에 이와 유사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제20조는 출판물에 기재되는 사항에 대한 규정으로 우리나라는 이와 유사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8) 저작권 등록

이란 저작권법은 저작권 등록과 관련하여 제21조에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응한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제53조가 규정되어 있다.

이란 저작권법 제21조	우리 저작권법 제53조
<p>저작자는 문화예술부 장관에 의하여 발표되는 장소를 가진 주요 특징들 및 그들의 직업, 직책, 성명을 등록한다. 관리 위원회는 등록 형식과 그러한 등록을 취급할 조직에 대한 절차에 관한 법령을 제정한다.</p>	<p>(저작권의 등록) ① 저작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저작자의 실명·이명(공표 당시에 이명을 사용한 경우에 한한다)·국적·주소 또는 거소 2. 저작물의 제호(이름)·종류·창작연월일 3. 공표의 여부 및 맨 처음 공표된 국가·공표연월일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Article 21. Authors may register their names, titles, work and its chief characteristics with places which will be announced by the Ministry of Culture and Arts. The Council of Ministers will issue a decree concerning procedures related to registration formalities and the organisations which will deal with such registration.

이란 저작권법 vs 우리 저작권법	
공통점	차이점
- 저작물과 관련된 사항의 등록을 인정하고 있다.	- 우리는 저작물 등록과 관련해 일정한 법적 효과를 부여하고 있으나 이란은 이와 관련한 규정이 없다.
검 토	이란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저작물 관련 사항을 등록 할 수 있다. 다만, 우리나라는 저작권 등록과 관련하여 법적 추정력을 인정하고 있으나, 이란은 등록에 추정력과 같은 효력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

이란 저작권법 제21조에서는 저작권 등록 및 등록 사항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저작권법 제53조도 이와 유사하게 규정되어 있다.

(9) 외국인 저작물 보호

이란 저작권법은 외국인 저작물 보호에 대해서 제22조에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응한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제3조에 규정하고 있다.

이란 저작권법 제22조	우리 저작권법 제3조
그의 작품이 이란에서 최초로 인쇄되고 배포되거나 공연되고 어느 다른 국가에서 이전에 인쇄되고 배포되거나 공연되지 않았으면 저작자의 금전적 권리는 이 법률에 의하여 보호된다.	(외국인의 저작물) ① 외국인의 저작물은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된다.

② 대한민국 내에 상시 거주하는 외국인 (무국적자 및 대한민국 내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의 저작물과 맨 처음 대한민국 내에서 공표된 외국인의 저작물(외국에서 공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대한민국 내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라 보호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호되는 외국인 (대한민국 내에 상시 거주하는 외국인 및 무국적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저작물이라도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저작물을 보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게 조약 및 이 법에 따른 보호를 제한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호되는 외국인의 저작물이라도 그 외국에서 보호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보호기간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Article 22. The financial rights of the author will be protected by this law, provided that his work is printed, distributed or performed for the first time in Iran, and has not previously been printed, distributed or performed in any other country.

이란 저작권법 vs 우리 저작권법

이란 저작권법 vs 우리 저작권법	
공통점	차이점
- 자국 내에 공표된 저작물을 자국 내의 저작물로 보호하고 있다.	- 이란은 맨 처음 공표가 이란 내에서 이루어져야 보호되지만, 우리나라는 일정한 시기적인 요건을 만족하면 반드시 맨 처음 공표가 자국 내에 이루어지지 않아도 된다.
검 토	이란의 외국인 저작물 인정은 맨 처음 공표만을 규정하고 있다. 우리법은 맨처음 공표 뿐만 아니라 타국에서 공표 후 30일내에 대한민국 내에서 공표되면 보호하고 있다. 또한 우리법은 조약에 의해서나 상호주의에 의해서도 외국인 저작물을 보호하고 있다.

이란 저작권법은 제22조에서 외국인 저작물의 경우 이란 내에서 최초로 인쇄, 배포, 공연되고 다른 국가에서는 인쇄, 배포, 공연되지 않았으면 이란 저작권상 보호가 가능하다. 이에 대응하는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제3조제2항으로 대한민국 내에 상시 거주하는 외국인이 맨처음 대한민국 내에서 공표 또는 외국에서 공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표된 경우에는 우리나라 저작권법상 보호된다.

이란 저작권법은 상기의 규정 이외에는 외국인 저작물에 대한 보호 규정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조약 등의 해석에 따라, 조약 당사국 국민의 저작물은 이란에서도 보호될 수 있다.

마

침해 및 처벌

침해 및 처벌	이란 저작권법	한국 저작권법
저작권 침해죄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136조
저작권 소멸 후, 저작인격권 등의 침해죄	제26조	-
법원에 공개 요청	제27조	-
저작권 침해에 대한 사용자 책임	제28조	제41조
침해금지 명령	제29조	제123조
친고죄	제31조	제140조

이란 저작권법 제23조는 저작재산권 침해죄에 대한 것이고, 제24조는 번역 저작물의 저작재산권 침해에 대한 것이고, 제25조는 저작인격권 등에 대한 침해죄에 대한 것이다. 우리나라 저작권법도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의 침해죄에 대해서 형량을 구분하고 있다. 이란의 번역 저작물의 저작재산권 침해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해석상 저작재산권 침해죄에 포함된다.

(1) 저작권 침해죄

이란 저작권법은 저작권 침해죄에 대해서 제23조 내지 제25조에서 규정되어 있다. 이에 대응한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제136조에 규정되어 있다.

이란 저작권법 제23조, 제24조, 제25조	우리 저작권법 제136조
<p>제 23 조 이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다른 사람의 작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허락 없이 그 자신의 이름으로 또는 저작자의 이름으로 또는 저작자의 이름이 아닌 그가 알고 있는 사람의 이름으로 인쇄, 출판, 배포 또는 방송하는 자는 누구나 6개월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교정을 위한 구속에 의해 처벌한다.</p> <p>제 24 조 허락 없이 다른 사람의 번역을 그 자신의 이름으로 인쇄, 출판, 배포 또는 방송하는 사람은 누구나 3개월 이상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교정을 위한 구속에 의해 처벌한다.</p> <p>제 25 조 이 법률의 제 17, 18, 19 및 20 조를 침해하는 자들은 3개월 이상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교정을 위한 구속에 의해 처벌한다.</p>	<p>(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p>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를 복제·배포·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Article 23. Whosoever publishes, distributes or broadcasts the whole or part of another person's work which is protected by this law, in his own name or in the name of the author without permission, or in the name of a person he knows to be other than that of the author, shall be condemned to corrective imprisonment for a period of time not less than six months and not more than three years.

Article 24 Whosoever prints, publishes or distributes another person's translation in his own name without permission, shall be condemned to corrective imprisonment for a period of time not less than three months and not more than one year.

Article 25. Persons infringing articles 17, 18, 19 and 20 of this law, will be sentenced to corrective imprisonment for a period of time not less than three months and not more than one year.

이란 저작권법 vs 우리 저작권법	
공통점	차이점
- 저작권을 침해한 자에게 징역을 부여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 우리법은 징역 또는 벌금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이란은 벌금에 대한 규정이 없다.
검 토	- 이란은 우리법과 마찬가지로 침해에 대해 민사적인 조치와 별도로 형사적 징벌규정을 두고 있다. 다만, 징벌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벌금형에 대한 규정이 없다.

(2) 저작권 소멸 후 저작인격권 등의 침해죄

이란 저작권법은 저작권 소멸 후 저작인격권 등의 침해죄에 대해서 제26조에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응한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없다.

이란 저작권법 제26조	우리 저작권법 제 호
저작자의 저작권이 종료되고 이 법률에 따라 공중이 자유로이 작품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들에서 문화 예술부 장관은 제 17A, 19 및 20 조의 침해에 대해 사적 고소인으로 행위한다.	(해당 내용 없음)

Article 26. In cases where the author's copyright is terminated and the public are freely allowed to use the work in accordance with this law, the Ministry of Culture and Arts, with respect to infringements of articles 17, A, 19, and 20, will act as private plaintive.

이란 저작권법 제26조는 저작권의 보호기간이 만료된 경우 저작인격권에 대한 침해를 문화예술부 장관이 규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에 대응하는 직접적인 규정은 없으나 제136조제2항제1호의 저작인격권 침해죄를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비친고죄를 적용함으로 저작자 사후의 인격권을 보호하고 있다.

(3) 법원에 공개 요청

이란 저작권법은 법원에 공개 요청에 대해서 제27조에 규정되어 있다. 이에 대응한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없다.

이란 저작권법 제27조	우리 저작권법 제 호
고소인은 자신의 비용으로 그가 선택한 신문에 그의 발견을 공개하도록 법원에 최종 판결을 내리기를 요청할 수 있다.	(해당 내용 없음)

Article 27. A private plaintive may require the court on passing final judgement, to publish its findings in any newspaper of his choice at his own expense.

이란 저작권법 제27조는 고소인이 일정한 경우에 신문의 공개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4) 저작권 침해에 대한 사용자 책임

이란 저작권법은 저작권 침해에 대한 사용자 책임을 제28조에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한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제41조에 규정되어 있다.

이란 저작권법 제28조	우리 저작권법 제41조
법적 지위를 가진 사람에 의하여 이루어진 결정의 결과 이 법률이 위반되는 경우, 사적 고소인에게 보상되는 손해는 법인격의 자산으로부터 충족된다. 그러한 자산이 충분하지 않으면 차액은 물리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제3자의 자산으로부터 보충된다.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 장의 죄를 범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Article 28. In cases where this law is violated as a result of decisions made by a person of legal standing, damages awarded the private plaintive will be met from the assets of the legal personality. Should such assets be insufficient, the balance will be met from the assets of the third party who physically committed the crime.

이란 저작권법 vs 우리 저작권법	
공통점	차이점
- 종업원의 침해에 대해 사용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 우리법은 사용자의 면책규정을 두고 있으나 이란은 이에 대한 규정이 없다.
검 토	이란은 종업원, 사용자라고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해석상 종업원, 사용자로 해석된다. 이란은 사용자의 면책을 두고 있지 않다. 종업원의 책임을 1차적으로 사용자가 지고 사용자가 자산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2차적으로 종업원이 책임을 지는 구조로 되어 있다.

이란 저작권법 제28조는 사용자인 법인이 1차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2차적으로 침해자인 개인이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규정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사용자에게 감독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 법인이 책임을 지고 종업원인 개인도 별도의 책임을 지도록 구성되어 있다.

(5) 침해금지 명령

이란 저작권법은 침해금지 명령에 대해서 제29조에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응한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제123조에 규정하고 있다.

이란 저작권법 제29조	우리 저작권법 제123조
<p>사적 고소인의 경우를 고려한 사법 당국은 법무부에 의하여 위임된 사람들에게 문제된 작품의 공개, 배포 및 공중에의 제공을 금지하도록 명령한다.</p>	<p>(침해의 정지 등 청구) ①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제25조·제31조·제75조·제76조·제76조의2·제82조·제83조 및 제83조의2의 규정에 따른 보상을 받을 권리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가진 자는 그 권리를 침해하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p> <p>②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가진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청구를 하는 경우에 침해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의 폐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p>

Article 29. Judicial authorities whilst considering the private plaintiff's case car, order persons authorized by the Ministry of justice to prevent publication, distribution and public presentation of the work in question.

이란 저작권법 vs 우리 저작권법	
공통점	차이점
- 침해에 대해 침해금지 규정을 두고 있다.	- 우리법은 금지청구권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 이란은 법무부의 금지청구명령을 규정하고 있다.
검 토	이란은 고소가 있는 경우 법무부의 명령에 의해 침해한 저작물의 공개, 배포, 공중에의 제공을 금지하고 있어 3가지의 행위만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그 밖의 필요한 조치'라고 규정하여 폐기 이외의 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

이란 저작권법 제29조에서는 법원의 침해금지 명령으로 저작물의 공개, 배포, 공중에 제공의 금지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금지명령의 대상이 제한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6) 친고죄

이란 저작권법은 친고죄에 대해서 제31조에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응한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제140조에 규정되어 있다.

이란 저작권법 제31조	우리 저작권법 제140조
이 법률에 따른 형사 절차는 사적 고소인의 고발에 의하여 개시되고 그의 용서로 종료된다.	(고소) 이 장의 죄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제136조 제1항제1호, 제136조 제2항제3호 및 제4호(제124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처벌하지 못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2. 제136조 제2항제2호 및 제3호의2부터 제3호의7까지, 제13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와 제138조제5호의 경우

Article 31. Criminal proceeding in accordance with this law will be initiated by the complaint of the private plaintive and terminated by his pardon.

이란 저작권법 vs 우리 저작권법	
공통점	차이점
- 형벌 규정에 대해 친고죄 규정을 두고 있다.	- 우리법은 친고죄 규정과 비친고죄 규정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란은 비친고죄에 대한 규정이 없다.
검 토	이란은 저작권법상의 모든 형벌을 친고죄로 규정하고 있어 신고가 없으면 저작권법상의 형벌을 논할 수 없다. 또한, 이란은 권리자가 용서한 경우 형벌 적용을 면제 받을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이란 저작권법 제31조는 저작권법의 모든 형벌은 고소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저작자 등의 권리자가 용서를 하면 형사 절차는 종료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친고죄의 대상과 비친고죄의 대상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사적관계가 아닌 저작물의 가치, 공중의 이해관계 등과 관련이 있을 경우에는 비친고죄로 규정하고 있다.

바 소결 및 주의사항

이란의 저작권법은 현대 사회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온라인상의 침해를 규율할 수 있는 법규 규정이 미비하다. 해석상 복제권이나 반포권과 같은 규정의 확대 적용에 의해 규율될 수 있는 범위가 있으나 이 또한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이란 내에서 저작물을 보호 받기 위해서는 이란의 판례법 적용을 면밀히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III. 지식재산권 출원 및 관리

1. 특허의 출원 및 관리
2. 상표의 출원 및 관리
3. 디자인의 출원 및 관리



part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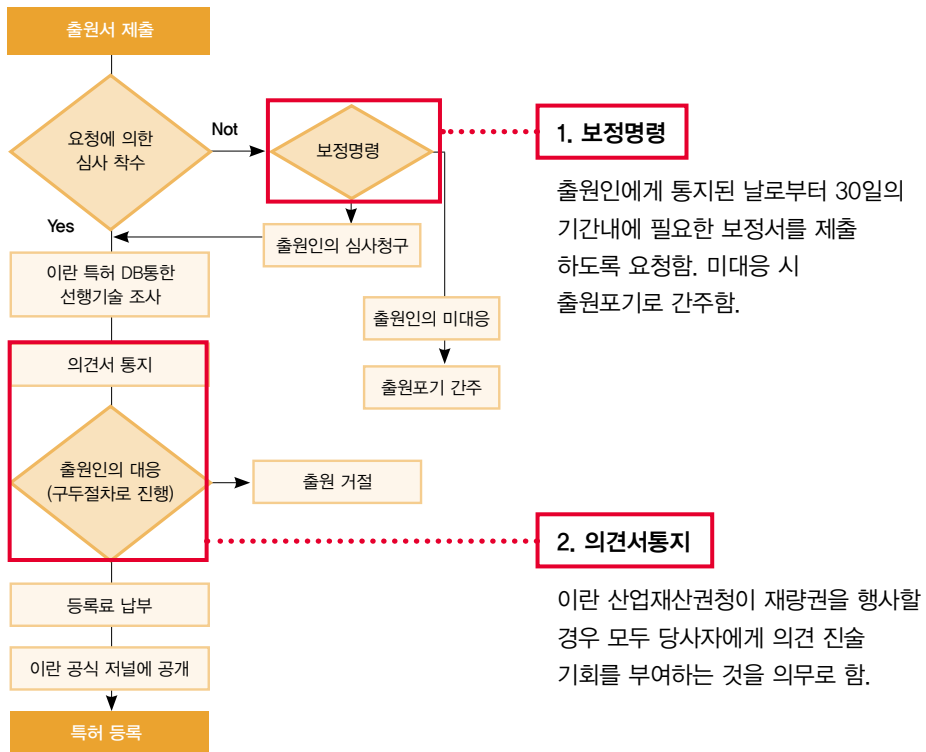
특허의 출원 및 관리



가

출원절차 및 방식

< 그림 III-1 > 특허출원 흐름도 4)



4) 출처 : The Iranian patenting system: An introduction, World Patent Information 29 (2007) 250-254

〈 표 III-1 〉 특허관련 수수료 ⁵⁾

항목	개인	법인
출원료(출원 또는 분할 출원)	10,000	100,000
연차료	100,000/1년(1~5년차) 200,000/1년(6~10년차) 300,000/1년(11~15년차) 400,000/1년(16~20년차)	1,000,000/1년(1~5년차) 2,000,000/1년(6~10년차) 3,000,000/1년(11~15년차) 4,000,000/1년(16~20년차)
연차료의 지연 수수료	50,000/1년(1~5년차) 100,000/1년(6~10년차) 150,000/1년(11~15년차) 200,000/1년(16~20년차)	500,000/1년(1~5년차) 1,000,000/1년(6~10년차) 1,500,000/1년(11~15년차) 2,000,000/1년(16~20년차)
문의료(양도, 개발 라이선스, 면제)	50,000	500,000
등록료(계약 또는 비계약 양도)	300,000	3,000,000
등록료 (개발 라이선스의 설정, 취소 또는 종료)	150,000	1,500,000
보정료(출원 및 부가서류)	10,000/1보정	100,000/1보정
등록료 (출원의 양도 또는 개발 라이선스)	50,000	500,000
등록료 (권리 양도와 개발 라이선스 외의 변경)	50,000	500,000
인증서 추가발급료	100,000	1,000,000
인증된 사본 발급료	5,000	50,000
수신료(출원서 제출 확인 또는 특허 인증서 발급)	15,000	150,000
이의 신청료(등록 거절)	500,000	750,000
이의 신청료(등록 요청)	1,500,000	3,000,000
예치금(법원에 무효화청원 제출)	3,000,000	4,500,000
국제등록출원 조사료(수리관청)	50,000	500,000

비교 : 파리 협약(산업 재산권 일반 사무실의 특허청)을 준수하는 등록 기관에 바로 출원한 외국인 출원인은 상기 표에 해당하는 이란 리알(IRR)과 동일한 가치의 외국 통화로 지불해야 합니다.

5) 출처 : 이란 시행규칙(Executive regulation) 부록 1(Appendices 1)

〈 그림 Ⅲ-2 〉 특허출원서 양식 원문 ⁶⁾

특허출원서 양식 원문(Form-1)

Patent Declaration

(to be completed by the department)

Declaration No. _____ date of receipt of the
deceleration (hour, day, month and year) _____

Seal and signature of Patent Office

1- Invention title _____ 2-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invention _____

3- Total number of pages of description, claims, brief description and plans _____

4- Particulars of applicant/applicants :

Natural person

Name, National Code No. _____
Address, postal code _____
Nationality _____
Country of residence _____

Tel No: _____ Fax No: _____ Email: _____

Legal entity

Name:, type of legal entity :, field of activity :.....registration place
and No:
Nationality :domicile :head office :address:other
information : ..

Tel No: _____ Fax No: _____ Email: _____

5- Particulars of legal representative:

Name, National Code No. _____
Address, postal code _____

Tel No: _____ Fax No: _____ Email: _____

**6. Particulars of notices receivers in Iran (in case that the applicant is not
resident of Iran).**

Name, National Code No. _____
Address, postal code _____

7- Particulars of inventor:

Complementary information about inventor in case that he/she is applicant

Job and field of activity _____

6) 출처 : 이란 시행규칙(Executive regulation) 부록 3(Appendices 3)

Particulars of inventor in case that that he/she is not applicant

Name, National Code No.

Address, postal code

Job and field of activity

Position of the applicant

8- Divided or complementary declaration

Original declaration No:

Original declaration registration date:

9- acceptable exceptions for disclosure of invention

Disclosure of invention in formal local or international exhibit

the third party's abuse of the applicant or the previous owner's rights

10- Claim for right of priority (if any)

Name of country

Original declaration registration date

Original declaration No:

Invention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In case that the prior declaration is an international or regional declaration, determination of the department in which and the countries for which declaration has been submitted.

11- This declaration includes the following appendices:

Documents relating to the invention with the applicant's signature

1- Description Page

2- Claim (claims).....page

3- Summary Page

4- Design or designs (if available) Page

Total pages of appendices

Documents relating to contents of the declaration

Legal representation documents

Document specifying position of the applicant

Document relating to disclosure of invention

Right of prior documents which have been confirmed by the source department

Request for not mentioning the inventor's name

Receipt of declaration registration fee payment

Other documents

Signature of the applicant or his/her legal representative

date

〈그림 III-3〉 특허출원서 양식 번역문

특허출원서 양식 번역문(Form-1)

〈특허출원서〉

(이 부분은 부서에 의해서 완료됨) (to be completed by the department)
 출원번호(Declaration No.)
 출원일(시간, 일, 월, 년)date of receipt of the deceleration (hour, day, month and year)

특허사무소 서명날인(Seal and signature of Patent Office)

- 1-발명의 명칭(Invention title)
- 2-발명의 국제분류(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invention)
- 3- 상세한 설명, 청구항, 요약 및 계획의 총 페이지 수(Total number of pages of description, claims, brief description and plans)
- 4- 출원인/출원인들 상세정보(Particulars of applicant/applicants) :
- 개인(Natural person)**
 이름, 국가 코드 번호(Name, National Code No.)
 주소, 우편번호(Address, postal code)
 국적(Nationality)
 거주하는 국가(Country of residence)
 전화번호(Tel No): 팩스번호(Fax No): 이메일(Email):
- 법인(Legal entity)**
 이름(Name): 법인의 유형(type of legal entity):
 활동분야(field of activity): 사업장등록지 및 번호(registration place and No):
 국적(Nationality): 거주지(domicile): 본사(head office):
 주소(address): 다른 정보(other):
 전화번호(Tel No): 팩스번호(Fax No): 이메일(Email):
- 5- 법정대리인의 상세정보(Particulars of legal representative)
 이름, 국가코드번호(Name, National Code No.)
 주소, 우편번호(Address, postal code)
 전화번호(Tel No): 팩스번호(Fax No): 이메일(Email):
- 6- 이란내의 통지 수령인의 상세정보(출원인이 이란거주하지 않을 경우)(Particulars of notices receivers in Iran (in case that the applicant is not resident of Iran)).
 이름, 국가코드번호(Name, National Code No.)
 주소, 우편번호(Address, postal code)
- 7- 발명자의 상세정보(Particulars of inventor)
 출원인과 발명자가 같은 경우 발명자에 대한 보완적인 정보(출원인과 동일한 경우)(Complementary information about inventor in case that he/she is applicant)
 직업과 활동분야(Job and field of activity)
- 출원인과 발명인이 다를 경우 상세정보(Particulars of inventor in case that that he/she is not applicant)
 이름, 국가코드번호(Name, National Code No.)
 주소, 우편번호(Address, postal code)
 직업과 활동분야(Job and field of activity)
 출원인 지위(Position of the applicant)

8- 분할 또는 보완 출원(Divided or complementary declaration)

원출원의 출원번호(Original declaration No):

원출원의 등록날짜(Original declaration registration date):

9- 공지된 발명의 허용 가능한 예외(acceptable exceptions for disclosure of invention)

국내 또는 국제적으로 공지된 발명(Disclosure of invention in formal local or international exhibit)

출원인 또는 전 소유권자의 권리를 제3자가 남용한 경우(the third party's abuse of the applicant or the previous owner's rights)

10- 우선권 주장 있다면(Claim for right of priority (if any))

국가명(Name of country)

원출원의 등록날짜(Original declaration registration date)

원출원의 출원번호(Original declaration No):

발명 국제 분류(Invention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우선권 주장이 국제 또는 지역출원이라면, 출원서가 제출된 부서의 결정 및 국가(In case that the prior declaration is an international or regional declaration, determination of the department in which and the countries for which declaration has been submitted.)

11- 본 출원은 아래 부록을 포함한다(This declaration includes the following

appendices)

출원인의 서명이 첨부된 발명관련 문서/Documents relating to the invention with the applicant's signature

1- 상세한 설명... 페이지(Description ... Page)

2- 청구항(청구항들...페이지(Claim (claims)...page))

3- 요약...페이지(Summary ... Page)

4- 도면 또는 도면들(있는 경우)...페이지(Design or designs (if available) ... Page)

부록의 총 페이지 수(Total pages of appendices)

출원내용과 관련된 문서/Documents relating to contents of the declaration)

출원인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Documents proving identity of the applicant)

법정대리인문서(Legal representation documents)

출원인의 지위를 특정하는 문서(Document specifying position of the applicant)

발명의 공지와 관련한 문서(Document relating to disclosure of invention)

원부서에서 승인받은 우선권 주장 문서(Right of prior documents which have been confirmed by the source department)

발명자의 이름을 기재하지 않겠다는 요청(Request for not mentioning the inventor's name)

출원 등록 요금을 결제한 영수증(Receipt of declaration registration fee payment)

다른 문서(Other documents)

출원인의 서명 또는 법정대리인의 서명, 날짜.(Signature of the applicant or his/her legal representative... date)

(1) 출원방식 일반

Q&A

Q, 이란에서 특허를 출원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A, 이란 산업재산권청에 특허를 출원하면 됩니다.

이란의 특허출원 시 유의사항은?

- 산업재산권청에 제출된 특허등록 출원은 페르시아어(Farsi)로 이루어지고 보호받고자 하는 사항이 기재되고 적법하게 기일이 표시되고 서명되어야 한다.
- 출원인, 발명자 및 대리인(해당시)의 성명 및 다른 특기 사항 및 발명의 제목이 출원서에 표시되어야 한다.
- 출원인이 발명자가 아니면 그의 법적 권한을 증명하는 문서(양도증)가 출원서와 함께 제출되어야 한다.
- 출원을 제출하기 위한 정해진 요금은 출원인으로부터 납부되어야 한다.
- 출원서는 3개의 사본으로 Form (A-1) 양식에 의해 작성되어야 하고, 사인은 대리인의 사인으로도 가능하다.(규칙 제3조)⁷⁾
- 출원서는 첨부서류는 A4 사이즈의 종이에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규칙 제17조) 첨부서류 작성에는 일정한 제한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⁸⁾

우리나라의 특허출원과 차이점은?

- 특허 명세서 등의 방식은 현재 국제적으로 통일되어가고 있는 상황으로, 이란도 우리나라와 큰 차이가 없음.
- 다만, 전자출원을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와 같이 구체적인 법규정은 없어 아직 전자출원은 불가능함.

이란에서 특허 명세서 등의 방식은 현재 국제적으로 통일되어가고 있는 상황으로 우리나라와 큰 차이가 없다. 다만, 전자출원을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⁹⁾ 우리나라와 같이 구체적인 법규정은 없으며 아직 전자출원은 불가능하다.¹⁰⁾

■ 출원 시 필요 서류

서류명	비고
출원 신청서	상기 양식 참조
명세서	‘청구항’, ‘발명의 설명’부분에서 설명함
요약서	기술 정보 파악에 사용 될 뿐, 특허의 권리범위를 해석하는데 적용할 수 없음
도면(필요 시)	명세서에 기재된 도면이 누락되어 산업재산청에서 요청하여 접수하는 경우 도면이 접수되는 날이 출원일로 간주됨

이란의 특허 신청은 페르시아어로 기재된 출원신청서, 상세한 설명, 청구범위, 요약서, 도면(필요시)의 제출을 요하고 있어, 우리나라 특허법과 유사하다. 다만, 우리나라는 국어뿐만 아니라 영어 출원이 가능하며 청구범위 유예제도(제42조의2, 제42조의3)에 의해 청구범위를 출원 후 제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출원서 및 관련 서류에 첨부된 증거가 페르시아어가 아닌 다른 언어로 제출되었을 경우에는 비공식적인 번역문과 함께 원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완벽한 번역이 불가능할 경우에 페르시아어로 된 요약문을 첨부할 수 있다. 또한, 필요에 따라 등록관청은 출원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공식적인 번역문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첨부 문서에 기재된 기술적이고 과학적인 용어가 페르시아어와 동등하지 않을 경우 동일한 용어를 언급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규칙 제3조 Note)

7) 규칙 제7조 : 발명의 설명, 청구항, 요약 및 도면의 어느 페이지에는 출원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사인이 있어야 한다.(any page of description, claim, brief description and invention design shall be signed by the applicant or his/her legal representative.)

8) 규칙 제17조 참조

9) 규칙 제167조 : The registration authority is obliged to take appropriate actions regarding making all stages electronic such as internal or international patent

10) 규칙 제4조 : 출원인은 출원서를 직접 또는 등기우편으로 등록관청에 제출할 수 있다.(The applicant shall submit, personally or by registered mail or on the basis of Article 167 of this regulation, patent declaration to the registration authority. Date of collection of the declaration or date of giving message is regarded as date of declaration)

(2) 출원일 인정 및 보정명령

■ 출원일 인정

산업재산권청은 출원의 접수 시에 이하를 포함하면 출원의 접수일을 출원일로 인정한다:

- a) 특허의 허락이 신청되는 사실의 명시적이거나 암시적인 표시.
- b) 출원인의 식별부호가 형성될 수 있는 표시.
- c) 발명의 간단한 설명.

조약우선권이 주장된 경우는 그 우선일을 출원일로 인정한다.

조약우선권

(이란 특허법은 파리협약에 의한 조약우선권 관련 규정을 제9조 및 제10조에 규정함)

그의 출원서 및 선서와 함께, 출원인은 (1883년 3월 20)일자의 산업재산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 조약과 후속 개정에 의하여 규정된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다. 우선권은 상기 조약에 속하는 당사자 국가 또는 다른 국가에 출원된 하나 이상의 국내 또는 지역 또는 국제 출원들에 기초할 수 있다. 우선권이 주장되면:

- a) 산업재산권청은 출원인에게, 정해진 기한 내에, 출원이 제출된 해당 산업재산권청에 의하여 인증된 이전의 출원의 사본을 해당 관청에 제출할 것을 요구한다.
- b) 요청이 승인되면, 파리 조약에 의하여 규정된 보호를 받는다.

본 조항 및 이에 속하는 규칙의 요건이 합치되지 않으면, 상기 선언은 없는 것으로 무효로 간주된다.

이란에서 조약 우선권을 기초로 해외 출원하려면?

산업재산권청의 요청으로, 출원인은 상기 산업재산권청에 제출된 출원에서 청구하였던 동일한 발명과 기본적으로 동일하게 관련되는 해외에서 출원인에 의하여 출원된 특허출원의 번호와 일자를 상기 관청에 제공한다.

또한, 산업재산권청의 요청으로, 출원인은 상기 관청에 이하의 문서를 제공한다.

- a) 출원인이 접수한 외국 출원들에 대해 시행된 심사 결과에 대한 서신 또는 통지의 사본
- b) 외국 출원들에 기초하여 허여된 특허증의 사본
- c) 외국 출원에서 청구된 발명의 허락을 거절하거나 외국 출원을 거절하는 최종 결정의 사본
- d) 외국 출원에 기초하여 발행된 특허증을 무효로 하는 최종 결정의 사본

■ 보정명령

산업재산권청이 출원 시에 출원서가 상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을 발견하면 상기 관청은 해당 사실이 출원인에게 통지된 날로부터 30일의 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한다. 이 경우, 출원일은 상기 보정서의 접수와 동일한 일자로 인정된다. 그러나, 필요한 보정서가 정해진 기간 내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출원은 무효이며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Q, 이란에서 출원을 하였는데 보정명령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대응하여야 하나요?

A, 보정명령을 통지 받은 날로부터 30일의 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Q&A

보정서 제출 시 유의사항은?

- 이란의 출원일 인정, 보정명령, 절차 무효는 우리나라와 유사하다. 다만, 우리나라는 출원서를 출원일 인정요건으로 하고 있으나, 이란은 발명의 간단한 설명 등 출원서 이외의 서류를 출원일 인정 요건으로 하고 있다. 또한, 이란 특허청의 접수일을 출원일로 하고 있으므로 출원일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출원시 접수증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우리나라와의 차이점은?

- 우리나라는 출원서 등의 제출일을 출원일로 인정하고 있는 반면, 이란은 일정한 서류의 접수일을 출원일로 인정하고 있음.
- 이란은 출원과 관련된 소정의 서류접수를 출원일 인정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보정명령을 하고, 이에 불응 시 해당 절차를 무효화 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음.

(3) 청구범위 기재방법

이란은 출원서의 원서에 기재된 특허청구범위는 명확하고 간결하며 해당 기술 분야의 통상의 기술자에게 명확하고 완전하도록 충분히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지지되며 적어도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을 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제6조 c))

Q, 이란 특허명세서 작성 시 청구범위는 어떻게 작성하여야 하나요.

A, 아래와 같이 작성 하시면 됩니다.

Q&A

이란특허명세서의 청구범위 기재시 유의사항은?

- 이란 특허법상 특허 청구항은 i) 명확하고 간결하고, ii) 상세한 설명에 의해 지지되며, iii) 발명의 실시를 위한 방법이 적어도 하나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i)과 ii)의 규정은 우리나라 특허법의 청구항 기재방법과 동일하게 해석된다. 다만, iii)의 규정은 우리나라에는 없는 규정이다.
- 구체적인 청구항 작성방법 및 요건에 대해서는 규칙 제7조¹¹⁾에 규정되어 있다. 규칙 제7조에는, '청구항은 기술적 설명에 근거하여 지지되는 발명의 구성요소를 결정하며, 청구항은 하나 또는 2 이상일수 있다. 청구항은 다음의 조건을 가지고 표현 및 정의 되어야 한다.

- 1- 청구항은 복수개의 청구항일 경우에 넘버링 되어야 한다.
- 2- 청구항은 발명 설명의 정보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고, 발명의 설명에 의해 증명되어야 한다.
- 3- 청구항은 적절한 문장의 사용으로 지지되는 기술적인 설명을 표현하여야 한다.
- 4-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면 또는 발명의 설명은 기재되지 않아야 하며, '도면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또는 '도면에서 보여지는 것처럼'과 같은 표현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 5- 청구항을 이해하기 위해 도면을 언급해야 한다면, 도면의 페이지 번호와 표시를 기재하여야 한다.
- 6- '실행방법(method of execution) 및 발명의 장점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방법에 대해서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고,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다. 규칙 제10조¹²⁾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발명의 설명’은 다음 사항을 표현 및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 1- 출원서에 기재된 발명의 제목
- 2- 발명과 관련된 기술분야
- 3- 기술적 문제점 및 발명의 목적
- 4- 발명의 선행기술 및 진보정도
- 5- 기술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솔루션을 정확하고 충분히 기재
- 6- 가능하면 당업자가 이해할 수 있는 정도로 수치, 계획, 다이어그램에 대해서 설명 할 것, 도면이 의무 사항일 경우에는 발명의 설명에서 도면에서 사용된 도면숫자를 언급할 것
- 7- 발명의 신규성과 기술적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청구항 발명의 장점을 명확하고 정확하게 언급할 것
- 8- 발명에 대해 적어도 하나의 실시 방법을 설명할 것
- 9-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발명의 산업분야를 언급할 것

우리나라와의 차이점은?

- 이란의 청구항 기재방법은 우리나라와 유사한데 이는 국제적인 공통 규정이다.
- 이란은 발명의 실시를 위한 방법을 표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를 요구하지 않고 있다. 다만, 화학발명 등의 경우에는 판례법으로 실시예를 기재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

(4) 요약서

요약서를 특허범위 권리범위 해석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것은 전세계적으로 공통된 규정이다.

Q, 이란 특허명세서에서 요약서가 어떤 효력이 있나요?

**A, 이란 특허법과 우리나라 특허법상의 요약서 법규정은 동일합니다.
즉, 요약서는 기술정보로 이용될 뿐이며 특허의 권리범위를 해석하는 데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제6조 c))**

우리나라와의 차이점은?

- 이란은 요약서 해석기준으로 '발명'이라고 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보호범위로 해석될 수 있는지는 문제되나, 발명은 보호범위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란의 특허법도 보호범위의 해석에 있어 요약서를 이용할 수 없다.

-
- 11) Other appendices of the declaration except for plan, diagram, and table shall be included on the paper in size of A4 and the following points shall be considered:
- 1- Their texts shall be typed for presentation and distance between lines shall not exceed 1,5 cm.
 - 2- Chemical and mathematical formulas may be written manually.
 - 3- Pages shall have margin of 3 cm on the top and the right hand and 2 cm on the bottom and the left hand.
 - 4- Pages shall be numbered in Persian so that invention description section starts with number one and shall be numbered up to the end of claims and summary of invention and in case that the declaration has plan, diagram and table , they shall be numbered with new numbers.
 - 5- The papers shall not be folded and torn and only one paper is used.
- 12) 규칙 제10조 : description of invention shall be express and contain perfect details and the following points:
- 1- title of the invention as mentioned in the declaration,
 - 2- technical field of the related invention ,
 - 3- technical problem and mentioning goals of the invention
 - 4- Describing the previous knowledge and record of progresses which are claimed for the invention so that it is sufficient for understanding and investigating newness of the invention.
 - 5- Presenting solution for the technical problem with accurate and sufficient description of the invention,
 - 6- Explaining figures, plans, diagrams if available, in such a manner that an expert can understand and find relation of its components in that field. Referring to the numbers which have been used for mentioning specifications of invention in the design is compulsory.
 - 7- Mentioning advantages of the claimed invention expressly and accurately so that it clarifies newness of the invention and its technical effect.
 - 8- Explaining at least one executive method for application of the invention.
 - 9- Mentioning industrial application of the invention in case that nature of the invention doesn't specify this case.

(5) 도면

출원서에 도면을 언급하고 있으나, 도면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출원인에게 누락된 도면을 제출하라고 통지한다. 통지에 따라 도면을 제출하면, 도면 제출일을 출원일로 인정하고, 도면을 제출하지 않으면 출원서를 제출한날 출원일로 인정하고 도면의 제출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제12조)

Q, 이란 특허명세서에 도면은 꼭 제출하여야 하나요?

A, 도면이 출원서에 언급되어 있으나 도면이 출원서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등록관청은 30일내에 제출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도면이 제출 될 경우 도면 제출일이 출원일로 간주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제출되지 않으면) 등록관청은 도면은 없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해외거주자인 경우에는 60일이 주어집니다.(규칙 제6조, Note 2)¹³⁾

Q&A

이란특허명세서의 도면 기재 시 유의사항은?

- 도면이 출원서에 언급되어 있으나 도면이 출원서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등록관청은 30일내에 제출명령을 할 수 있다. 도면이 제출 될 경우 도면 제출일이 출원일로 간주된다. 그렇지 않으면(제출되지 않으면) 등록관청은 도면은 없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해외거주자인 경우에는 60일이 주어진다.(규칙 제6조, Note 2)¹⁴⁾
- 도면의 구체적인 기재방법과 관련해서는 규칙 제15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규칙 제15조의 규정은 다음과 같다.¹⁵⁾

설계도, 도표, 표가 출원서의 일부분일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고려되어야 한다.

- 1- A4 종이에 검정 및 색깔이 없는 볼드 선들로 그려져야 하고 그리기 위한 기술적인 틀이 사용되어야 한다. 이 종이의 최대 여백은 상 2.5cm/좌 1.5cm/우 2.5cm/하 1cm 이어야 한다.

13) if some designs are referred to this declaration which have not been included or attached, the registration authority will invite the applicant to present the designs within 30 days. In case of submission, date of receiving the designs will be regarded as date of request. Otherwise, the registration authority will mention date of request as date of receiving the declaration and will regard reference to designs as null and void. This grace period is 60 days for those persons residing abroad.

- 2- 도면은 명확하여 복사 및 사진 찍을 수 있어야 한다.
- 3- 만약 발명을 이해하기 위해 도면 또는 도표의 특별한 일부분을 굵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면 도면 또는 도표의 모든 구성들은 동일한 규모를 가져야 한다.
- 4- 가능하다면 지면안에 수직으로 배치해야 한다.
- 5- 숫자, 문자 및 상징은 명확하고 읽기 쉽게 기재되어야 한다.
- 6- 심볼은 발명의 설명에 언급되어질 수 있다.
- 7- 페이지는 최초 숫자와 페이지 전체 숫자를 나타내야 한다.
- 8- 표 또는 도표가 아니라면 도면에는 글을 언급할 수 없다.

우리나라와의 차이점은?

- 이란은 도면 기재가 있는데도 이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출원일을 도면 제출일로 인정하거나 도면이 없는 것으로 취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별도 규정은 없으나 해석상 필요한 도면이 없으면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불비로 처리하거나 절차 무효로 처리할 수 있다.

(6) 1군발명 및 분할출원

출원의 하나의 발명이거나 또는 연결된 하나의 그룹 발명으로 단일의 발명을 형성(이하 '1군 발명'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이러한 1군발명에 연결관계가 없으면 특허 등록중 효과를 상실시킬 수 있다. 출원인은 특허 등록이 승인되기 전까지 최초 출원의 상세한 설명의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보정하거나, 2 이상으로 분할출원을 할 수 있다. 이때, 분할 출원은 동일한 출원일로 인정 받는다.(제8조)

■ 분할출원 관련 출원 포기 시 유의사항

포기되는 출원이 다른 분할된 출원의 기초인 경우에는 후의 분할 출원은 포기된 것으로 간주된다.¹⁶⁾

■ 포인트 정리

이란 특허법 vs 우리 특허법	
공통점	차이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군 발명의 개념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음. - 1군 발명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분할 출원을 할 수 있음. - 분할 출원의 경우 동일자 출원일을 인정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란은 1군 발명 개념으로 연결관계를 중심으로 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하나의 총괄적인 발명의 개념을 중심으로 하고 있음.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란의 1군 발명에 대한 연결관계는 우리나라의 하나의 총괄적 발명 개념과 유사하게 해석될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 시행령에 규정된 상호 관련성도 도출 될 수 있다. 다만, 우리나라의 동일하거나 상응하는 기술적 특징이 선행기술에 비해 개선된 것이어야 하는 것은 이란 특허법에서는 도출될 수 없다.

이란 특허법은 2이상의 발명을 포함하는 1군 발명은 발명들이 연결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특허법 제45조의 ‘하나의 총괄적 발명의 개념을 형성하는 일 군(群)의 발명’ 및 시행령 제6조의 ‘발명간에 기술적 상호관련성이 있을 것’과 유사한 개념이다. 다만, 우리나라는 이에 더하여 ‘청구된 발명들이 동일하거나 상응하는 기술적 특징을 가지고 있을 것. 이 경우 기술적 특징은 발명 전체로 보아 선행기술에 비하여 개선된 것이어야 한다.’는 요건을 만족해야 1군 발명으로써 인정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한, 이란 특허법은 1군 발명의 요건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 ‘특허증의 효과를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특허등록의 무효, 소멸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특허법은 1군 발명의 하자를 거절이유(제62조)에는 규정하고 있지만, 그 하자가 미비하다고 판단하여, 무효사유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란 특허법은 1군 발명의 하자에 대해서 보정 및 분할을 허용하고 있다는 점은 우리나라와 유사하다. 즉, 특허등록여부 결정전까지 보정 및 분할에 의해 하자를 치유하여 특허등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우리나라는 최근 개정법에 의해 특허등록여부 결정 후 3개월 내에 분할출원을 허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7) 조약 우선권(1)

파리조약에 의한 조약 우선권 주장을 할 수 있으며 상기 조약에 속하는 당사자 국가 또는 다른 국가에 출원된 하나 이상의 국내 또는 지역 또는 국제 출원들에 기초하여 할 수 있으며, 우선권이 주장되면 기간을 정하여 기초 출원의 인증서 사본의 제출을 요구하고 이 인증서가 승인되면 파리조약에 의해 우선권은 보호된다. 다만, 특허법 및 규칙의 요건에 합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우선권 주장은 없었던 것으로 간주된다.(제9조)

■ 포인트 정리

이란 특허법 vs 우리 특허법	
공통점	차이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적요건으로 파리협약 당사국 국가에서 출원될 것을 요구하고 있음. - 우선권 주장 요건을 만족하지 않을 경우 우선권 주장만 없는 것으로 하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법은 파리협약 당사국 국가의 국민이 아니더라도 상호주의에 의한 예외적으로 우선권 주장을 인정하는 반면, 이란은 이와 관련한 규정이 없음
검 토	이란의 조약우선권 주장 규정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파리협약 규정을 바탕으로 규정된 것이기 때문에 유사한 점이 많다. 다만, 각국에 일임한 규정에 있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8) 조약 우선권(2)

조약 우선권 주장을 하면, 출원인은 산업재산권청(Industrial Property Office) 기초출원과 조약 우선권 주장과의 동일성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로 i) 기초출원에 대해 시행된 심사결과 ii)기초출원에 기초하여 허여된 특허증 사본 iii) 기초출원의 거절 또는 최종결정에 대한 사본 및 iv) 기초출원을 무효로 한다는 최종결정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제10조)

■ 포인트 정리

이란 특허법 vs 우리 특허법	
공통점	차이점
- 우선권 주장 요건으로 기초출원의 증명서류 제출	- 우리나라는 기초출원한 국가에서 정식으로 출원된 사항인지의 여부와 관련된 서류만 제출하면 되지만, 이란은 심사, 등록, 무효와 관련된 자료제출을 요청하고 있다.
검 토	- 제출서류와 관련하여 이란은 우리나라보다 엄격하게 요구하고 있다. 심사, 등록, 무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 심사 시 참고하여 판단된다.

14) if some designs are referred to this declaration which have not been included or attached, the registration authority will invite the applicant to present the designs within 30 days. In case of submission, date of receiving the designs will be regarded as date of request. Otherwise, the registration authority will mention date of request as date of receiving the declaration and will regard reference to designs as null and void. This grace period is 60 days for those persons residing abroad,

15) description of invention shall be express and contain perfect details and the following points:

- 1- title of the invention as mentioned in the declaration,
- 2- technical field of the related invention ,
- 3- technical problem and mentioning goals of the invention
- 4- Describing the previous knowledge and record of progresses which are claimed for the invention so that it is sufficient for understanding and investigating newness of the invention,
- 5- Presenting solution for the technical problem with accurate and sufficient description of the invention,
- 6- Explaining figures, plans, diagrams if available, in such a manner that an expert can understand and find relation of its components in that field. Referring to the numbers which have been used for mentioning specifications of invention in the design is compulsory.
- 7- Mentioning advantages of the claimed invention expressly and accurately so that it clarifies newness of the invention and its technical effect,
- 8- Explaining at least one executive method for application of the invention,
- 9- Mentioning industrial application of the invention in case that nature of the invention doesn't specify this case.

16) 규칙 24조, Note : in case that the returned declaration is basis of another divided declaration, the later declaration will be deemed to be returned,

(9) 기간연장

우리나라는 법정기간 뿐만 아니라 지정기간, 기일을 연장 변경할 수 있는 규정이 있으나, 이란은 이러한 규정이 없다. 이란은 지배상황(prevaling circumstances)을 고려하여 연장여부를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실무적으로 엄격하게 운용되는지 완화된 지 운영되는지는 확인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법정기간 연장과 관련하여 재량규정으로 하고 있지만 실무적으로 법정기간 연장에 대해서 배척한 예는 없다.

Q&A

Q, 법정기간을 연장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A, 법률이나 규칙에서 정해진 기간인 법정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서면 상으로 신청 할 수 있으며, 산업재산권청은 재량으로 이를 인정하고 이를 통지합니다.(제57조) 본 규정은 일반규정(GENERAL PROVISIONS)에 대한 사항으로 특허 뿐만 아니라 상표, 산업디자인에 공통으로 적용됩니다.(제57조)

유의사항은?

- 이란은 법정기한 연장에 대해 지배상황(prevaling circumstances)을 고려한다고 하는 추상적인 규정만을 두고 있을 뿐 법정기간 연장에 대해 특별한 요건을 두고 있지 않으며 재량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

우리나라와 차이점은?

- 우리나라는 법정기간 연장에 대해 특정한 사안에만 인정하고 있는 반면, 이란은 이를 제한하고 있지 않음.
- 우리나라는 직권으로도 법정기간 연장을 인정하는 반면, 이란은 청구에 의해서만 인정하고 있음.

나 특허심사 및 등록

(1) 의견진술기회 부여

법률에 의하여 산업재산권청에 부여된 재량권을 실행하기 전에 산업재산권청은 상기 관청이 그에 대해 결정하기를 바라는 어느 당사자에게 진술할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여야 하고 진술을 고려하여 결정을 하여야 한다.(제58조)

■ 포인트 정리

이란 특허법 vs 우리 특허법	
공통점	차이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재산권청의 재량권 행사에 대해 출원인 등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의무 규정으로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나라는 일정한 경우, 하자 보정이 어려운 경우 등에 있어 의견진술기회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음.
<p>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란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출원인의 이익을 해칠 수 있는 경우에는 의견제출 기회를 충분히 주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나라는 심사과정 등에 있어 빠른 심사를 위해 의견 진술기회 횟수를 제한하고 있는 반면, 이란은 이러한 빠른 심사를 위한 제한 규정을 찾아 볼 수 없음.
<p>토</p>	

이란 특허법의 의견진술 기회 부여는 산업재산권에 모두 적용되는 공통규정에 규정하고 있으며 특정한 사건이나 행위일 때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산업재산권청의 재량권을 행사할 경우에는 모두 당사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의무이다. 우리나라도 출원인의 이익이 부당히 해할 염려가 있는 절차인 경우 즉, 절차무효나 특허거절결정과 같은 경우에는 의견진술 기회 부여를 의무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란과 유사하다.

우리나라는 법규정 이외에도, 판례에서 일정한 사항에 대해서 의견진술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경우가 있다.

(2) 불복

이 법률과 규칙의 적용에 대한 분쟁은 이 법률의 승인으로부터 최대 6개월 기간 내에 법무부 장관에 의하여 테헤란 보통 법원의 특수부 또는 부서들의 사법권의 범위 내에 속한다.

산업재산권청에 의하여 이루어진 결정은 결정의 통지 또는 발효일로부터 2개월 내에 관할법원에 제기된 신청을 통해 그들의 항고를 제출할 수 있는 이해 당사자에 의한 제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결정들과 심사에 대한 불복은 민사문제들에 대한 공공 및 혁명 법원을 위한 이란 민사절차법에 따라 규제된다.

■ 포인트 정리

이란 vs 우리 나라	
공통점	차이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허법 및 산업재산권청의 결정에 대한 불복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란과 우리나라는 법체계가 상이하므로, 우리나라와 같은 특허심판원, 특허법원이 없음.
검 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란과 우리나라의 법체계 상이에 따른 불복의 형식은 달라도, 기본적인 불복의 권한은 동일하다고 볼 수 있음. 다만, 산업재산권청의 결정에 대한 불복을 민사절차법으로 규제한다고 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직권주의와는 차이가 있음.

(3) 특허여부 결정

산업재산권청은 출원일을 인정한 후에 출원이 이 법률 및 이에 속하는 시행 규칙의 요건들에 합치하는 여부를 심사하고 상기 요건들에 충족되면 특허를 허락하고 그렇지 않으면 출원을 거절하고 출원인에게 이러한 결정을 통지한다.(제13조)

■ 포인트 정리

이란 특허법 vs 우리 특허법	
공통점	차이점
- 일정한 요건이 만족되면 등록을, 불만족하면 거절을 하고, 이에 대한 결정을 통지함.	- 이란 특허법은 거절사유에 대해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검 토	- 이란 특허법은 거절의 근거에 대해 별도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음. 이에 개별 규정의 법문 해석으로 근거 규정을 도출할 수 밖에 없음.

(4) 등록결정의 효과

Q&A

Q, 등록결정의 효과에는 무엇이 있나요?

A, 산업재산권청은 특허 등록 요건을 만족하면 상기 제13조에 의해 특허 허락을 합니다. 특허를 허락한 후에는 i) 특허 허락의 참고(reference)를 공개하고 ii) 특허증을 발행하며 iii) 특허증 사본을 보유하고, 필요한 비용을 수납한 후에 특허증 원본을 출원인에게 송부하고 iv) 최초 출원서의 범위내라면 특허증 보유자의 요청에 따라 특허 보호범위를 결정하기 위해 특허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변경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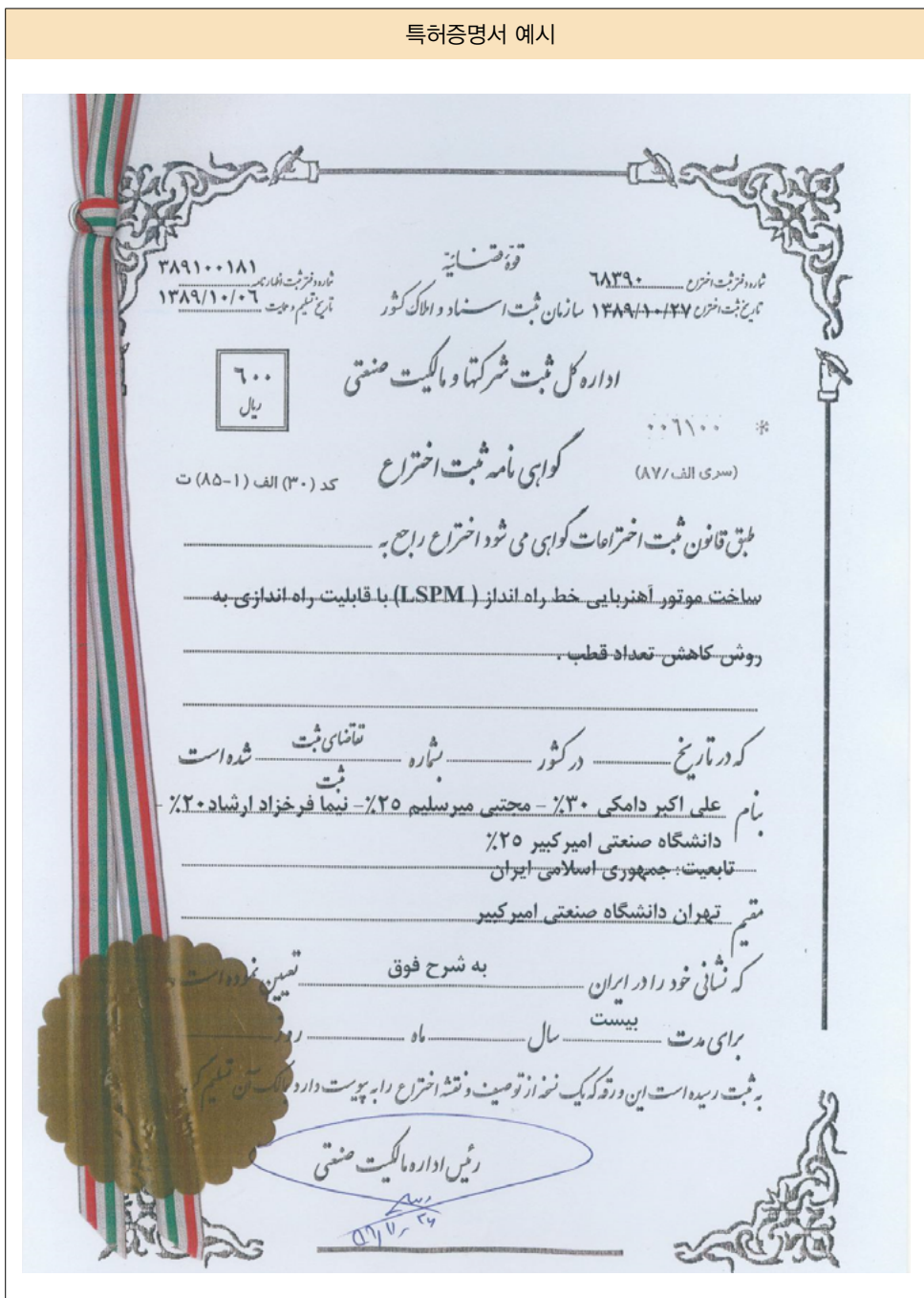
유의사항은?

- 이란 특허법 제14조는 특허 등록결정이 있는 후에 특허 허락의 참고(reference)를 반포하고 특허증을 발행한다. 특허증은 비용을 납부하면 출원인에게 원본을 송부하고 사본은 산업재산권청에서 보유한다.

우리나라와 차이점은?

- 이란의 등록결정 후의 절차는 우리나라와 유사함. 다만, 등록 후 보정에 대해 우리나라의 정정심판과 같은 제도가 없다.
 - 우리나라 정정심판에 의한 보정 범위는 심사과정보다는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으나, 이란은 이러한 구분을 두고 있지 않다.
-

〈 그림 III-4 〉 특허증명서 예시 17)



17) The Iranian patenting system: An introduction, World Patent Information 29 (2007) 250-254

(5) 등록원부

증서(Deeds)와 재산권(Properties) 등록을 위해 국가조직은 근대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특허, 산업 디자인 및 상표에 대한 별개의 등록원부를 유지한다. 등록원부들에 기입된 데이터는 모든 자들이 접근할 수 있으며, 누구나 규정에서 정해진 조건들 아래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제53조 및 제54조)

■ 포인트 정리

이란 특허법 vs 우리 특허법	
공통점	차이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록원부를 유지함. - 원부에 등록된 데이터의 접근에 제한이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나라는 전자적매체로 원부를 관리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란은 근대적인 방법이라고만 규정되어 있음.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란은 등록 원부 관리와 관련해 '근대적인 방법'이라고만 규정되어 있어 어떠한 방법으로 관리되는지 명확하지 않다. - 우리나라는 등록원부를 효력발생 요건으로 하는 규정이 있으나, 이란은 이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 그림 Ⅲ-5 〉 특허등록내용 양식 원문

특허등록내용 양식 원문(Form-2)

Contents of Patent Register

- 1- Patent No. and date :
 - 2- Declaration registration No. and perfect date (hour, day, month and year):
 - 3- Particulars and share of owner/owners of invention :
 - Name:
 - Address:
 - Nationality:
 - 4- Particulars of inventor(in case that he/she is not applicant)
 - Name:
 - Address:
 - Nationality:
 - 5- Particulars of legal representative
 - Name:
 - Address:
 - Nationality:
 - 6-invention title
 - 7-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invention (mentioning the related scientific field)
 - 8- Declaration or right of priority certificate registration No, date and place (if available)
 - 9- Term of support:
- Signature (invention owner or his/her legal representative)
- Signature (head of Patent Office)

〈 그림 III-6 〉 특허등록내용 양식 번역문

특허등록내용 양식 번역문(Form-2)

〈특허등록 내용(Contents of Patent Register)〉

1- 특허 번호와 날짜(Patent No. and date)

2- 출원번호와 인정 날짜(시간, 일, 월, 년도)(Declaration registration No. and perfect date (hour, day, month and year))

3- 상세한 설명, 공동발명자에 대한(Particulars and share of owner/owners of invention)

이름(Name):

주소(Address):

국적(Nationality):

4- 발명자의 상세정보(발명자와 출원인이 다른 경우)(Particulars of inventor(in case that he/she is not applicant))

이름(Name):

주소(Address):

국적(Nationality):

5- 법정대리인의 상세정보(Particulars of legal representative)

이름(Name):

주소(Address):

국적(Nationality):

6- 발명의 명칭(invention title)

7- 발명의 국제분류(관련 과학분야에 대해 기재)(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invention (mentioning the related scientific field))

8- 출원 또는 우선권 증명 문서의 등록번호, 날짜, 장소(있다면)(Declaration or right of priority certificate registration No, date and place (if available))

9- 지원사항(Term of support)

서명(발명자 또는 법정대리인)(Signature (invention owner or his/her legal representative))

서명(특허사무소)(Signature (head of Patent Office))

다 특허의 효력

특허권의 효력	이란 특허법	한국 특허법
특허권의 효력	제3조	제94조
특허권자의 권리	제15조	제94조, 제2조
특허권의 제한	제15조 c)	제96조, 제103조

(1) 특허권의 효력

“특허증(Letters Patent)”은 발명의 보호를 위하여 산업재산권청(Industrial Property Office)에 의하여 발행된 문서로 그 소유자는 해당 발명의 독점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제3조)

■ 포인트 정리

이란 특허법 vs 우리 특허법	
공통점	차이점
- 특허권의 효력으로 독점권을 부여함.	- 우리나라는 설정등록과 함께 특허권이 발생하여 동시에 독점권이 부여되는 반면, 이란은 특허증 소유자에게 독점권을 부여함.
검 토	- 이란은 특허증 소유자에게 독점권을 부여한다고 하고 있어 특허증이 증서와 같이 이전이 가능하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음.

〈 그림 III-7 〉 특허증명서 양식 원문

특허증명서 양식 원문 Form-3

Patent Certificate

Declaration registration No. and date:

Patent No. and date:

Particulars and share of owner /owners of invention:

Name:

Address:

Nationality:

Particulars of inventor/inventors:

- 1- name
- 2- address
- 3- nationality

Invention title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invention

Use of right of priority

Original declaration No and date:

Original declaration registration country:

Term of support:

Attached herewith are description, claims, brief description and plans.

Signature (mentioning date)

Head of Patent Office

〈 그림 III-8 〉 특허증명서 양식 번역문

특허증명서 양식 번역문 Form-3

〈 특허 증명서(Patent Certificate) 〉

출원 등록 번호 와 날짜(Declaration registration No. and date):

특허 번호와 날짜(Patent No. and date):

소유자/발명의 소유자들의 상세정보 및 지분(Particulars and share of owner /owners of invention):

이름(Name):

주소(Address):

국적(Nationality):

발명자/발명자들 상세정보(Particulars of inventor/inventors):

1- 이름(name)

2- 주소(address)

3- 국적(nationality)

발명의 명칭(Invention title)

발명의 국제분류(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invention)

우선권의 사용(Use of right of priority)

원출원의 출원번호(Original declaration No and date):

원출원이 등록된 국가(Original declaration registration country):

지원 사항(Term of support):

상세한 설명, 청구항, 요약, 계획 등을 첨부(Attached herewith are description, claims, brief description and plans)

서명(서명날짜)(Signature (mentioning date))

특허사무소(Head of Patent Office)

(2) 특허권자의 권리

Q&A

Q, 특허권자의 권리는 무엇이 있나요?

A, 제3자의 특허 이용은 특허 소유자의 허락을 요하고 있으며, 특허소유자의 허락 없이 이용을 하여 특허권을 침해 하거나 침해를 발생할 다른 행위를 수행하는 자에 특허소유자는 법원의 절차를 청구할 권리를 가집니다.(제15조)

이용허락 시 포함되는 행위는?

- (1) - 특허가 제품(product)에 대해 허락된 경우
 - (i) - 제품의 제조(making), 수출 및 수입, 판매에의 제공, 판매 및 사용(use)
 - (ii) - 판매에 제공하거나 판매 또는 이용을 위하여 그러한 제품을 보관
- (2) - 특허가 공정(process)에 대해 허락된 경우
 - (i) - 공정의 사용
 - (ii) - 공정에 의하여 직접 얻어진 제품에 대해 이 조항의 단락 (a)-(i)에 기재된 행위들을 수행하는 것

우리나라와 차이점은?

- 이란의 실시 내용 중 수출은 우리나라 특허법에는 규정이 없으나, 수출도 우리나라 법해석상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됨.
(수출을 위한 생산, 양도 등에 의해 규율됨.)
- 이란의 실시 내용 중, 보관은 우리나라에서는 직접적 침해를 구성하지 않고 침해예방 청구의 대상이 될 뿐임.

(3) 특허권의 제한

이란 특허법 제15조 c)에서는 특허권 제한과 관련하여 i) 특허권자의 동의를 얻은자의 실시, ii) 이란을 통과하는 항공기등에서의 실시, iii) 실험적 실시, iv) 선사용자의 실시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특허법도 i) 내지 iv)에 해당하는 사항을 모두 규정하고 있다. 다만, ii) 규정과 관련하여 그 제한 대상이 상이하며, iv) 규정과 관련해서는 이란이 우리나라보다 엄격한 요건하에 선사용권을 발생시키고 있다.

Q, 특허권의 제한에는 무엇이 있나요?

A, 아래와 같습니다.

Q&A

특허에 부여되지 않은 권리

1. 특허의 소유자 또는 그의 동의를 받은 자에 의하여 이란에서 시장에 공급된 물품의 사용.
2. 임시로 또는 우연히 이란의 방공 영역, 영토 또는 해역에 진입한 다른 국가들의 항공기, 지상 차량 또는 선박 위의 물품의 사용.
3. 특허 발명에 관련된 실험 목적으로 수행된 사용.
4. 출원 전에 또는 우선권이 주장된 경우 우선일 전에 양호한 신용을 가진 자가 발명을 이용하는 것이거나 또는 이란에서의 그러한 이용을 위한 효과적이며 진지하게 준비하는 자에 의한 사용.(제15조 c))

우리나라와 차이점은?

- 특허권 제한은 각국의 재량에 의해 규율되고 있다. 이란과 우리나라의 특허권 제한 규정은 유사하다. 다만, 이란은 우리나라의 약사법에 의한 조제에 대한 규정이 없다.
- 이란의 선사용자에 대한 특허권 제한은 우리나라와 유사하나, 이란은 양호한 신용을 가진자의 실시 또는 실시 준비자에게만 특허권을 제한하고 있다.
- 이란은 항공기 등에서의 실시에 있어, 항공기등의 물품 사용을 특허권 제한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이러한 제한은 없다.

라 특허의 실시권 및 이전

특허권의 실시란?

- 등록특허권의 실시는 상기 특허에 기재된 청구범위의 권리를 포함하는 물품의 제조, 판매 또는 수입을 의미한다.

(1) 특허권의 이전

특허권은 허락에 의해 양도 될 수 있으며, 특허권자가 사망한 경우 그의 상속인들에게 이전된다.(제5조 d) 상기에서 언급한 선사용권자의 권리는 오직 기업 또는 사업과 함께 이전되거나 양도될 수 있다.(제15조 d))

■ 포인트 정리

이란 특허법 vs 우리 특허법	
공통점	차이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허권 이전의 자유, 상속인에게 이전, 선사용자의 실시사업과 함께 이전을 규정하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허권자 사망에 따른 특허권 소멸에 대한 규정이 없음.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란의 특허권 등의 이전 규정의 기본 논리는 우리나라와 유사하다. 즉, 특허이전의 자유, 상속인에게 이전하거나 실시사업의 이전과 함께하는 경우 자유로운 이전에 있어 우리나라와 이란은 특허권 등의 이전에 대한 기본 논리가 유사하다. - 다만, 이란은 상속인이 없을 경우 소멸인지 국가에 귀속인지에 대한 규정이 없다. 국가에 대한 귀속 규정이 없으므로 특허권은 소멸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란 특허법 제5조 d)에서 특허권의 이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특허권은 자유롭게 이전이 가능하다. 특허권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들에게 이전된다. 우리나라 특허법도 제99조에서 특허권의 이전을 규정하고 있고 제101조에서 상속인에게 이전을 규정하고 있다.

이란 특허법 제15조 d)에서는 법정 통상실시권인 선사용자권의 이전은 사업과 함께만 이전됨을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특허법 제102조에서 선사용권자의 이전은 실시사업과 함께 이전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2) 특허권의 이전방식 및 효력

Q, 특허권을 이전하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A, 특허 소유권의 변경은 산업재산권청에 등록된 이해관계인의 서명 신청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상기 관청에 의해 등록되며 공개된다. 이러한 변경은 등록되기 전까지 제3자에 대해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제48조)

Q&A

유의사항

- 이란 특허법 제48조에서는 특허권 등의 소유권 변경(이전)은 당사자의 서명 신청이 있어야 하고 그 신청에 의해서 제3자에게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되어 있다. 즉, 특허권 이전의 등록은 제3자 대항요건이다. 우리나라는 특허권의 이전 등록은 제3자 대항요건이 아니라 효력발생임을 제101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일반승계 및 통상실시권 발생을 제외한 특허권, 전용실시권, 질권의 이전, 처분의 제한 등은 등록을 해야 특허법상 효력이 발생하며, 등록을 하지 않으면 권리자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권리행사에 제한을 받는다.

우리나라와 차이점은?

- 이란과 우리나라의 특허권 등의 이전절차는 유사하다. 즉, 산업재산권청이 이전 절차를 수행하고 이에 따라 효과가 발생한다. 다만, 우리나라는 전용실시권의 경우 특허청에 등록이 효력발생 요건으로 하고 있다.
- 이란은 산업재산권 제출이 3자 대항요건으로 규정되어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일정한 경우 효력발생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음.

(3) 허락 실시권

허락실시권이란?

- 특허권자와 실시권자 간의 계약에 의해 설정된 실시권을 의미하며, 전용실시권과 통상실시권 등으로 구분됩니다.

특허, 등록된 산업 디자인, 등록 상표 또는 그 출원에 대한 실시 계약은 산업재산권청에 제출되어야 한다. 상기 관청은 상기 계약 내용을 비밀로 유지하고 이를 등록하고 이에 대해 참조(reference)를 공개한다. 이러한 절차에 의해 실시 계약의 효력이 제3자에 대해 발생한다.(제50조)

■ 포인트 정리

이란 특허법 vs 우리 특허법	
공동점	차이점
- 산업재산권청(특허청)에서 실시권을 등록해야만 효력이 발생함.	- 우리나라는 계약 내용에 대해서는 제출을 요하지 않는 반면, 이란은 이를 요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전용실시권의 경우 등록이 효력 발생요건임.
검 토	- 이란과 우리나라의 특허권 등의 이전절차는 유사하다. 즉, 산업재산권청이 이전 절차를 수행하고 이에 따라 효과가 발생한다. 다만, 우리나라는 전용실시권의 경우 특허청에 등록이 효력발생 요건으로 하고 있다.

이란 특허법 제50조에서는 허락에 의한 실시권을 위해서 산업재산권에 서류를 제출하고 소정의 참조는 공개되며, 산업재산권청에 절차가 완료되어 등록된 경우에 제3자에게 대항가능하다. 우리나라는 허락에 의한 실시권인 전용실시권과 통상실시권의 등록 효력을 구분하고 있다. 전용실시권의 설정은 등록해야만 효력이 발생하고 통상실시권의 설정은 등록을 하지 않아도 당사자간에 채권적인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등록하면 제3자에게 대항가능하다. 즉, 우리나라의 허락에 의한 통상실시권의 경우가 이란의 실시권에 관한 규정과 동일하다.

(4) 직무발명

직무발명이란?

- 종업원 ·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실질상 사용자 · 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의미합니다.

고용 계약에 의하여 발명이 이루어진 경우 각각의 계약 합의에서 달리 정해지지 않으면 특허 재산권(economic right)은 고용인에게 속한다.(제5조 e)

■ 포인트 정리

이란 특허법 vs 우리 특허법	
공통점	차이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무발명의 경우 사용자에게 특허권이 부여됨. - 계약에 의해 재산권 귀속이 달라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란은 사용자의 법정 통상실시권 규정이 없음. - 이란은 종원원의 보상금 청구권에 대한 규정이 없음.
검 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란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종업원의 발명을 사용자에게 귀속시키고 있다. 다만, 이란은 인격권의 성격인 발명자 게재권은 종업원에게 있음을 밝히고 있다. 우리나라는 발명자 게재권에 대한 의무규정이 없다.

이란 특허법 제5조에서는 직무발명의 경우에 사용자가 특허 재산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허권 발생 요건으로 고용계약에서 달리 정하고 있지 않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 발명진흥법의 해석상으로도 일정한 요건하에 사용자가 특허권을 향유한다. 다만, 이란 특허법은 직무발명에 있어 종업원 또는 제3자가 특허권을 취득하였을 경우에 사용자 법정통상실시권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마 특허의 종료

(1) 특허권 존속기간 및 특허료 납부

특허증(Letters Patent)은 특허 출원의 출원일 이후 20년으로 종료한다. 특허증 또는 특허 출원을 유지하기 위해 규칙에서 정한 연차료(annual fee)를 출원일 이후 1년에서 다음 해의 시작 전에 매년 출원인에 의하여 산업재산권청에 납부하여야 한다. 정해진 부가료의 납부를 전제로 연차료의 추후 납부에 대해 6월의 추납 기간이 허락된다.(제16조)

■ 연차료 납부시 유의사항

- 출원료와 별도로 연차료를 출원 후 다음해부터 매년 납부해야 함. 즉, 출원일이 해당하는 년도에는 연차료가 없으나 다음해부터는 연차료가 발생함.
- 연차료 납부의 기준일은 출원일 임.
- 특허 등록과 상관없이 납부해야 하며, 특허 등록시에는 별도의 등록료가 있음.
- 6개월의 추가 납부기간이 부여되지만, 우리나라와 같이 일부 납부에 의한 보전이나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의해 추가 납부 기간이 연장되지는 않음.

■ 포인트 정리

이란 특허법 vs 우리 특허법	
공통점	차이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출원일 기준으로 20년임. - 6개월의 특허료 추납기간이 규정되어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법은 설정등록시 3년분 일괄납부제도가 있으나, 이란은 출원일 후 매년 납부해야됨. - 우리법은 추납기간 이외에 회복할 수 있는 규정이 있으나, 이란은 이에 대한 규정이 없음.
검 토	- 현재 대부분의 나라에서 출원일을 기준으로 존속기간을 산정하고, 출원일 후 20년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나라가 추가 납부제도를 두고 있다.

(2) 특허권의 무효청구

이해관계인은 법원에 특허의 무효를 청구할 수 있다. 무효를 청구하는 자가 제 1, 2, 4조, 제6조 제1 단락 및 제6(c)조의 요건들의 어느 것이 충족되지 않는 것을 입증하거나 특허 소유자가 발명자가 아니거나 또는 적법한 상속인이 아닌 것을 입증하면 법원은 특허증을 무효로 한다. 무효인 특허 청구항 또는 특허청구범위의 일부는 특허의 허락일로부터 무효이며 소멸한다. 법원의 최종 결정은 산업재산권청에 통보되고 청은 그것을 기록하고 정해진 요금의 납부시 참고 사항을 신속하게 공개한다.(제18조)

Q, 이란 경쟁업체의 특허를 취소 시키고 싶은데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A, 무효 청구*를 통해 특허 등록의 취소, 특허 권리를 소멸 시킬 수 있습니다.

이란의 특허권 *무효 청구는?

- 이해관계인만이 무효청구를 할 수 있음.
- 일정한 무효사유를 규정하고 있음.
- 무효가 인정되면 소급효가 있음.
- 이란은 후발적 무효사유가 없음.

우리나라와 무효 청구를 비교하자면?

- 이란은 무효청구의 사유, 효과 등에 있어 우리나라와 유사함.
다만, 우리나라와 같이, 일정한 기간동안에 누구든지 청구할 수 있는 규정이 없으며, 후발적 무효사유가 존재하지 않음.

par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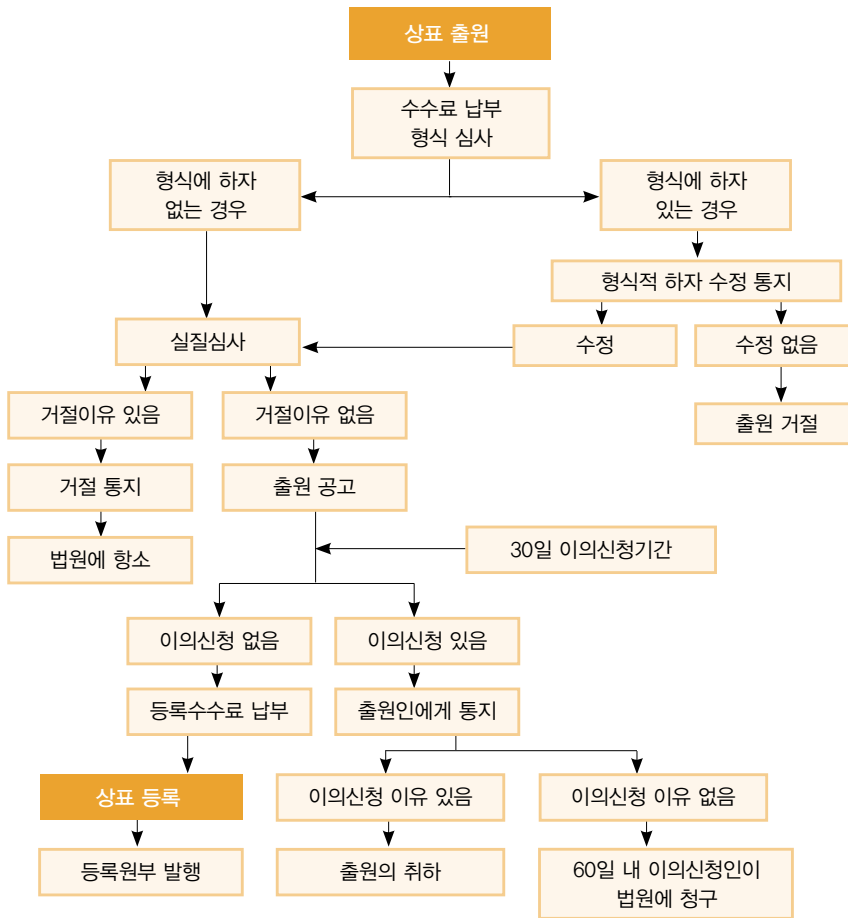
2

상표의 출원 및 관리



가 출원절차 및 방식

〈 그림 III-9 〉 상표출원 흐름도



〈 표 III-2 〉 상표관련 수수료 18)

항목	개인	법인
출원료(출원 또는 분할 출원)	200,000(1류) 2류 이상일 경우, 1류당 20,000 추가	400,000(1류) 2류 이상일 경우, 1류당 40,000 추가
10연차료	1,200,000(1류) 2류 이상일 경우, 1류당 100,000 추가	2,400,000(1류) 2류 이상일 경우, 1류당 200,000 추가
확장 10연차료	1,200,000(1류) 2류 이상일 경우, 1류당 100,000 추가	2,400,000(1류) 2류 이상일 경우, 1류당 200,000 추가
확장 10연차료 지연 수수료	600,000(1류) 2류 이상일 경우, 1류당 50,000 추가	1,200,000(1류) 2류 이상일 경우, 1류당 100,000 추가
문의료(양도, 개발 라이선스, 면제)	50,000	100,000
등록료 (계약 또는 비계약 양도)	100,000(1류) 2류 이상일 경우, 1류당 50,000 추가	200,000(1류) 2류 이상일 경우, 1류당 100,000 추가
등록료 (개발 라이선스의 설정, 취소 또는 종료)	100,000(1류) 2류 이상일 경우, 1류당 50,000 추가	200,000(1류) 2류 이상일 경우, 1류당 100,000 추가
보정료(출원 및 부가서류)	50,000	100,000
등록료(출원의 양도 또는 개발 라이선스)	50,000	100,000
등록료(권리 양도와 개발 라이선스 외의 변경)	50,000	100,000
인증서 추가발급료	100,000	200,000
인증된 사본 발급료	5,000	10,000
수신료(출원서 제출 확인 또는 특허 인증서 발급)	15,000	30,000
이의 신청료(등록 거절)	500,000	750,000
이의 신청료(등록 요청)	1,500,000	3,000,000
예치금(법원에 무효화청원 제출)	3,000,000	4,500,000
국제등록출원 조사료(수리관청)	200,000	400,000

#비고 : 파리 협약(산업 재산권 일반 사무실의 상표 등록)을 준수하는 등록 기관에 바로 출원한 외국인 출원인은 상기 표에 해당하는 이란 리알(IRR)과 동일한 가치의 외국 통화로 지불해야 한다.

18) 출처 : 이란 시행규칙(Executive regulation) 부록 1(Appendices 1)

〈 그림 III-10 〉 상표출원서 양식 원문

상표출원서 양식 원문 Form-1

Marks Registration Declaration

Form E-1

(to be completed by the department)

Declaration No. date of receipt of the
 deceleration (hour, day, month and year)

Seal and signature of Patent Office

2- Particulars of applicant/applicants :

Natural person

Name, National Code No.

Address, postal code

Nationality

Country of residence

Tel No:

Fax No:

Email:

Legal entity

Name:, type of legal entity:, field of activity:.....registration place
 and No:

Nationality :domicile :head office :address:other
 information : ..

Tel No:

Fax No:

Email:

2- Particulars of legal representative:

Name, National Code No.

Address, postal code

Tel No:

Fax No:

Email:

3- Field of activity of the applicant/applicants:**4- Particulars of notices receiver in Iran (in case that the applicant is not resident of Iran).**

Name, National Code No.

Address, postal code

5-collective mark

Brief description of the collective mark

5- sample of the mark

Description and determination of components of the mark and determination of specified letters which are regarded as specification of the mark.

<p>Place of affixing</p> <p>Sample of the mark</p>
--

In case that the mark includes non-Persian words

Insertion of transcription and its translation

Mentioning that the mark is three-dimensional

Mentioning the color as specification of the mark

7- Goods and services by mentioning the class or classes

8- Claim for right of priority

Name of country

Original declaration registration date

Original declaration No: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goods and services relating to the mark:

In case that the prior declaration is an international or regional declaration, determination of the department in which and the countries for which declaration has been submitted.

9-This declaration includes the following appendices:

Documents proving identity

Ten graphical samples of the mark in dimensions of 10×10 cm

In case that the mark is three dimensional, presentation of the mark as graphical sample or two-dimensional picture in such a manner that it can be prepared from six angles

A copy of conditions and terms of the collective mark and confirmation of the competent authority

Legal representation documents

Documents indicating activity in the related field

Right of prior which has been confirmed by the source department

Receipt of declaration registration fee payment

Other documents

Signature of the applicant or his/her legal representative

date

출원절차 및 방식	이란 상표법	한국 상표법
출원방식 일반	제33조	제36조제1항
파리협약에 의한 우선권주장	제34조	제46조
출원의 취하	제35조	규정 없음
기한의 연장	제57조	제17조제1항

(1) 출원방식 일반

상표 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출원하려는 상표의 사본과 함께 지정상품이나 서비스업의 목록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출원서 기재 사항

Q. 출원서 기재 사항이 궁금합니다.

A. 상표 등록 출원은 상표 사본과 국제 분류의 적용에 의한 등록이 요청된 상품이나 서비스의 목록과 함께 산업재산권청에 제출되어야 한다.

■ 출원료 납부

Q. 출원료 납부가 궁금합니다.

A. 출원인은 정해진 출원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상품 및 서비스업 분류기준

Q. 상표의 유구분의 국제분류기준은?

A. 이란 상표법은 상품의 유구분에 국제 분류 기준(NICE)을 적용하고 있다. NICE 분류 제도는 1957년 상품 및 서비스업 분류를 국제적으로 통일하기 위한 『국제상품분류제도에 관한 협정(니스협정)』에 의해 정해진 상품 및 서비스업에 관한 국제 분류 기준으로서, 우리나라는 98. 3. 1. 부터 적용하고 있다.

BUT!

33류에 속하는 상품 「알코올 음료」를 지정하는 상표 출원은 이슬람법에 위반한다는 이유로 엄격하게 금지되고 있다. 또한 맥주는 알코올 음료로 간주되므로 맥주를 포함한 제 32류의 상품(예를 들어 미네랄 워터)을 지정해서 출원할 경우, 맥주 제조에 종사하지 않고 있다는 취지의 선서공술서의 제출이 필요하다.

(2) 파리협약에 의한 우선권주장

■ 우선권주장 시 적용규정

Q. 우선권 주장 시 적용규정이 궁금합니다.

A. 출원이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한 파리 협약에 의해 상기 협약에 속하는 국가에서 출원인이나 적법한 그의 승계인에 의하여 출원된 출원의 우선권주장을 포함하는 경우 제9조 규정이 적용된다.

■ 우선권주장 요건 및 절차

Q. 우선권 주장 시 요건 및 절차가 궁금합니다.

A. 이란 상표법상 파리협약에 의한 우선권주장을 하는 경우 파리협약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이란 상표법 제34조).

- 우선권주장기초출원은 파리협약 당사국 등에서의 출원이어야 하며, 산업재산권청은 우선권주장기초출원의 사본을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위반시 우선권 주장은 무효이다.
- 우선권주장과 관련된 서류는 출원시 함께 제출하거나 출원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포인트 정리

이란 상표법 vs 우리 상표법	
공통점	차이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파리협약에 의한 우선권주장 제도 존재. - 우선권주장기초출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출원. - 우선권주장 출원에 대한 증명서류 제출. - 등록요건 판단시점 우선권주장기초출원일로 소급. - 부적법한 경우 우선권주장 무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명서류 제출기간 상이(이란은 출원과 동시에 또는 출원일로부터 15일 이내 제출이나, 우리 상표법은 상표등록출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
<p>검 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란도 파리협약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우리나라에 상표등록출원이 존재하는 경우 이를 우선권주장기초출원으로 하여 이란에 우선권주장출원 가능하다. - 이란의 상표법 규정과 이란이 가입한 국제 협약의 규정이 충돌하는 경우 국제 협약의 규정이 우선한다고 하여 조약 우선의 원칙을 따른다.(이란 상표법 제62조). 	

(3) 출원의 취하

■ 취하 시기

Q. 취하시기가 궁금합니다.

A. 이란 상표법은 제35조에서 상표가 등록되기 전 출원인은 출원을 취하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상표법에는 취하와 관련된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나, 이란 상표법과 마찬가지로 등록 전 언제든지 취하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4) 기한의 연장

■ 기한 연장 되는 경우

Q. 기한 연장 되는 경우가 궁금합니다.

A. 이 법률이나 규칙에서 정해진 행위에 대한 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서면상의 신청을 접수한 때, 그리고 일반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산업재산권청은 각 기한을 연장하도록 할 수 있다.

■ 기한 연장의 효력 발생

Q. 기한 연장의 효력 발생 경우가 궁금합니다.

A. 기한의 연장은 규칙(Regulations)에 정해진 규정들에 따라 관련 당사자들에게 통지를 송부함으로써 발생된다.

나 상표심사 및 등록

심사 및 등록	이란 상표법	한국 상표법
출원의 심사 및 출원공고	제36조	제50조제1항, 제57조제1항
의견진술기회 부여	제58조	제55조제1항
이의신청	제37조	제60조제1항 · 제2항, 제61조, 제66조제1항
출원공고 후 등록 전의 권리	제38조	제58조
상표 등록 결정	제39조	제68조, 제69조, 제81조제1항
등록원부	제53조, 제54조	제80조제1항

(1) 출원의 심사 및 출원공고

산업재산권청은 이 법률의 요건에 합치하는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출원을 심사하며, 등록가능한 경우 출원을 공고한다.

■ 포인트 정리

이란 상표법 vs 우리 상표법	
공통점	차이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사주의. - 출원공고 제도의 존재. - 상표등록출원이 등록 가능한 경우 출원공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란의 경우 출원공고 결정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한 규정이 없으나, 우리 상표법은 일정한 경우 출원공고 결정의 예외를 둠.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원공고 제도는 상표출원과 관련된 서류를 열람에 제공함으로써 이의신청 가능하게 하는 제도이다.

(2) 의견진술기회 부여

출원인의 절차권 보장을 위해 심사 과정에서 산업재산권청의 재량권 행사가 있는 경우 의무적으로 출원인에게 의견진술기회를 부여하도록 한다.

이 경우, 당사자의 진술을 적절히 고려하여 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3) 이의신청

■ 제도의 취지

Q. 제도의 취지가 궁금합니다.

A. 이의신청 제도란 부실 권리가 등록받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 이의신청 사유

Q. 이의신청사유가 궁금합니다.

- A. 이 법률의 제30조 (a) 및 제32조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 이의신청 요건

Q. 이의신청요건이 궁금합니다.

- A. 주체적 요건으로 이해당사자만이 이의신청 할 수 있다.
시기적 요건으로 출원공고일로부터 최대 30일 내에 이의신청 하여야 한다.

■ 이의신청 절차

Q. 이의신청절차가 궁금합니다.

- A. 산업재산권청은 출원인에게 이의신청의 사본을 송달하고, 20일의 기간 내에 출원인에게 답변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 이의신청 사본을 송달받은 출원인은 출원이 정당하면 산업재산권청에 출원에 대해 신뢰하는 이유와 함께 이의신청을 반박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출원인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출원은 취하된다.
 - 출원인이 답변서를 제출하면, 산업재산권청은 이의신청인에게 그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 산업재산권청의 판단 방법

Q. 산업재산권청의 판단 방법이 궁금합니다.

- A. 산업재산권청은 당사자들의 진술 및 이 법률의 규정들을 고려한 후 상표의 등록 또는 거절여부를 결정한다.

■ 포인트 정리

이란 상표법 vs 우리 상표법	
공통점	차이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고일로부터 일정기간 내에 이의신청 가능. - 이의신청 있는 경우 출원인에게 답변서 제출기회 부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란은 이해당사자만이 이의신청 할 수 있으나, 우리나라는 누구든지 이의신청 가능 (주체적요건). - 이란은 출원공고일로부터 최대 30일 이내 이의신청할 수 있으나, 우리나라는 출원공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 이의신청 가능 (시기적요건). - 이란 상표법은 기간 내에 출원인이 답변서 제출하지 않은 경우 출원 취하됨. - 우리 상표법은 이의신청에 대한 이유와 증거를 제출하여야 하나, 이란 상표법은 증거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음.
검 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란 상표법 제30조 및 제32조에 해당함을 이유로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 출원공고일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이의신청 할 수 있으나, 주체적 요건과 시기적 요건에 있어서 우리나라보다 범위가 한정된다.

(4) 출원공고 후 등록 전의 권리

상표가 등록된 후에는 제3자 침해시 등록상표권에 기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무형의 재산권인 상표권의 특성상 출원공고 후 상표등록 전에도 일정한 권리를 인정하여 출원인을 보호하고 있다.

■ 권리 행사 요건

Q. 권리 행사 요건이 궁금합니다.

- A. 출원이 공고된 후 상표등록 전까지, 출원인은 상표가 등록되었을 때 가지는 것과 같은 특권과 권리를 가진다.
- 그러나, 출원인의 고소가 있는 경우 피고소인이 상표가 등록받을 수 없었던 것을 입증하면 상기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 상표의 등록을 전제로 하는 권리이기 때문이다.

■ 포인트 정리

이런 상표법 vs 우리 상표법	
공동점	차이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원인은 출원공고 후 상표등록 전까지 상표가 등록되었을 때와 동일한 권리를 가진. - 상표출원이 거절결정 확정되는 경우 권리행사할 수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 상표법상 원칙적으로 출원공고 후 경고는 필수이나, 이란은 경고에 관한 규정 없음. - 우리 상표법상 손실보상청구권은 상표권이 등록된 후에만 행사할 수 있으나, 이란 상표법에는 행사시기에 관한 명확한 규정 없음.
검토	- 상표 등록 전 제3자가 출원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출원인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5) 상표 등록 결정

이란 상표법에서 규정한 요건들을 충족하면 산업재산권청은 상표를 등록하고, 상표등록 통지서를 발행하며, 출원인에게 등록증을 교부한다.

(6) 등록원부

행위 및 재산권 등록을 위한 국가 조직(The State Organization for Registration of Deeds and Properties)은 현대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특허, 산업 디자인 및 상표에 대한 별개의 등록원부를 유지한다.

단체표장은 상표 등록원부의 특별한 조항에 등록된다.

누구나 등록원부에 기입된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으며, 정해진 규정 하에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 그림 III-11 〉 상표등록내용 양식 원문

상표등록내용 양식 원문 Form-1

Contents of Mark Register

1- mark registration No. and date :

2- Declaration registration No. and perfect date (hour, day, month and year) :

3- Particulars and share of owner/owners of mark :

Name:

Address:

Nationality:

4- Particulars of the legal representative

Name:

Address:

5- Specifications of mark

List of goods and services and their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Sample of the mark

Place of affixing

Sample of the mark

6- Declaration or right of priority certificate registration No, date and place (if available)

7- Validity term of registration:

Signature (mark owner or his/her legal representative)

Signature (head of Trademarks Registry)

다 상표의 효력

상표권	이란 상표법	한국 상표법
상표권의 효력 및 보호범위	제31조, 제40조 a)b)	제89조, 제91조, 제107조
상표권의 존속기간	제40조 d)	제83조제1항제2항, 제84조제2항
상표권 효력의 제한	제40조 c)	제90조제1항
상표권 등의 이전	제48조	제96조제1항제1호, 제119조제1항제4호, 제93조제6항

(1) 상표권의 효력 및 보호범위

■ **상표권의 효력**

Q. 상표권의 효력은 무엇인가요?

- A. 이란 상표법은 등록상표에 대해 상표권자에게 독점권을 인정한다(제31조, 제40조 a)-b).
- 등록 상표는 상표권자만이 사용할 수 있으며, 제3자가 무단으로 등록상표를 사용하는 경우 침해가 성립한다.

■ **상표권의 보호범위**

Q. 상표권의 보호범위가 궁금합니다.

- A. 일반 수요자의 혼동 방지를 위해 배타적 효력은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범위까지 미친다.

■ 상표 사용권

Q. 상표 사용시 유의사항이 있나요?

- A. 등록상표의 사용이라도 사용권이 있는 경우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데, 이란 상표법 제40조 a)항의 해석상 등록상표의 사용은 상표권자의 동의하에서만 인정된다.
- 법률의 규정에 의해 발생하는 법정사용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 독점·배타권 유무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는 전용사용권과 통상사용권에 대한 규정을 두지 않아 해석이 문제된다.

■ 포인트 정리

이란 상표법 vs 우리 상표법	
공통점	차이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표권자에게 독점·배타권 인정. - 제3자는 상표권자의 동의 하에 상표권 사용 가능. - 상표권의 배타적 효력이 유사범위까지 미침. - 침해자에 대해 침해금지청구권 및 침해예방청구권 행사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란 상표법은 허락에 의한 사용권만 인정(법정사용권 규정 없음)하며, 전용사용권과 통상사용권에 대한 구별 없음. - 이란 상표법은 손해 발생시 손해 배상에 대한 규정 없음.
검토	- 상표권자 보호를 위해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인정하나, 사용권 제도를 두어 독점권의 예외를 인정한다.

(2) 상표권의 존속기간

상표는 사용할수록 신용이 화체되며, 유사 상표에 의한 일반 수요자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특허권이나 디자인권과 달리 갱신할 수 있다.

■ 상표권의 갱신

Q. 상표권의 갱신이 궁금합니다.

A. 상표권은 우리나라와 동일하게 10년의 존속기간을 두고 있으며, 상표권자의 신청에 의해 갱신된다.

- 일정한 수수료 납부시 갱신 신청 할 수 있다.
- 규정된 과태료(fine) 납부시, 갱신 요금의 지연 납부에 대해 존속 기간의 만료일로부터 6개월의 유예기간이 허용된다.

■ 존속기간의 기산점

Q. 존속기간의 기산점이 궁금합니다.

A. 출원일로부터 10년으로 규정한다.

■ 포인트 정리

이란 상표법 vs 우리 상표법	
공통점	차이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표권 존속기간 10년. - 존속기간 만료 후에도 유예기간(6개월) 내 갱신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존속기간의 기산점 상이(이란 상표법은 출원일로부터 10년이나, 우리 상표법은 설정등록일로부터 10년).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표권의 존속기간이 10년이라는 점은 동일하나, 존속기간의 기산점이 상이하여 상표권 관리시 주의 요함.

(3) 상표권 효력의 제한

상표권의 독점·배타적인 효력을 그대로 인정하면 수요자 이익보호라는 법 목적에 위배되거나, 제3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효력을 제한한다.

■ 효력 제한되는 경우

Q. 효력 제한되는 경우가 궁금합니다.

- A. 등록된 권리자 또는 그의 허락을 받은 자에 의하여
- a) 상품이 이란 내로 수입된 경우.
 - b) 상품이나 서비스가 시장에 제공된 경우.

(4) 상표권 등의 이전

■ 상표권 등의 이전 절차

Q. 상표권 등의 이전 절차가 궁금합니다.

- A. 상표권은 재산권이므로 자유롭게 이전할 수 있다.
- 다만 상표 소유권의 변경은 변경과 관련된 이해당사자의 서명 신청에 따르며, 신청이 제출되어야 제3자에 대한 효력이 발생한다.

■ 상표권 등의 이전 요건

Q. 상표권 등의 이전 요건은 무엇인가요?

- A. 상표권 또는 단체표장권의 이전이 상품의 성질 또는 출처 등을 오인시키거나 혼동을 초래하지 않아야 한다.
- 상기 사항 위반시 상표권 등의 이전은 무효로 한다.
 - 단체표장권의 경우 행위 및 재산권의 등록에 관한 국가 조직의 장관(Head of State Organization for Registration of Deeds and Properties)의 승인이 필요하다.

■ 포인트 정리

이란 상표법 vs 우리 상표법	
공통점	차이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표권의 이전 등 상표권에 대한 변경 사항은 등록이 되어야 효력 발생. - 단체표장권을 이전하는 경우 장관 또는 특허청장의 승인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란 상표법은 단체표장권 이전 시 법인이 합병되는 경우에 대한 예외 규정 없음.
검토	- 상표권 등의 이전이 가능하나, 단체표장권은 장관의 승인 하에서만 이전이 가능하도록 제한을 둔다.

라 상표의 취소 및 권리의 소멸

상표권	이란 상표법	한국 상표법
등록요건 위반 취소	제41조전단·중단	제117조제1항·제3항
상표의 불사용 취소	제41조후단	제119조제1항제3호·제6항

(1) 등록요건 위반 취소

이란 상표법 제41조는 ‘cancel the registration of a Mark’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 상표법상 상표 무효제도로 해석된다. 이란 상표법 제30조 및 제32조의 등록요건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상표는 취소(cancellation)되고, 등록 상표권의 취소(cancellation)는 등록된 날로부터 효력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우리 상표법 제117조 무효심판 제도와 유사하다.

■ 등록요건 위반 취소 청구의 요건

Q. 등록요건 위반 취소 청구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 A. 상표가 제30조 및 제32조를 위반하여 등록된 경우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 취소를 청구한 이해당사자가 상기 요건을 위반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 등록요건 위반 취소 청구의 효력 발생 시기

Q. 등록요건 위반 취소 청구의 효력 발생 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 A. 상표 등록의 취소는 등록일로부터 효력이 발생되므로 처음부터 등록이 없었던 것으로 본다.
- 상표 등록을 취소한다는 취지의 통지는 가능한 신속하게 하여야 한다.

■ 포인트 정리

이란 상표법 vs 우리 상표법	
공통점	차이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상표를 취소할 수 있음. - 상표가 취소되는 경우 상표 등록을 없었던 것으로 취급. - 청구인이 상표에 취소사유(무효사유)가 있음을 증명(입증책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나라 상표법상 무효심판은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이 청구할 수 있으나, 이란 상표법은 이해관계인만이 청구 가능 (주체적요건).
검 토	- 등록 받을 수 없는 상표가 등록된 경우 등록상표를 소멸시키기 위한 제도이다.

(2) 상표의 불사용 취소

사용하지 않는 상표가 등록된 상태로 계속 존재한다면 타인의 상표 선택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가 되므로 이에 대한 제재적 의미로 도입된 제도이다. 정당한 이유 없이 일정 기간 이상 등록상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청구할 수 있다.

■ 불사용 취소 청구의 요건

Q. 불사용 취소 청구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 A. 상표 소유자에 의하여 위임받은 자가 적어도 3년의 기간 동안 상표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 등록일부터 청구의 제출일 전 1개월에 이르기까지 3년 이상 상표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상표의 사용이 금지된 것이 입증되면, 등록은 무효로 되지 않는다.

■ 불사용 취소 청구의 효력 발생 시기

Q. 불사용 취소 청구의 효력 발생 시기가 궁금합니다.

- A. '등록의 무효(invalidation)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하여 해석상 소급하여 등록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 포인트 정리

이란 상표법 vs 우리 상표법	
공통점	차이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표권자 · 사용권자 · 위임받은 자 중 어느 누구도 등록상표를 사용하지 않을 것. - 적어도 3년 이상 계속하여 등록상표를 사용하지 않을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란 상표법은 등록일부터 청구의 제출일 전 1개월까지 3년 이상 사용하지 않을 것을 요하나, 우리 상표법은 취소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사용하지 않을 것을 요건으로 하여 시기적 요건의 차이가 있음.

	<p>- 이란 상표법은 취소가 확정되면 처음부터 등록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나, 우리 상표법은 취소심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소멸하는 것으로 보아 취소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의 차이가 있음.</p>
검 토	<p>- 등록 상표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은 동일하나, 상표를 사용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시기적 요건과 취소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의 차이가 있다.</p>

마 기타

기타	이란 상표법	한국 상표법
단체표장에 관한 규정	제42조, 제43조, 제45조	제36조제3항, 제119조제1항제7호
상표 사용권	제44조, 제50조	규정 없음
상호의 등록 및 사용	제46조, 제47조, 제49조	규정 없음

(1) 단체표장에 대한 규정

단체표장이란 단체표장권자가 직접 사용하거나 그 소속 단체원으로 하여금 사용할 수 있게 한 표장으로 권리주체와 사용주체가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상표권자만이 사용할 수 있는 상표권과 차이가 있다.

■ 상표에 관한 규정의 적용

Q. 상표에 관한 규정의 적용은 어떻게 되나요?

A. 이란 상표법의 제31조 내지 제41조의 규정들(상표에 관한 규정들)은 단체표장에 적용된다.

■ 단체표장 출원 방식

Q. 단체표장 출원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A. 단체표장 출원은 단체표장인 것을 표시하는 참조를 포함하여야 한다.

- 또한 단체표장의 사용을 규율하는 규정의 사본이 첨부되어야 한다.
- 단체표장의 소유자는 단체표장의 사용을 규율하는 규정에 대해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산업재산권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 단체표장의 등록이 무효로 되는 경우

Q. 단체표장의 등록이 무효로 되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A. 다음의 경우 단체표장은 무효로 된다.

- (a) 제41조에서 규정된 등록요건 위반 및 불사용 취소되는 경우.
- (b) 등록된 단체표장권자만이 표장을 사용하거나, 소유자의 사용 또는 사용에 대한 허락이 제42조 규정(단체표장의 사용을 규율하는 규정)에 위배된 경우.
- (c) 관련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 또는 다른 공통의 특성에 대해, 거래업자들 이나 공중을 기만할 수 있는 방식으로 단체표장권자가 표장을 사용하거나, 그 사용을 허락하는 경우.

■ 단체표장권에 대한 실시 계약

Q. 단체표장권에 대한 실시 계약은 어떻게 되나요?

A. 단체표장의 등록이나 그 출원은 실시 계약의 대상이 아니다.

■ 포인트 정리

이란 상표법 vs 우리 상표법	
공동점	차이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표에 관한 규정 적용. - 출원시 단체표장의 사용을 규율하는 규정의 사본 첨부(우리나라는 정관). - 단체표장의 실시권 설정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란 상표법은 단체표장의 부정사용에 대해 입증하면 단체표장 등록 무효로 하나 우리 상표법은 상표 취소심판 청구.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체표장은 일반적으로 상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나, 단체표장권자와 단체원들의 사용을 위한 것이므로 등록 및 사용에 제한이 있다.

(2) 상표 사용권(실시권)

■ 실시권 계약 일반

Q. 실시권 계약의 일반사항이 궁금합니다.

- A. 등록 상표나 그 출원의 사용에 대한 실시권 계약은 실시권자의 상품이나 서비스의 품질에 대한 실시 허락자의 효과적인 통제하에 있어야 한다.
- 상기 사항 위반 시 실시권 계약은 효력이 없다.

■ 실시권 계약 후 절차

Q. 실시권 계약 후 절차가 궁금합니다.

- A. 특허, 등록된 산업 디자인, 등록 상표 또는 그 출원에 대한 실시 계약은 산업재산권청에 제출되어야 한다.
- 산업재산권청은 상기 계약 내용을 비밀로 유지하며, 계약 내용을 기록하고 이에 대한 참조를 공개한다.

- 제3자에 대한 효력

Q. 제3자에 대한 효력이 궁금합니다.

A. 제3자에 대한 계약의 효과는 실시권 계약 절차가 완성되어야 발생한다.

(3) 상호의 등록 및 사용

우리 상표법은 상호 자체를 보호 대상으로 보지 않으며, 판례는 상호가 사용되어 수요자에게 영업의 출처로서 인식된 경우에만 서비스표의 사용에 준하여 판단한다. 이란 상표법은 상호도 상표법의 보호 대상으로 보므로 이슬람 율법, 공중 질서 등에 반하는 상호 등은 등록요건에 흠결이 있어 등록 받을 수 없다.

- 상호 소유권의 변경

Q. 상호 소유권 변경방법이 궁금합니다.

A. 상호의 소유권의 변경은 해당 상호에 의하여 특정된 기업 또는 그 일부의 이전과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par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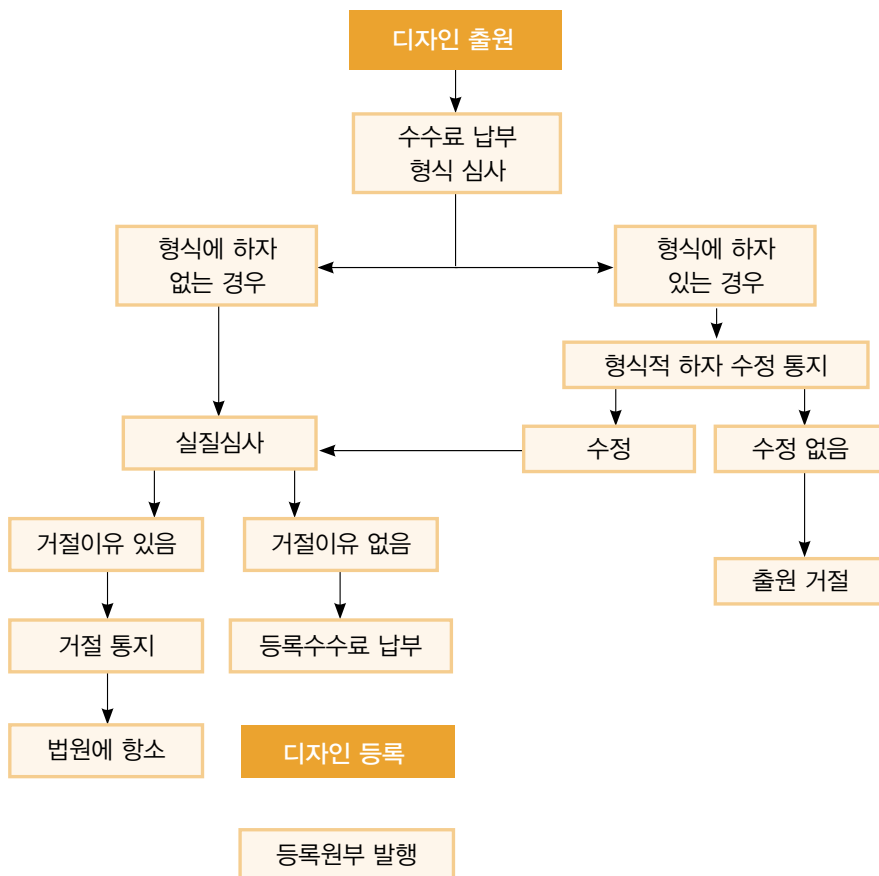
3

디자인의 출원 및 관리



가 출원절차 및 방식

〈 그림 III-12 〉 디자인 출원 흐름도



〈 표 III-3 〉 디자인관련 수수료 19)

항목	개인	법인
출원료(출원 또는 분할 출원)	50,000(1류) 2류 이상일 경우, 1류당 20,000 추가	150,000(1류) 2류 이상일 경우, 1류당 60,000 추가
1차 5연차료(1~5년)	1450,000(1류) 2류 이상일 경우, 1류당 100,000 추가	1,350,000(1류) 2류 이상일 경우, 1류당 300,000 추가
2차 5연차료(6~10년)	900,000(1류) 2류 이상일 경우, 1류당 200,000 추가	2,700,000(1류) 2류 이상일 경우, 1류당 600,000 추가
3차 5연차료(11~15년)	450,000(1류) 2류 이상일 경우, 1류당 100,000 추가	1,350,000(1류) 2류 이상일 경우, 1류당 300,000 추가
2차 5연차료(6~10년) 지연 수수료	200,000	600,000
3차 5연차료(11~15년) 지연 수수료	100,000	300,000
문의료(양도, 개발 라이선스, 면제)	50,000	150,000
등록료(계약 또는 비계약 양도)	300,000	900,000
등록료(개발 라이선스의 설정, 취소 또는 종료)	150,000	450,000
보정료(출원 및 부가서류)	25,000	75,000
등록료(출원의 양도 또는 개발 라이선스)	50,000	150,000
등록료(권리 양도와 개발 라이선스 외의 변경)	50,000	150,000
인증서 추가발급료	100,000	300,000
인증된 사본 발급료	5,000	15,000
수신료 (출원서 제출 확인 또는 특허 인증서 발급)	15,000	45,000
이의 신청료(등록 거절)	500,000	750,000
이의 신청료(등록 요청)	1,500,000	3,000,000
예치금(법원에 무효화청원 제출)	3,000,000	4,500,000
국제등록출원 조사료(수리관청)	50,000	150,000

비고 : 파리 협약(산업 재산권 일반 사무실의 산업 디자인 등록)을 준수하는 등록 기관에 바로 출원한 외국인 출원인은 상기 표에 해당하는 이란 리알(IRR)과 동일한 가치의 외국 통화로 지불해야 합니다.

19) 출처 : 이란 시행규칙(Executive regulation) 부록 1(Appendices 1)

〈 그림 III-13 〉 디자인출원서 양식 원문 ²⁰⁾

디자인출원서 양식 원문 Form-1

Industrial Designs Registration Declaration

(to be completed by the department)

Declaration No. date of receipt of the
 deceleration (hour, day, month and year)

Seal and signature of Patent Office

1- Particulars of applicant/applicants :

Natural person

Name, National Code No.

Address, postal code

Nationality

Country of residence

Tel No: Fax No: Email:

Legal entity

Name:, type of legal entity:, field of activity:.....registration place
 and No:

20) 출처 : 이란 시행규칙(Executive regulation) 부록 3(Appendices 3)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the industrial design:

6-acceptable exceptions for disclosure of the industrial design

Disclosure of design in formal local or international exhibit

the third party's abuse of the applicant or the previous owner's rights

7- Claim for right of priority (if any)

Name of country

Original declaration registration date

Original declaration No:

Industrial design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In case that the prior declaration is an international or regional declaration, determination of the department in which and the countries for which declaration has been submitted.

8- Request for delay in publication of registration notice

Does the applicant asks for delay in publication of notice yes

no

If yes, determination of term of delay in month

9-This declaration includes the following appendices:

Specifications of industrial design:

Five samples of graphical picture or

Five samples of the drawn design

Five samples of graphical picture or five samples of the drawn design in all aspects (three-dimensional plan)

Presentation of model (in case of request)

2- Documents relating to contents of the declaration:

Documents proving identity of the applicant

Legal representation documents

Document specifying position of the applicant

Document relating to disclosure of the design

Right of prior documents which have been confirmed by the source department

Request for not mentioning the designer's name

Receipt of declaration registration fee payment

Other documents

Signature of the applicant date

Nationality :domicile :head office :address:other
information : ..

Tel No: Fax No: Email:

2- Particulars of legal representative:

Name, National Code No.

Address, postal code

Tel No: Fax No: Email:

**3- Particulars of notices receiver in Iran (in case that the applicant is not
resident of Iran).**

Name, National Code No.

Address, postal code

4- Particulars of designer:

Complementary information about designer in case that he/she is applicant

Job and field of activity

Particulars of designer in case that that he/she is not applicant

Name, National Code No.

Address, postal code

Job and field of activity

Position of the applicant

5- Specifications of industrial design:

Brief definition of the industrial design

출원절차 및 방식	이란 디자인법	한국 디자인보호법
출원절차 일반	제22조	제37조제2항제3항
출원료 납부	제22조	제85조제1항
여러 디자인에 대한 단일 출원 제도	제24조	제41조, 제42조
디자인 공개의 연기	제25조, 제27조 d)	제43조
기한 연장	제57조	제17조제1항

(1) 출원절차 일반

■ 출원시 첨부 서류

서류명	참고 사항
출원 신청서	-
산업디자인이 사용될 제품의 종류 표시	-
도면	도면이나 사진 또는 충분한 그래픽 표현 첨부 필수
명세서	출원인이 창작자(디자이너)가 아닌 경우 함께 제출, 디자인 등록에 대한 출원인의 권리를 정당화하는 진술 첨부

■ 포인트 정리

이란 디자인법 vs 우리 디자인보호법	
공통점	차이점
- 도면 뿐만 아니라 필요한 경우 디자인의 사진 또는 견본 제출 가능.	- 이란법상 출원인이 창작자가 아닌 경우 명세서 첨부는 필수이나, 국내법은 모든 출원에 대해 디자인의 설명 및 창작내용의 요점을 기재할 것을 요구.
검 토	- 이란 디자인법은 출원인이 창작자가 아닌 경우에 대해서만 명세서 첨부를 필수로 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2) 출원료 납부

출원은 정해진 출원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산업디자인 출원시 기본 출원료는 50,000IRR이며, 2개 류 이상일 경우 1류당 20,000IRR 만큼의 비용이 추가된다 ²¹⁾ (개인 출원 기준).

(3) 특허에 관한 규정의 일부 적용

특허에 관한 규정 중 발명자 표시(제5조), 우선권주장(제9조), 출원일 인정 요건(제11조 c)), 디자인의 이용(제15조)에 관한 규정은 산업디자인에 그대로 적용된다.

(4) 여러 디자인에 대한 단일 출원 제도

■ 단일출원 요건

Q. 단일출원 요건은 무엇인가요?

A. 둘 이상의 산업디자인이 다음과 같은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단일출원 할 수 있다.

- (a) 동일한 국제 분류에 속하는 경우
- (b) 동일한 세트 또는 구성에 속하는 경우

21) Executive regulation of Patent, Industrial Designs and Trademarks Registration Law, Appendix 1

■ 포인트 정리

이란 디자인법 vs 우리 디자인보호법	
공통점	차이점
<p>- 절차 편의를 위해 여러 디자인이 동일한 국제 분류에 의하거나 관련성 있는 경우 하나의 출원으로 할 수 있음.</p>	<p>- 우리 디자인보호법상 복수디자인등록출원 제도는 같은 물품류에 속하는 물품에 대해 100이내의 디자인을 1디자인등록출원으로 할 수 있으나, 이란 디자인법은 개수에 대한 제한이 없음.</p> <p>- 우리 디자인보호법상 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 제도는 한 벌의 물품에 대한 구분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따로 규정되어 있으나, 이란 디자인법은 포괄적으로 규정함.</p>
<p>검 토</p>	<p>- 본 제도는 여러 디자인을 하나의 절차를 통해 출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등록요건 등에 대해 이란 디자인법에 구체적으로 규정된 바 없음.</p>

(5) 디자인 공개의 연기

원칙적으로 디자인은 등록시 공개되며, 등록 전이라도 출원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출원공개된다. 다만 등록 후에도 출원인의 요청에 의하여 공개 시기가 연기될 수 있다.

■ 디자인 공개 연기 절차

Q. 디자인 공개 연기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A. 출원인은 출원일 또는 우선권주장 출원의 경우 우선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디자인 공개 연기 요청을 하여야 한다.
- 상기의 요청이 있으면 산업재산권청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게재하여야 한다.
 - (a) 산업디자인 공개 연기 취지
 - (b) 등록디자인의 소유자
 - (c) 출원일
 - (d) 공개 연기 기간
 - (e) 그 밖의 특이사항
 - 디자인 공개 연기 요청이 있으면 산업디자인 등록 시 디자인의 표현이나 출원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는다.
 - 공개 연기 기간 내 등록된 산업디자인에 기한 법적 절차가 있는 경우 출원 및 등록원부에 포함된 정보가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되어야 한다.

■ 포인트 정리

이란 디자인법 vs 우리 디자인보호법	
공통점	차이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원인의 요청에 의해 공개시기 결정. - 디자인공보에 서지적 사항만이 게재되고, 비공개기간이 종료된 후 디자인이 공개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란은 출원일 또는 우선권주장이 있는 경우 우선일로부터 12개월 이내이나, 우리나라는 설정등록일로부터 3년의 기간을 정하여 비공개로 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음 (공개시기의 차이).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자인 공개의 연기는 모방이 용이한 디자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출원인이 공개시기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나 디자인 심사 및 등록

심사 및 등록	이란 디자인법	한국 디자인보호법
출원일의 결정 및 출원의 심사	제27조 a)	제38조제1항
	제27조 b)	제58조제1항
	제27조 c)	제65조제1항, 제89조제1항, 제88조1항, 제62조제1항
의견진술기회 부여	제58조	제63조제1항
출원의 취하	제26조	규정 없음

(1) 출원일의 결정 및 출원의 심사

■ 출원일의 결정

Q. 출원일의 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 출원서 제출시 출원인이 식별되고 디자인이 그래픽으로 표현되면 디자인등록출원의 출원일은 출원서가 산업재산권청에 제출된 날이다.

■ 출원의 심사

Q. 출원의 심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 디자인이 출원되면 산업재산권청이 이를 심사하여 거절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 거절이유가 없는 경우 디자인 등록 결정하고, 등록원부에 디자인이 게재되며, 디자인등록증이 디자인권자에게 교부된다.
-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 심사관은 디자인 등록 거절결정을 한다.

(2) 의견진술기회 부여

출원인의 절차권 보장을 위해 심사 과정에서 산업재산권청의 재량권 행사가 있는 경우 의무적으로 출원인에게 의견진술기회를 부여하도록 한다.

(3) 출원의 취하

출원인은 디자인 출원이 심사 중인 때, 출원을 취하할 수 있다.

〈 그림 III-14 〉 디자인등록내용 양식 원문

디자인등록내용 양식 원문 Form-2

Contents of Industrial Design Register

- 1- Industrial design registration No. and date :
- 2- Declaration registration No. and perfect date (hour, day, month and year) :
- 3- Particulars and share of owner/owners of industrial design :
 - Name:
 - Address:
 - Nationality:
- 4- Particulars of designer (in case that he/she is not applicant)
 - Name:
 - Address:
 - Nationality:
- 5- Particulars of legal representative
 - Name:
 - Address:
- 6- Specifications of industrial design.
 - Brief definition of the industrial design determining components to be used exclusively
 -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No.
 - Name and qualities of goods and classes of the design
- 7- Declaration or right of priority certificate registration No, date and place (if available)
- 8- Validity term of registration:
 - Signature (industrial design owner or his/her legal representative)
 - Signature (head of Industrial Design Registry)

다 디자인의 효력

디자인권	이란 디자인법	한국 디자인보호법
실시의 정의	제28조 b)	제2조제7호
허락에 의한 실시권	제28조 a)	제97조제1항, 제99조제1항
디자인권의 존속기간	제28조 d)	제91조제1항
디자인권의 무효	제29조	제121조제1항

(1) 실시의 정의

등록산업디자인의 실시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의미한다.

- (a) 산업디자인을 포함하는 물품의 제조
- (b) 상기 물품의 판매 또는 수입

■ 포인트 정리

이란 디자인법 vs 우리 디자인보호법	
공통점	차이점
- 등록 디자인의 실시 행위에 관한 규정 존재.	- 이란 디자인법은 물품의 제조, 판매, 수입을 실시행위로 정의하나, 우리 디자인보호법은 물품을 생산, 사용, 양도, 대여, 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물품을 양도 또는 대여하기 위하여 청약하는 행위를 실시행위로 봄.
검토 - 우리 디자인보호법은 디자인에 관한 물품을 생산, 사용, 양도, 대여, 수출, 수입하는 직접적인 행위뿐만 아니라 그 물품을 양도 또는 대여하기 위하여 청약하는 행위까지 실시행위로 보나, 이란 디자인법은 산업 디자인을 포함하는 물품의 제조, 판매 또는 수입행위만을 실시행위로 보아 실시의 요건을 좁게 해석한다.	

(2) 허락에 의한 실시권

등록 디자인권자는 그 디자인에 대해 독점적으로 사용할 권리를 갖는다. 제3자가 등록된 디자인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디자인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 포인트 정리

이란 디자인법 vs 우리 디자인보호법	
공통점	차이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자가 등록디자인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디자인권자의 허락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용실시권과 통상실시권이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음. - 법률의 규정에 의한 통상실시권 없음.
<p>검 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자가 등록디자인의 실시권을 가지는 경우 디자인을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으나, 전용실시권과 통상실시권에 대한 규정이 없어 실시권 효력의 범위가 문제된다.

(3) 디자인권의 존속기간

■ 존속기간의 갱신

Q. 존속기간의 갱신은 어떻게 되나요?

A. 이란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5년이다.

- 존속기간 만료시 수수료를 납부하면, 2회에 한하여 각각 5년의 존속기간 갱신이 가능하다.
- 수수료가 지연납부된 경우 일정한 과태료(fine)를 납부하면, 존속기간 만료일로부터 6개월의 유예기간 이내에 갱신 신청 가능하다.

■ 포인트 정리

이란 디자인법 vs 우리 디자인보호법	
공통점	차이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존속기간의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란 디자인법은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을 5년으로 규정하나, 우리 디자인보호법은 20년으로 규정. - 이란은 존속기간 만료시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 2회까지 연장이 가능(우리나라는 연장 불가).
검토	-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의 제한이 있다는 점은 동일하나, 그 기간이 서로 달라 디자인권 관리에 주의를 요함.

(4) 디자인권의 무효

신규성 등이 없는 디자인에 독점적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디자인권 인정 취지에 위배되므로 등록 후에도 디자인권의 무효를 청구하여 소멸시킬 수 있다.

■ 무효 사유

Q. 무효 사유에는 무엇이 있나요?

A. 디자인법상 보호 대상이 아닌 경우

- 단지 기술적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경우
- 신규하거나 독창적인 디자인이 아닌 경우
- 디자인권자가 창작자 또는 창작자의 적법한 승계인이 아닌 경우

■ 무효청구 절차

Q. 무효 청구절차가 궁금합니다.

A. 이해관계인이 무효를 청구할 수 있다.

- 무효 청구인이 상기 무효 사유를 입증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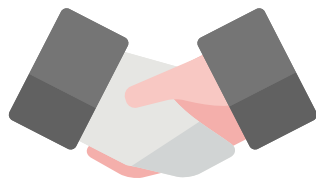
■ 포인트 정리

이란 디자인법 vs 우리 디자인보호법	
공통점	차이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록요건에 흠이 있는 경우 무효 청구 가능. - 디자인권자가 무권리자인 경우 무효 청구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란 디자인법은 이해관계인이 무효 청구 할 수 있으나 우리 디자인보호법은 이해관계인 및 심사관이 무효심판 청구인이 될 수 있음. - 이란은 법원에 디자인권의 무효를 청구하나, 우리나라는 특허심판원에 무효심판 청구. - 무효사유에 대한 차이(제한적).
검 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란의 경우 무효청구인의 범위가 우리나라보다 제한적이며, 무효청구 대상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다. - 이란은 후발적 무효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IV. 지식재산권의 분쟁 대응

1. 법원 체계
2. 민사적 구제
3. 형사적 구제
4. 지식재산권 분쟁 사례



part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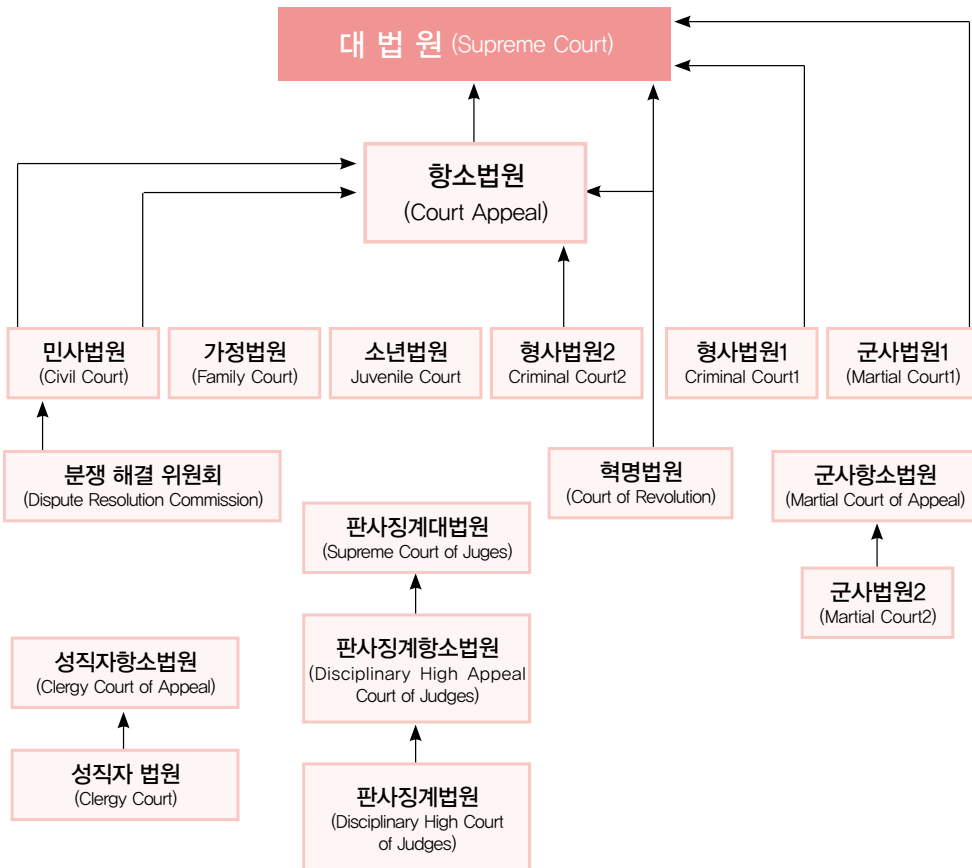
법원 체계



가

이란의 법원 체계도

〈 그림 IV-1 〉 이란의 법원 체계도



나

형사법원 구조

범죄 사건 측면에서 보면 형사 소송은 고소기관에서의 절차 진행 후에 소장이 법원에 제출됨으로써 시작된다. 주요 법원은 범죄법원 1 및 범죄법원 2가 있다. 그렇지만 다음의 법정도 범죄사건을 판단할 수 있다.

- 혁명법원 : 이슬람 이란공화국의 최고 리더를 모역하는 행위, 스파이 행위, 밀수행위, 범죄와 관련성이 있는 약의 유통 행위, 정부에 대한 음모 행위, 시스템에 대한 무장한 공격 행위, 내국 및 외국 방위에 대한 범죄 행위 등과 같은 특별한 범죄 행위를 담당하는 관할법원
- 미성년(Juvenile) 법원 : 어린이 및 청소년에 의한 범죄를 담당하는 관할법원
- 군사 법원(Martial Court) :
 - 군사법원 1
 - 군사법원 2
 - 군사 항소법원
 - 전쟁기간동안의 군사법원 1
 - 전쟁기간동안의 군사법원 2
 - 전쟁기간동안의 군사항소법원
- 일반 지방법원
- 성직자 특별법원

상기 법원의 결정에 대한 상소법원은 다음과 같다.

- 범죄법원 1의 상소법원은 대법원 임.
- 범죄법원 2의 상소법원은 항소법원 임.
- 혁명법원의 상소법원은 대법원 및 항소법원 둘다 가능함.
- 미성년(Juvenile) 법원의 상소법원은 항소법원의 특별부에서 처리함.

- 전쟁기간동안에 군사법원 1의 상소법원은 대법원이고, 군사법원 2의 상소법원은 군사항소법원임.
- 일반 지방법원의 상소법원은 항소법원임.
- 성직자 특별법원의 상소법원은 (별도의) 성직자 항소법원임.

항소법원 및 대법원에 의한 결정은 최종적이다. 다만, 반박할 수 있는 오직 하나의 예외적인 방법이 있는데, 이는 재심(Retrial)이라고 하며 재심은 2가지 종류가 있다.

- 특별 재심법원 : 사법부 수장이 법원에 의한 최종 결정을 검토하고, 상기 결정이 종교법(religious law)에 반한 것인지를 선언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사법부 수장은 대법원이 소송을 다시 검토할 수 있도록 재심을 허용할 수 있다.
- 일반 재심법원 : 재심 청구인은 상소 법원에 재심소장을 제출하고 재심의 적합성을 기재한다. 재심은 최종결정을 내린 법원과 동등한 다른 법원에서 다루어진다.

다 민사법원 구조 등

< 민사 법원의 구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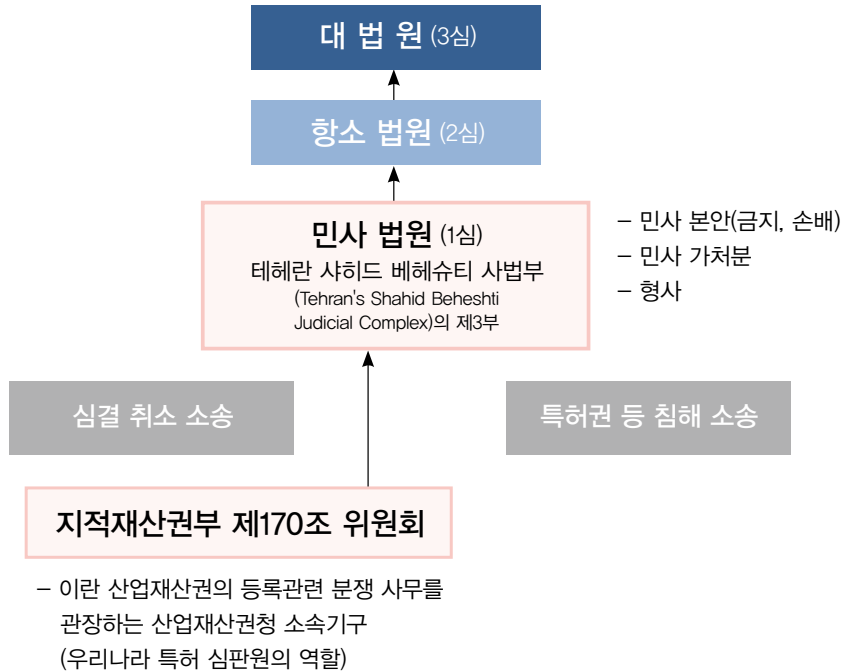
- 일반 민사법원
다른 법률에서 다루어지지 않는 모든 민사문제를 담당하는 관할 법원
- 가족법원
일반 민사법원 및 가족법원의 판결에 항소할 수 있는 법원은 항소법원이고, 항소법원에 의한 결정은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 다른 사법부, 행정부 및 유사 사법당국 >

- 분쟁 해결 위원회(일반 민사법원에 상소할 수 있는 결정)
- 노동법 위원회
- 등록관청(Registration Authorities)
- 판사 법원(Court of Judges)
- 변호사(대리인) 법원(Court of Attorneys)
- 행정법원(정부당국에 대항한 주장을 담당할 권한이 있는 유일한 공공 행정담당기관)

라 지식재산권 구제 절차

〈 그림 IV-2 〉 이란 지식재산권 구제절차



1. 개요

이란의 지적재산의 민, 형사 분쟁에 대한 관할법원은 하나이다. 이 관할 법원은 지적재산권 문제만을 다루고 있다. 현재 지적재산권 관련한 사건은 테헤란 샤히드 베헤슈티 사법부(Tehran's Shahid Beheshti Judicial Complex)의 제3부가 담당하고 있다.

이 법원은 지적재산권 분쟁과 관련한 제1심 법원이고, 또한 지적재산권부 제170조 위원회에 의한 결정에 대해 상소할 수 있는 법원이다. 즉, 이 법원은 위원회의 결정에 반대할 경우에 결정 통지일부터 60일 이내에 상소가 제기될 경우에는 법 제59조에서 규정된 관할법원으로써 상소법원이 된다.

제1심 법원의 판결에 대한 불복은 항소법원에 할 수 있으며 항소법원에 대한 불복은 대법원에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지적재산권 분쟁도 다른 민사적인 분쟁과 마찬가지로 3심급의 구제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2. 지식재산 관련 분쟁 해결을 위한 행정기관, 제170조 위원회(Article 170 Commission)

이란에서 산업재산권의 등록을 관할하는 기관은 산업재산권청이다. 특허 등의 등록에 관한 규칙 제170조에 의하여 산업재산권의 등록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이를 담당하는 기관은 산업재산권청 위원회(Commission)이다. 상기 위원회는 양 당사자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열리며, 그 밖에 조사할 필요성이 있거나 강제실시권 발생이 요구되는 때에도 그 권한을 갖는다.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1. 특허나 상표, 디자인의 등록 기관의 책임자(Head of Patent Office, Registry of Industrial designs or Registry of Trademarks)
2. 산업재산권청의 총 책임자를 대표하는 자(A representative on behalf of General Director of Industrial Property Office)
3. 필요한 경우 기관 외부에서 선정된 전문가

상기 구성원 중 산업재산권청의 총 책임자를 대표하는 자가 제170조 위원회의 회장이 되며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등록관청인 산업재산권청을 기속한다. 또한 위원회의 쟁점 사항과 관련하여 그 이전에 조사하였거나 관련된 자는 위원회의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없다.

제170조 위원회의 회장은 위원회 소집일로부터 10일 전 분쟁과 관련된 출원인이나 당사자 또는 그의 법적 대리인에게 위원회 소집 날짜, 시간, 장소에 대해 통지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결정이 부당한 경우 결정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산업재산법원(Intellectual Property Court)에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산업재산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항소법원(Iranian Court of Appeal)에 항소할 수 있다.

part

2

민사적 구제



(1) 개요

이란 특허, 산업디자인, 상표의 등록에 관한 법률(Patents, Industrial Designs and Trademarks Registration Act Of the Islamic Republic of Iran)은 특허, 상표, 디자인권에 대한 민사적 조치인 침해금지청구에 관하여 각각 제15조 b), 제40조 b), 제28조 c)를 규정하고 있다. 특허, 상표 또는 디자인권자는 자기의 발명 등을 독점적으로 실시할 권리를 가지며 제3자가 이를 허락없이 사용할 경우 침해금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때 민사법원(civil court)이 관할권을 갖는다.

권리자는 민사상으로 침해금지청구와 함께 손해배상, 침해품의 압류 등을 청구할 수 있다.

(2) 특허권 침해금지 청구

■ 특허권에 기한 침해금지청구권

특허권자는 제15조 a)에서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특허권 또는 그 밖의 특허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자에 대해 침해금지청구권 및 침해예방청구권을 가진다.

■ 특허발명의 실시(제15조 a)의 행위

제품(product)에 대한 특허인 경우

- (a) 제품의 제조, 수출 및 수입, 판매를 통한 제공, 판매 및 사용하는 행위
- (b) 제품의 판매를 통한 제공 또는 사용하기 위하여 그 제품을 보관하는 행위

공정(process)에 대한 특허인 경우

- (a) 공정의 적용
- (b) 공정에 의하여 직접 생산된 제품을 수출, 수입, 판매를 통한 제공, 판매 및 사용하는 행위

■ 포인트 정리

이란 특허법 vs 우리 특허법	
공통점	차이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허권자에게 침해금지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음. - 침해금지 청구를 법원에서 판단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란법상 간접침해 행위에 대한 규정이 없음.
검 토	- 이란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법원에 특허권 침해금지 청구를 할 수 있다.

(3) 상표권 침해금지 청구

■ 상표권에 기한 침해금지청구권

상표권자는 허락 없이 상표를 사용한 자(who infringes the Mark by using)에 대해 침해금지청구권에 대한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who performs acts which make it likely that infringement will occur)에 대해 사전적 조치로서 침해예방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침해금지청구권 행사 범위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뿐만 아니라 유사상표, 혼동을 초래할 만한 유사한 상품 및 서비스와 관련한 상표의 사용에 미친다.

■ 포인트 정리

이란 상표법 vs 우리 상표법	
공통점	차이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표권의 배타적 효력이 유사범위까지 미침. - 침해자에 대해 침해금지청구권 및 침해예방청구권 행사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란법상 간접침해 행위에 대한 규정이 없음.
검 토	- 이란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법원에 상표권 침해금지 청구를 할 수 있다.

(4) 디자인권 침해금지 청구

■ 디자인권에 기한 침해금지청구권

산업디자인권자는 동의 없이 제28조 b)에 규정된 행위를 하는 자 또는 장래에 침해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해 침해금지청구권 또는 침해예방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디자인의 실시

산업디자인의 실시는 산업디자인을 포함하는 물품의 제조, 판매 또는 수입을 의미한다.

■ 포인트 정리

이란 디자인법 vs 우리 디자인보호법	
공통점	차이점
- 제3자가 허락 없이 등록디자인 사용할 경우 침해금지청구권 및 침해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 경우 침해예방청구권 행사 가능.	- 이란법상 간접침해 행위에 대한 규정이 없음.
검토	- 이란 디자인법은 침해금지청구권에 대해서는 인정하나 직접침해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다.

part

3

형사적 구제



(1) 법원

이란의 특허권 침해에 대한 형사사건의 제1심 관할은 민사사건과 마찬가지로 테헤란 법원이 가진다. (제59조) 형사 사건의 심급은 민사 사건과 마찬가지로 3심으로 구성되고, 최종적으로 대법원의 판단을 받는다.

(2) 형사적 구제

특허권, 상표권, 산업디자인권 침해에 대한 형사적 구제방법으로는 벌금과 구금이 있다. 즉, 법 제15조, 제28조, 및 제40조에 의한 침해를 구성하는 행위 또는 제47조에서 규정된 불법적 행위를 고의로 행한 자는 10,000,000 Rial 내지 50,000,000 Rial의 벌금형에 처하거나, 91일 내지 6개월의 구금에 처할 수 있다. 벌금형과 구금은 둘 다 선고될 수 있다. 다만, 상기 벌금과 구금은 손해배상과는 별개로 인정된다.(제61조)

(3) 물건을 생산하는 제조방법 특허

특허권의 침해와 관련한 민사 소송상 진행절차로 특허가 물건을 생산하는 제조방법 특허로서 다음의 조건을 만족한다면 피고의 제품이 제조방법 특허에 의해 제조되지 않았다는 입증책임은 피의자가 진다.

i) 제품이 새롭다

ii) 침해 대상제품이 제조방법특허에 의해 제조된 제품과 실질적으로 유사하고 특허권자의 합리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침해 대상제품이 제조방법 특허를 사용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없다.

이때, 제조방법 특허와 관련하여 서류 및 증거 제출의 요구시 법원은 피고의 제조 및 영업상 비밀이 공개되지 않도록 노력해야한다.(제61조)

part

4

지식재산권 분쟁 사례

 IRAN

가

특허관련 사례

(1) 특허 유효 판단 사례 ²²⁾

〈 의료 및 유기 치료제분야의 특허 관련 〉

발명의 명칭인 “...의 완전한 유기치료제”인 특허를 이란 지적재산권부에 출원한 A는 법에 의해 요구되는 다음의 정보를 지적재산권부에 제공하였다.

‘구체적이고 충분한 설명과 함께 특허 청구항, 적절한 선행기술 관련한 법적상태, 특허의 개선사항, 종래의 기술적 문제, 해결방법, 주요 산업적용분야, 발명의 설명(출원서에 요구되는 행정적인 방법으로 발명의 명칭, 특허의 기술분야, 특허의 목적, 선행기술과 비교한 특허의 특징, 신규성 및 기술적 효과) 및 발명의 설명 요약서’

발명자는 출원서에 실험과 같은 의료상의 증거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발명자는 전문가에 의해 발행된 증명서에 근거하여 환자가 청구항의 치료제를 사용한 후에 치료되었다는 사실과 이 사실이 본 기술분야의 다수 전문 의사들에 의해 인정되었다는 사실을 주장하고 있다.

이 치료제의 신규성과 관련하여 출원인은, 그의 특허출원 전에 환자들은 화학적인 약품을 사용하여 단순히 고통이 완화되는 것에 만족하였으나, 본 발명을 통하여

22) 출처 : Bayan Emrooz Law Firm(이란특허법인), Mohammad Rahmani가 제공한 자료임

완전하게 관련 질병을 치료할 수 있게 되었고, 따라서 부작용을 동반할 수 있는 어떠한 화학적인 약품을 사용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특허등록부에서는 상기 정보 및 관련된 증거를 받았지만, 신규성(국제적 수준에서), 진보성(이 기술분야의 통상적인 기술자에 대한 특허의 비자명성) 및 산업상 이용가능성(산업분야에서 제조 및 사용되어질 가능성)을 지적재산부의 웹사이트(<http://www.ip.ssaa.ir.aspx>)의 기록을 참조하여 증명하기 위해 권한이 있는 의과대학에 자문을 요청했다.

지적재산권부는 이 특허출원을 행정상의 통지를 통해서 거절했다. 이에 출원인은 ‘2007 특허, 산업디자인 및 상표 등록을 위한 법’의 제58조에 의해 상기 거절결정에 대해 반박하였다. 이러한 반박으로, 출원인은 치료와 관련한 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의료 증거 및 서류를 제출하였다. 또한 출원인은 지적재산권부의 최초 진행절차 및 의과대학으로부터의 관련된 자문에 대해서 반박하였고, 출원된 치료제의 유용성 및 특허성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였다.

위원회는 다시 의과 대학(출원된 특허를 증명할 수 있는 역량있는 기관)에 자문을 요청했고, 이번에는 상기 의과대학에서 특허성이 있다고 확인해 주었다.

위원회는 ‘2008특허, 산업 디자인 및 상표 특허등록에 집행규칙(the Executive Regulation on Registration of Patents, Industrial Designs and Trademarks 2008’ 제28조에 의하여 전문기관에 의한 확인이 이루어졌으므로, 신규성과 진보성이 있다고 판단 하였다.

정부 또는 사적 관계자 또는 전공자 및 전문가가 신규성, 진보성 및 산업상 이용가능성에 대한 실질적인 특허성에 대해 그들의 의견을 등록기관에 제공할 것을 3개월 내에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은 집행규칙 제28조와 일치한다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

(2) 특허 침해 사례

원고 : A

피고 : B

원고주장 : 전문가 선임비용(변리사 비용)을 포함하는 특허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51,000,000 Rial 및 절차 진행에 소요된 비용을 청구한다.

반대소송(반소)

원고 : B

피고 : A

원고 주장 : 특허 등록의 무효

요약 : 원고 A의 대리인 C는 관련 서류 및 서면 위임장을 제출하였고, 등록 특허에 대하여 A가 배타적인 특허권을 가지고 있으며, B는 A의 등록된 특허권을 침해하였고, 침해로 인해 A에게 손해를 발생시켰다고 진술하였다.

피고 B의 대리인 D는 B의 제품은 이 분야의 전문가에 의해 생산되는 제 3의 회사의 제품을 카피한 제품으로, 원고의 제품도 동일한 출처(이 분야의 전문가 제 3의 회사의 제품)에서 카피한 것이므로, 신규한 특징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특허, 상표, 산업디자인 등록법'의 규정, 제1조, 제2조 및 제4조에 의해 원고의 등록 특허는 무효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와 반대로 원고 및 그의 대리인은 등록 특허는 피고가 언급한 제품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제품으로 특징을 인정받아 특허 등록을 받았다고 주장한다.

법원은 상기 원피고의 주장과는 달리, 소송에 제출된 증거자료, 서류, 당사자에 의한 주장 및 객관적 입장인 제3자, 이 기술분야 전문가의 의견에 의해, 피고의 제품과 발명은 다르며 또한 등록특허에 대하여 그 특허성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또한, 피고의 제품은 단순한 카피품이 아니며, 현저한 차이를 가지는 제품이라고 법원은 판시하였다.

결과적으로, 상기 언급한 법규정 제1조 및 제2조 및 민사소송법 제197조에 일치하여,

법원은 피고가 요구한 등록특허를 무효화하지 않았고, 또한, 원고의 제품과 피고의 제품 사이의 차이점 때문에, 특허침해는 없으며, 원고는 침해에 대해 손해 배상을 받을 권리가 없다고 판결하였다. 또한, 법원은 판결에 불복하고자 할 경우 통지일부터 20일내에 상소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판결에 대한 통지를 받은 원고는 항소법원에 항소를 하였다. 항소 법원은 제1심 법원에 의한 결정과 동일한 다음과 같은 결정으로 판결하였다.

객관적 입장인 제 3자, 이 기술분야 전문가의 의견에 의하면, 당사자들의 제품과 발명은 서로 다르다. 그러므로, 원고의 제품과 피고의 제품은 서로 다르기 때문에,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으며, 그러므로, 원고는 침해와 관련하여 손해 배상을 받을 권리가 없다. 또한, 원고의 특허는 피고가 주장한 것과는 달리 신규성 요구조건을 만족한다. 아울러 제품이 동일할지라도, 피고의 제품은 원고의 특허등록 전에 제조되었기 때문에, 원고는 피고에 대해 주장할 어떠한 권리도 보유하지 못한다.

결과적으로, 항소법원은 민사소송법 제348조에 의해, 절차적 위법, 관할위반, 법적근거 위반 없는 제1심법원의 판결을 유지한다고 판결하였다.

나 상표, 디자인 관련 사례

(1) 상표 무효 판단 사례 ²³⁾

후 등록상표가 선 등록상표와 유사하고, 후 등록상표의 권리자가 선 등록상표를 가진 기업의 대표자였던 사안.

원고 : A사

피고 : B사

23) 출처 : Bayan Emrooz Law Firm(이란특허법인), Mohammad Rahmani가 제공한 자료임

■ 사건 개요

2011년 B사의 상표(이하 상표B)가 산업재산권청에 등록되었으나, 이미 2009년에 등록된 A사의 상표(이하 상표A)인 유사상표가 존재하였다. 이에 A사는 법정기간 내에 산업재산권청에 대해 상표B 등록의 무효를 주장하며 이의를 제기하였다. 산업재산권청의 조사 위원회는 상기 이의 제기에 대해 A사가 상표A와 상표B의 유사성에 대해 제출한 증거 및 증명서 등을 조사하였으나,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이의 제기를 거절하는 결정을 하였다.

■ 제1심 법원(primary court of Intellectual Property)의 소송 과정

산업재산권청의 조사위원회 결정 이후 A사는 하기 쟁점 사항에 따라 산업재산권청 및 B사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였다.

- 원고인 A사의 상표는 2009년에 등록되었고, B사의 상표는 2011년에 등록되었으며, 양 상표는 유사함.
- 상표B는 상표A와 문자가 유사하며 상표의 형태와 구조가 같아 식별력이 없어, 결과적으로 수요자의 혼동 유발.

또한, 상표A 등록 전 B사의 대표는 A사의 대표자였으며, 대표 관계 종료와 함께 상표B가 등록됨. 이는 신뢰관계의 결핍을 보여줌.

법원의 판단

양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 및 답변서 등에 기초하여 법원은 상표의 유사성 및 양 당사자가 제공한 상표가 부착된 상품의 유사성을 인정하였고, 이에 원고 승소 판결함.

■ 항소법원의 판단

1심 법원의 판결 이후 B사가 항소법원에 항소 하였으나, 항소법원은 항소를 기각하여 제 1심법원의 판결이 확정됨.

■ 상표법 관련 조문

제32조 a

한 기업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다른 기업의 상품이나 서비스로부터 식별할 수 없는 경우.

제32조 e

또 다른 기업의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대해 이란에서 잘 알려진 상표 또는 상호의 번역을 구성하거나,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하거나, 또는 동일한 경우.

제32조 g

동일한 상품이나 서비스 또는 관련성에 기인하여 오인시키거나 혼동을 초래할 수 있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우선권이나 선행 출원일을 가진 다른 소유주의 이름으로 등록된 상표와 동일한 경우.

(2) 상표 이의신청 사례

출원인 : A

이의신청인 : B

■ 사건 개요

A는 “My Land”라는 상표를 산업재산권청에 출원하면서, 상표와 지정 상품 및 서비스의 다양한 측면에 대해 서술하고,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다. 그러나, 산업재산권청은 출원상표가 이미 등록된 차(tae), 토마토 페이스트(tomato paste)에 대한 상표와 유사함을 이유로 등록받을 수 없음을 통지하였다. (다만, 설탕, 쌀 등의 상품에 대해서는 등록 가능.)

이에 A는 차, 토마토 페이스트를 지정상품에서 삭제 후 출원절차를 계속 진행하였으며, 산업재산권청에 대해 출원 상표를 등록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출원공고 결정에 대한 공보가 발행된 이후, B(차, 토마토 페이스트에 대한 등록상표 소유주)는 상표법 제30조, 제32조를 이유로 이의신청을 함과 동시에 등록절차를 중지할 것을 요청하였다.

특허 등에 관한 규칙 제124조에 따라 산업재산권청은 B의 대리인에 의해 제기된 이의신청을 출원인 A에게 통지하였으며, A는 상기 규칙 제125조에 의해 이의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결국 B는 통지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최종 이의신청서(final objection)를 제출할 것을 통지받았고, B의 대리인은 관련된 모든 증거를 첨부하여 최종 이의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였다. 상표부의 책임자이자 위원회의 구성원인 Mr. Bayat는 산업재산권청의 관리책임자(Managing Director of the Bureau)인 Mr. Kiani에게 상기 최종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다.

■ 위원회의 판단

A는 페르시아어와 영어로 구성된 “My Land” 라는 상표를 쌀, 식용 오일, 설탕, 주식 또는 향신료 등에 대해 등록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위원회는 상표 “My Land”를 구성하는 “My”와 “Land”는 각각 다른 단어와 함께 상표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고 상기 상표들은 각각 다른 상표권자들에 의해 등록되어 있어, 경험칙 상으로 어떠한 혼동들을 유발하는 것이 아니므로, 특허 등에 관한 규칙 제121조를 고려할 때 등록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3) 디자인 무효 판단 사례

원고 : A

피고 : B(1차 피고), 산업재산권청 디자인부(2차 피고)

■ 무효심판 사건

증거 : 현지 주민들의 증언, 디자인 샘플, 특허 등록에 관한 서류, 2차 피고(second defendant)와의 서신 교환, 협회(Union)의 편지.

요약 : 원고측 대리인으로부터 제출된 탄원서에 따르면, 1차 피고의 산업 디자인이 등록 전부터 시장에서 사용되어 왔으며, 상기 피고는 그 제품의 디자이너일 뿐만 아니라 생산자이기도 하였다. 따라서 산업 디자인의 등록 및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서의 “신규성” 즉, 특허 등의 등록에 관한 법률 제4조 (e) 및 제21조 위반을 이유로 하여 산업 디자인의 등록을 무효로 하여 줄 것을 법원에 청구하였다.

원고측 대리인의 상기 주장에 대해 피고측 대리인은 산업 디자인이 등록되기 전 공지되었다는 사실을 부정하였으며, 공지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그 제품을 처음으로 생산한 자이므로 상기 디자인은 독창성이 있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양 당사자의 대리인들은 주장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현지 주민들의 증언을 증거로 제출하였다.

양 당사자로부터 제출된 증거 조사 및 증거의 확정 이후 법원의 판단은 아래와 같다.

■ 제 1심 법원(Primary Court)의 판단:

1차 피고의 자백에 따르면 본 청구의 대상인 산업 디자인의 제품은 1981년에 생산되었으며, 이에 법원은 특허 등의 등록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1조에 따라 상기 산업 디자인의 등록 전 공지로 인하여 신규성과 독창성을 상실하였다고 판결하였다. 따라서 본 산업 디자인은 특허 등의 등록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1조, 제29조에 따라 무효로 되었음을 선언하였다.

■ 피고의 항소 제기

선고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법원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피고는 항소장 제출 및 수수료를 납부함으로써 항소를 제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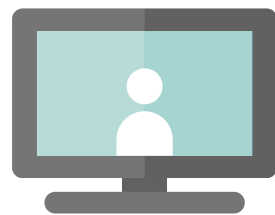
■ 항소법원(Court of Appeal)의 판단

제 1심 법원의 판단은 부당하여 이를 기각한다. 특허 등의 등록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르면 디자인은 신규성 및 독창성을 갖춘 경우 등록받을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디자인이 등록 전 공지되어 신규성을 상실하였더라도, 협회(Union)의 편지 등과 같은 증거에 의해, 디자이너(창작자)가 다른 디자인 등을 모방하지 않았다는 점 및 디자이너의 혁신적인 창작물이라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특허 등의 등록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독창성이 인정되며, 법적으로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



V. 현지 대리인 정보

1. 이란 Patent Attorney 정보
2. 이란 대리인 비용



part

1



이란 Patent Attorney 정보

MIRAK IP

홈페이지	www.iranright.com
주소	Unit 39, No. 9, Shohada Alley, Mirzaye Shirazi Street, Tehran 15867-55937 Iran.
연락처	(전화) +98 21 8810 3218 (팩스) +98 21 8810 6501 (이메일) Info@iranright.com
부가정보	주요고객 : ZIPPO, Middle East Bank ,smiley, CARPEX, HAILUN, PETROF, VOICE ,UPLAND, SUPERPIPE
특기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테헤란, 이란에 본사를 둔 기업 - 상표, 특허, 라이선싱, 저작권 영업 비밀, 노하우와 기술정보 관련 컨설팅 업무를 제공 - 라이선스 사용, 특허, 상표, 디자인, 저작권 보호를 위한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 - 한국 기업과 프로젝트 진행 경험이 있음

Tehran International IP Law Firm	
홈페이지	www.iraniplawyer.com
주소	Suite 5, 2nd Fl., 30 Magnolia Alley, Off Ghaem Magham St, Tehran 15886-13913
연락처	(전화) +98 21 8831 9672 (팩스) +98 21 8882 3698 (이메일) info@amirshahilaw.com
특기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적재산권 관련 모든 업무를 제공 - 이란 사업체와의 협력 및 합작 투자를 구성 - 회사의 청산 및 해산 - 개인조사, 위험 분석 및 관리

Law Offices of Pouyan, Aghababian & Co.

홈페이지	www.iranlaw.com
주소	Ave. Djomhuri, Nowbahar Street, Rostami Jahed, No. 1, Postal Code 11358 Tehran - Iran
연락처	(전화) +98 21 6670 1131 (팩스) +98 21 6671 9119 (이메일)
특기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19년에 설립 - 지적재산권 관련 업무 - 상업 법률, 기업관련 법률, 합작 투자, 사법 관련 서비스 제공 - 세금 및 금융 컨설팅 서비스 - 영어, 페르시아어 가능

ABARDAD Law Office	
홈페이지	www.abardad.com
주소	Azari Street, Hafte Tir Square, Suite No. 5, 3rd Floor, No. 17 Tehran - 15568-35311 - IRAN IRAN
연락처	(전화) +98 21 8832 1684 (팩스) +98 21 8832 0623 (이메일) info@abardad.com
특기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표 : 검색, 제출, 등록, 갱신, 할당, 합병, 이름 변경, 주소 변경, 분쟁, 취소 - 특허 : 검색, 등록, 연차료, 할당, 합병, 이름 변경, 주소 변경, 취소 - 산업디자인 : 등록, 연차료, 할당, 이름 변경, 주소 변경, 합병

Z.A. AFSHARI LAW FIRM

홈페이지	www.iranmark.com
주소	First Floor, No. 20, 79 Square, Narmak, Tehran-Iran Postal Code: 16458-34162
연락처	(전화) +98 21 7728 9751 (팩스) +98 21 7728 9584 (이메일) ip@iranmark.com
특기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2년에 설립 - 소속 변호사들 모두 이란 중앙변호사 협회 회원 - 주로 이란 지적 재산권 법의 분야에 종사하고 있음 - 특히, 상표, 산업디자인, 도메인 이름 분쟁, 라이선싱, 연차료, 갱신 서비스, 민사/형사 소송 관련 서비스 제공

LAW OFFICES OF J. BOKHARAI & ASSOCIATES	
홈페이지	www.bokharai.com
주소	Suite No. 5, 3rd Floor, No. 17 Azari Street, Hafte Tir Square, Tehran - 15568-35311 - IRAN
연락처	(전화) +98 21 8834 4752 (팩스) +98 21 8832 0623 (이메일) jbekh@safineh.net
특기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73년에 설립 - 지적재산권 관련 업무 - 외국인 투자 - 석유 및 가스 법률 - 외국 협력 및 합작 투자 - 특허 및 상표 출원과 관련된 법적문제 해결

MILANI Law Firm

홈페이지	www.milanilawfirm.com
주소	38, 1st Floor, Building No.1 (No. 1948) Vali-Asr St., Intersection of Dr. Fatemi St. Tehran, Iran Postal Code:14316-94938
연락처	(전화) +98 21 8895 4849 (팩스) +98 21 8895 7277 (이메일) info@milanilawfirm.com
특기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파트너 변리사 두명 - 상표등록, 상표갱신, 상표 전송 및 할당, 상표 소유자 이름, 분류 및 주소 변경, 상표 라이선스, 상표 검색, 상표권, 상표 관련 조사, 상표 법원 기소 - 특허등록, 특허 이전 및 할당, 특허 소유자 이름 및 주소 변경, 특허 라이선스, 특허 검색, 특허 연차료, 특허 관련 조사, 특허 법원 기소 - 산업디자인 등록, 산업 디자인 전송 및 할당, 산업 디자인 소유자 이름 및 주소 변경, 산업 디자인 라이선스, 산업 디자인 검색, 산업 디자인 관련 조사, 산업 디자인법원 기소

RASSEM M. ABOU NAJA IP	
홈페이지	www.abounaja.com
주소	Al Huda Building No.42, Suite 101 55 Street, Al Garhoud, Dubai United Arab Emirates PO Box 5337
연락처	(전화) +97 1 4 282 2677 (팩스) +97 1 4 282 0066 (이메일) iran@abouanaja.com
특기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82년에 설립 - 35년 이상의 IP 경험 - 상표등록 250,000건 이상, 특허 및 디자인 100,000건 이상 - 두바이 최초의 IP사무소 - 세계에 21개의 IP 사무소를 지님 - 상표 관련 업무 - 특허 관련 업무 - 산업디자인 관련 업무

Reza Badamchi & Associates

홈페이지	www.iranipright.com
주소	No 5 (Suite 305), 3th St., Kooheh Noor St., Motahari Ave., Tehran 15876-67144, Iran.
연락처	(전화) + 98 21 8854 3403 (팩스) + 98 21 8854 1684 (이메일) info@iraniprights.com
특기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역 마크 관련 업무 - 특허 관련 업무 - 산업 디자인 관련 업무 - 도메인 이름 및 사이버스쿼팅 관련 업무 - 소송 관련 업무

ALEXANDER AGHAYAN & ASSOCIATES	
홈페이지	www.aghayan.net
주소	73, Sarhang Sakhaee Avenue, Tehran 11354 ,Iran
연락처	(전화) +98 21 6670 5056 (팩스) +98 21 6670 4858 (이메일) info@aghayan.net
규모	주요고객 : 30년 이상의 경력, 3,000명 이상의 고객을 지니고 있음 30,000건 이상의 특허 및 상표를 출원하였으며 이는 이란 출원건의 35%를 차지함
특기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표 관련 업무 - 특허 관련 업무 - 도메인 관련 업무 - 라이선스 관련 업무 - 아프가니스탄, 중동, CIS 국가 현지 에이전트를 통해 IP 서비스를 제공

Educated Lawyers

홈페이지	www.educatedlawyers.com
주소	Unit,1, NO.1, Zagros Street, Emad Moghnieh Street, Arjentina Square Tehran, Iran
연락처	(전화) +98 21 4446 0579 (팩스) +98 21 4446 0579 (이메일) office@educatedlawyers.com
규모	파트너 변리사 : 20명
부가정보	주요고객: World Bank, Arsene Taxand Law Firm , OBS Group, Almas Rayan Iranian, Sojitz Corporation Tehran, Tose Khodrokar, Tose Tejarte Rayane Khavarmiane, Gostaresh Tejarate Parse Saba, Tosee Rayane Sabze Shomal, Kosar Economic Organization, Ansar Bank, Shar Aftabe Kish, Chini Mahneshan, Araz Newspaper, Kheirieh Davazdah Emam
특기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3년에 설립 - 모두 이란 변호사 협회 조합의 회원 - 한국어 가능 직원 X - 이란비즈니스 카드가 있을 경우, 2,000유로의 대리비용, 200유로의 관리비용 필요 - 이란비즈니스 카드를 얻기 위해서는 1,500유로가 필요

Raysan Patent & Trademark Agent	
홈페이지	www.iran-tm.com
주소	Suite 5, Building 523, North Felestin, Tehran 14158-63576, Iran
연락처	(전화) (+98 21) 88 90 89 11 (팩스) (+98 21) 88 90 93 51 (이메일) info@iran-tm.com
특기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75년에 설립됨 - 지적재산권 취득 및 보호 - 상표, 특허, 디자인 검색 서비스 - 상표, 특허, 디자인 모니터링 서비스 - 영어, 페르시아어 가능

Mahmoud Ebadi Tabrizi & Associates

홈페이지	www.e-tabrizi.com
주소	58 Shadab St, Nejatollahi Avenue Tehran 15989 Iran
연락처	(전화) +98 21 8890 5179 (팩스) +98 21 8890 7083 (이메일) IP@etabrizi.com
규모	파트너 : 3명 직원 : 6명
부가정보	<p>주요고객 :</p> <p>World Bank, Slzgitter Mannesmann Handel GmbH, Germany Imperial Chemical Industries I Cl, UK, NewCo Car S.r.l, Italy Beauty Business Holding s.p.a, Bergamo, Italy Motion Pictures Arts Science, California, USAThe Coca-Cola Company, Atlanta, USA, Council of Science and Industrial Research, India Daewoo Electronics Corporation, South Korea Degussa AG, Dusseldorf, Duracell Batteries BVBA, BelgiumETI GIDA SANAYI VE TICARET AS, Turkey, Federal Electric Investment & Co., Turkey</p>
특기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76년에 설립 - 이란 중앙 변호사 협회, 이란 바 협회 연합, 국제 변호사 협회, 국제 상표 협회의 일원 - 정부 소송 및 중재, 기업 및 금융분야 전문 - 기업 및 상법, 운송, 보험, 해외 투자, 특허, 상표, 라이선스, 영업 비밀, 산업 디자인 및 침해 등 다양한 분야 서비스 제공

Law Offices of Albert Bernardi & Associates

홈페이지	www.bernardi-lawfirm.com
주소	Suite # 6, No.1 8 Fajr Street (Djam) , Motahari Avenue Tehran 15896 Iran
연락처	<p>(전화) +98 21 8831 0291 (팩스) +98 21 8882 9045 (이메일) info@bernardi-lawfirm.com</p>
특기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립된지 50년이 지난 법률회사로 경험이 풍부함 - 기업합작투자 - 라이선스 관련 업무 - 금융, 산업재산권, 투자 계약 등 - 특허 관련 업무 - 상표 관련 업무

Law Offices of Dr. Hassan Amirshahi & Associates

홈페이지	www.amirshahilaw.com
주소	2nd Fl., Unit 5, No. 30, Magnolia St., Off South Qaem Maqam Farahani St., Tehran, Iran
연락처	(전화) +98 21 8831 9672 (팩스) +98 21 8882 3698 (이메일) info@amirshahilaw.com
규모	직원 : 10명
특기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랑스어, 영어, 아랍어, 페르시아어 가능 - 상업, 항공 및 해상 법률, 보험, 사회보장 서비스 제공 - 세금 및 노동 법률 서비스 제공 - 지적 재산권 관련 업무 - 소송 관련 업무 - 컨설팅 관련 업무

J. Nouraei & M. Mostafavi Law Offices	
홈페이지	www.nourlaw.com
주소	West Apartment, First Floor, No 2 Building, Corner of Mostoufi Ave. & 33 St., Yousefabad P.O. Box: 15815-1456 Tehran, IRAN
연락처	(전화) +98 21 8870 1434 (팩스) +98 21 8871 8412 (이메일) nourlaw@nourlaw.com
특기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송 관련 업무 - 시장 연구 및 상태 보고서 - 대표 및 지사의 등록 - 특허, 상표, 산업디자인의 등록 - 중재 및 중재를 통한 분쟁 해결 - 기업 합작 및 청산 - 민사/형사 소송

Hengam Legal Services

홈페이지	www.hengamlaw.com
주소	Unit 8, No. 293, Yousef Abad, Tehran, Iran
연락처	(전화) +98 21 2242 8545 (팩스) +98 21 8978 0070 (이메일) info@hengamlaw.com
규모	변리사 수 : 7명 특허 전문 변리사 : 2명
부가정보	주요고객 : microsoft corporation
특기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P등록 관련 업무 - 소송 관련 업무 - 상표 관련 업무 - 특허 관련 업무 - 산업디자인 관련 업무 - 한국어 가능 직원 X

Bayan Emrooz Law Firm	
홈페이지	bayanemrooz.com
주소	No. 11 (U 8), West Ghobadian St., Africa Blvd. (Jordan Ave.) Tehran - Iran 1968936711
연락처	(전화) +98 21 8819 3854 (팩스) (이메일) Info@bayanemrooz.com
규모	파트너 : 2명 직원 : 2명 컨설턴트 : 1명
특기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적재산권 관련 업무 - 전자 상거래 관련 업무 - 외국인 투자 - 항공법 관련 업무

Dastani & Associates, Inc

홈페이지	www.dastanilaw.com
주소	12 Vira Dead-end, Suite 19 Shariati St., (South of Hosseinieh Ershad) Tehran 19479-43774, Iran
연락처	(전화) +98 21 2288 6767 (팩스) +98 21 2288 6768 (이메일) info@dastanilaw.com
부가정보	주요고객 : TOYOTA, PORSCHE, ASTON MARTIN, HYUNDAI, KIA, SAMSUNG, LG, ORACLE, GOLDMAN SACHS, AFC, LEVI'S, CATERPILLAR, LINDT, ETS, EMIRATES, EBAY, ALIBABA, GIVENCHY, UNDER ARMOUR, DROPBOX, NINTENDO, HUAWAI, KENWOOD
특기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2년 이란의 올해의 기업으로 선정됨 - 지적 재산권 관련 업무 - 도메인 등록 - 산업 디자인 관련 업무 - 특허 관련 업무 - 상표 관련 업무

Homa International Law Firm	
홈페이지	www.homa-intlawfirm.com
주소	Apartment 42, 4th Floor, No.42, Saba Boulevard, Africa Boulevard, Tehran, Iran.
연락처	(전화) +98 21 2205 1260 (팩스) +98 21 2205 1494 (이메일) info@homa-intlawfirm.com
특기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 및 유통 계약 - 건설과 엔지니어링 - 에너지법 - 외국인 투자

International Law Office Dr. Parviz Savrai and Associates

홈페이지	www.iran-attorney.com
주소	703, 7th Floor, Borje sefid, Pasdaran Avenue, Tehran, Iran, 19469-63758
연락처	(전화) +98 21 2259 0785 (팩스) +98 21 2256 9524 (이메일) savrai@iran-attorney.com
특기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5년에 설립 - 페르시아어, 영어, 프랑스어 가능 - 이란 변호사회 회원, 사회 법률 연구 협회 회원(영국) - 특허 관련 업무 - 저작권 관련 업무 - 지적 재산권 관련 업무 - 국제 상업 거래, 국제 무역, 국제 입찰, 외국인 투자, 이란 투자, 회사 법률 - 국제 석유 및 가스 법률, 국제 형사 법률 - 디자인 권리 관련 업무

IRCLS - Hendizadeh & Associates	
홈페이지	www.ircls.com
주소	No. 45, Chehrazi Street (Rahimi), Vali-asr Ave., Tehran , Iran 19679-36981
연락처	(전화) +98 21 2205 9530 (팩스) +98 21 2203 4600 (이메일) info@ircls.com
규모	파트너 변호사 : 12명 직원 : 2명 컨설턴트 : 2명
특기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77년에 설립 - 상업 법률, 세무, 이민 기업 및 비즈니스 법률 - 통신 및 정보 기술 - 부동산 관련 업무 - 소송 관련 업무 - 지적 재산권 관련 업무

Law Office of Gheidi & Associates

홈페이지	www.gheidilawoffice.com
주소	No. 317, Padideh Building 47, Sarafraz, Beheshti (Abbas Abad), Tehran, Iran- 1587696411 PO Box 15875-6941
연락처	(전화) +98 21 8817 1982 (팩스) +98 21 8854 0811 (이메일) info@gheidilawoffice.com
특기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 법률 사무소 Jipyong과 협력 계약 - 이란 중앙 변호사 협회 회원 - 영어, 페르시아어 가능 - 노동법 관련 업무 - 소송 관련 업무 - 지적 재산 관련 업무 - 외국인 투자 관련 업무

Noban Law Office	
홈페이지	www.nobanlaw.com
주소	Unit 15, No. 6, Del'baste Alley, before Saiee Park, Valiasr Ave., Tehran, Iran
연락처	(전화) +98 21 8855 3890 (팩스) +98 21 8810 4735 (이메일) info@nobanlaw.com
규모	변리사 : 5명
특기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및 국제 등록 서비스 제공 - 특허, 실용신안 출원, 특허 검색 서비스, 특허 관리 서비스 - 상표 검색, 상표 출원, 라이선스 및 계약 - IP 조정 및 중재, 지리적 표시, 식물 품종 관련 서비스 - 저작권 및 소프트웨어 제품

Olya International Law Office

홈페이지	olya.ir
주소	Suite 1, 1st Floor, #28, Rachel Kouri St., Khaled Istambuli St. (Vozara), 15149-13636, Tehran, Iran.
연락처	(전화) +98 21 8879 8364 (팩스) +98 21 8608 2435 (이메일) info@olya.ir
특기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77년에 설립 - 지적 재산권 관련 업무 - 에너지, 석유, 가스 관련 업무 - 교통법 관련 업무 - 회사 및 기업 법률 서비스 - 보험 법률 관련 서비스 - 운송법 관련 서비스

TEHRAN TM Patent & Trademark Agents

홈페이지	www.tehrantm.com
주소	Unit 39, No. 9, Shohada Alley, Mirzaye Shirazi Street, Tehran 15867-55937 Iran.
연락처	(전화) +98 21 8810 3218 (팩스) +98 21 8810 6501 (이메일) info@tehrantm.com
특기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적 재산권 관련 업무 - 도메인 관련 업무 - 상표 관련 업무 - 특허 관련 업무 - 저작권 관련 업무 - 디자인 관련 업무 - 소송 및 위조 방지

Orim International Law Firm

홈페이지	www.orimlaw.com
주소	2nd Floor, No.11, 7th Street, Koohe Noor Avenue, Motahari Avenue Tehran Iran
연락처	(전화) +98 21 8873 5772 (팩스) +98 21 8873 5710 (이메일) info@orimlaw.com
규모	변리사 : 6명 직원 : 6명 컨설턴트 : 3명
부가정보	<p>주요고객 :</p> <p>Aigner, Adidas, Air Asia, BP (British Petroleum), BBC (British Broadcasting Corporation), Brabantia, Castrol, Carlsberg CFC (Chelsea Football Club), Chivas Regal, Cummins, Easy Group Hang Ten, Heidelberg, Heineken, Hershey Chocolates, Honeywell, HTC, Ingersoll-Rand, Hyundai Motors, L'Oreal Cosmetics, Mac Cosmetics/Estee Lauder, M&S (Marks & Spencer) Mars Inc. Nestle, Nikon, Nokia, Piaget, Philipp, Plein, Prada, Roberto Cavalli, Red Bull, Samsung Electronics, Siemens, Starbucks Coffee, TGI Friday's Restaurants, Toni & Guy, Unilever US Robotics/Unicom Global, VeriSign, Wrigley</p>
특기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적 재산권 관련 업무 - 특허 관련 업무 - 디자인 관련 업무 - 20년 경력의 지적재산권 및 상업법 경험을 가진 변리사 보유 - 10년 이상의 지적재산권 경험을 가진 상표 변호사 보유 - 40년 이상의 법률경험을 갖고 있는 변호사 보유

ESK law firm	
홈페이지	www.esklawfirm.com
주소	Unit 9, Third floor, #6, Goba Building, Goba Alley, Shariati St, Tehran, Iran.
연락처	(전화) +98-21-77152141 (팩스) +98-21-22857399 (이메일) info@esklawfirm.com
규모	변리사 : 4명 직원 : 3명 컨설턴트 : 3명
부가정보	주요고객 : THE WORLD BANK, Credit EuropeBank, BLACKMORES, christof industries, PROTON, LC WAIKIKI, CODE TECHNOLOGIES, AFRIDI & ANGELL, Olivellas S.A, Fawaz Alhokair Group, Fuburg, JSC Zarubezhgeologia, Oiltanking, APA-Fashion, Subsolar, Hesburger, Balasore Alloy, ArcelorMittal, One world, GWA, Gulla Law Office, EnergyNet, Kemin, SSW SCHNEIDER SCHIFFER WEIHERMULLER, China Petroleum Pipeline Bureau, Hero MotoCorp Ltd, Fichte & Co Legal Consultancy.
특기사항	- 국제 무역 법률, 산업 에너지 분야, 석유 및 가스 수출입 분야, 국제 투자분야 - 한국어 가능 직원 X

part

2

이란 대리인 비용 ²⁴⁾



가

AGIP 특허, 디자인, 상표 대리 비용

1. 특허

ITEM	officail fees	professional fees	VAT	Total Charges(USD)
Search for a patent	0	265	0	265
Copy per page	0	1	0	1
6Courier charges	0	50	0	50
Filing a patent application	15	535	0	550
Late filing of documents	30	55	0	85
Filing a mark application up to registration	0	275	0	275
Priority claim	0	145	0	145
Translation of document per page	0	65	0	65
Nominal working of a patent	0	370	0	370
Recording an assignment against a registered patent	165	425	0	590
Payment of the annuity for the 2nd year	50	100	0	150
Payment of the annuity for the 3rd year	50	100	0	150
Payment of the annuity for the 4th year	50	100	0	150
Payment of the annuity for the 5th year	50	100	0	150

24) 본 자료는 현지 사무소 자료 수집일(2016.9.20)기준으로 작성된 것이며, 변동 사항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 보고서 편찬·주관·수행 기관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힙니다.

Payment of the annuity for the 6th year	100	90	0	190
Payment of the annuity for the 7th year	100	90	0	190
Payment of the annuity for the 8th year	100	90	0	190
Payment of the annuity for the 9th year	100	90	0	190
Payment of the annuity for the 10th year	100	90	0	190
Payment of the annuity for the 11th year	150	140	0	290
Payment of the annuity for the 12th year	150	140	0	290
Payment of the annuity for the 13th year	150	140	0	290
Payment of the annuity for the 14th year	150	140	0	290
Payment of the annuity for the 15th year	150	140	0	290
Payment of the annuity for the 16th year	200	150	0	350
Payment of the annuity for the 17th year	200	150	0	350
Payment of the annuity for the 18th year	200	150	0	350
Payment of the annuity for the 19th year	200	150	0	350
Payment of the annuity for the 20th year	200	150	0	350
Recordal of License	0	900	0	900
Duplicate certificate of patent	0	590	0	590
Recording a change of owner's name against a patent registration	0	705	0	705
Recording a change of owner's address against a patent registration	0	580	0	580

2. 디자인

item	official fees	professional fees	VAT	Total Charges(USD)
Amendment of a design application	0	205	0	205
Claiming convention priority	0	150	0	150
Copy per page	0	1	0	1
Each additional class	15	60	0	75
Filing a design application	100	450	0	550
Filing a mark application up to registration	0	525	0	525
Obtaining a duplicate copy of the registration certificate	0	265	0	365
Obtaining certified copy of registration certificate	0	35	0	35
Post filing of documents	170	480	0	650
Penalty payment for second 5 years eriod	80	470	0	550
Penalty payment for third 5 years period	20	100	0	120
Renewal for each additional class for second 5 years period	20	100	0	120
Renewal for each additional class for third 5 years periodn	140	390	0	530
Renewal for the 2nd 5 years	65	320	0	385
Renewal for the 3rd 5 years	0	735	0	735
Recording an assignment against a design registration	0	610	0	610
Recording a merger against a design registration	0	585	0	585

Recording a change of owner's name against a design registration	0	585	0	585
Recording a change of owner's address against a design registration	0	450	0	450

3. 상표

item	official fees	professional fees	VAT	Total Charges(USD)
Search in one class with opinion	0	350	0	350
Search in one class without opinion	0	240	0	240
60 pre-defined word for 1st publication (filing stage) for applicant information and list of goods	42	78	0	120
60 pre-defined word for 2nd publication (registration stage) for applicant information and list of goods	42	78	0	120
Each additional class included in the same application	11	109	0	120
Filing a mark application up to registration	150	940	0	1090
Late filing of documents	0	70	0	70
Official translation of documents per page (other)	0	115	0	115
Publication of each additional word for applicant information and list of goods	0.7	1.3	0	2
Translation of documents	0	60	0	60

Renewal of a mark registration for each additional class	11	64	0	75
Renewal of a mark registration in one class	115	335	0	450
Recording an assignment of a mark registration	25	275	0	300
Recording a license of a registered mark	28	272	0	300
Recording a merger of a registered mark	25	275	0	300
Obtaining a certified copy of a mark registration	0	150	0	150
Recording a change of the owner's name against a registered mark	24	276	0	300
Recording a change of owner's address against a registered mark	7	193	0	200
Duplicate certificate of registration	0	615	0	615

나

RAYSAN 특허, 디자인, 상표 대리 비용

1. 특허

item	Individual Applicant	Corporate Applicant	Expert Fee(USD)
search for a patent title(each 5 occurrence)	0	0	300
search for a patent owner(each 5 occurrence)	0	0	350
Filing			
Filing an application	25	30	350
Examination by Universities/ research institute	350	350	250
First annuity	30	135	200
Priority Claim	0	0	150
Grant	20	25	150
Publication (per word)	0.9	0.9	0
Annuity/Renewal Year	0	0	0
Annuity/Renewal 2-5	25	135	200
Annuity/Renewal 6-10	40	240	200
Annuity/Renewal 11-15	60	350	200
Annuity/Renewal 16-20	65	450	200
Assignment			
Filing an application	60	350	350
Publication (per word)	0.9	0.9	0
Recording/termination of a license agreement			
Filing an application	40	180	350
Publication (per word)	0.9	0.9	0
Changes & Modifications			
Filing an application	25	75	350

Publication	0.9	0.9	0
Refusal/Office Action			
Filing a response to the Examiner's Refusal	80	110	400
Filing a response to an office action	0	0	150
Other matters with the Patent Office			
Obtaining duplicate letters-patent	30	135	250
Obtaining certified copy of letters-patent	25	25	100
Withdrawal of pending application/patent	0	0	350
Applying for priority certificate	0	0	250
General Matters			
Super legalization of a document	0	0	40
Extension of term/deadline	0	0	80
Late filing of a document	0	0	70
Translation (per word)	0	0	0.16
Courier	70	70	0

2. 디자인

item	Individual Applicant	Corporate Applicant	Expert Fee(USD)
Search for an Industrial Design	0	0	300
Search for Industrial Design proprietor (each 5 occurrence)	0	0	350
Filing			
Filing an application	25	40	350
Priority Claim	0	0	100
Publication (per word)	0.9	0.9	0
Registration/Grant	70	170	250

Annuity/Renewal			
Year	0	0	0
5 (Second Annuity)	120	320	200
Additional fee for late renewal (Second Annuity)	40	100	100
10 (Third Annuity)	70	170	200
Additional fee for late renewal (Third Annuity)	30	40	100
Assignment			
Filing an application	55	120	350
Publication (per word)	0.9	0.9	0
Recording/termination of a license agreement			
Filing an application	40	70	350
Publication (per word)	0.9	0.9	0
Changes & Modifications		350	
Filing an application	25	400	350
Publication	0.9	0.9	0
Opposition/Refusal/Office Action			
Filing a response to the Examiner's Refusal	80	110	400
Filing a response to an office action	0	0	150
Other matters with the Industrial Design Office			
Obtaining duplicate registration certificate	30	55	250
Obtaining certified copy of registration certificate	25	25	100
Withdrawal of pending application/registration	0	0	250
Applying for a priority certificate	0	0	200
General Matters			
Super legalization of a document	0	0	40

Extension of term/deadline	0	0	80
Late filing of a document	0	0	80
Translation (per word)	0	0	0.16
Courier	70	70	0

3. 상표

item	Individual Applicant	Corporate Applicant	Expert Fee(USD)
Search for a word mark in one class	0	0	250
Search on a trademark proprietor (each 5 occurrence)	0	0	300
Registration			
Filing an application in one class	40	60	350
For each addition class	20	25	100
Priority Claim	0	0	120
Publication of Notice of Application (per word)	0.9	0.9	0
Registration in one class	150	290	200
For each additional class	30	40	100
Publication of Notice of Registration (per word)	0.9	0.9	0
Renewal			
Filing an application in one class	150	290	350
For each additional class	30	40	120
Additional fee for late renewal	90	150	200
Re-Classification of goods/ services	25	40	250
Assignment			
Filing an application in one class	30	40	350
For each additional class	25	30	120

Publication	0.9	0.9	0
Recording/termination of a license agreement			
Filing an application in one class	30	40	350
For each additional class	25	30	120
Publication	0.9	0.9	0
Changes & Modifications			
Filing an application	25	30	350
Publication	0.9	0.9	0
Opposition/Refusal/Office Action			
Filing a response to the Examiner's Refusal	75	110	350
Filing an opposition/response to an Opposition	180	350	400
Attending oral hearing session for an Opposition	0	0	300
Filing a response to an Office Action	0	0	150
Watching services for a trademark in one class (yearly)	0	0	350
Other matters with the Trade Marks Office			
Obtaining duplicate registration certificate	30	40	200
Obtaining certified copy of registration certificate	25	25	150
Withdrawal of pending application/ registration	0	0	150
Applying for priority certificate	0	0	100
Amendment of trademark application	20	25	100
General expenses			
Super legalization of a document	0	0	40
Extension of term/deadline	0	0	80

Late filing of a document	0	0	70
Translation (per word)	0	0	0.16
Courier	70	70	0

다 aghayan 특허, 디자인, 상표 대리 비용

1. 특허

item	OFFICIAL TAXES	ATTORNEY FEES	TOTAL FEES(EURO)
Search For a Patent Title	0	135	135
Search For a Patent Owner	0	150	150
Filing			
Filing An Application	50	120	170
Publication	50	free of charge	50
1-st Annuity(Mandatory with filing)	50	45	95
Examination Upon Request Of IIP0	80	200 - 400	
Registration		free of charge	
Late Filing Of Documents		30	30
Priority Claim		free of charge	
Alternation To Patent Application	10	100	110
Annuities			
2-nd to 5th - Each Year	50	45	95
6th to 10th - Each Year	97	90	187
11th to 15th - Each Year	144	140	284
16th to 20th - Each Year	220	190	410
2-nd to 5th - Each Year (Including Fine)	75	45	120
6th to 10th - Each Year (Including Fine)	146	90	236

11th to 15th – Each Year (Including Fine)	216	140	356
16th to 20th – Each Year (Including Fine)	330	190	520
Nominal Working	95	65	160
Recordal Of Assignment of Granted Patents (excluding cost of translation)	270	115	385
Publication Of Assignment	50	free of charge	50
Recordal Of Change Of Name (excluding cost of translation)	72	115	187
Publication Of Change Of Name	25	25	50
Recordal Of Change Of Address (excluding cost of translation)	52	115	167
Recordal OF License Agreement	140	250	390
Certified Copy Of The Patent Certificate	15	35	50
Duplicate Certificate Of Patent Certificate	140	150	290
Translation Of Documents Per Page(English)	25	free of charge	25
Translation Of Documents Per Page (other languages)	40	free of charge	40
Cost Of Overweight Postal Package	50 - 150	0	

2. 디자인

item	OFFICIAL TAXES	ATTORNEY FEES	TOTAL FEES(EURO)
Filing a design application, one class included + Registration	150	225	375
Each additional class	20	20	40
Renewal for second 5 year period	140	300	440

Each additional class	30	70	100
Penalty payment for second 5 year period	170	400	570
Renewal for third 5 year period	65	200	265
Each additional class	15	50	65
Penalty payment for third year period	80	250	330
Assignment of design + publication	60	240	300
Recordal of license agreement + publication	40	200	240
Amendment of design application	10	60	70
Recordal of change of name + publication	28	200	228
Recordal of change of address	8	150	158
Recordal of merger + publication	28	200	228
Duplicate certificate	35	200	235
Certified copy of design certificate	0	100	100

3. 상표

item	OFFICIAL TAXES	ATTORNEY FEES	TOTAL FEES(EURO)
Search In One Class	0	135	135
Each Additional Class	0	10	10
Filing			
Filing A Trademark Application, One Class Included + Registration + Standard Publications Size	262	300	562
Each Additional Class	15	20	35
Alteration To Trademark Application	10	100	110

Late Filing Of Documents	0	30	30
Renewal Of A Registration In One Class (Before The Due Date)	110	200	310
Each Additional Class	15	20	35
Renewal Of Registration In One Class Including Fine For Late Filing Of Renewal Application (After The Due Date)	180	300	480
Fine For Each Additional Class	24	12	36
Re-Classification Of Service Classes 35 to 45	10	20	30
Recordal Of Assignment Including One Class	30	100	130
Each Additional Class	6	20	26
Publication Of Assignment	50	free of charge	50
Recordal of Change of Name/ Merge	30	100	130
Publication Of Change Of Name	50	free of charge	50
Recordal of Change of Address (Publication Is Not Required)	36	115	151
Recordal of license agreement including one class	28	200	228
Publication		free of charge	
Each Additional Class	10	30	40
Certified Copy Of Registration/ Renewal Certificate	12	28	40
Duplicate Certificate Of Trademark Registration + Publication	90	120	210
Trademark Status Report		100	100
Translation Of Documents Per Page(English)	25	free of charge	25
Translation Of Documents Per Page (Other Languages)	40	free of charge	40
Translation Of Documents From Persian To English Per Page	0	20	20

1. 특허

item	official fees	service fees	Total Charges (USD)
patent search	40	40	80
Filing patent application	30	470	500
Examination fees	300	0	300
Translation of patent specification, claims or other documents from English into Farsi (per page)	50	0	50
Translation of patent specification, claims or other documents from French into Farsi (per page)	80	0	80
Claiming priority (excluding Farsi translation)	0	120	120
Publication fees in the Official Gazette, per half column	90	20	110
Extra publication fees in the Off. Gaz., per half column or part thereof, when in excess of half column	90	0	90
Certification of Power of attorney/ documents by the Iranian Ministry of foreign affairs	20	30	50
Late filing of documents/ Applying extension of time/ Replying to office action	0	30	30
Payment of annuities for each year from first up to fifth	50	120	170
Payment of annuities for each year from sixth up to the tenth	100	120	220
Payment of annuities for each year from eleventh up to the fifteenth	150	120	270
Payment of annuities for each year from sixteenth up to the twentieth	200	120	320
Penalty for late payment of annuities for each year from first up to fifth	25	0	25
Penalty for late payment of annuities for each year from sixth up to the tenth	50	0	50

Penalty for late payment of annuities for each year from eleventh up to the fifteenth	75	0	75
Penalty for late payment of annuities for each year from sixteenth up to the twentieth	100	0	100
Inquiry fees for assignment and license of use	50	150	200
Recordal of Assignment for a registered Patent	160	350	510
Recordal of license of use or recordal to revoke license of use for a registered Patent	50	350	400
Amendment or correction of the application or enclosures (each time)	30	50	80
Recordal of assignment or License of use for a Patent Application	50	350	400
Recordal of changes (except assignment of ownership or license of use)	50	350	400
Final registration fees of a patent	50	120	170
Obtaining Certificate of Registration	20	70	90
Obtaining a duplicated copy of Registration Certificate	90	350	440
Obtaining a certified copy	20	50	70
Obtaining confirmation of submission of an application	30	30	60
Filing an opposition to rejection of an application by Patent Office	50	500	550
Opposition to an application	150	700	850
Filing a petition for cancelation of a patent before court	300	1650	1950
General Expenses (included in each invoice)			
Office Charges (including courier)	50	0	50
Bank Charges	15	0	15

2. 디자인

item	official fees	service fees	Total Charges (USD)
Searches			
Industrial Design search in one class	40	40	80
Industrial Design search for each additional class	10	20	30

General Expenses (included in each invoice)			
Office Charges (including courier)	50	0	50
Bank Charges	15	0	15
Filing			
Filing Industrial Design application in one class (excluding publication and registration fees), first design	20	160	180
Each additional class of products or services within the same application (filing)	10	30	40
Publication fees in the Official Gazette, per half column	90	20	110
Extra publication fees in the Off. Gaz., per half column or part thereof, when in excess of half column	90	0	90
Priority Claims	0	120	120
Certification of power of attorney/ documents by Iran Ministry of Foreign Affairs	20	30	50
Translation of supporting documents from English into Farsi (per page)	50	0	50
Translation of supporting documents from other languages into Farsi (per page)	80	0	80
Late filing of documents / Applying extension of time/ Replying to office action	0	30	30
Amendment of the application	10	25	35
Obtaining official confirmation of submission of application	10	10	20
Registration			
Final registration fees of a design, in one class	80	240	320
Final registration fees, each additional class	20	40	60
Obtaining a certificate of registration or a true copy of any document from the Industrial Design Office's records	0	50	50
Renewal - Second 5 years			
Renewal, if submitted before expiry date (during the last 6 months of protection)	160	300	460
Renewal, each additional class of products or services, if submitted during the last 6 months of the protection period	20	40	60

Renewal, if submitted within six months from the expiration of the protection period	240	350	590
Renewal, each additional class of products or services, if submitted within six months from the expiration of the protection period	30	60	90
Publication fees	90	20	110
Renewal - Third 5 years			
Renewal, if submitted before expiry date (during the last 6 months of protection)	80	240	320
Renewal, each additional class of products or services, if submitted during the last 6 months of the protection period	20	40	60
Renewal, if submitted within six months from the expiration of the protection period	120	280	400
Renewal, each additional class of products or services, if submitted within six months from the expiration of the protection period	30	30	60
Publication fees in the Official Gazette, per half column	90	20	110
Extra publication fees in the Off. Gaz., per half column or part thereof, when in access of half column	90	0	90
Obtaining Duplicated Copy of Industrial Design Registration/ Renewal Certificate			
Filing application to obtain duplicated copy of registration certificate	30	60	90
Publication fees in the Official Gazette, per half column	90	20	110
Extra publication fees in the Off. Gaz., per half column or part thereof, when in access of half column	90	0	90
Recordal of Changes			
Amendment, addition, change of name or address of the applicant, first mark (excluding publication)	20	150	170
Recordal of assignment, license or registered user agreement of a design in one class, excluding publication	20	250	270
Recordal of assignment for each additional class	10	30	40
Publication fees in the Official Gazette, per half column	90	20	110
Extra publication fees in the Off. Gaz., per half column or part thereof, when in access of half column	90	0	90

Opposition/ Court			
Filing an opposition against Industrial Design Office decision (before Commission in Industrial Design Office)	50	500	550
Filing opposition for cancellation of an Industrial Design application (before the Commission)	150	700	850
Responding to third party's opposition	0	500	500
Filing a petition against the decision of the commission (before public court of Tehran)	300	950	1250
Attending court and defending against third party opposition (before public court of Tehran)	0	950	950
Filing a petition for cancellation of a registered Industrial Design (before public court of Tehran)	300	1650	1950
Filing Appeal before appeal court against the public court's decision	150	950	1100
Defending against appeal of the other party before the court of appeal	0	950	950
Other Services			
Withdrawing an application	0	50	50
Requesting voluntary cancellation of a registration	27	68	95

3. 상표

item	official fees	service fees	Total Charges (USD)
Searches			
Trademark search in one class	40	40	80
Trademark search for each additional class	10	20	30
General Expenses (included in each invoice)			
Office Charges (including courier)	50	0	50
Bank Charges	15	0	15
Filing			

Checking the list of goods/ services (for lists containing more than 50 items of goods/services), per additional item	0	0.25	0.25
Filing trademark application in one class (excluding publication and registration fees) (for the first 50 items of goods/services)	20	170	190
Each additional class of products or services within the same application (filing) and filing each additional 50 items (or less) within the same class	5	20	25
Publication fees in the Official Gazette (filing application) , per half column	80	20	100
Extra publication fees in the Off. Gaz., per half column or part thereof, when in access of half column	80	0	80
Priority Claims	0	120	120
Certification of power of attorney/ documents by Iran Ministry of Foreign Affairs	20	30	50
Translation of supporting documents from English into Farsi (per page)	50	0	50
Translation of supporting documents from other languages into Farsi (per page)	80	0	80
Amendment of the Application	10	40	50
Late filing of documents / Applying extension of time/ Replying to office action	0	30	30
Registration			
Final registration fees of a trademark, in one class	150	170	320
Final registration fees, each additional class of products or services	20	20	40
Publication fees in the Official Gazette (final registration) , per half column	80	20	100
Extra publication fees in the Off. Gaz., per half column or part thereof, when in access of half column	80	0	80
Obtaining a certificate of registration or a true copy of any document from the TM Office's records	0	50	50
Renewal			
Renewal, if submitted during the last year of the protection period	120	200	320
Renewal, each additional class of products or services, if submitted during the last year of the protection period	20	20	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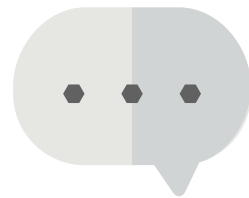
Renewal, if submitted within six months from the expiration of the protection period	180	200	380
Renewal, each additional class of products or services, if submitted within six months from the expiration of the protection period	30	20	50
Obtaining a renewal certificate	0	50	50
Obtaining Duplicated Copy of Trademark Registration/ Renewal Certificate			
Filing application to obtain duplicated copy of registration certificate	20	80	100
Publication fees in the Official Gazette, per half column	80	20	100
Extra publication fees in the Off. Gaz., per half column or part thereof, when in excess of half column	80	0	80
Certification of Declaration by Iran Ministry of Foreign Affairs	20	30	50
Recordal of Changes			
Amendment, addition, change of name or address of the applicant, first mark (excluding publication)	20	200	220
Recordal of assignment, license or registered user agreement of a trade mark in one class, excluding publication	20	200	220
Recordal of assignment for each additional class of goods or services	10	30	40
Publication fees in the Official Gazette, per half column	80	20	100
Extra publication fees in the Off. Gaz., per half column or part thereof, when in excess of half column	80	0	80
Other Services			
Withdrawing an application	0	50	50
Requesting voluntary cancellation of a registration	27	68	95
Requesting voluntary cancellation of goods/classes of a registered trademark	20	30	50
Opposition/ Court			
Filing an opposition against Trademark Office decision (with Commission in Trademark Office)	50	500	550
Responding to the third party's opposition	0	500	500

Filing opposition to the filing ad of a trademark application (with the Commission)	150	700	850
Filing a petition against the decision of the commission (with public court of Tehran)	300	950	1250
Attending court and defending against third party opposition (with public court of Tehran)	0	950	950
Filing a petition for cancellation of a registered mark (with public court of Tehran)	300	1650	1950
Filing Appeal before appeal court against public court decision	150	950	1100
Defending against appeal of the other party before appeal court	0	950	950
Evidence preservation request (official fee may vary depending on the case)	250	300	550
Sending an official cease and desist letter	100	300	400



VI. 부 록

1. 특허 · 상표 · 디자인법 원문 및 번역



part

1

특허·상표·디자인법 원문 및 번역

 IRAN

가

특허법

이란 특허법	번역문
<p>Article 1</p> <p>An invention is the outcome of an individual(s)'mind that produces a certain product or a process for the first time and provides for a solution to a specific problem in a certain line of specialty, technique, technology, industry and the like.</p>	<p>제 1 조</p> <p>발명은 최초로 일정한 제품 또는 공정을 제조하고 전문성, 기능, 기술, 산업 등의 일정한 분야에서 특정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공하는 개인(들)의 정신의 산물이다.</p>
<p>Article 2</p> <p>An invention shall be patentable if it includes a new innovation, and is industrially applicable. An innovation includes anything that has not been anticipated by prior art and would not be obvious to a person having ordinary 1 skills in the art. An invention shall be considered industrially applicable if it may be made or used in a given line of industry. "Industry" may be construed in the broadest meaning of the word and shall include handicrafts, agriculture, fishery and services as well.</p>	<p>제 2 조</p> <p>발명이 새로운 혁신을 포함하고 산업적으로 이용가능하면 특허받을 수 있다. 혁신은 종래기술에 의하여 예측되지 않고 해당 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게 자명하지 않은 것을 포함한다. 발명은 일정한 산업 분야에서 이루어질 수 있고 사용되면 산업적으로 이용 가능한 것으로 생각된다. "산업"은 가장 넓은 의미로 해석되며 수공업, 농업, 어업 및 서비스를 또한 포함한다.</p>

<p>Article 3 A “Letters Patent” is a document issued by the Industrial Property Office for the protection of an invention and the holder thereof may enjoy exclusive rights of the same.</p>	<p>제 3 조 “특허증(Letters Patent)”은 발명의 보호를 위하여 산업재산권청(Industrial Property Office)에 의하여 발행된 문서이며 그 소유자는 해당 발명의 독점권을 가진다.</p>
<p>Article 4 The following shall be excluded from the scope of the protection of a patent:</p> <p>a) Discoveries, scientific theories, mathematical methods and works of art;</p> <p>b) Schemes, rules or methods for doing business, performing mental or social acts;</p> <p>c) Methods for treatment or diagnosis of human or animal diseases; This subsection shall not include products falling within the scope of definition of the patent and those used in the said methods.</p> <p>d) Genetic resources and genetic components comprising the same, as well as biological processes for the production of the same.</p> <p>e) Anything that has been already anticipated in industries and techniques. Prior art is everything disclosed to the public, anywhere in the world, through written or oral publication, by practical use or in any other way, prior to the filing or, where appropriate, the priority date, of the application claiming the invention.</p>	<p>제 4 조 이하의 사항들은 특허보호 범위로부터 배제된다.</p> <p>a) 발견, 과학 이론, 수학 방법 및 예술 작품.</p> <p>b)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또는 정신적이거나 사회적인 행위를 실행하기 위한 계획, 규칙 또는 방법.</p> <p>c) 사람 또는 동물의 질병 진단 또는 치료 방법; 본 조항은 특허의 정의의 범위 내에 속하는 제품 및 상기 방법들에 사용되는 제품들을 포함하지 않는다.</p> <p>d) 또한 상기 사항들을 포함하는 유전 자원 및 유전적인 성분들과 상기 사항들을 생산하기 위한 생물 공정.</p> <p>e) 산업 및 기술에서 이미 예측된 사항. 종래기술은 출원, 또는, 해당하면, 우선권을 주장하는 출원의 우선일 전에, 실제 사용이나 어떤 다른 방식으로, 서면 또는 구술의 간행물을 통해, 전 세계 어디서나, 공중에 공개된 모든 것이다. 발명의 공중에의 공개는, 출원일, 또는 해당하면, 출원의 우선일로부터 6월내에 발생하였으면, 특허의 허락(grant)을 방지하지 못한다.</p> <p>f) 그의 상업적 이용이 이슬람 율법(Sharia Rules), 공중의 질서 또는 도덕에 반하는 발명들은 특허받을 수 없다.</p>

<p>Disclosure to the public of the invention shall not prevent grant of the patent, if it has occurred within six months before the filing date or, where appropriate, before priority date of the application.</p> <p>f) Those inventions the commercial exploitation of which would be contrary to Sharia Rules, public order or morality shall not be patentable.</p>	
<p>Article 5 Naming the inventor in the Letters Patent and the right to Patent shall be as follows:</p> <p>a) The right to patent shall exclusively belong to the inventor.</p> <p>b) If two or more persons have jointly made an invention, the right to patent shall belong to them jointly.</p> <p>c) Where two or more persons have made the same invention independently of each other, the person whose application has been filed earlier or, if priority is claimed, the person who can prove that he has validly filed his application earlier than other(s), shall have the right to register his invention provided that his application has not been withdrawn, abandoned or rejected.</p>	<p>제 5 조 특허증 또는 특허권에 발명자를 표시하는 것은 이하와 같다.</p> <p>a) 특허권은 독점적으로 발명자에게 속한다.</p> <p>b) 둘 이상의 사람이 공동으로 발명을 소유 하였으면, 특허권은 그들에게 공동으로 속한다.</p> <p>c) 서로 독립적으로 둘 이상의 사람들이 동일한 발명을 소유하면, 출원이 먼저 이루어진 사람, 또는 우선권이 주장되면, 그의 출원이 취하되거나, 포기되거나 또는 거절되지 않으면, 그가 명확하게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출원한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사람이 그의 발명을 등록할 권리를 가진다.</p> <p>d) 허락된 특허권은 양도될 수 있으며 권리를 소유한 자가 사망한 경우, 그의 상속인에게 이전될 수 있다.</p> <p>e) 고용 계약에 의하여 발명이 이루어진 경우, 각각의 계약 합의에서 달리 정해지지 않으면 특허 실시권은 피고용인에게 속한다.</p>

<p>d) The right to a granted patent may be assigned and in case of death of the person holding the right, it shall be transferred to his/her heirs.</p> <p>e) Where an invention has been made in execution of an employment contract, the economic rights to the patent shall belong to the employer unless otherwise provided for in the respective contractual agreement.</p> <p>f) The inventor's name shall be indicated in the Letters Patent, unless in a written declaration addressed to the Industrial Property Office, he/she indicates that he/she does not wish his/her name to be reflected therein. Any kind of statement or undertaking presented by the inventor to the effect that someone else's name shall be indicated as the inventor shall have no legal effect.</p>	<p>f) 발명자가 그의 성명이 특허증에 표시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을 표시하는 서면 선서에 의해 산업재산권청에 제출되지 않으면, 발명자의 성명은 특허증에 표시된다. 다른 사람의 성명이 발명자로서 표시되는 취지로 발명자에 의하여 제출된 어떠한 진술이나 문서도 법률적인 효과를 가지지 않는다.</p>
<p>Article 6</p> <p>The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of a patent which is submitted to the Industrial Property Office shall be made in Farsi, shall specify the subject for which protection is sought, and shall be duly signed and dated. It shall contain a request, a description, claims, an abstract, drawing(s), if required. The prescribed fees for filing the application shall be collected from the applicant.</p>	<p>제 6 조</p> <p>산업재산권청에 제출된 특허등록 출원은 페르시아어로 이루어지고, 보호받고자 하는 사항이 기재되고, 적법하게 기일이 표시되고 서명되어야 한다. 출원은 출원서, 상세한 설명, 특허청구범위, 요약서, 필요시, 도면(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출원을 신청하기 위한 정해진 요금은 출원인으로부터 납부된다. 이하의 사항들이 출원을 준비하고 제출하기 위하여 준수되어야 한다.</p>

<p>The following points shall be observed for the purpose of preparation and submission of the application,</p> <p>a) Name and other required particulars of the applicant, inventor and his/her legal representative, if any, and the title of the invention shall be indicated in the application;</p> <p>b) Where the applicant is not the inventor, documents evidencing his legal capacity shall be submitted together with the application;</p> <p>c) The claims indicated in the application shall be clear and concise and shall be accompanied by a description in a manner that it is sufficiently clear and complete for a person having ordinary skills in the art and shall indicate, at least, one method for carrying out the invention. The abstract shall merely be for provision of technical information and it shall not be used to interpret the invention.</p>	<p>a) 출원인, 발명자 및, 해당시, 대리인의 성명 및 다른 특기 사항, 및 발명의 명칭이 출원에 표시되어야 한다.</p> <p>b) 출원인이 발명자가 아니면, 그의 법적 권한을 증명하는 문서가 출원서와 함께 제출되어야 한다.</p> <p>c) 출원에 기재된 특허청구범위는 명확하고 간결하며 해당 기술 분야의 통상의 기술자에게 명확하고 완전하도록 충분히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지지되며 적어도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을 표시하여야 한다. 요약서는 단지 기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발명을 해석함에 이용되지 않는다.</p>
<p>Article 7</p> <p>Until such a time that the application is not approved for grant, the applicant may withdraw his/her application.</p>	<p>제 7 조</p> <p>출원의 특허 허락이 승인되기까지, 출원인은 출원을 취하할 수 있다.</p>

<p>Article 8</p> <p>The application shall relate to only one invention or a group of inventions that are linked in a manner that they form a single general invention. Failure to indicate the links between the parts thereof in the general invention shall not cause loss of effect of the Letters Patent. The applicant may, until such a time that the application is not accepted to be granted:</p> <p>a) amend the application, provided that the amendment does not exceed the scope of the description of the initial application;</p> <p>b) divide the application into two or more applications. The Divisional Application shall bear the same filing date, and where applicable, include the same priority date of the initial application.</p>	<p>제 8 조</p> <p>출원은 단지 하나의 발명 또는 단일의 일반적인 발명을 형성하도록 연결된 하나의 그룹의 발명들에 관련된다. 일반적인 발명의 부분들 사이의 연결을 나타내지 못하면, 특허증의 효과를 상실한다. 출원의 특허 허락이 승인되기까지, 출원인은,</p> <p>a) 보정이 최초 출원의 상세한 설명의 범위를 초과하지 않으면 출원을 보정하고,</p> <p>b) 출원을 둘 이상의 출원으로 분할할 수 있다. 분할 출원은 동일한 출원일을 부여받으며, 해당시, 최초 출원의 동일한 우선일을 포함한다.</p>
<p>Article 9</p> <p>The applicant may, along with his application and through a declaration, claim priority as prescribed by the Paris Convention for Protection of Industrial Property dated (20 March 1883) and its subsequent revisions. The priority right may be based on one or more national or regional or international applications filed in any country or for a country party to the said Convention. If a priority is claimed:</p>	<p>제 9 조</p> <p>그의 출원 및 선서와 함께, 출원인은 (1883년 3월 20)일자의 산업재산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 조약과 후속 개정에 의하여 규정된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다. 우선권은 상기 조약에 속하는 당사자 국가 또는 다른 국가에 출원된 하나 이상의 국내 또는 지역 또는 국제 출원들에 기초할 수 있다. 우선권이 주장되면,</p>

<p>a) The Industrial Property Office shall request the applicant to furnish the said Office, within the prescribed time limit, with a copy of the earlier application certified by the Industrial Property Office with which it was filed.</p> <p>b) Once the request is accepted, it shall be subject to the protection as prescribed by the Paris Convention.</p> <p>If the requirements of this Article and the Regulations pertaining to it are not duly complied with, the said declaration shall be considered as null and void.</p>	<p>a) 산업재산권청은 출원인에게, 정해진 기한 내에, 출원이 제출된 해당 산업재산권청에 의하여 인증된 이전의 출원의 사본을 상기 관청에 제출할 것을 요구한다.</p> <p>b) 요청이 승인되면, 파리 조약에 의하여 규정된 보호를 받는다.</p> <p>본 조항 및 이에 속하는 규칙의 요건이 합치되지 않으면, 상기 선언은 없는 것으로 무효로 간주된다.</p>
<p>Article 10</p> <p>At the request of the Industrial Property Office, the applicant must furnish the said Office with the number and date of any application for a patent filed by the applicant abroad which, identically and essentially, relate to the same invention claimed in the application submitted to the Industrial Property Office. In addition, at the request of the Industrial Property Office, the applicant shall furnish the said Office with the following documents:</p> <p>a) A copy of any communication or notice relating to the results of any examination conducted in respect of the foreign applications that the applicant has received;</p>	<p>제 10 조</p> <p>산업재산권청의 요청으로, 출원인은 상기 산업재산권청에 제출된 출원에서 청구하였던 동일한 발명과 기본적으로 동일하게 관련되는 해외에서 출원인에 의하여 출원된 특허출원의 번호와 일자를 상기 관청에 제공한다. 또한, 산업재산권청의 요청으로, 출원인은 상기 관청에 이하의 문서를 제공한다.</p> <p>a) 출원인이 접수한 외국 출원들에 대해 시행된 심사 결과에 대한 서신 또는 통지의 사본.</p> <p>b) 외국 출원들에 기초하여 허여된 특허증의 사본.</p>

<p>b) A copy of the Letters Patent granted on the basis of the foreign applications;</p> <p>c) A copy of any final decision rejecting the foreign application or refusing the grant of the invention claimed in the foreign application.</p> <p>d) A copy of any final decision invalidating the Letters Patent issued on the basis of the foreign application.</p>	<p>c) 외국 출원에서 청구된 발명의 허락을 거절하거나 외국 출원을 거절하는 최종 결정의 사본.</p> <p>d) 외국 출원에 기초하여 발행된 특허증을 무효로 하는 최종 결정의 사본.</p>
<p>Article 11</p> <p>The Industrial Property Office shall accord as the filing date the date of receipt of the application, provided that at the time of its receipt the application contains the following:</p> <p>a) An express or implicit indication of the fact that granting of a patent is requested.</p> <p>b) Indications allowing the identity of the applicant to be established.</p> <p>c) A brief description of the invention.</p> <p>If the Industrial Property Office finds that, at the time of filing, the application did not fulfill the above requirements, the said Office shall invite the applicant to file the required correction within a period of thirty days from the date on which the matter is communicated to the applicant. In this case, the filing date</p>	<p>제 11 조</p> <p>산업재산권청은 출원의 접수시에 이하를 포함하면, 출원의 접수일을 출원일로 인정한다.</p> <p>a) 특허의 허락이 신청되는 사실의 명시적이거나 암시적인 표시.</p> <p>b) 출원인의 식별부호가 형성될 수 있는 표시.</p> <p>c) 발명의 간단한 설명.</p> <p>산업재산권청이, 출원시에 출원이 상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을 발견하면, 상기 관청은 해당 사실이 출원인에게 통지된 날로부터 30일의 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한다. 이 경우, 출원일은 상기 보정서의 접수와 동일한 일자로 인정된다. 그러나, 필요한 보정서가 정해진 기간 내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출원은 무효이며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p>

<p>shall be accorded the same date of receipt of the said correction. However, if the required corrections are not made within the prescribed period, the application shall be considered as null and void.</p>	
<p>Article 12 Where the application refers to drawings which in fact are not included in or attached to the application, The Industrial Property Office shall invite the applicant to furnish the missing drawings. If the applicant complies with the said invitation and submits the required drawings, the said Office shall accord the filing date as the date of receipt of the missing drawings. Otherwise, the Industrial Property Office shall accord as the filing date the date of receipt of the application and shall treat any reference to the drawings as non-existent.</p>	<p>제 12 조 출원서가 실제로 포함되지 않거나 출원에 첨부되지 않은 도면들을 참조하는 경우, 산업재산권청은 출원인에게 누락된 도면들을 제출하도록 통지한다. 출원인이 상기 통지에 따라 필요 도면들을 제출하면, 상기 관청은 누락된 도면들의 접수일을 출원일로서 인정한다. 그렇지 않으면, 산업재산권청은 출원의 접수일을 출원일로서 인정하고 도면들에 대한 기재는 없는 것으로 취급한다.</p>
<p>Article 13 After according the filing date, the Industrial Property Office shall examine whether the application complies with the requirements of this Act and the Regulations pertaining thereto and if it finds that the said conditions and requirements are duly fulfilled, it shall proceed to grant the patent. Otherwise, the said Office shall refuse the application and notify the applicant of that decision.</p>	<p>제 13 조 출원일을 인정한 후에, 산업재산권청은 출원이 이 법률 및 이에 속하는 시행 규칙의 요건들에 합치하는 여부를 심사하고 상기 조건들과 요건들이 적법하게 충족된 것을 발견하면, 특허를 허락하도록 진행한다. 그렇지 않으면, 상기 관청은 출원을 거절하고 출원인에게 이러한 결정을 통지한다.</p>

<p>Article 14 After granting the patent, the Industrial Property Office shall:</p> <p>a) publish a reference to the grant of the patent;</p> <p>b) issue the Letters Patent;</p> <p>c) shall retain a copy of the Letters Patent in its files and, after collection of the required fees, shall submit the original thereof to the applicant;</p> <p>d) Upon request of the holder of the Letters Patent, the Industrial Property Office shall make changes in the text or drawings of the patent in order to determine the extent of the protection conferred thereby, provided that the change would not result in the disclosure contained in the patent going beyond the disclosure contained in the initial application on the basis of which the patent was granted.</p>	<p>제 14 조 특허 허락 후에, 산업재산권청은.</p> <p>a) 특허 허락의 취지를 공개하고.</p> <p>b) 특허증을 발행하고.</p> <p>c) 필요 비용을 수납 후에, 해당 파일에 특허증의 사본을 보관하고, 출원인에게 그 원본을 송부하며.</p> <p>d) 특허증 보유자의 요청에 따라, 특허에 포함된 개시가 그를 기초로 특허가 허락된 최초 출원에 포함된 개시를 초과하는 변경이 발생하지 않으면, 산업재산권청은 그에 의하여 부여되는 보호 범위를 결정하기 위하여 특허 명세서 또는 도면들을 변경할 수 있다.</p>
--	---

Article 15

Rights Conferred by Patent shall be as follows: 6

a) The exploitation of the patented invention in Iran by persons other than the owner of the patent shall require the agreement of the latter. "Exploitation" of a patented invention includes any of the following acts:

(1) – If the patent has been granted for a product:

- (i) – making, exporting and importing, offering for sale, selling and using the product;
- (ii) – stocking such product for the purpose of offering for sale, selling or using;

(2) – If the patent has been granted in respect of a process:

- (i) – using the process;
- (ii) – doing any of the acts referred to in paragraph (a) (1) of the present Article in respect of a product obtained directly by means of the process.

b) The owner of the patent shall, subject to subsection (c) hereof and Article (17),

제 15 조

특허에 의하여 부여되는 권리들은 이하와 같다.

a) 이란에서 특허의 소유자 외의 다른 자들에 의한 특허된 발명의 이용은 소유자의 허락을 필요로 한다. 특허 발명의 "이용(exploitation)"은 이하의 행위들을 포함한다.

(1) – 특허가 제품에 대해 허락된 경우.

- (i) – 제품의 제조, 수출 및 수입, 판매에의 제공, 판매 및 사용.
- (ii) – 판매에 제공하거나, 판매 또는 이용을 위하여 해당 제품을 보관.

(2) – 특허가 공정에 대해 허락된 경우:

- (i) – 공정의 사용.
- (ii) – 공정에 의하여 직접 얻어진 제품에 대해 이 조항의 단락 (a)-(1)에 기재된 행위들을 수행.

b) 제17조 및 그 부속 규정(c)에 따라, 특허의 소유자는 위의 단락(a)에서 규정된 행위들을 수행하고 특허권을 침해하거나 특허권자의 권리의 침해를 발생할 다른 행위를 수행하는 자에 대해 법원의 절차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have the right to institute court proceedings against any person who performs any of the acts referred to in paragraph (a) above and infringes the patent rights or performs any other acts which will result in the infringement of his rights.

c) The rights under the patent shall not include the following:

1. The use of articles which have been put on market in Iran by the owner of the patent or with his consent.

2. The use of articles on aircrafts, land vehicles or vessels of other countries which temporarily or accidentally enter the airspace, territory or waters of Iran.

3. Use conducted for experimental purposes relating to a patented invention.

4. The use by any person who in good faith, before the filing or, where priority is claimed, before the priority date of the same, was using the invention or was making effective and serious preparations for such use in Iran.

d) The right of the prior user referred to in paragraph (c)(4) may be transferred or devolve only together with the enterprise or business, or with that part of business or enterprise, in which the use have been made.

c) 특허에 의한 권리는 이하를 포함하지 않는다.

1. 특허의 소유자 또는 그의 동의를 받은 자에 의하여 이란에서 시장에 공급된 물품의 사용.

2. 임시로 또는 우연히 이란의 방공 영역, 영토 또는 해역에 진입한 다른 국가들의 항공기, 지상 차량 또는 선박 위의 물품의 사용.

3. 특허 발명에 관련된 실험 목적으로 수행된 사용.

4. 출원 전에, 또는 우선권이 주장된 경우, 우선일 전에, 양호한 신용을 가진 자가 발명을 이용하거나 또는 이란에서의 그러한 이용을 위한 효과적이며 진지하게 준비하는 자에 의한 사용.

d) 단락(c)(4)에서 규정된 선 사용자의 권리는 단지 기업 또는 사업과 함께, 또는 사용이 이루어진 기업 또는 사업의 부분과 함께 이전되거나 양도될 수 있다.

<p>Article 16</p> <p>Subject to the present Article, a Letters Patent shall expire 20 years after filing date of the application for patent. In order to maintain the Letters Patent or the patent application, an annual fee, which shall be fixed in the Regulations, shall be paid by the applicant to the Industrial Property Office for each year one year after the filing date of the application and before the beginning of the next year. A grace period of six months shall be allowed for late payment of the annual fee on payment of the prescribed surcharge.</p> <p>If the said annual fee is not duly paid, the patent application shall be deemed to have been withdrawn or the patent shall lapse.</p>	<p>제 16 조</p> <p>본 조항에 따라, 특허증은 특허 출원의 출원일 이후 20년으로 종료한다. 특허증 또는 특허 출원을 유지하기 위하여, 규칙에서 정해진 요금이 출원의 출원일 이후 1년에서 다음 해의 시작 전에 매년 출원인에 의하여 산업재산권청에 납부된다. 정해진 부가료의 납부를 기초로 요금의 추후 납부에 대해 6월의 추납 기간이 허락된다.</p> <p>상기 요금이 적법하게 납부되지 않으면, 특허 출원은 취하 간주되거나 또는 특허가 소멸한다.</p>
<p>Article 17</p> <p>The Government, or the person authorized by the Government, subject to following arrangements, may use the patent,</p> <p>a) Where, in view of the respective Minister or the highest authority of the competent organization the public interest, including national security, nutrition, health or the development of other vital sectors of the national economy requires that the Government, or any person exploit the invention, and or the manner of exploitation, by the owner of the patent or his licensee, is anti-competitive and the concerned authority is satisfied that the exploitation of the invention would remedy such problem,</p>	<p>제 17 조</p> <p>이하의 지위에 해당하는 정부, 또는 정부에 의하여 위임받은 자는 특허를 사용할 수 있다,</p> <p>a) 조직의 최고 담당자 또는 각 장관의 견지에서, 국가 안보, 영양, 건강 또는 국가 경제의 다른 핵심적인 부문의 개발을 포함하는, 공중의 이익에 의하여, 발명을 이용하는 개인 또는 정부, 또는 특허 소유자 또는 그의 실시권자에 의하여 이용되는 방식이 반-경쟁적이며, 관련 당국이 발명의 이용이, 행위와 재산권의 등록을 위한 국가 기관(State Organization for Registration of Deeds and Properties)의 장관, 법무부 장관(Head of the Judiciary)의 지명에 의한 대법원 판사들의 일인, 검찰총장(Prosecutor General),</p>

the matter will be discussed in a Committee comprising of Head of the State Organization for Registration of Deeds and Properties, one of the Judges of the Supreme Court as nominated by the Head of the Judiciary, the Prosecutor General, representative of the President of I.R. of Iran and the Minister or the highest authority of the concerned organization. If approved a government agency or a third party, designated by the said Committee, may exploit the invention without the consent of the owner.

b) The exploitation of a patent shall be limited to the purpose for which it was authorized and shall be subject to payment to the said owner of an adequate remuneration thereof, taking into account the economic value of the decision. If the owner or any other interested party wishes to be heard, the Commission shall render its decision after having heard their statements and taking into consideration the exploitation in anti-competitive practices. The Commission may, upon request of the owner of the patent, or the Government agency or the third party authorized to exploit the patented invention, after hearing both or either of the parties as appropriate and necessary, proceed to make a fresh decision.

c) If the holder of the patent claims that, the circumstances that led to making the decision have ceased to exist and are unlikely to recur or if he claims that the

이란 이슬람 공화국의 대통령의 대리인 (representative), 및 관련 조직의 장관 또는 최고 담당자를 포함하는 위원회에서 논의될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만족하는 것을 요구할 것이다. 위임되면, 정부 대리인이나, 상기 위원회에 의하여 지명된 제3 자는 소유자의 동의 없이 발명을 이용할 수 있다.

b) 특허의 이용은 위임된 목적에 한정되며 결정의 경제적 가치를 고려한 충분한 보상을 상기 소유자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소유자나 다른 이해 당사자가 청취하기를 바라면, 위원회는 진술을 청취 후 반-경쟁적인 실시의 이용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위원회는 특허 소유자, 또는 정부 대리인 또는 특허 발명을 이용하도록 위임된 제3자의 요청시, 적절하고 필요한 당사자들 모두 또는 어느 일방의 의견을 청취 후, 새로운 결정을 하도록 진행한다.

c) 특허 보유자가, 해당 결정을 수행하도록 인도한 상황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재발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거나 또는 정부 대리인이나 위원회에 의하여 지정된 제3자가 결정의 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 주장하면, 사안은 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심사되며 특허 소유자, 관련 조직의 장관 또는 최고 책임자 및 이용자의 의견을 청취 후에, 이용이 종료되며, 경우에 따라, 위임이 소유자 또는 다른 이용자를 위하여 제공된다. 그러나, 본 조항의 규정이 적용되어, 위임을 획득한 자들의 법적 이익의 충분한 보호 필요성이 결정의 유지를 정당화하는 것에 대해 위원회가 만족하면, 위임은 종료하지 않는다.

Government agency or third party designated by Committee has failed to comply with the terms of the decision, the matter shall be discussed and examined by the Committee and after hearing the patent owner, the Minister or the highest authority of the concerned organization and the exploiter, the exploitation permit shall be terminated and, as the case may be, the authorization shall be issued for the owner or another exploiter. However, the authorization shall not be terminated if,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the present paragraph, the Committee is satisfied that the need for adequate protection of the legitimate interests of the persons who have obtained the authorization justifies the maintenance of the decision.

In cases where a third person has been designated by the Commission, the authorization may only be transferred with the enterprise or business of that person or with the part of the enterprise or business within which the patented invention is being exploited.

d) The authorization provided for in the present Article shall not impede the following acts:

1. The conclusion of a License Contract by the owner of the patent, subject to provisions of the present Article;
2. The continued exercise, by the owner of the patent, of his rights under Article 15(a);

위원회에 의하여 제3자가 지정된 경우, 위임은 단지 그자의 기업 또는 사업과 함께 또는 특허 발명이 이용되는 기업 또는 사업의 범위 내의 부분과 함께 이전될 수 있다.

d) 본 조항에서 제공된 위임은 이하의 행위를 방해하지 않는다:

1. 본 조항의 규정에 따른, 특허 소유자에 의한 실시권 계약의 설정.
2. 특허 소유자의 제 15(a)에 의한 그의 권리의 계속 실시.
3. 본 조항의 부속 조항인 h(1) 및 (2)에 따른 강제 실시의 공표.

e) 위임된 자 또는 정부 대리인이 합리적인 기간 및 조건으로 합리적인 시간 내에 실시권을 획득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위원회의 위임의 신청은 정부 대리인이나 위임된 자가 특허 소유자에게 실시권 신청서를 제출한 증거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본 부속 조항의 규정은, 위원회 전체의 판단으로, 국익으로부터 발생하는 비상외의 경우 또는 불가피한 상황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그러한 경우들에서 특허 소유자에게는 위원회의 결정이 가능한 신속히 통지되어야 한다.

f) 위원회에서 지정된 제 3자 또는 정부 대리인에 의한 발명의 이용은 주로 이란 시장에서의 공급을 위함이다.

g) 반도체 기술 분야에서의 특허의 이용을 위한 위원회에 의하여 행해진 위임은 단지 공중의 비상업적 이용 또는 관련 조직의 장관 또는 최고 책임자가 특허 소유자 또는 그의 실시권자에 의한 특허 발명의 이용 방식이 반-경쟁적인 것으로 판단한 경우에 대해서만 이루어진다.

3. The issuance of a non-voluntary license under subsections h (1) and (2) of the present Article.

e) The request for the Commission's authorization shall be accompanied by the evidence that the Government agency or the authorized person has submitted a request to the owner of the patent for a license, but that the said person or agency has been unable to obtain such a license on reasonable terms and conditions and within a reasonable time.

Provisions of this subsection shall not apply in cases of emergency arising from national interests or cases of Force Majeure, at the total discretion of the Committee, provided that in such cases the owner of the patent shall be notified of the Commission's decision as soon as possible.

f) The exploitation of the invention by the Government agency or a third person designated by the Committee shall be predominantly for the supply of in the Iranian market.

g) The authorization issued by the Commission for exploitation of a patent in the field of semi-conductor technology shall be authorized only for public non-commercial use or where the Minister or the highest ranking authority of the concerned organization has determined that the manner of exploitation of the patented invention, by the owner of the patent or his licensee, is anti-competitive.

h) 강제적인 이용의 위임은 이하의 조건들에서 이하의 경우들에 발생할 수 있다.

1. 특허증에서 이전의 특허를 이용하지 않고 특허가 이용될 수 없으며 이전의 특허에 비교해서, 최근의 특허는 중요한 기술적 진보를 포함하고 상당히 경제적으로 중요하며, 최근 특허의 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산업재산권청은 이전 특허의 소유자의 동의 없이, 필요한 정도로 이전 특허를 이용할 위임을 부여할 수 있으므로 상당히 경제적으로 중요하다.

2. 소유자의 동의 없이 위의 부속 조항 아래 강제 실시가 발생하는 경우, 이전 특허의 소유자의 요청에 따라, 이후 특허의 측면에서 강제 실시를 발생한다.

3. 부속 조항(1) 및 (2)에 의거하여 강제 실시의 허여가 신청된 경우, 강제 실시를 허여하는 결정은 위임의 범위 및 기능을 확정하고 특허 소유자에게 지불되어야 하는 충분한 보상의 양 및 지불 조건을 결정한다.

4. 위의 부속 조항(1)에 의하여 발생한 강제 실시의 경우, 그의 이전은 단지 이후 특허와 함께, 또는 위의 부속 조항(2)의 강제 실시의 경우, 단지 이전의 특허와 함께 위임된다.

5. 강제 실시의 허락 신청은 규정된 요금의 납부의 대상이다.

h) The non-voluntary exploitation authorization may be issued in the following cases under the following conditions:

1. If it is claimed in a Letters Patent that the patent cannot be exploited without using an earlier patent and that the later patent, compared to the earlier patent, involves an important technical advance and is of considerable economic importance, the Industrial Property Office, upon the request of the owner of the later patent, may issue an authorization for using the earlier patent to the extent necessary, without consent of its owner.

2. Where a non-voluntary license is issued under subsection (1) above without consent of the owner, the Industrial Property Office, upon the request of the owner of the earlier patent, shall issue a non-voluntary license in respect of the later patent as well.

3. In the case of a request for the issuance of a non-voluntary license under subsections (1) and (2) hereof, the decision issuing the non-voluntary license shall fix the scope and function of the authorization and the amount of the adequate remuneration to be paid to the owner of the patent and the conditions of payment.

4. In the case of a non-voluntary license issued under subsection (1) above, its transfer shall be authorized only with the later patent, or, in the case of a non-

6. 본 조항의 부속 조항(1) 및 (2)에 의하여 발생된 강제 실시의 경우, 본 조항의 (b) 내지 (f) 및 (i)는 필요한 부분만 약간 수정하여 적용된다.

i) 본 조항의 부속 조항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불복은 테헤란 시민 법원(Public Court of Teheran)에 제기될 수 있다.

<p>voluntary license under subsection (2) above, only with the earlier patent.</p> <p>5. The request for the issuance of a non-voluntary license shall be subject to the payment of the prescribed fee.</p> <p>6. In the case of a non-voluntary license issued under subsections (1) and (2) hereof, subsections (b) to (f) and (i) of the present Article shall apply mutatis mutandis.</p> <p>i) Appeals may be lodged with the Public Courts of Tehran against resolutions of the Commission made within the scope of the subsections of the present Article.</p>	
<p>Article 18</p> <p>Any interested person may request the Court to invalidate a Letters Patent. If the person requesting the invalidation proves that any of the requirements of Articles 1, 2, 4, the first sentence of Article 6 and Article 6(c) are not fulfilled or if the owner of the patent is not the inventor or his successor in title, the court shall invalidate the Letters Patent.</p> <p>Any invalidate patent, or claim or part of claims, shall be regarded as null and void from the date of the grant of the patent. The final decision of the Court shall be notified to the Industrial Property Office, which shall record it and, upon payment of the prescribed fees, shall publish a reference thereto as soon as possible.</p>	<p>제 18 조</p> <p>이해관계 있는 자는 법원에 특허의 무효를 청구할 수 있다. 무효를 청구하는 자가 제 1, 2, 4조, 제6조 제1 단락 및 제6(c)조의 요건들의 어느 것이 충족되지 않는 것을 입증하거나 특허 소유자가 발명자가 아니거나 또는 적법한 상속인이 아닌 것을 입증하면, 법원은 특허증을 무효로 한다.</p> <p>무효인 특허, 또는 청구항 또는 특허 청구범위의 일부는, 특허의 허락일로부터 무효이며 존재하지 않는다. 법원의 최종 결정은 산업재산권청에 통보되고, 청은 그것을 기록하고, 정해진 요금의 납부시, 그에 대한 취지를 가능한 신속하게 공개한다.</p>

Article 19

If the owner of the patent decides to use/work a patented invention, the State Organization for Registration of Deeds and Properties, shall notify the concerned organization(s) within a period of one week. The said organization(s) shall issue their opinion on the possibility of exploitation of the patent within a maximum period of two months and shall notify the result 11 for the purpose of issuance of the exploitation permit to the State Organization for Registration of Deeds and Properties in writing.

제 19 조

특허 소유자가 특허 발명을 사용/실시하기로 결정하면, 행위 및 재산권의 등록을 위한 국가 기관은 일 주일 내에 관련 기관(들)에 통지한다.

상기 기관(들)은 최대 2개월 내에 특허 이용 가능성에 대해 의견을 제출하고 서면으로 행위 및 재산권의 등록을 위한 국가 기관에 이용 허가의 발행을 위하여 결과를 통지한다.

나 디자인법

이란 디자인법	번역문
<p>Article 20</p> <p>For the purpose of this Act, any composition of lines or colors or any three dimensional form, whether or not associated with lines or colors, is deemed to be an Industrial Design, provided that such composition or form gives a special appearance to a product of industry or handicraft. In an Industrial Design, the protection under this Act does not extend to solely achieving a technical result without incorporating changes in the appearance.</p>	<p>제 20 조</p> <p>산업디자인이란 산업용 물품이나 수공예 물품에 선 또는 색채와의 결합 여부에 관계없이 선, 색채 또는 입체적 형태의 조합을 나타내는 것이다. 다만 외양의 변형 없이 단지 기술적 효과를 나타내는 경우 산업디자인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p>
<p>Article 21</p> <p>An Industrial Design is registrable if it is new and/or original. An Industrial Design shall be new if it has not been disclosed to the public, anywhere in the world, by publication in tangible form or by use or in any other way, prior to filing date of the application or, where applicable, the priority date of the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Provisions of last sentence of Article (4) (e) and (f)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Industrial Designs.</p>	<p>제 21 조</p> <p>산업디자인은 신규하고 독창적이면 등록받을 수 있다. 산업디자인의 출원일 전 또는 우선일 전 국내 또는 국외에서(anywhere in the world) 읽을 수 있는 형태로 공개되거나 사용되는 등의 방법으로 공중에 공개되지 않은 경우 신규하다. 제4조 (e) 및 (f)의 규정은 산업디자인에 적용된다.</p>

<p>Article 22</p> <p>The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of an Industrial Design filed with the Industrial Property Office shall be accompanied by drawings, photographs or other adequate graphic representation of the article embodying the Industrial Design and an indication of the kind of products for which the Industrial Design is to be used. Where the Industrial Design is three-dimensional, the Industrial Property Office may request a real specimen or a maquette of the same along with the application. The application shall be subject to payment of the prescribed application fee.</p> <p>The application must contain specifications of the Design and where the applicant is not the creator (designer), a statement justifying the applicant's right to the registration of the Industrial Design shall accompany the application.</p>	<p>제 22 조</p> <p>산업재산권청에 제출된 산업디자인 등록출원에는 산업디자인을 구현한 물품의 도면·사진 또는 충분한 그래픽 표현 및 산업디자인이 사용될 제품의 종류 표시가 첨부된다. 산업디자인이 입체적인 경우 산업재산권청은 출원서에 기재된 물품의 시제품 또는 모형을 요청할 수 있다. 출원인은 정해진 출원료를 납부하여야 한다.</p> <p>출원서에는 명세서가 포함되어야 하며, 출원인이 창작자(디자이너)가 아닌 경우 산업디자인의 등록에 대한 출원인의 권리를 정당화하는 진술이 첨부되어야 한다.</p>
<p>Article 23</p> <p>Articles (5), (9), 11(c) and (15) of the present Act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for Industrial Designs.</p>	<p>제 23 조</p> <p>이 법률의 제5조, 제9조, 제11조(c), 및 제15조는 산업 디자인에 그대로 적용된다.</p>
<p>Article 24</p> <p>Two or more Industrial Designs may be the included in one single application, provided that they relate to the same class of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r to the same set or composition of articles.</p>	<p>제 24 조</p> <p>둘 이상의 산업디자인이 동일한 국제 분류에 포함되거나, 동일한 세트 또는 구성을 이루는 물품인 경우 하나의 출원으로 할 수 있다.</p>

<p>Article 25</p> <p>At the time of filing the application, it may be requested that the publication of the Industrial Design, upon registration, be deferred for a period not exceeding 12 months from the date of filing, or if priority is claimed, from the date of priority, of the application.</p>	<p>제 25 조</p> <p>출원인은 출원일 또는 우선권 주장한 경우 우선일로부터 12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산업디자인 공개의 연기를 요청할 수 있다.</p>
<p>Article 26</p> <p>The applicant may withdraw the application at any time while it is under examination.</p>	<p>제 26 조</p> <p>출원인은 출원이 심사중인 때 출원을 취하할 수 있다.</p>
<p>Article 27</p> <p>The examination, registration and publication of the Industrial Design shall be as follows:</p> <p>a) The filing date shall be the date on which the application has been submitted to the Industrial Patent Office, provided that, at the time of its submission, the application contains indications allowing the identity of the applicant to be established and required graphic representation of the article that embodies the Industrial Design.</p> <p>b) After receiving the application, the Industrial Property Office shall examine the application to determine if it complies with the requirements of Article 22 and whether the said Industrial Design complies with the requirements of Articles 20 and 4(f) and the Regulations pertaining thereto.</p>	<p>제 27 조</p> <p>산업 디자인의 심사, 등록 및 공개는 이하와 같다.</p> <p>a) 출원서 제출시 출원인이 식별되고 산업디자인을 구현하는 물품의 그래픽 표현이 표시되면 출원일은 출원서가 제출된 날로 한다.</p> <p>b) 출원서 접수 후 산업재산권청은 출원이 제22조 요건에 합치하는지 여부 및 산업디자인이 제20조 제4조 (f) 및 이에 대한 규칙에 합치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출원을 심사한다.</p> <p>c) 산업재산권청은 출원이 제27조 (b)를 만족하는 경우 산업디자인을 등록하고 등록원부를 발행하며, 출원인에게 산업디자인 등록증을 발행한다. 다만 출원이 제27조 (b)를 만족하지 않는 경우 등록은 거절된다.</p>

c) Where the Industrial Property Office finds that the conditions referred to in subsection (b) hereof are fulfilled, shall proceed to register the Industrial Design, publish a reference to the registration and shall issue to the applicant a Certificate of Registration of the Industrial Design; otherwise, the said Office shall reject the application.

d) Where a request has been made under Article 25, upon registration of the Industrial Design, neither the representation of the design nor the contents of the application shall be published. In this case, the Industrial Property Office shall publish a mention of the deferment of the publication of the Industrial Design and information identifying the owner of the registered Design, and indicating the filing date of the application, the length of period for which deferment has been requested and any other prescribed particulars. At the expiry of the requested period of deferment, the Industrial Property Office shall publish the registered Industrial Design. The institution of legal proceedings on the basis of a registered Industrial Design during the period of deferment of publication shall be subject to the condition that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the Register and the file relating to the application has been communicated, in writing, to the person against whom the action is brought.

d) 제25조의 디자인 공개 연기 요청이 있으면 산업디자인 등록시 디자인의 표현이나 출원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는다. 이 경우 산업재산권청은 산업디자인 공개 연기 취지 및 등록디자인의 소유자를 표시하고, 출원일, 공개 연기 기간 및 그 밖의 특이 사항에 대한 정보를 게재한다. 공개 연기 기간 내 등록된 산업디자인에 기한 법적 절차는 출원 및 등록원부에 포함된 정보가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되어야 한다.

Article 28

Rights conferred by Registration of the Industrial Design, duration and renewal of the same shall be as follows:

- a) The exploitation of a registered Industrial Design in Iran by persons shall require the agreement of the owner thereof.
- b) Exploitation of a registered Industrial Design means making, selling or importation of articles incorporating the said Industrial Design.
- c) The registered owner of an Industrial Design may institute court proceedings against any person who performs any of the acts referred to in the subsection (b) above without his consent, or performs acts which make it likely that future infringement will occur.
- d) The registration of an Industrial Design shall be valid for a period of five years from filing date of the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This period may be renewed for two further consecutive periods of five years after payment of the prescribed fees. After expiry of each period that starts at the end of the said period, a grace period of six months shall be allowed for the late payment of the renewal fee. A fine for late payment shall also be fixed.

제 28 조

산업디자인의 등록에 의해 발생하는 권리, 권리의 존속기간 및 갱신은 다음과 같다.

- a) 이란 내에서 제3자가 등록산업디자인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산업디자인권자의 허락을 필요로 한다.
- b) 등록산업디자인의 실시는 상기 산업디자인을 포함하는 물품의 제조, 판매 또는 수입을 의미한다.
- c) 산업디자인권자는 동의 없이 동조 (b)에 규정된 행위를 하는 자 또는 장래 침해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해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 d) 등록산업디자인의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5년이다. 존속기간 만료시 수수료를 납부하면 2회에 한하여 각각 5년의 존속기간 갱신이 가능하다. 또한 존속기간 만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갱신에 대한 수수료의 지연 납부가 가능하다. 수수료 지연 납부에 대한 벌금 또한 정해져있다.

Article 29

Any interested person may request the court to invalidate the registration of an Industrial Design. For this purpose, the said person requesting the invalidation must prove that any of the requirement of Articles 20 and 21 is not fulfilled or that the registered owner of the Industrial Design is not the creator or his successor in title. Last paragraph of Article 18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제 29 조

이해관계인은 법원에 등록된 산업디자인의 무효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무효청구인은 제20조 및 제21조의 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는 것을 입증하거나, 산업디자인권자가 창작자 또는 적법한 승계인이 아님을 입증하여야 한다. 제18조의 마지막 단락 또한 적용된다.

다 상표법

이란상표법	번역문
<p>Article 30 Definitions of Marks, Collective Marks and Trade Names are as follows:</p> <p>a) “Mark” means any visible sign capable of distinguishing the goods or services of legal entities or of natural persons.</p> <p>b) “Collective Mark” means any visible sign designated as such in the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and capable of distinguishing the origin or any other characteristics, including the quality, of goods or services of natural persons or of legal entities which use the sign under the control of the registered owner of the Collective Mark;</p> <p>c) “Trade Name” means the name or designation identifying and distinguishing a natural person or a legal entity.</p>	<p>제 30 조 상표, 단체 표장 및 상호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a) “상표(Mark)”는 법인 또는 자연인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별할 수 있는 시각적인 표시(sign)를 의미한다.</p> <p>b) “단체 표장(Collective Mark)”은 단체표장권자의 통제하에 표장을 사용하는 법인이나 자연인의 상품 또는 서비스의 품질을 포함하는 출처 또는 다른 특성을 구별할 수 있는 시각적인 표시를 의미하며.</p> <p>c) “상호(Trade Name)”는 법인이나 자연인을 식별하고 구별하는 이름이나 표시를 의미한다.</p>
<p>Article 31 The exclusive right to use a Mark shall belong to the person who registers his Mark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Act.</p>	<p>제 31 조 상표를 사용하기 위한 독점권은 이 법률의 규정에 따라 상표를 등록한 자에게 속한다.</p>

Article 32

A Mark is not registerable in the following cases:

- a) If it is not capable of distinguishing the goods or service of one enterprise from those belonging to another enterprise.
- b) If it is contrary to Rules of Sharia, public order or morality.
- c) If it is likely to mislead the public or trade centers, in particular as regards the geographical origin of the goods or services concerned or their nature or characteristics.
- d) If it is identical with, or is an imitation of or contains as an element, an armorial bearing, flag or other emblem, a name or abbreviation or initials of the name of, or official sign or hallmark adopted by, any State, 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 created under an international convention, unless authorized by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at State or organization.
- e) If it is identical with, or confusingly similar to, or constitutes a translation of, a mark or trade name which is well known in Iran for identical or similar goods or services of another enterprise.
- f) If an identical or similar mark has been registered or become well know for services that are not similar provided that customarily there is a connection between the use of the mark and the owner of the well know mark

제 32 조

다음과 같은 경우 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다.

- a) 한 기업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다른 기업의 상품이나 서비스로부터 식별할 수 없는 경우.
- b) 이슬람 율법, 공중의 질서 또는 도덕에 반하는 경우.
- c) 특히 관련 상품이나 서비스의 지리적 출처와 관련된 성질 또는 특성에 대해 공중이나 거래 당사자들을 오인시키는 경우.
- d) 해당 국가나 조직의 감독관청에 의하여 위임되지 않으면 소정 국가 또는 국제 협약에 의하여 발생된 정부간 조직에 의하여 사용되는 품질 마크 또는 공적 표시, 성명·약자 또는 이니셜, 국기 또는 다른 상징, 문장을 일 요소로서 포함하거나 모방하는 경우 또는 이와 동일한 경우.
- e) 또 다른 기업의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대해 이란에서 잘 알려진 상표 또는 상호의 번역을 구성하거나,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하거나, 또는 동일한 경우.
- f) 관습적으로 상표의 사용과 주지 상표의 소유자 사이의 관련성이 존재하고 그 상표의 등록이 주지 상표 소유자의 이익을 손상시키는 경우,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유사하지 않은 서비스에 대해 등록되거나 잘 알려진 경우.
- g) 동일한 상품이나 서비스 또는 관련성에 기인하여 오인시키거나 혼동을 초래할 수 있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우선권이나 선행 출원일을 가진 다른 소유주의 이름으로 등록된 상표와 동일한 경우.

<p>and that its registration is likely to damage interests of the owner of the well-known mark,</p> <p>g) If it is identical with a mark registered in the name of a different proprietor with an earlier filing date or a priority right in respect of the same goods or services or for goods and services that, due to connection or resemblance, is likely to deceive or cause confusion.</p>	
<p>Article 33</p> <p>The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of a Mark shall be filed with the Industrial Property Office together with a reproduction of the Mark and a list of goods or services for which registration is requested, under the applicable class (es) of the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The applicant shall pay the prescribed application fees.</p>	<p>제 33 조</p> <p>상표 등록 출원은 상표 사본과 국제 분류의 적용에 의한 등록이 요청된 상품이나 서비스의 목록과 함께 산업재산권청에 제출되어야 한다. 출원인은 정해진 출원료를 납부하여야 한다.</p>
<p>Article 34</p> <p>If the application contains a declaration claiming priority rights under the Paris Convention for Protection of Industrial Property, of an earlier application filed by the applicant or his predecessor in title in any State party to the said Convention, provisions of Article 9 shall apply.</p>	<p>제 34 조</p> <p>출원이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한 파리 협약에 의해 상기 협약에 속하는 국가에서 출원인이나 적법한 그의 승계인에 의하여 출원된 이전 출원의 우선권을 주장하는 선언을 포함하는 경우, 제9조 규정이 적용된다.</p>
<p>Article 35</p> <p>The applicant may withdraw the application at any time while the application has not matured to registration.</p>	<p>제 35 조</p> <p>출원인은 출원이 등록되지 않은 동안 출원을 취하할 수 있다.</p>

<p>Article 36</p> <p>The Industrial Property Office shall examine the application to determine if it complies with the requirements of the present Act and, if finds it registrable, shall allow publication of the application.</p>	<p>제 36 조</p> <p>산업재산권청은 이 법률의 요건에 합치하는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출원을 심사하며, 등록가능한 경우 출원을 공고한다.</p>
<p>Article 37</p> <p>Any interested party may, within a maximum period of thirty day running from the publication date, lodge an opposition on the grounds that the requirements of the Article 30(a) and 32 of the present Act are not fulfilled. I this case,</p> <p>1. The Industrial Property Office shall serve a copy of such opposition on the applicant, and shall allow the applicant to state his response within a period of twenty days. If the applicant insists on his application, he shall send to the Industrial Property Office a counter-statement together with the grounds on which he relies for his application. Otherwise, the application will be deemed to have been withdrawn.</p> <p>2. If the applicant sends a counter-statement, the Industrial Property Office shall furnish a copy thereof to the person filing the opposition and, after taking into consideration the statements of the parties, and provisions of the present Act, shall decide whether to register or otherwise reject the Mark.</p>	<p>제 37 조</p> <p>이해 당사자는 공고일로부터 최대 30일 기간 내에 이 법률의 제30조 (a) 및 32 조의 요건들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p> <p>1. 산업재산권청은 출원인에게 이의신청의 사본을 송달하고 20일의 기간 내에 출원인에게 답변을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출원인이 출원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면, 산업재산권청에 그의 출원에 대해 신뢰하는 이유와 함께 반박서를 제출한다. 그렇지 않으면, 출원은 취하될 것이다.</p> <p>2. 출원인이 반박서를 제출하면, 산업재산권청은 이의신청을 제출한 자에게 그 사본을 송부하고, 당사자들의 진술 및 이 법률의 규정들을 고려한 후 상표의 등록 또는 거절 여부를 결정한다.</p>

<p>Article 38</p> <p>After an application is published and until the registration of the Mark, the applicant has the same privileges and rights as he would have if the Mark had been registered; However, if the applicant lodges an action against an act that has been performed after publication of the application and if the defendant proves that at the time of performing the said act, the Mark had not been legally registrable, the defendant's defense shall be heard and appropriate decision will be made regarding registration or rejection of the Mark.</p>	<p>제 38 조</p> <p>출원이 공고된 후 상표등록 전까지, 출원인은 상표가 등록되었을 때 가지는 것과 같은 특권과 권리를 가진다. 그러나, 출원인이 출원 공고 후에 실행된 행위에 대해 고소(action)를 제기하면, 피고소인이 상기 법률을 실행할 때 상표가 법적으로 등록받을 수 없었던 것을 입증하는 경우 피고소인의 답변이 청취되고 상표의 등록 또는 거절에 대한 적절한 결정이 이루어질 것이다.</p>
<p>Article 39</p> <p>If the Industrial Property Office finds that the conditions referred to in the present Act are duly fulfilled, the said Office shall register the Mark, issue the notice of registration of the Mark and issue to the applicant a Certificate of Registration.</p>	<p>제 39 조</p> <p>산업재산권청은 출원이 이 법률에서 규정된 조건들이 충족된 경우 상표를 등록하고, 상표등록통지서를 발행하고 출원인에게 등록증을 발행한다.</p>

Article 40

Rights Conferred by Registration, Duration and Renewal of Registration shall be as follows:

- a) The use of any Mark registered in Iran by any person other than the registered owner shall require the consent of the latter.
- b) The registered owner of a Mark shall have the right to institute court proceedings against any person who infringes the Mark by using, without his agreement, the Mark as aforesaid or who performs acts which make it likely that infringement will occur. This right shall extend to the use of a Mark similar to the registered Mark and the use thereof in relation to similar goods and services that shall cause confusion.
- c) The rights conferred by registration of a Mark shall not extend to acts in respect of goods and services which have been imported into Iran and put on the Iranian market by the registered owner or with his consent.
- d) The validity of registration of a Mark shall be ten years from the filing date of its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This period may, at the request of its owner, be renewed for consecutive periods of ten years, upon payment of the prescribed fees. A grace period of six months running from the expiration date of the said period shall be allowed for the late payment of the renewal fee on payment of the prescribed fine.

제 40 조

등록에 의하여 부여된 권리, 등록의 갱신 및 존속기간은 다음과 같다.

- a) 이란에서 등록된 상표의 등록된 소유자 외의 다른 사람에 의한 사용은 소유자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 b) 상표의 등록된 소유자는 상기 상표를 소유자의 허락 없이 사용함으로써 상표를 침해하는 자 또는 침해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해 법적 절차를 진행할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등록 상표와 유사한 상표의 사용 및 혼동을 초래하는 유사한 상품 및 서비스에 관련한 상표의 사용에 미친다.
- c) 상표의 등록에 의하여 부여된 권리는 등록된 소유자 또는 그의 허락을 받은 자에 의하여 이란 내로 수입되거나 시장에 제공된 상품 및 서비스에 관련되는 행위에는 미치지 않는다.
- d) 상표 등록의 효력은 그 등록 출원의 출원일로부터 10년이다. 상표 소유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이 기간은 정해진 수수료의 납부에 의하여 이후 10년 동안 갱신될 수 있다. 규정된 과태료(fine) 납부시, 갱신 요금의 지연 납부에 대해 존속 기간의 만료일로부터 6개월의 유예기간이 허용된다.

<p>Article 41</p> <p>Any interested person may request the court to cancel the registration of a Mark. In this case, the said person must prove that the provisions of Article 30(a) and Article 32 of the present Act have not been fulfilled.</p> <p>Any cancellation of a registration of a Mark shall be effective as of the date of registration, and a notice to that effect shall be published as soon as possible.</p> <p>Any interested person may request the court to invalidate the registration, if he establishes that, the owner of a registered Mark, or a person authorized by him, has not used the said Mark for a period of at least three full years running from the date of registration up to one month prior to filing the request. However, if it is established that use of the Mark has been prevented due to Force Majeure, the registration shall not be invalidated.</p>	<p>제 41 조</p> <p>이해당사자는 상표등록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상기 당사자는 이 법률의 제30(a)조 및 제32조 규정이 충족되지 않은 것을 입증하여야 한다.</p> <p>상표등록의 취소는 등록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그러한 취지의 통지는 가능한 신속하게 공고되어야 한다.</p> <p>이해 관계인은 등록된 상표의 소유자, 또는 그에 의하여 위임받은 자가 등록일로부터 시작하여 청구의 제출전 1개월에 이르기까지 적어도 3년 동안 상기 상표를 사용하지 않은 것을 입증하여 법원에 등록의 무효(invalidation)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상표의 사용이 금지된 것이 입증되면, 등록은 무효로 되지 않는다.</p>
<p>Article 42</p> <p>Subject to provisions of the present Article, and Article 43, provisions of Article 31 to 41 of the present Act shall apply to Collective Marks as well.</p> <p>The application for a Collective Mark, shall contain a reference to indicate that the Mark applied is a Collective Mark,</p>	<p>제 42 조</p> <p>이 조항 및 제 43 조의 규정에 따라, 이 법률의 제 31 조 내지 제 41조의 규정들은 단체표장에 적용된다.</p> <p>단체표장 출원은 단체표장인 것을 표시하는 참조를 포함하여야 하고, 해당 단체표장의 사용을 규율하는 규정의 사본이 첨부되어야 한다. 단체표장의 소유자는 단체표장의 사용을 규율하는 규정에 대해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산업재산권청에 통지하여야 한다.</p>

<p>and shall be accompanied by a copy of the regulations governing the use of the Collective Mark. The registered owner of a Collective Mark shall notify the Industrial Property Office of any changes made in respect of the regulations referred to the previous sentence hereof.</p>	
<p>Article 43 In addition to the grounds provided in Article 41, the court shall invalidate the registration of a Collective Mark if the claimant proves that the registered owner uses the Mark on his own, or that he uses or permits its use in contravention of the regulations referred to in Article 42, or that he uses or permits its use in a manner liable to deceive trade circles or the public as to the origin or any other common characteristics of the goods or services concerned.</p>	<p>제 43 조 제 41 조에서 규정된 이유 외에도, 등록된 소유자만이 표장을 사용하거나, 소유자의 사용 또는 그 사용에 대한 허락이 제42조의 규정에 위배된 경우, 또는 관련된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 또는 다른 공통의 특성에 대해 거래업자들이나 공중을 기만할 수 있는 방식으로 소유자가 사용하거나 그 사용을 허락하는 것을 고소인이 입증하면, 법원은 단체표장의 등록을 무효로 할 수 있다.</p>
<p>Article 44 Any License Contract concerning the use of registration of a Mark, or an application thereof, must provide for effective control by the licensor of the quality of goods or services of the licensee. Otherwise, or if such control is not effectively carried out, the License Contract shall not be valid.</p>	<p>제 44 조 등록 상표나 그 출원의 사용에 대한 실시권 계약은 실시권자의 상품이나 서비스의 품질에 대한 실시 허락자의 효과적인 통제하에 있어야 한다. 그러한 통제가 효과적으로 수행되지 않는 경우 실시권 계약은 효력이 없다.</p>

<p>Article 45</p> <p>The registration of a Collective Mark or an application thereof, may not be subject of a License Contract.</p>	<p>제 45 조</p> <p>단체표장의 등록이나 그 출원은 실시 계약의 대상이 아니다.</p>
<p>Article 46</p> <p>A name or designation, the nature or manner of use of which is contrary to Rules of Sharia, public order or morality and or if it is liable to deceive trade circles or the public as to the nature of the enterprise identified by that name, may not be used as a Trade Name.</p>	<p>제 46 조</p> <p>이슬람 율법, 공중 질서 또는 도덕에 반하는 상호 또는 표시, 사용 방식 또는 성질 및/또는 해당 상호에 의하여 특정되는 기업의 성질에 대해 거래업계 또는 공중을 기만할 수 있는 경우 상호로서 사용될 수 없다.</p>
<p>Article 47</p> <p>Subject to any laws or regulations providing for obligatory registration of Trade Names, such Names shall be protected, even without registration, against any unlawful act committed by third parties.</p> <p>Any use of the Trade Name by a third party, whether as a Trade Name, a Mark or a Collective Mark, or any use thereof likely to mislead the public, shall be deemed unlawful.</p>	<p>제 47 조</p> <p>상호의 강제적 등록을 규정하는 법률이나 규정에 따라, 그러한 상호는 등록이 없는 경우에도 제3자에 의하여 수행된 불법적 행위에 대해 보호된다.</p> <p>상호로서, 상표 또는 단체표장으로서 제3자에 의한 상호의 사용, 또는 공중을 오인시킬 것으로 보이는 사용은 법률에 위반된다.</p>

라 특허 · 상표 · 디자인 일반규정

이란 일반 규정	번역문
<p>Article 48</p> <p>Any changes in the ownership of a Patent, the registration of an Industrial Design or the registration of a Mark or Collective Mark, or the right of ownership derived from filing an application thereof, at the written request of any interested party submitted to the Industrial Property Office shall be recorded and, except in the case of changes in the ownership of an application, shall be published by the said Office. Such changes shall have no effect against third parties until such request is filed.</p> <p>Any change in the ownership of the registration of a Mark or a Collective Mark shall be invalid if it is likely to deceive or cause confusion in regard to the nature, origin, manufacturing process, characteristics, or suitability for the purpose of the goods or services in relation to which the Mark or Collective Mark is intended to be used or is being used</p> <p>Any change in the ownership of registration of a Collective Mark, or in the ownership of an application thereof, shall require prior approval of the Head of State Organization for Registration of Deeds and Properties.</p>	<p>제 48 조</p> <p>출원의 소유권이 변경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특허 소유자, 산업 디자인의 등록, 상표 또는 단체표장의 등록, 또는 그의 출원의 제출로부터 발생된 소유권의 변경은 산업재산권청에 제출된 이해 당사자의 서명 신청에 따라 기록되며, 산업재산권청에 의하여 공개된다. 상기 변경은 그러한 신청이 제출되기까지 제3자에 대해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p> <p>상표 또는 단체표장의 등록된 소유권의 변경은 상표 또는 단체표장이 사용되거나 사용될 예정인 상품 또는 서비스를 위하여 성질, 출처, 제조 공정, 특징, 또는 적합성에 대해 오인시키거나 혼동을 초래하는 경우 무효이다.</p> <p>단체표장의 등록의 소유권, 또는 그 출원의 소유권의 변경은 재산권의 등록에 관한 국가 조직의 장관(Head of State Organization for Registration of Deeds and Properties)의 승인이 필요하다.</p>

<p>Article 49 Any change in the ownership of a Trade Name must be made with the transfer of the enterprise or part thereof identified by that name.</p>	<p>제 49 조 상호의 소유권의 변경은 해당 상호에 의하여 특정된 기업 또는 그 일부의 이전과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p>
<p>Article 50 Any License Contract concerning a patent, registered Industrial Designs or a registered Mark, or an application thereof, shall be submitted to the Industrial Property Office. The said Office shall keep the contents of the said contract confidential but shall record it and publish a reference thereto. The effect of such contracts against third parties shall be subject to fulfillment of the above mentioned procedures.</p>	<p>제 50 조 특허, 등록된 산업 디자인, 등록 상표 또는 그 출원에 대한 실시 계약은 산업재산권청에 제출되어야 한다. 산업재산권청은 계약 내용을 비밀로 유지하며, 이를 기록하고 이에 대한 문헌을 공개한다. 상기 절차가 완료되면 제3자에 대한 계약의 효과가 발생한다.</p>
<p>Article 51 Where an applicant's place of residence or principal place of business is outside Iran, his legal representative that resides and practices in Iran, may carry out the required steps as his representative.</p>	<p>제 51 조 출원인의 주거지 또는 사업 주소재지가 이란 외부에 있는 경우, 이란에 거주하며 활동하는 법정 대리인은 그의 대리인으로서 필요한 단계들을 실행할 수 있다.</p>
<p>Article 52 (1) The State Organization for Registration of Deeds and Properties shall be responsible for the Industrial Property matters and shall represent the Islamic Republic of Iran at the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and the Unions relating to the respective conventions.</p>	<p>제 52 조 (1) 행위 및 재산권의 등록에 관한 국가 기관(The State Organization for Registration of Deeds and Properties)은 산업 재산권 문제를 책임지며 세계 지적재산권기구 및 각각의 협약과 관련된 협회에서 이란 이슬람 공화국을 대표한다.</p>

<p>Registration of all Industrial Property matters including Patents, Marks, Collective Marks, and Industrial Designs shall also be carried out by the Industrial Property Office of The State Organization for Registration of Deeds and Properties. In cases where, by law, other bodies and organizations carry out examination and registration processes, they shall enjoy the protection and privileges provided for by the present Act if their proprietorship or patent, as the case may be, is duly registered at the Industrial Property Office.</p>	<p>특허, 상표, 단체표장 및 산업 디자인을 포함하는 모든 산업 재산권 문제의 등록은 또한 행위 및 재산권 등록을 위한 국가 기관(The State Organization for Registration of Deeds and Properties)의 산업재산권청에 의하여 실행된다. 법에 의하여 다른 주체 및 조직들이 심사 및 등록 절차를 수행하는 경우, 그들의 소유권 또는 특허가 산업재산권청에서 적법하게 등록되면, 그들은 이 법률에 의하여 제공되는 보호와 특권을 향유한다.</p>
<p>Article 53 The State Organization for Registration of Deeds and Properties shall, by making use of modern methods, maintain separate Registers for Patents, Industrial Designs and Marks. Collective Marks shall be registered in a special section of the Register of Marks.</p>	<p>제 53 조 행위 및 재산권 등록을 위한 국가 조직(The State Organization for Registration of Deeds and Properties)은 현대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특허, 산업 디자인 및 상표에 대한 별개의 등록원부를 유지한다. 단체표장은 상표 등록원부의 특별한 조항에 등록된다.</p>
<p>Article 54 The data appearing in the Registers shall be accessible to all persons, and any person may obtain his required information under the conditions as prescribed in the Regulations.</p>	<p>제 54 조 누구나 등록원부에 기입된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으며, 정해진 규정 하에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p>
<p>Article 55 The Industrial Property Office shall publish all the publications provided for in this Act in the Official Gazette.</p>	<p>제 55 조 산업재산권청은 이 법률에 의하여 제공된 모든 출판물을 관보에 공개한다.</p>

<p>Article 56</p> <p>The Industrial Property Office is authorized to correct any error of translation or transcription, clerical error, errors or mistakes in any application or in any recording effected pursuant to this Act or the Regulations.</p>	<p>제 56 조</p> <p>산업재산권청은 이 법률 또는 규칙들에 따라 효력이 발생한 번역 또는 전사의 오류, 사무적 오류, 소정의 출원 또는 소정의 기록에서의 오류 또는 과실을 교정하도록 위임된다.</p>
<p>Article 57</p> <p>Upon receiving a written request for extension of any deadline for any act as prescribed in the present Act or the Regulations, and upon considering the prevailing circumstances, the Industrial Property Office may proceed to extend the respective deadline. This extension shall take place by sending a notice to the parties concerned under the provisions stipulated in the Regulations.</p>	<p>제 57 조</p> <p>이 법률이나 규칙에서 정해진 행위에 대한 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서면상의 신청을 접수한 때, 그리고 일반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산업재산권청은 각 기한을 연장하도록 할 수 있다. 기한의 연장은 규칙(Regulations)에 정해진 규정들에 따라 관련 당사자들에게 통지를 송부함으로써 발생된다.</p>
<p>Article 58</p> <p>The Industrial Property Office, before exercising the discretionary powers vested in the said Office by law, shall give any party against whom the said Office wishes to make a decision, a sufficient opportunity to present his statement. In such cases, any decision shall be made by taking into due consideration the said Statement.</p>	<p>제 58 조</p> <p>법률에 의하여 산업재산권청에 부여된 재량권을 실행하기 전, 산업재산권청은 재량권의 실행의 대상이 되는 어느 당사자에게 그의 의견을 진술할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사자의 진술을 적절히 고려하여 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p>

Article 59

Disputes relating to the application of this Act and the Regulations shall fall within the scope of jurisdiction of special Section or Sections of the Public Court of Tehran that shall be designated by the head of the Judiciary within a maximum period of six months, from approval of the present Act.

Any decision taken by the Industrial Property Office may be subject of appeal by any interested party who may file their appeal through a petition lodged with the competent court within two months from the date of servicing or notification of the decision. Appealing against the decisions and their examination shall be governed in accordance with the Iranian Civil Procedure Act for the Public and Revolutionary Courts in Civil Matters.

제 59 조

이 법률과 규칙의 적용에 대한 분쟁은 이 법률의 승인으로부터 최대 6개월 기간 내에 법무부 장관에 의하여 테헤란 보통 법원의 특수부 또는 부서들의 사법권의 범위 내에 속한다.

항고할 수 있는 이해당사자는 산업재산권청에 의하여 이루어진 결정에 대해 결정의 통지 또는 발효일로부터 2개월 내에 관할법원에 신청을 통해 제소할 수 있다.

결정들과 심사에 대한 불복은 민사문제들에 대한 공공 및 혁명 법원을 위한(for the Public and Revolutionary Courts in Civil Matters) 이란 민사소송법에 따라 규제된다.

Article 60

Infringement of the rights mentioned in the present Act shall consist of performance of any act in Iran by a person other than the owner of the rights that enjoy protection under the present Act and without the agreement of the latter.

제 60 조

이 법률에서 기재된 권리의 침해는 이 법률 아래 그리고 권리 소유자의 동의 없이 보호를 향유하는 권리들의 소유자 외의 자에 의한 이란에서의 소정 행위들의 실행으로 구성된다.

<p>In addition to the owner of the rights protected under the present Act, if it is established that a licensee has requested the owner to institute court proceedings for a specific relief and the owner has refused or failed to do so, the Court may, in addition to granting an injunction to prevent infringement or an imminent infringement, award damages and grant any other remedy to administer justice.</p>	<p>이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들의 소유자들에 부가해서, 특별한 구제를 위하여 소유자에게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를 실시권자가 요청하고 소유자가 거절하거나 그렇게 수행하지 못한 것을 확정하면, 법원은 침해 또는 직접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명령을 내리는 외에, 정의를 집행하기 위하여 다른 구제방안을 제공하고 손해를 배상한다.</p>
<p>Article 61 Any person who, knowingly and intentionally, performs an act which constitutes an infringement as defined under Articles 15, 28 and 40 or an unlawful act as defined in Article 47, shall be guilty of an offence punishable by a fine from Iranian Rial ten million (10,000,000 Rial) to Iranian Rial fifty million (50,000,000 Rial) or imprisonment term of 91 days to 6 months or both as well as payment of any damages arising from the said acts.</p> <p>In civil proceedings in respect of violation of the rights of the owner of the patent, where the subject matter of the patent is a process for obtaining a product, if the following conditions are fulfilled, the burden of establishing that a product was not made by the said process shall be on the defendant in the infringement action. In this case,</p>	<p>제 61 조 제 15, 28 조 및 제 40 조에서 규정된 침해를 구성하는 행위 또는 제 47 조에서 규정된 불법적 행위를, 알고서 의도적으로, 실행한 자는 천만 이란 리알(10,000,000 Rial) 내지 5천만 이란 리알(50,000,000 Rial)의 벌금 또는 91일 내지 6개월의 구속 또는 양자 모두 및 상기 행위로부터 발생한 손해의 지불에 의해 처벌가능한 범죄를 구성한다.</p> <p>특허의 대상이 제품을 획득하기 위한 공정인 경우, 특허 소유자 권리의 위반에 대한 민사 절차에서, 이하의 조건들이 충족되면, 상기 공정에 의하여 제품이 제조되지 않았다는 입증의 부담은 침해 행위의 피고에 있다. 이 경우, 필요한 문서와 증거가 제출되면, 법원은 그의 제조 및 사업상 비밀을 개시하지 않는 피고의 법적 이익을 고려한다.</p>

<p>if the required documents and evidences are submitted, the Court shall take into account the legitimate interests of the defendant in not disclosing his manufacturing and business secrets.</p> <p>a) The product is new.</p> <p>b) A substantial likelihood exists that the product was made by the said process and the owner of the registered rights, despite reasonable efforts, has been unable to determine the process actually used.</p>	<p>a) 제품이 새롭다.</p> <p>b) 제품이 상기 공정에 의하여 제조된 실질적 유사성이 존재하고 등록된 권리의 소유자는 합리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사용된 공정을 판단할 수 없다.</p>
<p>Article 62</p> <p>In case of conflicts between the provisions of this Act and the provisions of any international treaties in respect of Intellectual Property to which Iran is or will become a party, provisions of the said treaties shall prevail.</p>	<p>제 62 조</p> <p>이 법률의 규정과 이란이 가입하거나 당사자가 되는 지적 재산권의 국제 협약의 규정 사이의 충돌의 경우, 상기 협약의 규정이 우선한다.</p>
<p>Article 63</p> <p>Through prescription of the required provisions in the Annual Budget Acts, up to fifty (50%) percent of the income in foreign exchanges derived through implementation of Conventions pertaining to international registration of Industrial Property, that is acquired after approval of the present Act, shall be allocated in the respective Annual Budget Act to promotion and improvement of the Industrial Property Office's equipments so as to enhance quality of performance of the said Office.</p>	<p>제 63 조</p> <p>연간 예산법(Annual Budget Acts)의 필요한 규정의 제정을 통해, 이 법률의 승인 후에 획득될, 산업 재산권의 국제 등록에 관한 협약의 시행을 통해 발생된 외화 수입의 최대 50%는 연간 예산법에서 산업재산권청의 업무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상기 관청의 시설의 증대 및 개선에 배당된다.</p>

<p>Article 64</p> <p>The Regulations for the execution of this Act shall be prepared by The State Organization for Registration of Deeds and Properties within one year after its approval and shall be further approved by the Head of the Judiciary Power. The said Regulations shall, in particular, provide for the schedule of the respective fees for applications for the grant of patents and for the registration of Industrial Designs, Marks and Collective Marks, renewals and fines for late payments with due observation of provisions of the present Act and those of the concerned Conventions to which Islamic Republic of Iran is a member, and shall be revised every three years, if necessary.</p>	<p>제 64 조</p> <p>이 법률의 실행을 위한 규칙은 법률의 승인 후 1년 내에 행위 및 재산권 등록을 위한 국가 조직에 의하여 준비되고 사법부 장관에 의하여 승인된다. 상기 규칙은, 특히, 특허 허락 및 산업 디자인, 상표 및 단체표장의 등록 신청, 이란 이슬람 공화국이 구성원인 관련 협약의 규정들과 이 법률의 규정들을 적법하게 준수하면서 지연 납부에 대한 벌금 및 갱신을 위한 각각의 요금표를 제공하며, 필요하면, 3년마다 개정된다.</p>
<p>Article 65</p> <p>The patents and trademarks registered under the previous act shall remain in force and shall be protected by the present Act. In this case:</p> <p>a. As for patents, the annual maintenance fees provided for in the present Act must be duly paid for the remaining period of their validity.</p> <p>b. Trademarks shall be renewed on their due date under the previous Act and, upon renewal, shall be reclassified according to the International Classification.</p>	<p>제 65 조</p> <p>이전의 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특허와 상표는 효력을 유지하고 이 법률에 의하여 보호된다. 이 경우.</p> <p>a. 특허들에 대해, 이 법률에 의하여 규정된 매년의 유지 요금이 그들의 잔여 유효 기간에 대해 적법하게 납부되어야 한다.</p> <p>b. 상표는 이전의 법률에 의하여 그들의 기한에 갱신되고, 그리고 갱신에 의하여, 국제 분류에 따라 상표는 재분류된다.</p>

<p>Article 66 From the date of entry into force of the present Act, the Trademarks and Patents Registration Act dated 1931, its subsequent revisions and amendments and the Regulations for the Execution of the same shall be repealed.</p>	<p>제 66 조 이 법률의 발효일로부터, 1931년 상표 및 특허 등록법, 그 후속 개정 및 수정 그리고 그의 실행 규정이 폐지된다.</p>
--	---

마 저작권법

1. 정의

이란 저작권법	번역문
<p>Article 1. All writers, composers, and artists will hereafter be called “author”, and the product of their knowledge, originality or art, irrespective of the method used, therein, will hereafter be called “work”</p>	<p>제 1 조. 모든 작가들, 작곡가들, 및 예술가들은이하 “저작자(author)”로서 불리고, 사용된 방법에 관계없이, 그들의 지식, 독창성 또는 기술의 산물은 “작품(work)”으로 불린다.</p>
<p>Article 2. Works protected by copyright law are as follows: 1. Books, pamphlets, plays and all other literary, scientific and artistic writings. 2. Poems, songs, and anthems, irrespective of the way they are written, recorded or broadcast. 3. Audio–visual works for stage or screen performances or for broadcasting by radio and television, irrespective of the way they are written, recorded or broadcast.</p>	<p>제 2 조.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작품은 이하와 같다. 1. 서적, 팜플렛, 희극 및 모든 다른 문학, 과학 및 예술의 글쓰기(writings). 2. 작성되고, 기록되거나 또는 방송된 방식에 상관없이, 시, 가요, 및 성가(anthems). 3. 작성되고, 기록되거나 또는 방송된 방식에 상관없이, 무대 또는 스크린 공연을 위하여거나 또는 라디오와 텔레비전에 의한 방송을 위한 시청각 작품.</p>

<ol style="list-style-type: none"> 4. Musical works irrespective of the way they are composed, recorded or broadcast. 5. Paintings, pictures, drawings, designs, decorative writings, geographical maps or any decorative and imaginative work produced in any simple or complex manner. 6. Sculptures of all types. 7. Architectural works, designs, sketches and buildings. 8. Photographic works produced by any original methods. 9. Original articles of applied handicraft and industrial art, carpet and rug designs. 10. Original works based on folklore and national heritage of culture and arts. 11. Technical works of originality. 12. Any other original works produced from combinations of the aforementioned works. 	<ol style="list-style-type: none"> 4. 작곡되고, 기록되거나 또는 방송된 방식에 상관없이, 음악 작품. 5. 회화(paintings), 그림(pictures), 도면들, 디자인, 장식적인 쓰기, 간단하거나 복잡한 방식으로 제작된 지리적인 지도 또는 장식적이며 상상의 작품. 6. 모든 형태의 조각. 7. 건축 작품, 디자인, 스케치 및 빌딩 8. 독창적인 방법들에 의하여 제작된 사진 작품. 9. 기능 및 산업적인 기술이 적용된 원래 물품, 카펫 및 덮개 디자인. 10. 문화 및 예술의 민속 및 국가 유산에 기초한 원래 작품. 11. 독창성 있는 기술 작품. 12. 상기 작품들의 조합으로 제조된 다른 원래 작품.
--	---

2. 저작자의 권리

이란 저작권법	번역문
<p>Article 3. Author's rights include exclusive right to publish, broadcast, perform and publicize works, and further right to any financial and intellectual profit resulting from his work or name.</p>	<p>제 3 조. 저작자의 권리는 작품을 반포하고, 방송하고, 공연하며 출판할 독점권, 및 그의 작품이나 성명으로부터 발생하는 금전적이며 지적인 이익에 대한 부가적인 권리를 포함한다.</p>
<p>Article 4. Author's intellectual rights have no place or time limit and are not transferable.</p>	<p>제 4 조. 저작자의 지적인 권리는 장소 또는 시간 제한이 없으며 양도할 수 없다.</p>

<p>Article 5.</p> <p>The author of works protected by this law can transfer his financial rights to another party in all cases including the following:</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Production of films for cinema, television and the like. 2. Stage performances, as in theatre, ballet or other such performances. 3. Recording of a work by sound or vision on tapes, or by any other such means. 4. Broadcast by radio and television, or by any other such means. 5. Translation, reproduction, publication and public presentation of works by means of painting, printing, photography, etching, photogravure, molding and the like. 6. Making use of the work in any scientific, literary, artistic, technical and advertising purposes. 7. Making use of the work in producing or creating other works as mentioned in article 2 above. 	<p>제 5 조.</p> <p>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작품의 저작자는 이하를 포함한 모든 경우들에서 그의 금전적인 권리를 다른 자에게 이전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영화 필름, 텔레비전 등의 제작. 2. 극장, 발레 또는 다른 공연에서와 같은 무대 공연. 3. 음향 또는 시각에 의하거나, 또는 다른 그러한 수단에 의한 테이프에의 작품의 기록. 4. 라디오 및 텔레비전에 의하거나, 또는 다른 그러한 수단에 의한 방송. 5. 회화, 인쇄, 사진, 에칭, 사진 식자, 몰딩 등에 의한 작품의 공적 시연 및 출판, 복제, 번역. 6. 과학, 문학, 예술, 기술 및 광고 목적으로 작품을 이용. 7. 위의 제 2 조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다른 작품을 창작하거나 제작하기 위한 작품의 이용.
<p>Article 6.</p> <p>Work produced by the collaboration of two or more authors, when the contribution of each of them is not separate or distinct, shall be called "Work of joint authorship", and the rights arising therefrom shall be treated as the communal rights of the authors.</p>	<p>제 6 조.</p> <p>둘 이상의 저작자들의 협력에 의하여 제작된 작품은, 그들 각자의 기여가 분리되거나 명백하지 않으면, "공동 저작 작품"으로 부르며, 그로부터 발생하는 권리는 저작자들의 공동 권리로서 처리된다.</p>
<p>Article 7.</p> <p>It is permissible to quote from published works and to refer to them for, literary, scientific, technical or educational purposes, and in criticism</p>	<p>제 7 조.</p> <p>반포된 작품으로부터 인용하는 것 및 문학, 과학, 기술 또는 교육 목적으로 및 비평이나 찬사에서 그들을 참고하는 것은, 인용의 출처들이 언급되고 관습적인 제한이 준수되면 허용된다.</p>

<p>or praise, provided that the sources of quotations are mentioned and the customary limitations are observed. NB. Mentioning the sources of quotations, in cases where the work is reproduced for use in educational institutions by teachers employed thereat, is not necessary, provided there is no monetary gain involved.</p>	<p>또한, 고용된 교사들에 의한 교육 단체들에서의 사용을 위하여 작품이 복제되는 경우에서, 인용 출처들을 기재하는 것은, 금전적인 이득이 포함되지 않으면 필요하지 않다.</p>
<p>Article 8. Public libraries, documentation centers, scientific institutions and educational establishments, which are noncommercial, may reproduce protected works by a photographic or similar process, in the numbers necessary, for the purposes of their activities, according to a decree to be issued by the Board of Ministers.</p>	<p>제 8 조. 비영리적인, 공중 도서관, 기록 센터, 과학 단체 및 교육 기관들은 그들의 활동을 위하여, 장관의 고시에 의하여 발행된 결정에 따라 필요한 부수로 사진이나 유사한 과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작품을 복제할 수 있다.</p>
<p>Article 9. With the passing of this law, the Ministry of information will retain the right to use any works it has already reproduced and published.</p>	<p>제 9 조. 이 법률의 통과에 따라, 정보부 장관(Ministry of information)은 이미 복제되고 반포된 작품들을 이용할 권리를 보유한다.</p>
<p>Article 10. With the passing of this law the Ministry of Education will retain the right to use any school books already printed and issued in agreement with the appropriate existing laws.</p>	<p>제 10 조. 이 법률의 통과에 따라, 교육부 장관은 적절한 기존 법률에 합치하여 이미 인쇄되고 발행된 학교 교과서들을 이용할 권리를 보유한다.</p>
<p>Article 11. Reproduction of works protected by this law, as mentioned in Article 2, section 1, and the recording of radio and television programmes are permissible, but only for private and noncommercial use.</p>	<p>제 11 조. 제 2 조 1항에서 기재된 바와 같이, 이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작품의 복제, 및 라디오 및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녹음은 허용될 수 있으나, 개인적이고 비상업적인 이용에 한정된다.</p>

3. 저작자의 권리의 보호 기간 및 다른 법적 보호

이란 저작권법	번역문
<p>Article 12.</p> <p>The financial rights of the author, the subject of this law, are transferred to his heirs, or by covenant, for a period of thirty years after his death. In the absence of such heirs or a transfer by covenant, the Ministry of Culture and Arts will hold the rights for public use for the same period of time. NB. In the case of works of joint authorship, reference Article 6, the date of the death of the last surviving author shall be considered alone for the calculation of the time of protection.</p>	<p>제 12 조.</p> <p>이 법의 주체인 저작자의 금전적인 권리는 그의 사후 30년 동안 그의 상속인에게 이전되거나, 또는 계약에 의하여 이전된다. 상속인이 없거나 계약에 의한 이전이 없으면, 문화예술부 장관(Ministry of Culture and Arts)은 동일한 기간 동안 공중의 이용을 위하여 해당 권리를 보유한다. 공동 저작자의 작품의 경우, 제 6 조를 참조하고, 최종 생존 저작자의 사망일만이 보호 기간 산출을 위하여 고려된다.</p>
<p>Article 13.</p> <p>The financial right of work produced by employees belongs to the employer for a period of thirty years from the date of production, unless a shorter period or more limited arrangements has been agreed upon. NB. Rewards, financial prizes and privileges which are given in literary, scientific and artistic contests according to their respective regulations, to works protected by this law belong to the author.</p>	<p>제 13 조.</p> <p>보다 단기간이나 보다 제한된 장치에 대해 합의되지 않으면, 피고용인들에 의하여 제작된 작품의 금전적인 권리는 제작일로부터 30년의 기간 동안 고용인에게 속한다. 부기(NB). 각각의 규정에 따른 문학, 과학 및 예술 공연에서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작품에 주어진 보상, 금전적인 포상 및 특권은 저작자에게 속한다.</p>
<p>Article 14.</p> <p>A person to whom the rights of the author have been transferred, is entitled to hold same for a period of 30 years, unless a shorter period is agreed upon.</p>	<p>제 14 조.</p> <p>저작자의 권리를 이전 받은 자는 단기간으로 계약된 것이 아니면, 30년 기간 동안 당해 권리를 보유한다.</p>

<p>Article 15. With respect to articles 13 and 14 of this law, on the expiry of the agreed period of time, ownership of rights will be restored to the author, or otherwise settled according to Article 12 above.</p>	<p>제 15 조. 이 법의 제13 조 및 제 14 조의 경우, 계약 기간의 만료에 따라 권리의 소유권은 저작자에게 회귀되며, 아니면 위의 제 12 조에 따라 결정된다.</p>
<p>Article 16. In the following cases, the author's financial rights will be valid for a period of 30 years from the date of publication or public presentation: 1. Photographic or cinematographic works. 2. In cases where the work belongs to a person of legal position.</p>	<p>제 16 조. 이하의 경우들에서, 저작자의 금전적인 권리는 반포 또는 공중의 전시일로부터 30년 기간 동안 효력을 가진다. a) 사진 또는 영상 작품. b) 작품이 법적 지위를 가진 자에게 속하는 경우.</p>
<p>Article 17. The name, tide and special characteristics of work are protected by this law, and no one is permitted to use the same or like for any other work in a manner that may give rise to doubt.</p>	<p>제 17 조. 작품의 이름, 풍조 및 특별한 특징은 이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고, 의심을 초래할 수 있는 방식으로 다른 작품에 동일하거나 유사하게 사용하는 것은 누구에게도 허락되지 않는다.</p>
<p>Article 18. Transferees, publishers and all those who according to this law are permitted to refer to or quote from a work for commercial purposes, should in commonly accepted manner, mention the author's name, the title aid the special characteristics representing the work, on or with the original copy or on the printed or reproduced copies, unless the author makes an alternative agreement.</p>	<p>제 18 조. 이 법률에 따라 상업적 목적으로 작품을 참조하거나 또는 인용하도록 허용된 인수자, 출판자들 및 그들 모두는 저작자가 달리 합의하지 않으면, 공동으로 승인된 방식으로, 원본 또는 인쇄되거나 복제된 사본들에 작품을 대표하는 특수한 특징을 보조하는 저작자의 성명, 제목을 기재하여야 한다.</p>

<p>Article 19. Any alteration or misquotation followed by publication of a protected work is prohibited, unless it is with the author's permission.</p>	<p>제 19 조. 보호된 작품의 출판에 이어지는 변경 또는 잘못된 인용은 저작자의 허락이 없으면 금지된다.</p>
<p>Article 20. Publishers, recording companies, workshops Mid any persons dealing with the printing, recording, duplicating, distributing or publishing of works protected by this law must insert the instances of printing, recording, duplicating, distributing and publishing, and the serial number of the work on all the copies published, stating the dates and the names of the printing press, publishers or relevant workshops and studios.</p>	<p>제 20 조. 이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작품의 인쇄, 기록, 복제, 배포 또는 출판을 취급하는 자들 중에서 출판업자들, 기록 회사들, 작업장은 인쇄 언론, 출판자 또는 관련 작업장 및 스튜디오의 이름 및 일자를 진술하는 인쇄, 기록, 복제, 배포 및 출판의 사례들, 및 작품의 일련 번호를 출판된 모든 사본들에 삽입하여야 한다.</p>
<p>Article 21. Authors may register their names, titles, work and its chief characteristics with places which will be announced by the Ministry of Culture and Arts. The Council of Ministers will issue a decree concerning procedures related to registration formalities and the organisations which will deal with such registration.</p>	<p>제 21 조. 저작자는 문화예술부 장관에 의하여 발표되는 장소를 가진 주요 특징들 및 그들의 직업, 직책, 성명을 등록한다. 관리 위원회는 등록 형식과 그러한 등록을 취급할 조직에 대한 절차에 관한 법령을 제정한다.</p>
<p>Article 22. The financial rights of the author will be protected by this law, provided that his work is printed, distributed or performed for the first time in Iran, and has not previously been printed, distributed or performed in any other country.</p>	<p>제 22 조. 그의 작품이 이란에서 최초로 인쇄되고, 배포되거나 공연되고, 어느 다른 국가에서 이전에 인쇄되고, 배포되거나 공연되지 않았으면, 저작자의 금전적 권리는 이 법률에 의하여 보호된다.</p>

4. 법률의 침해 및 처벌

이란 저작권법	번역문
<p>Article 23.</p> <p>Whosoever publishes, distributes or broadcasts the whole or part of another person's work which is protected by this law, in his own name or in the name of the author without permission, or in the name of a person he knows to be other than that of the author, shall be condemned to corrective imprisonment for a period of time not less than six months and not more than three years.</p>	<p>제 23 조.</p> <p>이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다른 사람의 작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허락 없이 그 자신의 이름으로 또는 저작자의 이름으로, 또는 저작자의 이름이 아닌 그가 알고 있는 사람의 이름으로, 인쇄, 출판, 배포 또는 방송하는 자는 누구나 6개월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교정을 위한 구속에 의해 처벌한다.</p>
<p>Article 24.</p> <p>Whosoever prints, publishes or distributes another person's translation in his own name without permission, shall be condemned to corrective imprisonment for a period of time not less than three months and not more than one year.</p>	<p>제 24 조.</p> <p>허락 없이 다른 사람의 번역을 그 자신의 이름으로 인쇄, 출판, 배포 또는 방송하는 사람은 누구나 3개월 이상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교정을 위한 구속에 의해 처벌한다.</p>
<p>Article 25.</p> <p>Persons infringing articles 17, 18, 19 and 20 of this law, will be sentenced to corrective imprisonment for a period of time not less than three months and not more than one year.</p>	<p>제 25 조.</p> <p>이 법률의 제 17, 18, 19 및 20 조를 침해하는 자들은 3개월 이상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교정을 위한 구속에 의해 처벌한다.</p>

<p>Article 26.</p> <p>In cases where the author's copyright is terminated and the public are freely allowed to use the work in accordance with this law, the Ministry of Culture and Arts, with respect to infringements of articles 17, A, 19, and 20, will act as private plaintive.</p>	<p>제 26 조.</p> <p>저작자의 저작권이 종료되고 이 법률에 따라 공중이 자유로이 작품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들에서, 문화 예술부 장관은 제 17A, 19, 및 20 조의 침해에 대해, 사적 고소인으로 행위한다.</p>
<p>Article 27.</p> <p>A private plaintive may require the court on passing final judgement, to publish its findings in any newspaper of his choice at his own expense.</p>	<p>제 27 조.</p> <p>고소인은 자신의 비용으로 그가 선택한 신문에 그의 발견을 공개하도록 법원에 최종 판결을 내리기를 요청할 수 있다.</p>
<p>Article 28.</p> <p>In cases where this law is violated as a result of decisions made by a person of legal standing, damages awarded the private plaintive will be met from the assets of the legal personality. Should such assets be insufficient, the balance will be met from the assets of the third party who physically committed the crime.</p>	<p>제 28 조.</p> <p>법적 지위를 가진 사람에 의하여 이루어진 결정의 결과, 이 법률이 위반되는 경우, 사적 고소인에게 보상되는 손해는 법인격의 자산으로부터 충족된다. 그러한 자산이 충분하지 않으면, 차액은 물리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제3자의 자산으로부터 보충된다.</p>
<p>Article 29.</p> <p>Judicial authorities whilst considering the private plaintive's case car, order persons authorized by the Ministry of justice to prevent publication, distribution and public presentation of the work in question.</p>	<p>제 29 조.</p> <p>사적 고소인의 경우를 고려한 사법 당국은 법무부에 의하여 위임된 사람들에게 문제된 작품의 공개, 배포 및 공중예의 제공을 금지하도록 명령한다.</p>

<p>Article 30.</p> <p>Works produced prior to the ratification of this law are protected by it. Persons who have utilized and exploited the works of others without permission prior to the ratification of this law, can no longer publish, perform, reproduce or sell such works, unless it is with the permission of the author or his agent, in accordance with this law. Persons who infringe this article, or in order to avoid punishment, predate their printing, recording, or reproduction of a work, will be sentenced according to Article 23 of this law. All complaints submitted to judicial authorities prior to the passing of this law, remain valid.</p>	<p>제 30 조.</p> <p>이 법률의 비준 이전에 제작된 작품은 이 법률에 의하여 보호된다. 이 법률의 비준 이전에 허락 없이 다른 사람의 작품을 이용하고 활용한 사람들은, 더 이상 그러한 작품을 출판하고, 공연하며, 복제하거나 판매할 수 없으며, 그렇지 않으면, 이 법률에 따라 저작자 또는 그의 대리인의 허락에 의하여 수행한다. 이 조항을 침해한 사람들, 또는 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사전에 작품의 인쇄, 기록, 또는 복제를 수행한 사람들은 이 법률의 제 23 조에 따라 처벌된다. 이 법률의 통과 전에 사법 당국에 제출된 모든 고소들은 유효하다.</p>
<p>Article 31.</p> <p>Criminal proceeding in accordance with this law will be initiated by the complaint of the private plaintive and terminated by his pardon.</p>	<p>제 31 조.</p> <p>이 법률에 따른 형사 절차는 사적 고소인의 고발에 의하여 개시되고 그의 용서로 종료된다.</p>
<p>Article 32.</p> <p>Articles 245, 246, 247, and 248 of General Criminal law are redundant</p>	<p>제 32 조.</p> <p>일반 형법 제 245조, 246 조, 247조, 및 248 조가 보충된다.</p>
<p>Article 33.</p> <p>The executive regulations of this law will be prepared by the Ministry of Culture and Arts, the Ministry of justice and the Ministry of Information, and will be approved by the Council of Ministers.</p>	<p>제 33 조.</p> <p>이 법률의 시행 규정은 문화 예술부 및 법무부에 의하여 준비된다.</p>



참여인력

편찬·특허청

전현진 과 장 산업재산보호정책과
강현지 사 무 관 산업재산보호정책과

주관기관·한국지식재산보호원

성창호 실 장 사업기획실
이주웅 팀 장 기반정보팀
박민혜 주 임 기반정보팀

수행기관·특허법인 세원

오상균 대표변리사
김인한 대표변리사 (법무법인 청진)
오승민 변 리 사
박희영 변 리 사



“**해외지식재산보호가이드북**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국제 지재산 분쟁정보 제공 사이트
www.ip-navi.or.kr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해외지식재산권 보호가이드북 (이란)

발 행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정책과

주소 : 대전시 서구 청사로 189번지 정부청사 4동

전화 : 042) 481-5953

팩스 : 042) 472-1360

홈페이지 : www.kipo.go.kr

한국지식재산보호원 기반정보팀

주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31번지 6층

전화 : 02) 2183-5800

팩스 : 02) 2183-5899

홈페이지 : www.koipa.re.kr

발행일 2017년 2월

ISBN : 978-89-6199-638-9 13500

※ 이 책의 무단복제 및 전재를 금함